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97-01

201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97-01

201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영 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 호 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차

I.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
가. 연구내용 및 범위 .....	4
나. 연구방법 .....	6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8
가. 해외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	8
나. 국내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	10
II. 주요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	13
1. 주요 인권지수와 지표 산정방법 .....	15
가.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인권지표 .....	15
나.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 .....	17
다. 정치테러척도(PTS) .....	21
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 .....	22
마. 국경없는 기자회(RWB) 지수 .....	23
바. 베텔스만재단(BTS) 전환지수 .....	25
사.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	27
아. 제도적 특성(IPD) 지수 .....	28
자. 국제거버넌스지수(WGI) .....	30
차. 경제사회권권한이니셔티브(ESREI) .....	31
2. 우리나라와 주요국 인권수준 비교분석 .....	33
가. 2000년 이전 인권수준 비교 .....	33
나. 2000년 이후 인권수준 비교 .....	34

III.	인권 현황과 지표 풀	85
1.	시민·정치적 권리 현황과 지표	87
가.	생명권 현황과 지표 풀	87
나.	신체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94
다.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102
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105
마.	이동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108
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11
사.	언론·출판의 자유	116
아.	집회·결사의 자유	122
자.	참정권 현황과 지표 풀	126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현황과 지표	135
가.	사회보장권 현황과 지표 풀	135
나.	노동권 현황과 지표 풀	140
다.	건강권(환경권)	150
라.	교육권(문화권)	157
마.	주거권	165
3.	소외계층 권리 현황과 지표 풀	169
가.	여성 인권의 현황과 지표 풀	169
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180
다.	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188
마.	소수자(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195
라.	노인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198
IV.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지표 체계와 산정방법	207
1.	지수의 유형과 개발과정	209
가.	지수의 정의와 유형	209
나.	인권지수 개발 절차	209

2. 인권지수의 영역 및 지표 구성 .....	211
가. 인권지수의 영역 구성 .....	211
나. 영역별 가중치 산정 방법과 결과 .....	217
다. 영역별 인권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	223
라. 영역별 인권지표 선정 .....	237
3. 인권지수의 산정절차와 방법 .....	255
가. 인권지수의 정규화 .....	255
나. 인권지수의 산정방법 .....	261
V.            인권지수의 산정과 평가 .....	281
1.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	283
2. 영역별 인권수준 변화와 특징 .....	287
가. 시민정치권 영역 인권수준 .....	287
나.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인권수준 .....	307
VI. 국가인권지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 .....	323
1. 인권지수의 활용방안 .....	325
2. 인권지수의 관리방안 .....	326
■ 참고문헌 .....	331
■ 부    록 .....	337

## 목 차

< I-1> 제1차 연도의 주요 연구내용(2012년) .....	5
<표 I-2> 제2차 연도의 주요 연구내용(2013년) .....	7
<표 II-1> 프리덤하우스의 국가별 자유권 평가방식 .....	20
<표 II-2>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의 참정권 세부 지표 .....	46
<표 II-3> 우리나라 EIU의 참정권 세부 지표 .....	47
<표 II-4> 우리나라 IPD의 참정권 세부 지표 .....	49
<표 II-5> 우리나라 BTI의 참정권 세부 지표 .....	50
<표 II-6> 우리나라 IPD의 사법부 독립과 법 앞의 평등 지표(2012년) .....	58
<표 II-7> 주요국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 지표 값과 순위 추이 .....	61
<표 II-8> 우리나라 IPD의 언론 및 미디어자유 지표 .....	64
<표 II-9> 주요국 WJP와 BTI 의사·표현의 자유 지표 값 및 순위(2012년) .....	65
<표 II-10> 주요 인권지수의 집회·결사의 자유 지표 값 .....	68
<표 II-11> 우리나라 IPD의 집회·결사의 자유 지표 .....	69
<표 II-12> 우리나라 IPD 이동의 자유 지표 값과 순위 .....	71
<표 II-13> 주요국 IPD의 소수자권리 및 차별 지표 수준과 순위 .....	74
<표 II-14> 주요국 BTI의 기회평등권 지표 값 수준과 순위 .....	75
<표 II-15> 고소득국가의 경제사회권 이행지수 수준(2013년) .....	77
<표 II-16> 중위·하위소득국가의 경제사회권 이행지수 수준(2013년) .....	79
<표 II-17> 인권 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1) .....	80
<표 II-18> 인권 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2) .....	81
<표 II-19> 인권 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3) .....	82
<표 II-20> 인권 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4) .....	84
<표 III-1> 사형집행 인원 및 사면·감형 인원(1997-2012) .....	87
<표 III-2> 국가 간 사형선고 건수(2007-2012) .....	88
<표 III-3> 인공임신중절 사유(2006-2009) .....	90
<표 III-4> 인구 십만 명 당 살인 건수 비율(2008-2012) .....	91
<표 III-5> 실종건수(2007-2012) .....	92

< Ⅲ-6> 영아사망률 .....	92
<표 Ⅲ-7> 생명권 지표 풀 .....	93
<표 Ⅲ-8> 범죄자 기소인원 중 구속인원 및 구속률 .....	95
<표 Ⅲ-9>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수(1일 평균 수용인원) .....	96
<표 Ⅲ-10> 교도소 수용인원 .....	97
<표 Ⅲ-11>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	98
<표 Ⅲ-12>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현황 .....	100
<표 Ⅲ-13> 가혹행위 발생 현황 .....	101
<표 Ⅲ-14> 신체의 자유 지표 풀 .....	102
<표 Ⅲ-15> 국선변호인 선임현황(1심) .....	103
<표 Ⅲ-16> 형사보상처리 인용률(1심) .....	104
<표 Ⅲ-17>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지표 풀 .....	105
<표 Ⅲ-18>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	106
<표 Ⅲ-19>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지표 풀 .....	107
<표 Ⅲ-20> 저상버스 도입현황 .....	109
<표 Ⅲ-21> 난민처리 현황 .....	110
<표 Ⅲ-22> 이동의 자유 지표 풀 .....	111
<표 Ⅲ-23> 병역 거부자 중 형사 처벌 비율(2004~2013.6.30 기간 중) .....	113
<표 Ⅲ-24>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기소 및 구속자 수 .....	113
<표 Ⅲ-25>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지표 풀 .....	116
<표 Ⅲ-26> 언론자유지수의 한국순위 .....	117
<표 Ⅲ-27> 연도별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	118
<표 Ⅲ-28> 제재종류별 방송심의 의견 현황 .....	119
<표 Ⅲ-29>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	120
<표 Ⅲ-30> 행정정보 공개율 .....	120
<표 Ⅲ-31> 정보격차 현황 .....	121
<표 Ⅲ-32> 언론·출판의 자유 측정 지표 풀 .....	122
<표 Ⅲ-33> 집회·시위 신청 대비 불허 비율 .....	123
<표 Ⅲ-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	124
<표 Ⅲ-35>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	125
<표 Ⅲ-36>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	125

< 표 III-37 > 언론·출판의 자유 측정 지표 풀	126
< 표 III-38 > 참정권 지표 풀	135
< 표 III-39 > 상대적 빈곤율(2006-2012)	136
< 표 III-40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2008-2012)	136
< 표 III-41 > 지니계수 현황 및 추이(2006-2012)	137
< 표 III-42 > 5분위 배율 지수 현황 및 추이(2006-2012)	138
< 표 III-43 >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	138
< 표 III-44 >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 현황 및 추이	139
< 표 III-45 > 사회보장권 지표 풀	139
< 표 III-46 >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구성비	142
< 표 III-47 > 차별 진정 건수 추이	146
< 표 III-48 > 연도별 노동조합원 및 조직률	147
< 표 III-49 > 노동권 지표 풀	149
< 표 III-50 > 건강보험/법정보인 부담률/비급여 본인 부담률(2006-2011)	151
< 표 III-51 > 활동 의사 수(2009-2012)	152
< 표 III-52 > 주관적 건강 인지율(1998-2012)	153
< 표 III-53 >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2003-2012)	154
< 표 III-54 > 건강검진 수검률(2007-2012)	155
< 표 III-55 > 천식 유병률(1998-2012)	155
< 표 III-56 > 알레르기성 비염(1998-2012)	156
< 표 III-57 > 주요 대도시 환경소음도(2009-2012)	156
< 표 III-58 > 건강권 지표 풀	157
< 표 III-59 > 취학률(2000-2012)	158
< 표 III-60 > 초등학교 학업중단율(1980-2011)	159
< 표 III-61 > 중학교 학업중단율(1980-2011)	159
< 표 III-62 > 고등학교 학업중단율(1980-2011)	160
< 표 III-63 > 사교육비 비율(2007-2012)	161
< 표 III-64 > GDP 대비 총 사교육비 비중(2007-2012)	162
< 표 III-65 > 특수학교 및 교원 수 대비 장애인 학생 수(1980-2013)	162
< 표 III-66 > 도시규모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2006-2012)	163
< 표 III-67 > 여가활동 만족도(2011)	164

< 표 III-68 > 외국 및 한국의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및 장서 수 .....	164
< 표 III-69 > 교육권·문화 관련 지표 풀 .....	165
< 표 III-70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2006-2012) .....	166
< 표 III-71 > 중위소득가구 월소득 대비 주거비(2006-2012) .....	166
< 표 III-72 > 주택 자가보유율(2006-2012) .....	167
< 표 III-73 > 주거환경만족도(2006-2012) .....	168
< 표 III-74 > 홈리스 수(2005-2012) .....	168
< 표 III-75 > 주거권 지표 풀 .....	169
< 표 III-76 > 가정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 .....	171
< 표 III-77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173
< 표 III-78 >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비율 .....	173
< 표 III-79 > 경제활동인구 추이 .....	174
< 표 III-80 > OECD 회원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175
< 표 III-81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176
< 표 III-82 >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 .....	178
< 표 III-83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	179
< 표 III-84 > 여성 인권 지표 풀 .....	180
< 표 III-85 > 연령별 3대 사망원인 및 구성비 .....	181
< 표 III-86 > 아동학대 사례유형(중복 포함) .....	182
< 표 III-87 >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	183
< 표 III-88 >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 현황 .....	183
< 표 III-89 > 아동빈곤율 .....	184
< 표 III-90 >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08년, 중위소득 50%) .....	185
< 표 III-91 >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조치 현황 .....	186
< 표 III-92 > 영양소 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대상자 분율 .....	187
< 표 III-93 > 아동·청소년권리 지표 풀 .....	188
< 표 III-94 > 장애인의 폭력경험률 .....	189
< 표 III-95 > 저상버스 보급률 .....	189
< 표 III-96 > 특별교통수단 도입 실적 .....	190
< 표 III-97 > 장애인 고용률 .....	191
< 표 III-98 > 일반인 대비 장애인 임금격차 .....	192

< 표 III-99 > 고등학교 장애인진학률 .....	193
< 표 III-100 > 장애인 투표율 .....	193
< 표 III-101 > 일반인 대비 장애인 정보화 격차 .....	194
< 표 III-102 > 장애인 인권 지표 풀 .....	195
< 표 III-103 > 난민자격인정률(1994-2012) .....	196
< 표 III-104 > 북한이탈자취업률(2012) .....	196
< 표 III-105 > 난민 북한이탈자 지표 풀 .....	198
< 표 III-106 > 연도별 학대 신고 건수와 재신고 비율 .....	199
< 표 III-107 > 노인 학대경험률 .....	200
< 표 III-108 > 노인의 일반적 건강상태 만족도 .....	201
< 표 III-109 > OECD 주요국가 노인의 건강상태 .....	201
< 표 III-110 > 노인빈곤율 .....	202
< 표 III-111 > 공적연금수급자 비율 수급률 현황 .....	204
< 표 III-112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204
< 표 III-113 >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	205
< 표 III-114 > 60세 이상 노인의 선거투표율 .....	205
< 표 III-115 > 노인인권 지표 풀 .....	206
< 표 IV-1 >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권리 .....	212
< 표 IV-2 > 주요 인권지수의 지표영역 .....	214
< 표 IV-3 >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 지표 영역 구분 .....	216
< 표 IV-4 > 영역 가중치 산정을 위한 조사문항 구조 .....	218
< 표 IV-5 >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220
< 표 IV-6 > 생명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23
< 표 IV-7 > 신체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24
< 표 IV-8 > 법의 지배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25
< 표 IV-9 > 사생활보호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26
< 표 IV-10 > 이동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27
< 표 IV-11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28
< 표 IV-12 > 언론·출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29
< 표 IV-13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30
< 표 IV-14 > 참정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31

< IV-15> 사회보장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32
<표 IV-16> 노동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33
<표 IV-17> 건강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34
<표 IV-18> 교육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35
<표 IV-19> 주거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36
<표 IV-20> 생명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39
<표 IV-21> 신체적 자유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40
<표 IV-22> 법의 지배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41
<표 IV-23> 사생활보호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42
<표 IV-24> 이동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43
<표 IV-25> 사상·양심·종교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43
<표 IV-26> 언론·출판·의사표현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44
<표 IV-27>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45
<표 IV-28> 참정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46
<표 IV-29> 사회보장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48
<표 IV-30> 노동·경제활동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49
<표 IV-31> 건강·환경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50
<표 IV-32> 교육·문화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51
<표 IV-33> 주거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	251
<표 IV-34> 자유권 및 사회권 영역별 최종 지표 수 .....	252
<표 IV-35> 시민정치권 영역별 최종 지표 .....	253
<표 IV-36> 경제·사회·문화권 영역별 최종 지표 .....	254
<표 IV-37> 지표의 정규화 방식과 산식 .....	256
<표 IV-38> 국가인권지수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시민정치권) .....	274
<표 IV-39> 국가인권지수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경제·사회·문화권) .....	277
<표 VI-1> 인권자료의 생산 및 관리 인프라 구축 방안 .....	328
<표 VI-2> 인권 관련 통계 생산이 필요한 지표 .....	330

## 림 목 차

[ II-1] 주요국의 CIRI 자유권 지표 값 변화 추이 .....	36
[그림 II-2] CIRI 자유권 지표 값의 국가별 순위(2011년) .....	37
[그림 II-3]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 자유권 수준과 국제순위 .....	38
[그림 II-4] 프리덤하우스 자유권 지표 값의 국가별 순위(2013년) .....	39
[그림 II-5] 우리나라 EIU 자유권 수준과 국제순위 .....	40
[그림 II-6] EIU 자유권 지표 값의 국가별 순위(2012년) .....	41
[그림 II-7]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 시민권 지표 및 순위 .....	42
[그림 II-8] 우리나라 EIU 시민권 지표 값 및 순위 추이 .....	43
[그림 II-9] 우리나라의 프리덤하우스 참정권 지표 및 순위 .....	44
[그림 II-10] 우리나라 EIU 참정권 지표 값 및 순위 추이 .....	45
[그림 II-11] 주요국의 PTS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 추이 .....	52
[그림 II-12] 연도별 우리나라 PTS의 신체적 존엄권 변환 지표 추이 .....	53
[그림 II-13] 연도별 우리나라 CIRI의 신체적 존엄권 지표 추이 .....	54
[그림 II-14] 주요국 WJP의 생명 및 안전권 지표(2012-2013년) .....	55
[그림 II-15] 우리나라 WGI의 법의 지배 지표 값 추이 .....	57
[그림 II-16] 주요국 WGI의 피고인 권리보장 지표(2013년) .....	59
[그림 II-17] 우리나라 국경없는 기자의 언론자유지표 수준 .....	62
[그림 II-18] 주요국 국경없는 기자의 언론자유지표(2013년) .....	63
[그림 II-19] 주요국의 WJP 신념, 종교의 자유 지표(2012년) .....	66
[그림 II-20] 주요국의 WJP 평등권 지표 값과 순위(2012년) .....	72
[그림 III-1] 성별 및 연도별 자살률(1985-2012) .....	89
[그림 III-2] OECD 주요 국가별 자살률 .....	89
[그림 III-3] 주요 국가별 살인건수(2004) .....	91
[그림 III-4] 주요 국가별 영아사망률 .....	93
[그림 III-5] OECD 주요국의 투표율 .....	128
[그림 III-6] 연도별 투표율 추이 .....	129
[그림 III-7] 국회의원 여성 비율 .....	130

[ III-8]	선거의 여성공천자 비율	131
[그림 III-9]	관리직(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131
[그림 III-10]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132
[그림 III-11]	선거사범 공안사건 처리현황	133
[그림 III-12]	선거사범 전체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34
[그림 III-13]	OECD 주요 국가별 지니계수(2010)	137
[그림 III-14]	OECD 회원국 고용률과 실업률(2012년)	141
[그림 III-15]	OECD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비(2011년)	143
[그림 III-16]	OECD 주요국의 연간 실근로시간(2012년)	144
[그림 III-17]	우리나라 산업재해자수 및 재해율	145
[그림 III-18]	OECD 회원국 노동조합조직률	148
[그림 III-19]	OECD 주요국의 인구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2011년)	151
[그림 III-20]	공공 의료비 비중(1980-2011)	152
[그림 III-21]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2011년)	153
[그림 III-22]	주요 국가별 주관적 건강상태	154
[그림 III-23]	연도별 평생교육 참여비율	161
[그림 III-24]	특성별 주택만족도	167
[그림 III-25]	성폭력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170
[그림 III-26]	범죄의 위험에 대한 인식	172
[그림 III-27]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	177
[그림 III-28]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177
[그림 III-29]	탈북청소년 학업중단 현황	197
[그림 III-30]	노인인구 10만 명 당 학대 신고 건수	199
[그림 III-31]	OECD 주요회원국 노인빈곤율	203
[그림 IV-1]	지수의 개발단계	211
[그림 IV-2]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의 가중치 산출 결과	221
[그림 IV-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의 가중치 산출 결과	222
[그림 IV-4]	소수자 권리 영역의 가중치 산출 결과	222
[그림 IV-5]	생명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24
[그림 IV-6]	신체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25
[그림 IV-7]	법의 지배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26

[ IV-8]	사생활보호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27
[그림 IV-9]	이동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28
[그림 IV-10]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29
[그림 IV-11]	언론·출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30
[그림 IV-12]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31
[그림 IV-13]	참정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32
[그림 IV-14]	사회 보장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33
[그림 IV-15]	노동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34
[그림 IV-16]	건강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35
[그림 IV-17]	교육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36
[그림 IV-18]	주거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37
[그림 IV-19]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추이 및 추계	268
[그림 V-1]	연도별 국가인권지수의 지표 값 추이	283
[그림 V-2]	영역별 시민정치권의 지표 값 변화 추이	284
[그림 V-3]	기간별 시민정치권의 영역별 지수 값 변동 폭	285
[그림 V-4]	영역별 경제·사회·문화권의 지표 값	286
[그림 V-5]	영역별 경제·사회·문화권의 지표 값 변화	287
[그림 V-6]	생명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89
[그림 V-7]	신체의 자유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91
[그림 V-8]	법의 지배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93
[그림 V-9]	사생활보호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95
[그림 V-10]	이동 자유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98
[그림 V-11]	사상·양심·종교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300
[그림 V-12]	언론·출판·의사표현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303
[그림 V-13]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304
[그림 V-14]	참정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306
[그림 V-15]	사회보장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308
[그림 V-16]	사회보장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309
[그림 V-17]	노동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311
[그림 V-18]	노동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313
[그림 V-19]	보건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314

[ V-20] 보건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	315
[그림 V-21] 교육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	317
[그림 V-22] 교육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	318
[그림 V-23] 주거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	320

##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8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즉, 자유권 영역에서 생명, 거주 이전, 사상 및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정치참여 등에 대한 국가적 제한을 축소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였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인권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르지만 ‘국민인권의식 실태’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2005년 응답자의 62.7%가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20.1%만이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 38.6%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sup>1)</sup> 즉,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부정적인 의견으로 간주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인권의식조사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태도, 평가 및 경험 뿐만 아니라 인권수준과 변화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인권의식조사와 함께 인권지수를 개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인권보장의 제도 수립과 실현에 있어 인권상황에 대한 정량적(Quantitative) 또는 정성적(Qualitative) 지표를 통한 적절한 정책측정의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지수 가이드라인(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시작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권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인권지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2007년, 2012년에 각각 제1차 및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라 정책 시행에 따른 인권수준과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 실효성을 점검함과 동시에 대국민 인권인식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1년에 인권증진·보호를 위해 국

1) 정진성 외(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인권지수개발을 통한 인권 일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설정하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와 증진 정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 점검, 정책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지표 및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지수는 다른 복합지수와는 달리 인권이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개별 권리마다 지표단위가 상이하므로, 인권지수 개발은 연차적·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2013년에 수행되는 본 연구에서는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에 개발한 인권지수 영역별 후보지표(indicators pool)를 검토하여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를 선정한다. ② 인권지표는 개별 권리마다 지표단위가 상이하므로 각 지표 값이 특성을 유지하면서 비교 가능하도록 표준화(normalization)하고, 각 지표 점수화, 영역별 지표 값 산정 등의 방법론(methodology)을 개발한다. 그리고 ③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산정방법을 기초로 자유권과 사회권 등에 대한 지수 값을 산정하고 산정된 지수 값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의실험(simulation)을 할 것이다. ④ 모의실험 결과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지표와 지수 산정방법론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인권지수 값을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된 지수 값을 기초로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⑤ 우리나라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별 통계를 구축하고, 인권지표의 생산현황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⑥ 국가인권지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가. 연구내용 및 범위

금년도 인권지수개발관련 연구내용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2012년도 연구에서는 <표 I-1>에서와 같이 인권지수(HRI)의 지표 풀 구축을 완료하고, 2013년 연구에서는 <표 I-2>에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HRI 지수의 영역 구축, 지수 산정방법론 개발 그리고 지표 관련 통계 구축, 지표 및 지수 값 산정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국내외 인권지수의 유형과 지표체계 그리고 지

수의 산정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주요 인권지수, 민주주의 혹은 제도적 특성 지수 등과 같은 복합지수를 구성하는 인권지표 등의 측정 기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통계 즉, 사건에 기초한 자료, 기준에 기초한 자료 그리고 실태 조사에 기초한 자료 등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 값을 산정하는 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수 산정 값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 개별 권리의 이행 및 준수 정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였다.

< I-1> 제1차 연도의 주요 연구내용(2012년)

1. 연구내용:
<p>국내외 인권지수 개발 현황과 개발과정 및 활용 정보·통계, 방법론을 분석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권지수의 지표체계 및 지표를 비교분석함.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권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개별 권리별 지표 풀을 구축함.</p>
2. 세부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인권지수 현황과 특성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주요 인권지수 현황 분석</li> <li>- 인권개념을 지표화 하는 과정 분석</li> <li>- 인권 정보와 자료유형 및 특성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지표체계 구축과 방법론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지수의 유형과 개발과정 분석</li> <li>- 인권지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비교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인권현황과 지표 풀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정치적 권리현황과 지표 풀 구축</li> <l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현황과 지표 풀 구축</li> <li>- 소수자 권리 현황과 지표 풀 구축</li> </ul>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풀을 선정하기 위해서, 개별 인권에 대한 현황, 추이 그리고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권리별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지표체계와 지수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권지수의 영역과 지표구성을 비교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델파이조사를 기초로 국가인권지수의 영역을 개발하고, 지표영역 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각 영역에 속하는 하위 지표는 제3장에서 분석한 권리별 지표 풀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지표를 선정하였다. 제4장 2절에서는 인권지수의 산정방법과 절차를 개발하였다. 동 절에서는 먼저 개별 지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수산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정규화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초로 영역별 지표 값 및 복합지수 값을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선정한 개별 지표의 통계를 구축하였다. 통계구축은 단순 통계 값뿐만 아니라 지표 관련 통계의 특성(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등)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5장 2절에서는 통계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영역별 인권지표 값 산정, 인권지수 산정 모의실험, 인권수준 평가 등을 하였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국가인권지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고, 부록에 국가인권지수의 부문별 통계표를 작성하였다.

####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와 증진 정도를 살펴보고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 점검 후 정책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지표 및 지수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수 및 인권지수(지표)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인권 관련 지표 및 지수 연구의 개발 목적을 살펴보고 각 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문헌연구를 통해 인권지수 혹은 지표체계와 구성, 지표의 코딩(coding) 방법 및 지수 산정방법까지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인권 관련 지표 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인권영역별 주요 국내외 (기존)지표(통계)의 통계적 정의, 산식, 조사 개요 및 통계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I-2> 제2차 연도의 주요 연구내용(2013년)

1. 연구내용:

국가인권지수의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지수 값을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지수를 산정함.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지표영역과 영역가중치, 지표를 선정함. 또한 지수 산정을 위해서 지표별 정규화, 지수산정방법론 그리고 지표의 목표수준(Goalpost)설정 등을 위해 국제지수에서 우리나라 인권수준 및 순위 분석 등을 함.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지수의 수준을 산정, 평가함과 동시에 지수 활용 및 방안을 제시함.

2. 세부 연구내용: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권수준 및 순위 분석
  - 주요 국제 인권지수 및 지표 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인권수준 및 국제순위 비교분석

- 국가인권지수의 지표체계와 지표 구축
  - 국가인권지수 영역 구축
  - 국가인권지수의 지표 구축

- 국가인권지수 산정 및 평가 분석
  - 국가인권지수의 수준 산정
  - 국가인권지수 평가

- 국가인권지수 활용 및 방안 마련
  - 국가인권지수의 활용방안 마련
  - 국가인권지수의 관리방안 마련

또한 인권 전문가 및 교수, 관련 부서 공무원, 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방향 및 방법론, 지수의 영역 가중치 부여방법 및 지표 선정 자문, 국가인권지수(안), 최종 연구보고서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인권전문가, 관련 공무원, 교수 등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Delphi survey)를 통해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각각의 세부영역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가인권지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조사를 위한 조사표는 <참고자료 2> 참조).

###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1970년대 이후 외국에서는 국가의 인권상황을 국제 비교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졌으나 유엔개발기구(UNDP)가 이들 인권수준을 측정한 점수를 활용하여 자유가 경제성장을 강화시키는 연구를 발표한 1991년 이전까지 이들 연구는 거의 공식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국제 인권수준 비교방법(ranking method)이 인권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 및 개별 권리에 대한 지표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표 I-2>에 정리된 바와 같이 국내외 인권지표 관련 연구현황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 가. 해외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인권수준의 측정과 지수화에 대한 해외 연구로는 휴매너(C. Humana, 1986)의 선도적인 연구가 있다. 휴매너는 유엔협약과 국제규약을 기초로 자유(freedom)를 판단할 수 있는 40개의 기준을 구축하였으며, 1985년 세계인권가이드(World Human rights Guide)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1', 침해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0'을 부여하여 국가별 인권순위를 매겼다.

싱그라넬리 리차드 인권지표(CIRI; Cingranelli-Richards Human Rights Indicators)는 인권데이터 프로젝트(HR Data project)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인

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구축된 지표이다. 동 인권지표들은 개별적으로 간략한 변수 설명과 함께 코딩매뉴얼을 통해서 지표를 개량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2)</sup> 지표는 크게 4가지 영역 즉, 신체적 존엄권, 권한 관련 권리, 여성 정치, 경제, 사회권, 사법부 독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존엄권 영역에는 4개의 지표 즉, 실종, 사법외적 살인, 정치적 구금,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지표를 이용하여 신체적 존엄권 지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권한 관련 권리영역도 집회자유, 해외이동자유, 국내이동자유, 언론의 자유, 선거 자기결정권, 종교 자유권, 근로자 권리와 같은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지표를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여성 정치, 경제, 사회권 영역도 동일하게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영역의 지수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싱그라넬리 리차드 인권지표의 경우 위에서 제시된 각 영역별 지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통합된 인권지수(composite human rights index)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바쉬(R. L. Barsh, 1993)의 연구는 1990년 이전에 개발된 인권지수인 Humana 지수(HFI; Human Freedom Index)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열산정방식(ranking methods)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측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기존 서열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인권수준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sup>3)</sup>

굽타(D. K. Gupta, 1994)는 국가의 인권분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복합지수를 연구하였다.<sup>4)</sup> 즉, 해당 연구 이전에 개발된 인권지수들이 다양한 인권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또한 전체 인권수준에 따라 서열화도 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굽타는 여러 가지 인권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 제안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판별분석(Discriminate Analysis)

2) Cingranelli, David L. and David L. Richards(2008), The Cingranelli-Richards(CI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 Coding Manual, Manual version 7.30.08. Cingranelli, David L. and David L. Richards(2008), The Cingranelli-Richards(CI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 Short Variable Descriptions for Indicators.

3) Russel Lawrence Barsh(1993), Measuring Human Rights: Problems of Methodology and Purpose, *Human Rights Quarterly*, Vol. 15, No. 1 (Feb., 1993), pp.87-121.

4) Dipak K. Gupta, Albert J. Jongman, Alex P(1994), Creating a Composite Index for Assessing Country Performa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posal for a New Methodology, *Human Rights Quarterly*, Vol. 16, No. 1 (Feb., 1994), pp.131-162.

을 이용하여 Humana 지수를 구성하는 권리 및 자유와 관련된 40개 지표를 3가지 유형 즉, 생명(존엄)권, 참정권(political right), 시민권(civil right)으로 집단화시키고, 각 유형에 대해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랜드먼(T. Landman, 2004)은 인권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목적, 측정방법을 정리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인권을 측정하기 위한 원칙, 내용 그리고 정책성과를 정리하였다.<sup>5)</sup> 이 외에 웰링(J. V. Welling, 2008)은 경제·사회·문화권에 대한 국제지표개발을 정리하기도 하였다.<sup>6)</sup> 지역차원에서 국가 인권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권지수를 개발하여, 실제로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는 지수로는 서남아시아의 인권침해지수(SAARC Human Rights Violators index)를 꼽을 수 있다.<sup>7)</sup> 동 지수는 이들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9개 인권 관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국내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국내에서 인권지수 혹은 유사한 지수를 개발한 연구는 최근에 일부 수행되었으나, 지수를 활용한 인권수준 평가 및 인권영향평가(HRIA)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 인권지수와 관련된 연구로 김태홍(2012)은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와 증진 정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 점검, 정책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지표 및 지수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인권 관련 지표 및 지수 연구의 인권지표 개발 목적, 분석대상 인권내용, 인권 개념 규정을 통한 지표화 절차, 인권의 수량적 측정을 위한 자료 성격과 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인권지수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인권지표 및 지수개발 연구를 비교분석하였고,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인권현황 및 주요 이슈, 선행 연구에서 구축한 개별 권리별 지표 체계 및

5) Todd Landman(2004), Measuring Human Rights: Principle, Practice, and Policy, *Human Rights Quarterly*, Vol. 26, No. 4 (Nov. 2004), p.927.

6) Judith V. Welling (2008), International Indicator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30, (2008), pp.933-958.

7)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SAARC)는 인권지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Asian Centre for Human Rights(2006, 2008), 「SAARC Human Rights Report」.

지표 분석,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리별 지표 풀 즉, 인권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구정우 외(2009)는 37개 자유권 지표 즉, 사상 및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행정적 정의, 수감자의 권리, 여성 및 아동권, 소수자 권리 등으로 구성하였고, 사회권 지표로 복지권,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31개 지표로 구성된 지수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축된 통합지수를 이용하여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인권 궤적을 분석하였는데,<sup>8)</sup>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유권과 사회권은 1990년대 중반이전까지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말 특히 2000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구정우 외(2011)의 연구는 국가기관 인권지수 평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행정부처의 인권관리지표를 선정하여 행정기관별로 배분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sup>9)</sup>

공석기(2009)는 구정우 외(2009)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인권개선의 조건과 한계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sup>10)</sup> 문진영 외(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권을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사회적 기본권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실험적으로 구성·개발하였다.<sup>11)</sup> 이들 지표는 5개 하위 차원에 20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지표만을 개발하고 사회권에 대한 복합적인 지수 구축을 위한 방법론과 지수 산정작업은 하지 않았다.

강수택 외(2009)는 대학인권지표를 구축하였는데, 지표는 크게 인간존엄성,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로 구축하였다.<sup>12)</sup>

김기곤(2011)은 광주광역시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0년부터 세계인권선언문, 국제인권법 등을 검토하여 인권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는

8) 구정우(2009), 「글로벌 인권개선의 추이 - 국제 인권지표의 분석, 1972-2007」,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2009.12, pp.653-667.

구정우·공석기·정진성(2009), 「Measuring National Human rights: a reflection on the Korean Experience」, 서울대 사회학과 인권 국제학술대회 발제논문.

9) 구정우 외(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10) 공석기(2009), 「1990년대 이후 한국 인권개선의 조건 그리고 한계」, 한국사회학회, 국제사회학대회, 2009.12, pp.669-681.

11) 문진영 외(2007),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8),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회권」, 2008년 사회권 심포지엄.

12) 강수택 외(2009), 『대학 인권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데, 광주광역시 인권지표개발은 먼저 행정부서와 연구기관이 500개 예비지표를 발굴하고, 시민사회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광주의 현실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해야 하는 5개 영역(시민자치와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 쾌적한 환경의 안전한 도시, 연대와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삶이 안정된 행복한 도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에 대한 100개 지표를 선정하여 구축하였다.

---

---

## II

---

---

### 주요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

---

- |                        |    |
|------------------------|----|
| 1. 주요 인권지수와 지표 산정방법    | 15 |
| 2. 우리나라와 주요국 인권수준 비교분석 | 33 |

## 1. 주요 인권지수와 지표 산정방법

### 가.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인권지표

주요국의 인권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개발·생산되고 있는 국제인권지표 중에서 먼저 국제인권데이터베이스인 싱그라넬리 리차드(Cingranelli-Richards: CIRI) 데이터베이스에는 세계 195개국의 인권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인권지표는 4가지 영역 즉, '신체적 존엄권', '권한 관련 권리', '여성 정치, 경제, 사회권', '사법부 독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지표는 총 15개이다. 신체적 존엄권에 속하는 네 개의 권리는 2차 자료 즉, 국제사면위원회의 연차보고서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양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코딩하였다. 동 인권지표들은 개별적으로 간략한 변수 설명과 함께 코딩매뉴얼을 통해서 지표를 개량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권지수의 개별 지표와 지표 값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sup>13)</sup>

먼저 신체적 존엄권 지수의 경우 4개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별 지표의 산정방법은 먼저 실종지표는 실종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0점', 1-49명이면 '1점', 없으면 '2점'을 부여한다. 정치적 사법외적 살인은 50명 이상 처형했으면 '0점', 1-49명이면 '1점', 없으면 '2점'이다. 정치적 구금 지표는 50명 이상 감금이면 '0점', 1-49명이면 '1점', 없으면 '2점'이다. 동 지표에 산정되는 총 감금자수는 '해당 연도 신규 감금자 + 이전부터 계속 감금된 기준 감금자 - 해당 분석기간에 석방된 기존 감금자'를 나타낸다. 고문지표는 50명 이상 고문이면 '0점', 1-49명이면 '1점' 그리고 없으면 '2점'이다. 신체적 존엄성지수는 위의 지표 값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함에 따라 지수 값은 최저 '0점'에서 최대 '8점'이다. 또한 사법부 독립 지표는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0점', 부분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1점' 그리고 보편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2점'을 부여한다.

권한 관련 지수는 7개 세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들 권리를 방치하면 '0점' 완전하게 권리를 보장하면 '14점'이 된다. 개별 지표 값의 산정은 먼저 집회자유지표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자유를 엄격히 제한 혹은 불허하면 '0점', 모든 국민에게 다소 제한 혹은 일부 집단에 대해 엄격히 제한 혹은 불허하면 '1점'

13) 김태홍 외(2012), <표 III-4>, pp.50-51. 인권 관련 제반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최소 2명의 전문가(trained coders)가 인권수준을 평가하고 코딩하였음.

그리고 자유로우면 '2점'이다. 해외이동자유지표는 해외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면 '0점', 다소 제한되면 '1점' 그리고 자유로우면 '2점', 국내이동자유지표도 국내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면 '0점', 다소 제한되면 '1점' 그리고 자유로우면 '2점', 언론자유지표의 경우 언론매체에 대한 완전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0점', 제한적 검열의 경우 '1점', 검열이 없으면 '2점'이다.

그리고 선거 자기결정권지표는 투표권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면 '0점', 제한적인 투표권이 보장되면 '1점',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면 '2점'이고, 종교의 자유지표는 종교관련 정부규제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면 '0점', 부분적인 수준이면 '1점', 실제적으로 규제가 없으면 '2점' 그리고 근로자 권리지표의 경우 근로의 권리가 엄격히 제한되면 '0점', 다소 제한되면 '1점', 완전하게 보호되면 '2점'이다.

여성 정치, 경제, 사회권지수는 경제권, 참정권, 사회권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들 3개 권리를 완전히 방치하면 '0점', 이에 비해 완전하게 관련 인권을 보장하면 '9점'이 된다. 세부 지표를 보면 먼저 여성경제권 지표의 경우 법에 의한 여성경제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성차별에 대해 정부가 관용하는 경우 '0점', 법으로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나 실제 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1점', 법으로 경제적 평등보장, 법 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미한 성차별에 대해서 정부가 관용을 베풀고 있으면 '2점' 그리고 여성에게 거의 모든 경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부가 차별을 불허하면 '3점'을 부여한다.

여성참정권지표의 경우는 법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0점', 법으로 정치적 평등이 보장되나 현실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국회, 정부고위직 여성비율 5% 미만이면 '1점', 법으로 정치적 평등이 보장되고, 국회 및 정부고위직 여성비율 5~30% 미만이면 '2점'이고 같은 조건에서 30% 이상이면 '3점'을 부여한다. 여성사회권지표는 법에 의해서 여성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0점', 법으로 사회권이 보장되나 정부가 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1점', 법으로 사회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실행하나 여성에 대한 경미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관용하면 '2점', 거의 모든 사회권이 법적으로 여성에게 보장되고 경미한 차별까지 정부가 불허하면 '3점'을 부여한다. 여성 정치, 경제, 사회권지수는 위의 3개의 세부 지표 값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

### (1) 참정권 및 시민권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H)는 1973년 세계 참정권과 시민자유에 대한 연간조사 보고서인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를 발간하였고, 이후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 195개국과 14개 준주(Territory, 準州)를 대상으로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을 평가하였다. 조사대상 국가와 준주의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에 대해 각각 1~7등급을 부여하는데, 1등급은 가장 높은 자유권 수준이고 7등급은 가장 낮은 자유권 수준이다. 국가는 자유(Free), 부분 자유(Partly free) 그리고 자유롭지 않음(Not free)으로 분류된다. 분석은 개별 국가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6개 대륙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다. 자유권 수준은 전년과 비교분석한다.

점수는 10개의 참정권 문항의 체크리스트와 15개 시민권 문항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부여한다. 먼저 참정권의 영역은 3개 영역 즉, 선거과정(3개 질문문항), 다원주의 정치와 정치 참여(4개), 정부의 기능(3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정권의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다.<sup>14)</sup>

#### ① 선거과정

- 총리 또는 다른 국가 최고당국자는 자유롭게 또는 공정선거로 선출되는가?
- 입법부 대표는 자유롭게 또는 공정선거로 선출되는가?
-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공정한가?

#### ② 다원주의 정치와 정치참여

- 국민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정당 또는 경쟁적 정치집단을 구성할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나 집단의 형성과 해산이 개방되어 있는가?
- 선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반대 권력집단이 지지 세력을 높이거나 혹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

14) 김태홍 외(2012), pp.52-53. 재인용. Freedom House(2013),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Checklist Questions' in Freedom in the World 2012: the ARAB Uprisings and Their Global Repercussion.

- 군대, 외세의 통치, 전제주의적 정당, 과두제 또는 그 외 권력집단의 통치로부터 국민의 정치적 선택은 자유로운가?
-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다른 소수집단은 완전한 정치적 권리와 선거 기회를 가지는가?

### ③ 정부의 기능

-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총리 또는 입법대표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가?
- 정부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가?
- 정부는 선거기간에 유권자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거를 운용하는가?

### ④ 추가적인 참정권에 대한 질문

- 정당이나 선거과정이 없는 전통적 군주제 체제에 대해서, 국민과의 진지하고 의미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을 장려하고, 통치자에 대한 탄원권을 허용하는가?
- 정부 또는 지배세력은, 다른 집단에게 유리한 정치적 균형을 깨트리기 위해 문화를 파괴하고 임의로 국가의 인종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시민적 자유권 영역은 4개 영역 즉, 표현과 신념의 자유(4개 질문문항), 집회·결사의 권리(3개), 법규(4개), 개인적인 자유와 개인의 권리(4개)로 구성되어 있다. 참정권 지표 값 산정에 사용되는 참정권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다.<sup>15)</sup>

### ⑤ 표현과 신념의 자유

- 자유롭게 독립적인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가?
-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종교기관과 공동체는 그들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가?
- 학문의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교육제도가 정치적 세뇌로부터 자유로운가?
- 사적인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15) 김태홍 외(2012), pp.53-54, 재인용, Freedom House(2013),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Checklist Questions' in Freedom in the World 2012: the ARAB Uprisings and Their Global Repercussion.

⑥ 집회·결사의 권리

- 집회, 시위, 공개적인 공적토론이 자유로운가?
- 비정부기관 조직형성에 자유가 있는가?(시민단체, 이익집단, 재단 등)
- 자유노동조합과 농민조직이 있는가? 그리고 효과적인 단체교섭이 존재하는가? 자유롭게 전문기관과 민간단체의 조직이 가능한가?

⑦ 법규

-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는가?
- 민사 및 형사사건에 법의 지배가 적용되고 있는가?
- 체제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집단으로부터 정치적 테러, 불법적 감금, 추방, 고문에 대한 보호가 있는가? 전쟁이나 폭동에 관계없이 자유가 있는가?
- 법, 정치, 제도가 다양한 집단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가?

⑧ 개인적인 자유와 개인의 권리

- 여행, 거주지, 고용 혹은 고등교육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는가?
- 재산소유권, 민간기업을 설립할 권리가 있는가? 공무원, 공안당국, 정당 및 조직 혹은 범죄조직에 의해서 민간기업 활동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는가?
- 성평등, 배우자 선택, 가족규모 등에 관한 개인적인 사회적 자유가 있는가?
- 평등기회가 보장되며 경제적 착취가 없는가?

프리덤하우스의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보면 위와 같은 각 질문문항에 대해서 0~4점을 부여한다. 즉, 우수한 제도가 없으면 '0점', 일부 우수한 제도가 있으나 우수한 법이 없으면 '1점', 다수 우수한 제도가 있거나 혹은 많은 우수한 제도가 있으나 소수 우수한 법이 있으면 '2점', 많은 좋은 제도가 있거나 혹은 대부분 혹은 거의 모든 제도가 우수하고 다수의 좋은 법이 있으면 '3점', 대부분 혹은 모든 제도가 우수하고 그에 상응한 좋은 법이 있으면 '4점'을 부여한다. 즉, 4점은 권리와 자유가 가장 큰 경우 그리고 0점은 가장 적은 경우에 부여된다. 참정권 영역에는 이외에도 2개 임의적인 추가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참정권에 부여되는 가장 높은 점수는 40점이고, 시민자유권의 가장 높은 점수는 60점이다. 그러나

참정권의 첫 번째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1~4점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반면에,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1~4점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총점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에 부여된 총 점수는 참정권과 자유권의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각 질문문항에 대한 점수부여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참정권의 총점(Total scores)은 최고가 40점이 되는데, 이들 40점을 다시 구분하여 7등급(1등급 36-40점, 2등급 30-35점, 3등급 24-29점, 4등급 18-23점, 5등급 12-17점, 6등급 6-11점, 7등급 0-5점)으로 구성된 등급을 부여한다. 그리고 시민 자유권의 총점은 최고가 60점이 되는데, 이들 60점을 다시 구분하여 7등급(1등급 53-60점, 2등급 44-52점, 3등급 35-43점, 4등급 26-34점, 5등급 17-25점, 6등급 8-16점, 7등급 0-7점)으로 구성된 등급을 부여한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참정권과 시민 자유권의 등급(등급을 점수로 전환하여)을 산술평균하여 <표 II-1>과 같이 자유권 수준을 평가한다.<sup>16)</sup>

< 표 II-1 > 프리덤하우스의 국가별 자유권 평가방식

(Total scores)	국가의 인권상태
1.0 ~ 25점	자유(Free)
30 ~ 50점	부분자유(Partly Free)
5.5 ~ 7.0점	자유 없음(Not Free)

## (2) 언론의 자유

언론자유권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지수로는 프리덤하우스와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지표가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지표(Press Freedom Indicators)는 1980년부터 197개 국가에 대한 언론자유 분석보고서와 점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언론자유지표는 1980~2001년까지는 4개의 하위영역 즉, '미디어 콘텐츠에 영향을 주는 법과 규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통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영향' 그리고 억압적인 조치(언론인 살해와 신체적 폭행, 검

16) 1등급은 1점 그리고 7등급은 7점 등으로 전환함. Freedom House(2013), 'Methodology' in Freedom in the World 2013.

열 및 자기검열, 희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세 영역 즉, 법과 규제, 정치적 압력과 통제(언론인 폭력, 검열 등을 포함), 경제적 영향(미디어의 소유구조, 소유의 집중과 투명도, 미디어의 제작과 배포·설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기관 등에 의한 선택적 광고나 지원, 언론보도 내용 등과 관련한 부패와 뇌물)으로 구분하고, 전체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방법론적 질문항목(methodology question checklist)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언론자유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sup>17)</sup> 각 항목에 대한 점수부여는 6개 대륙의 지역 분석가, 자문 집단, 프리덤하우스 직원으로 구성된 회의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평가항목별로 설정된 점수를 합산하면 총점의 범주는 0(최상)~100점(최악)이 된다. 그리고 점수범주에 따라서 각 국가는 0~30점은 ‘언론자유(Free)’, 31~60점은 ‘부분적 언론자유(Partly Free)’ 그리고 61~100점은 ‘언론자유가 없음(Not Free)’으로 구분된다.

#### 다. 정치테러척도(PTS)

신체적 자유권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인권지수 중의 하나가 정치테러척도(Political Terror scale)이다. 정치테러척도는 1980년대 초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동료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준에 기초한(standards-based) 인권자료이다.<sup>18)</sup> 초기 정치테러척도는 1976~1983년 동안 59개 국가의 인권자료를 코딩하였다. 1984년 마크 기브니(Mark Gibney)가 정치테러척도의 관리책임자가 된 이후에 분석대상 국가를 180개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정치테러척도의 측정대상은 국가가 개인의 신체적 안전 권리(physical integrity rights)를 침해하는 것 즉, 고문, 실종, 사법외적 살인, 정치적 구금 등이다.

정치테러척도(PTS)는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과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고 코딩을 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동일한 범주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정치테러척도는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침해 정도 즉, 어느 정도 인구집단이 인권침해 대상인지를 측정한다. 그리고 정치테러척도는 두 명 이상의 평가자가 미국 국무부 연차 인권보고서와 국제사면위원회의 연차 인권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인권상황을 평가한다.

17) Freedom House(2013), Freedom of the Press 2013, pp.35-38.

18) Reed M. Wood, Mark Gibney(2010), p.369.

평가는 5단계로 된 척도를 기준으로 특정 연도에 국가가 경험한 정치적 침해 정도와 테러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5점 코딩제도(five point coding scheme)는 1980년 프리덤하우스에서 발간한 연차보고서(Yearbook)에 수록된 ‘정치테러척도(political terror scale)’에서 채택한 것이다. 5단계 정치적 테러지수의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sup>19)</sup>

- ① 1점(Level 1): 안전한 법치 국가로 국민은 그들의 견해(사상) 때문에 구금되지 않는다. 정치적 살인이 극히 드물다.
- ② 2점(Level 2): 비폭력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된 구금이 있다. 그러나 소수만 이에 영향을 받고, 고문과 매질이 드물고, 정치적 살인이 거의 없다.
- ③ 3점(Level 3): 상당한 정치적 감금이 있었거나 혹은 최근에 그러한 감금이 상당히 있다. 사형, 혹은 기타 정치적 살인, 야만적인 행위가 일상적이다. 정치적 견해로 인한 재판 혹은 재판 없이 무제한 구금이 있다.
- ④ 4점(Level 4): 시민 및 정치권의 침해가 상당수의 국민에게 확대되어 왔고, 살인, 실종 그리고 고문이 일상 생활화되어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일반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준에서 테러는 정치 혹은 이념에 관심 있는 집단에 더 큰 영향을 준다.
- ⑤ 5점(Level 5): 국가에 의한 테러가 전체 국민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사회지도자들이 개인적 혹은 이념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격년으로 세계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현황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는 5개 영역 즉,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치참여, 정치문화, 정부기능, 시민의 자유영역의 6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sup>20)</sup> 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60개

19) Reed M. Wood, Mark Gibney(2010), p.373.

20) 60개 세부 지표는 EIU(2013), Democracy Index 2010 - Democracy at a standstill, pp.29-39 참조.

지표는 이분(dichotomous 1-0 scoring system) 혹은 삼분(0, 0.5, 1) 척도를 혼합해서 지표 값을 산정한다. 그리고 각 영역의 지표 값은 하위 지표 값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민주주의 지수는 5개 영역 지표 값을 합산하여 0~10점 척도로 전환시켜서 사용한다.

하위지표의 측정은 전문가 평가와 함께 일반인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사용하는데 주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활용한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영역지표는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의 지표이고, 시민의 자유와 정부기능 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한다. 그리고 갤럽조사, 아시아 바로메타, 라틴아메리카 바로메타,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바로메타 조사결과 등도 활용한다. 조사결과가 없는 국가의 경우 유사한 국가의 조사결과나 전문가 평가를 대신해서 사용한다.

영역별로 하위지표 개수를 보면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1~12번 질문, 정부 기능 13~26번, 정치참여 27~35번, 민주적 정치문화 36~43번 그리고 시민자유 44~60번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지수 값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를 구분한다. 지표 값의 범주가 8.0~10.0점이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6.0~7.9점이면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4.0~5.9점 혼합체제(Hybrid regimes) 그리고 4.0점 미만이면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s)로 평가한다.

#### 마. 국경없는 기자회(RWB) 지수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또한 언론자유지수(The press freedom index)를 이용하여 언론자유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발표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동 지수를 이용하여 매년 179개국에 대한 언론자유 즉, 세계 각국의 기자, 언론기관 그리고 네티즌이 향유하는 언론자유 정도와 개별 국가의 동 권리에 대한 준수 노력을 측정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매년 국경없는 기자회의 협력기관(5개 대륙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18개 단체)과 전 세계의 150명의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와 인권운동가 등에게 관련 설문지를 발송,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설문지는 6개의 일반적인 기준 즉, 미디어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다원주의(pluralism: Plu), 미디어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미디어 독립(media independence: Mind), 저널리스트의 근무환경을 나타내는 환경과 자기검열(environment and self-censorship: Ena), 법률 구조(legislative framework: NLF), 뉴스와 정보생산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transparency: Tra), 뉴스와 정보생산을 지원하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 Fra)의 질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구성된 지표로 언론자유를 측정한다.<sup>21)</sup>

국경없는 기자회는 저널리스트에 대한 폭력과 침해 수준을 반영하는 0~100점 범위의 점수를 계산한다. 언론자유 지수 값은 설문지 결과를 기초로 먼저 식 (1)과 같이 산정한다. 그 다음은 식 (2)와 같이 저널리스트에 대한 폭력(Exa)점수를 첫 번째 산정한 점수에 산입하고<sup>22)</sup>, 동 점수에 대해서는 20% 가중치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식 (3)과 같이 첫 번째 산정한 점수와 두 번째 산정한 점수 중에서 큰 값을 지수 값으로 결정한다.

$$orA = \frac{1}{3} Plu + \frac{1}{6} (Mind + Ena + Cal) + \frac{1}{15} (Tra + Fra) \dots\dots\dots (1)$$

$$ScorB = \frac{1}{5} Exa + \frac{4}{15} Plu + \frac{2}{15} (Mind + Ena + Cal) + \frac{1}{15} (Tra + Fra) \dots\dots\dots (2)$$

$$Scor Fianl = \max (ScorA, ScorB) \dots\dots\dots (3)$$

대표적인 언론의 자유 지수는 앞에서 언급한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지수와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이다. 이들 양 지수를 비교하면 가장 주요한 차이는 먼저 양 지수는 언론자유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국가보다 무장군대, 비밀조직 혹은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언론자유 침해 집단에 보다 역점을 둔다. 프리덤하우스는 법적 제한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두는데 비해서,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인 공격에 대한 질문항목이 11개이고 최대 95점을 부여하는데 비해서, 프리덤하우스는 1개 항목에 최대 6점을 부여한다.

또한 조사방법이 서로 다르다. 프리덤하우스의 경우 법적, 정치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이 국경없는 기자회와 다른

21) Reporters Without Borders(2013), 2013 World Press Freedom Index - Methodology.

22) 폭력점수는 수감자 수, 미디어 공격 건수, 해당 국가를 떠난 사람 수, 체포 건수, 신체적 공격건수 등으로 산정함.

점이다.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조사방법에 따르면, 언론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여건에는 미디어의 소유구조, 소유의 집중과 투명도, 미디어의 제작과 배포·설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기관 등에 의한 선택적 광고나 지원, 언론보도 내용 등과 관련한 부패와 뇌물 등이 포함된다. 조사시점도 서로 다르다. 프리덤하우스는 발간 바로 직전연도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경없는 기자회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2011년 국경없는 기자회 지수는 2010년 12월 1일에서 2011년 11월 30일까지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바. 베텔스만재단(BTS) 전환지수

베텔스만재단의 전환지수는 128개 개발도상국 및 시장경제전환국가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정치경영의 품질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베텔스만재단은 라인하르트 모혼(Reinhard Mohn)이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7년 설립한 독일 재단이다. 전환지수는 분석대상 국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태를 측정하는 상태지수(Status Index), 거버넌스의 질을 나타내는 정치지도자의 정치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경영지수(Management Index)로 구분해서 각 국가를 평가한다.

상태지수를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정치적 전환과 시장경제 전환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적 전환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5개 부문 즉, 국가성(stateness), 정치참여, 법의 지배(Rule of Law),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 정치적·사회적 통합으로 구분되어 있다.<sup>23)</sup> 그리고 국가성 분야의 세부평가항목으로는 국가의 독점적인 권력 사용, 국가 정체성, 법률과 정치제도에 대한 종교교리 개입정도, 기본적인 행정구조가 있다. 정치참여 분야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대표집단의 효과적인 통치권, 집회·결사의 권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법의 지배 분야의 경우 삼권분리, 사법부 독립, 부패공직자 기소, 시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 분야는 제도의 성과, 제도 수용성으로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통합 분야는 정당체계, 이익집단, 민주적 규범과 절차에 대한 승인,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전환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7개 부문 즉, 사회경제적 발전 수

23) Sabine Donner, Hauke Hartmann, Matthias Jäger(2012), Transformation Index of the Bertelsmann Stiftung 2012 - Codebook for Country Assessments, Bertelsmann Stiftung, pp.14-45.

준, 시장조직, 통화 및 물가안정성, 사유재산보호, 복지제도, 경제성과 그리고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분야의 세부평가항목으로는 빈곤 및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장벽, 시장에 기반을 둔 경쟁, 반독점정책, 국제무역 자유화, 금융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통화 및 물가안정성 분야의 경우 인플레이션 방지,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성, 재산권, 민간기업의 허용과 보호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제도 분야는 사회안전망, 기회평등, 그리고 경제성과분야에서는 경제의 성과창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환경정책, 교육정책과 연구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지수의 경우 경영성표를 평가하기 위한 5개 부문은 경영에 대한 제약 정도(3개 세부평가 항목), 운영능력(3개), 자원 효율성(3개), 합의 형성(5개), 국제협력(3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베텔스만재단의 전환지수 중에서 인권지표와 관련된 평가항목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집회·결사의 권리, 표현의 자유, 사법부 독립, 시민권, 기회평등이다. 각 지표의 지표 값 산정방법은 해당 지표의 질문항목에 대한 정량적인 등급(numerical rating)을 부여하는데, 점수 등급은 0점(최악)부터 10점(최상) 범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항목의 응답은 10-7-4-1의 4개 점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 지표의 응답항목과 해당 점수를 살펴보면, 참정권 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련 지표항목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면 10점,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가 개최되고 국회 의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 혹은 미디어 접근 등의 측면에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있으면 '7점', 그리고 선거가 개최되나 투표과정과 개표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하면 '4점', 마지막으로 전국 차원의 선거를 개최하지 않으면 '1점'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 지표 항목을 보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 아래에서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전혀 제약하지 않으면 10점, 언론자유를 부분적으로 제약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금지하지 않으면 '7점', 그리고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받으며 심한 개입으로 인해서 공개토론이 쉽게 왜곡 혹은 조작되면 '4점',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가 부정되며 독립적인 매스컴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금지되면 '1점'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 사.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미국변호사협회 주도로 2006년에 출범한 비영리기구이다. 동 기구는 각국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법의 지배 지수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지수를 산정한다. 법의 지배 지수는 9개의 기본요소(factors) 즉, 제한된 정부권력, 부패의 부재(absence of corruption), 질서와 안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열린 정부, 정부규제의 집행, 민사사법의 정의, 형사사법의 정의, 관습법적 정의(informal Justice)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각 기본요소는 다시 3~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sup>24)</sup>

법의 지배 지수의 산정방법은 먼저 5가지 유형의 조사 즉,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GPP), 민법 및 상법, 형사사법, 노동법, 그리고 보건 분야 법학자,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 대상 조사(QRQ)를 실시한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항목별로 수치를 코딩하고, 응답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국가별 점수를 생산한다.<sup>25)</sup>

조사항목의 응답항목은 2~5개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10점 척도, 100분위를 6개 범주로 구분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생산된 점수는 정규화(Normalize)하고, 9개 영역 및 48개 하위요소별로 정규화 된 점수를 단순 평균한 뒤에 국가별 최종 지수 값과 국가별 순위를 산정한다.<sup>26)</sup> 요소별 지표 값과 지수 값은 (연속 값으로) 0.0~1.0점 범주에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법치 준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sup>27)</sup>

WJP 법의 지배 지수의 지표체계는 상당수의 인권지표를 담고 있다. 즉, 기본

24) M. D. Agrast, J. C. Botero, J. Martinez, A. Ponce, C. S. Pratt(2013), Rule of Law Index 2012 - 2013, The World Justice Project, p.11.

25)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인천에 거주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나이스조사컨설팅(Nice Research and Consulting, Inc.)에서 온라인으로 조사하며 표본은 1,000명임. The World Justice Project(2013),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2-2013, p.147.

26) 1차적으로 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반인 조사와 전문가조사 결과를 각각 5:5로 반영하여 산정함. J. C. Botero, A. Ponce(2010), Measuring the Rule of Law, The World Justice Project, pp.17-22.

27) J. C. Botero, A. Ponce(2010), Appendix B: Questionnaires, Expert's Questionnaire - Civil and Commercial Law, Expert's Questionnaire - Constitutional Law, Civil Liberties' and Criminal Law 등 참조.

권영역에 평등권, 생명 및 안전권, 공정재판권,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기본적인 노동권이 있다. 그리고 열린 정부영역에는 정부에 대한 권리청원 및 공직참여권이 있다. 사생활 권리는 법적 권한 없이 시민 혹은 반정부인사에 대한 불법 전화 혹은 통신 정도, 영장 없이 반정부인사에 대한 구금 혹은 가택수색 정도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 아. 제도적 특성(IPD) 지수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와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caisede Developpement)이 2001년 각국의 제도와 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서 비교대상 국가인 선진국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를 구축하였다. 제도적 특성 지수는 2001년에 생산된 이후에 2006년 이후부터 매 3년마다(즉 2006년, 2009년, 2012년) 생산되었다. 제도적 특성 지수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국가의 제도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는데, IPD 조사는 2001년에 처음 실행되었고 51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두 번째 조사가 실시되었고 대상국가도 85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2012년 조사는 3월에 조사표를 발송하였다. 응답결과를 점검한 이후 피드백 받을 내용을 동년 9월에 응답자에게 다시 발송하였고, 11월말에 최종 확인된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동 지수는 143개 국가의 130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sup>28)</sup> 130개 지표는 광범위한 제도적 특성을 나타내는 330개 변수(variables)로부터 도출하였고, 제도는 9개 기능(function) 즉, ‘정치제도’, ‘안전 및 법과 질서 그리고 폭력통제’, ‘행정기능’, ‘자유로운 시장운영’, ‘이해당사자 조정과 전략적 비전 및 혁신’, ‘안전한 거래와 계약’, ‘시장규제와 사회적 대화’, ‘대외 개방’, ‘사회통

28) 지표, 변수 그리고 분석대상 국가는 2001년 각각 96개, 238개, 51개국, 2006년 각각 96개, 238개, 85개국, 2009년 각각 133개, 367개, 123개국, 그리고 2012년 각각 130개, 330개, 143개국임. 130개 지표는 제도 상황(저량지표; stock indicators)와 제도 변화(유량지표; flow indicators)와 관련된 지표로 구성됨. 저량 및 유량변수의 세부적인 항목은 P. Berthelier, A. Desdoigts, J. Ould-Aoudia(2003), Institutional Profiles: Presentation and Analysis of Original Data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in Transition and Developed Countries, Working document, Economic Analysis and Forecasting Directorate, p.5. pp.50-51. <부표 3> 참조.

합과 사회이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제도별로 자료를 4개 범주(sector) 즉, 공공기관과 시민사회(Public institutions, Civil society), 재화와 서비스 시장(Markets for goods and services), 자본시장(Capital market) 그리고 노동시장과 사회적 관계(Labour market and social relation)로 구분하였다.<sup>29)</sup>

제도적 특성 관련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점수는 현상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a phenomenon)와 관련된 질문항목일 경우 1~4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제도 유무(제도가 없으면 '0')와 제도의 실행 정도(실행정도가 낮으면 '1' 그리고 상당히 높으면 '4')에 따라서 0~4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조사응답자의 주관성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문항을 세분하여 가능하면 객관적인 항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의 편의(偏倚)를 줄이기 위해서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와 다른 제도 지표 즉, 세계은행, 프레저 재단(Fraser Institute), 프리덤하우스, 헤리티지재단, 국경없는 기자회 등에서 생산하는 지표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특성 지수(IPD)의 지표는 카우프만(D. Kaufmann)이 생산한 4개의 거버넌스지표와 상당히 유사하다. 카우프만은 거버넌스 개념을 6개의 기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정권이 수립, 통제 그리고 교체되는 절차(시민참여와 책무성; Voice and Accountability), 불법적 수단에 의한 정부의 와해 가능성(정치안정과 폭력부재;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능력(정부효율성; Government Effectiveness),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정도(규제의 질; Regulatory Quality), 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기관에 대한 시민과 정부의 존중(법의 원칙; Rule of Law), 부패 수준(부패 통제; Control of Corruption)이다.

제도적 특성 지수(IPD)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 중에서 상당수는 인권지표이다. 이들 인권지표는 모두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부문에 속하는데 이들 지표를 자세히 보면, 먼저 정치제도에서 '합법적이며 자유로운 선거',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민과 정부 관계에서 법의 준수', '소수자 존중', '미디어자유'이다. 행정기능에서는 '사법부 독립' 그리고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에서는 '시민에 대한 정부의 평등처우'이다.<sup>30)</sup>

29) P. Berthelier, A. Desdoigts, J. Ould-Aoudia(2004), p.2.

30) IPD 2012 - List of indicators(<http://www.cepii.fr/institutions/EN/ipd.asp>) 참조.

## 자. 국제거버넌스지수(WGI)

국제거버넌스지수는 1990년대 후반에 카우프만과 크레이(D. Kaufmann, A. Kraay)가 수행한 세계은행 연구부의 연구프로그램 일환으로 개발되었다.<sup>31)</sup> 동 연구는 거버넌스를 측정하고, 국가발전을 모니터링하며 그리고 발전을 위해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와 결과를 이해함과 동시에 성공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동 지수는 1996년 이후부터 자료 수집과 함께 30개 기관에서 생산하는 33개 데이터 공급원을 기초로 200개 국가 이상의 거버넌스(quality of governance)를 측정하여 왔다. 33개 데이터 공급원은 기업, 시민에 대한 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32)</sup>

국제거버넌스지수에서는 거버넌스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인 영역을 6개의 총합지표(aggregate indicators)로 나타낸다. 6개의 총합지표는 시민이 정부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 표현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미디어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민참여와 책무성(Voice and Accountability), 국내 폭력과 테러를 포함해서 반헌법적 혹은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가 와해될 가능성을 측정하는 정치안정과 폭력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능력, 공공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정도 등을 측정하는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민간부문 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양질의 정책과 규제 수립 및 실행능력을 측정하는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사회의 규칙을 신뢰하고 준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법의 원칙(Rule of Law),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이다.<sup>33)</sup>

국제거버넌스지수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자료들을 6개 총합적인 거버넌스지표로 통합하였다. 통합은 비관측요인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이라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기법의 전제는 개별적인 통계 각각은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내제된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불완전

31) D. Kaufmann, A. Kraay 이 외에 P. Zoido-Lobatón, M. Mastruzzi의 도움이 있어서 동 지표를 통상 'KK', 'KKZ' 혹은 'KKM' 지수라고도 함.

32) The World Bank(2007), A Decade of Measuring the Quality of Governance - Governance Matters 2007, p.1에, 33개 데이터공급원(Data Source)은 p.17에 수록되어 있음.

33) The World Bank(2007), pp.2-3.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관측요인모형은 여러 가지 자료공급원을 최적으로 결합하여 특정한 국가의 거버넌스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sup>34)</sup> 국가거버넌스지수 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지표로는 법의 원칙(Rule of Law)이 있다.

### 자. 경제사회권권한이니셔티브(ESREI)

경제사회권권한이니셔티브(Economic and Social Rights Empowerment Initiative)는 코네티컷대학의 사키코(Sakiko Fukuda-Parr)와 테라(Terra Lawson-Remer), 수잔(Susan Randolph)에 의해서 창시된 조직으로 미국사회과학협의회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조직이 개발한 경제사회권 이행지수(Social and Economic Rights Fulfillment Index: SERF)는 경제사회권 이행 성과를 국가별로 측정하기 위해서 국내 및 국제관련 기구에 의해서 발간하는 객관적인 조사중심의 자료를 사용한다. 경제사회권이행지수는 핵심적인 경제 및 사회권에 대한 지표 값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지수이다. 동 지수는 성취가능프로티어(Achievement Possibility Frontiers: APFs)를 구축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권리의 개별적인 향유보다 국가의 의무에 초점을 두고 최대 가용자원의 제약 아래에서 인권의 점진적 실현을 파악하였다.

경제사회권 이행지수는 5가지 영역 즉,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적절한 주거권, 양질의 노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권리는 보편적이지만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국가의 권리 향유수준의 범주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지표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 지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단일한 지표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중위 및 하위 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별로 각각 별도의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위 및 하위 소득국가의 핵심권리 지표를 보면 식량권의 경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5세 이하 아동비율, 교육권은 초등학교 졸업률과 중등학교 평균 조취 학률, 건강권은 5세미만 아동 생존율, 65세 이상 생존율, 피임기구(약) 사용률, 적

34) 총합적 거버넌스지표로 통합하는 방법(Aggregation procedure)은 먼저 각 데이터를 비교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별지표의 척도를 재조정하고, 재조정된 데이터들을 가중 평균하여 총합적인 거버넌스 지표를 산출함. 이때 각 데이터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비관측요인모형에 의해서 생산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할당함.

정한 주거 권리는 개선된 수원(water source)에 대한 농촌인구의 접근 비율,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그리고 양질의 노동권에서는 1일 \$2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2005년 PPP기준) 즉, 빈곤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고소득국가의 영역별 핵심권리 지표를 보면 식량권은 저체중 영아 비율(%), 교육권은 과학, 수학 PISA 평균점수, 중등학교 평균 조취학률, 건강권은 5세미만 아동 생존율, 65세 이상 생존율, 그리고 양질의 노동권에서는 평균소득의 50% 미만을 가진 인구비율, 단기 실업자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사회권이행지수 산정을 위해서 먼저 개별 지표에 대한 성취 가능한 프론티어 수준 즉, 국가의 목표의무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특정한 지표의 성취 가능한 프론티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0~2006년 동안 세계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관찰된 지표 값을 그래프로 만들면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 이후 관찰된 최저 수준도 지표 값마다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0'에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권이행지수의 지표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 값의 범위를 표준화시켜야 한다.

권리의 이행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은 프론티어 수준이 처음 정점(peak)에 도달해서 그 이후 안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론티어 수준이 처음으로 최댓값에 도달했을 때의 최저 1인당 국민소득( )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Y_p$ 를 초과하면 페널티를 포함하여 지표 값을 조정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정된 성과지표 값을 단순 평균하여 특정한 권리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복합지수인 사회경제권이행지수는 각 영역의 실제적 권리지표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다.

## 2. 우리나라와 주요국 인권수준 비교분석

### 가. 2000년 이전 인권수준 비교

인권지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권수준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보면 개별 권리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인권 전체, 자유권 혹은 사회권을 측정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권수준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1999년 이전 전체 인권, 자유권 혹은 사회권을 측정하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인권 수준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휴메너 인권지수 수준을 보면 휴메너는 1986년 유엔협약과 국제규약을 기초로 자유(Freedom)를 판단할 수 있는 40개 지표를 구축하여, 각국의 인권수준을 측정하였다. 휴메너는 지수 값 산정을 위해서 지표별 평가점수는 0~3점을 부여하였는데 해당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 혹은 보장이 이루어지면 '3점' 그리고 자유, 권리에 대한 존중 혹은 보장이 상시적으로 침해되면 '0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동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개별 권리별로 지표 값을 보면 강제 및 아동노동, 사법외적 처형 혹은 실종, 강제 정당 혹은 조직가입, 강제적인 종교 및 이념 강요, 예술에 대한 통제, 종교 활동 등은 '3점'으로 해당 권리가 완전히 존중 혹은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평화적인 회합 및 집회, 사형제도, 불법구금, 우편 혹은 전화검열, 공개 및 즉석 재판 등은 '0점'이었다. 그리고 휴메너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권지수 값은 1986년 기준 59.3점으로 세계 99개 국가 중에서 이집트, 싱가포르와 함께 42위를 기록하였다. 인권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었다.

유엔개발기구(UNDP)의 1991년 인간개발보고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자유가 없이는 인간개발이 불완전하다고 했다.<sup>3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개발지수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자유권에 관련된 지표를 포함시키고자 했다. 유엔개발기구는 자유를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 즉, 불법적인 구금 등과 같은 소극적인 자유(negative freedom)와 어떤 것을 하는 자유 즉, 노동조합 결정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자유(positive freedom)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유엔개발기구는 휴메너의 40개 지표를 기준으로

35) UNDP(1991), 「1991 Human Development Report」, p.18.

인권수준을 평가하였다. 지표 평가는 보호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1', 침해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0'을 부여하여, 국가별 인권순위를 매겼다.

유엔개발기구가 인간자유지수(HFI)의 점수를 40점 만점으로 하여 각국의 인권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35점(100점으로 환산하면 87.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로는 스웨덴(38점), 덴마크(38점), 네덜란드(37점), 핀란드(36점), 뉴질랜드(36점), 오스트리아(36점), 노르웨이(35점), 프랑스(35점)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33점, 일본 32점을 받았고, 중국은 2점이었다. 우리나라는 14점(100점 환산 35점)으로 2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굽타(K. Gupta)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하여 휴메너 지표별 가중치를 재조정하여 복합지수를 만들었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휴메너 지표 영역을 생명권, 참정권, 시민권으로 구분하였다. 굽타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은 영역은 생명권, 시민권, 참정권 순이었으나, 세 영역의 가중치는 30%대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굽타가 개발한 인권지수로 각국의 인권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권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었는데, 특히 시민권이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1위였다. 그러나 참정권은 4위, 생명권은 20위로 다소 낮았다. 미국 다음으로 인권순위가 높은 나라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벨기에 순이었다. 참정권 순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국가는 호주였고, 생명권은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의 다수의 나라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분석대상 104개국 중에서 73위였고, 인권영역별 순위를 보면 생명권이 61위, 참정권이 84위 그리고 시민권이 75위였다. 즉, 1991년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보면 영역별로 참정권의 인권수준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시민권 그리고 생명권 순이었다.

## 나. 2000년 이후 인권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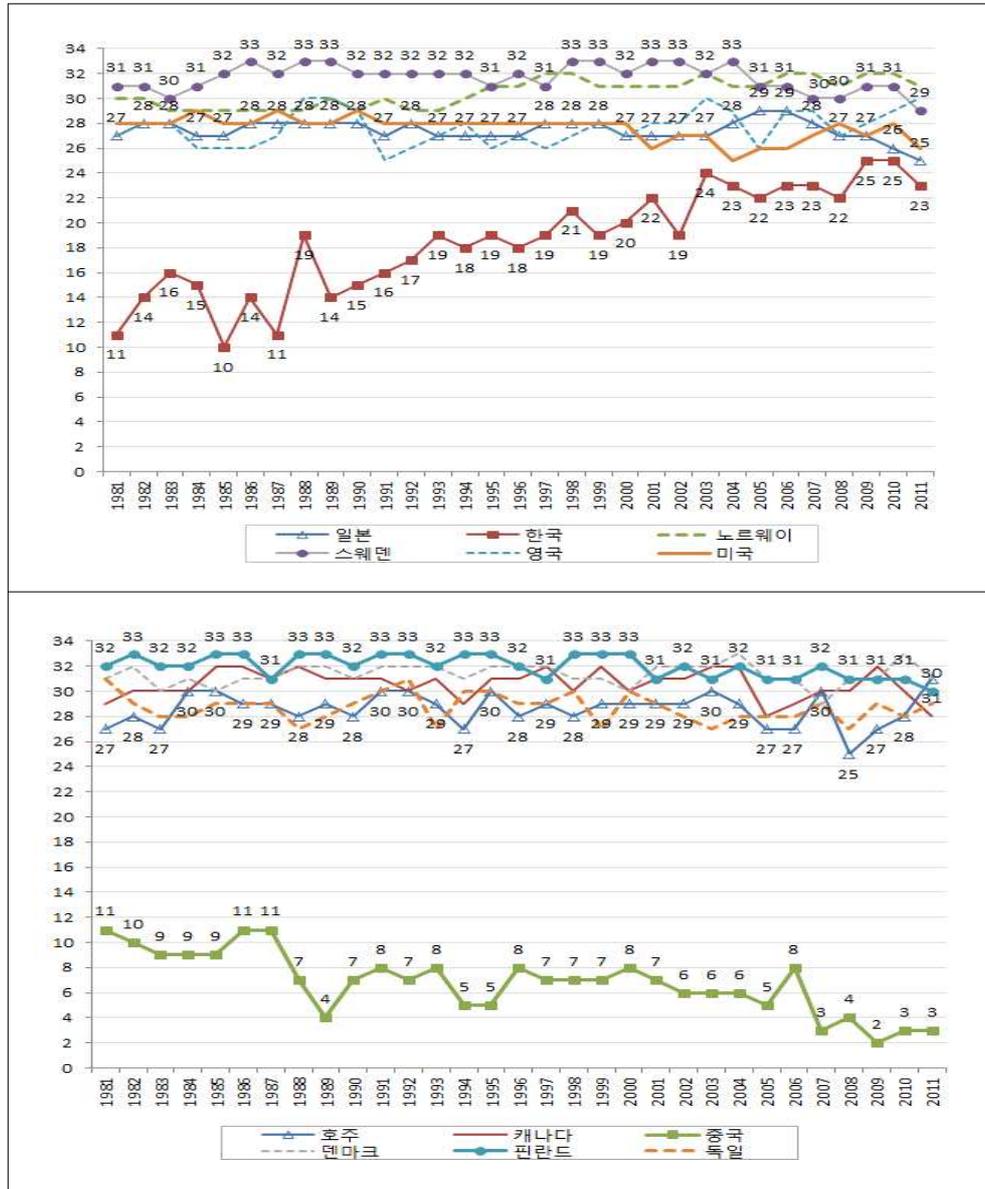
### 1) 시민정치권

2000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인권수준을 분석한 연구도 전체 인권보다는 주로 자유권 혹은 사회권 수준을 측정을 통한 국제비교분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 중에서 먼저 싱그라넬리 리차드(Cingranelli- Richards; CIR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권수준 분석결과

를 살펴보았다. 동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권지수는 영역을 크게 신체적 존엄성, 권한 관련 권리, 사법부 독립, 여성 정치·경제·사회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지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영역을 통합하는 단일한 인권에 대한 복합지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에서 한계가 있지만 각 영역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복합지수를 산정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살펴보았다.

싱그라넬리 리차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가장 최근 연도 자료인 2010년을 기준으로 인권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먼저 신체적 존엄권, 권한 관련 권리, 여성의 정치·경제·사회권,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인권지표를 단순평균한 인권지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 이후 연도별 등락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이를 보였다. 즉, 동 자료에서 개별 인권이 모두 존중되면 33점인데, 우리나라는 1981년 11점(100점으로 환산하면 33점)부터 장기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여서 1990년 15점(45점), 2000년 20점(61점) 그리고 2010년에는 25점(76점), 2011년 23점(69.7점)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1981년에 이미 동 지수 값이 31점(94점)이었고, 이후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 1990년, 2000년대에 32점(97점), 33점(100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는 2010년 31점(94점), 2011년 29점(87.9점) 등으로 약간 하락하였다. 노르웨이는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에는 29점(88점)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30~32점(91~97점)으로 상승하였다. 일본, 영국, 미국은 1981년 이후 대체로 20점대 후반(80점대)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국은 1981년 11점(33점)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초반 6~7점(18~21점) 그리고 후반에는 2~4점(6~12점)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주: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지표 값은 33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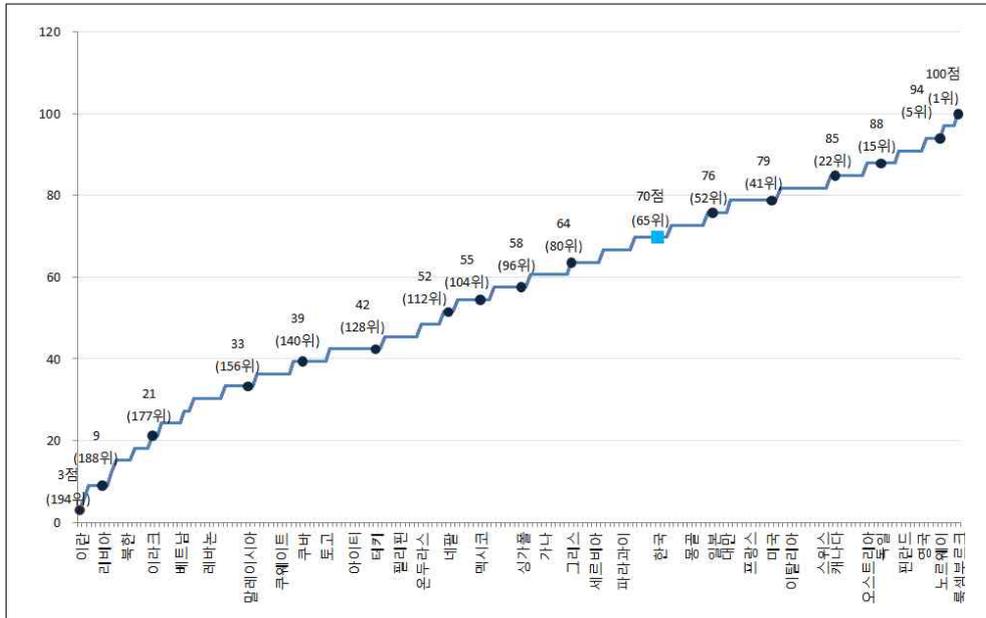
[ II-1] 주요국의 CIRI 자유권 지표 값 변화 추이

싱그라넬리 리차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권 지표 값의 순위를 보면 2011년 기준 분석대상 19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동티모르, 코모로, 헝가리 등 7개국과

함께 65위를 차지하였다.

지표 값이 33점(100점 환산 100점)으로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서 국제순위가 1위였고, 그 다음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산마리노가 32점(97.0점)으로 공동 2위,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31점(93.9점)으로 공동 5위였다. 영국과 핀란드,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등 6개국은 30점(90.9점)으로 9위였다. 지표 값 수준이 낮은 국가집단을 보면 이란이 194위, 그 다음은 중국, 버마,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 6개 국가가 188위였다. 이 외에도 북한, 콩고, 이집트, 시리아가 공동 183위 등으로 지표 값 수준이 낮았다.

(단위: 점,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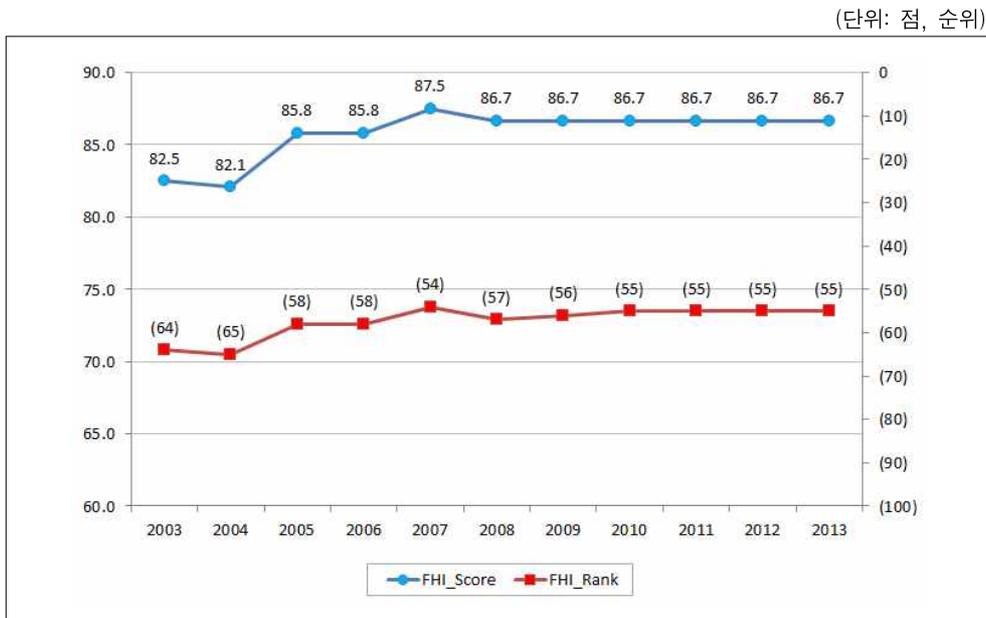


[ II-2 ] CIRI 자유권 지표 값의 국가별 순위(2011년)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을 모두 포괄하는 시민·정치적 권리를 나타내는 지수를 측정하여 매년 분석, 발표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에 대한 지수 값을 각각 산정함과 동시에, 자유권 수준은 참정권과 시민자유권 지수 값을 동일한 척도로 조정한 뒤에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정권의 점수 범위 0~40점과 시민자유권 0~60

점을 각각 0~100점으로 환산한 이후에, 두 지수의 정규화된 점수 값을 산술평균 하여 0~100점 범주를 가지는 자유권 지수 값을 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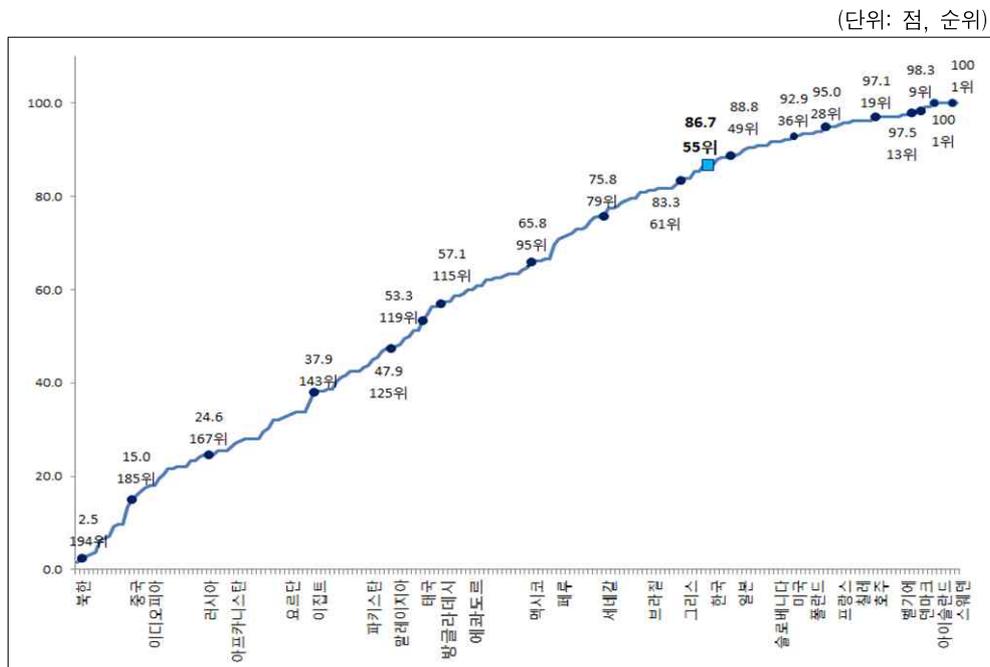
이러한 자유권 지수 값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과 국제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II-3]과 같이 2013년 지표 값은 86.7점으로 분석대상 195개국 중에서 55위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권 지수 값 추이를 보면 2003~2007년 동안에는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를 보면 지수 값이 2008년에 86.7점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13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 자유권 수준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3년 195개 국가 중 64위에서 2007년 54위로 계속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55위로 정체상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프리덤하우스 자유권 지수와 앞에서 분석한 자유권과 여성 정치·경제·사회권을 포괄한 싱그라넬리 리차드 지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수 수준의 국제순위가 각각 51위, 55위로서 거의 비슷하였다.



[ II-3]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 자유권 수준과 국제순위

프리덤하우스 인권지수를 국가별로 보면 [그림 II-4]에서와 같이 지수 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웨덴 6

개국으로 지수 값이 100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지수 값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바베이도스(Barbados) 99.2점, 덴마크와 캐나다 98.3점, 리히텐슈타인 97.9점, 영국과 벨기에 97.5점이었다. 그리고 프랑스 28위(95점), 미국 36위(92.9점), 일본 49위(89.2점)이고, 멕시코 95위(65.8점), 터키 102위(62.5점), 필리핀 100위(63.3점), 방글라데시 115위(57.1점), 태국 119위(53.3점), 중국 183위(15.0점), 북한 194위(2.5점) 등이었고, 소말리아는 195위(1.7점)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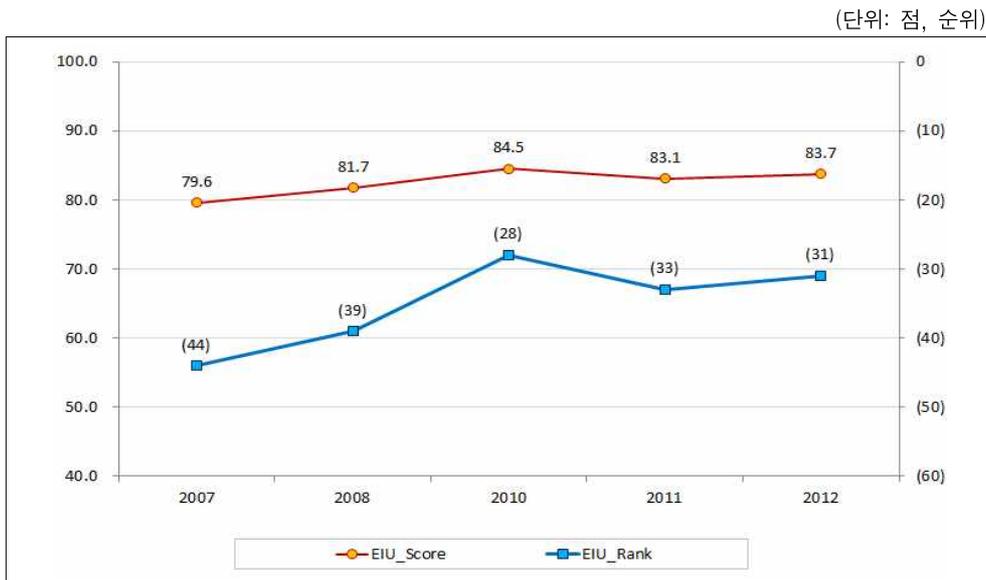
[ II-4] 프리덤하우스 자유권 지표 값의 국가별 순위(2013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 발표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는 크게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치참여, 정치문화, 정부기능, 시민자유권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이러한 다섯 영역의 지표 값을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다.

EIU는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지표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 12개 조사항목, 정치참여 9개 항목, 정치문화 8개 항목 그리고 정부기능과 관련해서는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시민권은 17개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조사항목을 보면 미디어 자유, 출판자유, 표현의 자유,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개적이며 자유로운 토의,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정치적 제약, 전문직 조직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기회 제공, 정부의 고문자행, 사법부 독립, 종교적 표현 자유, 법 앞의 평등, 기본적인 안전 향유, 사적 재산권 보호, 개인적인 자유,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비율, 인종·피부·신념에 기초한 차별 정도, 시민자유 구속을 위한 구실로 한 새로운 정부의 위협 정도이다. 이와 같이 EIU 지표의 질문항목은 대부분의 시민자유권을 포함하고 있으나, 응답항목은 ‘높다(high)’, ‘적정하다’ 그리고 ‘낮다’로 되어 있고 각 항목별 지표 값은 0, 0.5,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정권에 해당하는 선거절차 다원주의와 정치 참여, 정부기능 영역의 지표 값을 단순 평균하여 참정권 지수 값을 구하고, 이와 같은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을 단순 평균하여 자유권을 산정하였다. EIU 지표 값을 기준으로 자유권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그림 II-5]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유권 수준은 100점 만점에 83.7점으로 전체 분석대상 167개 국가 중에서 그리스와 함께 공동 31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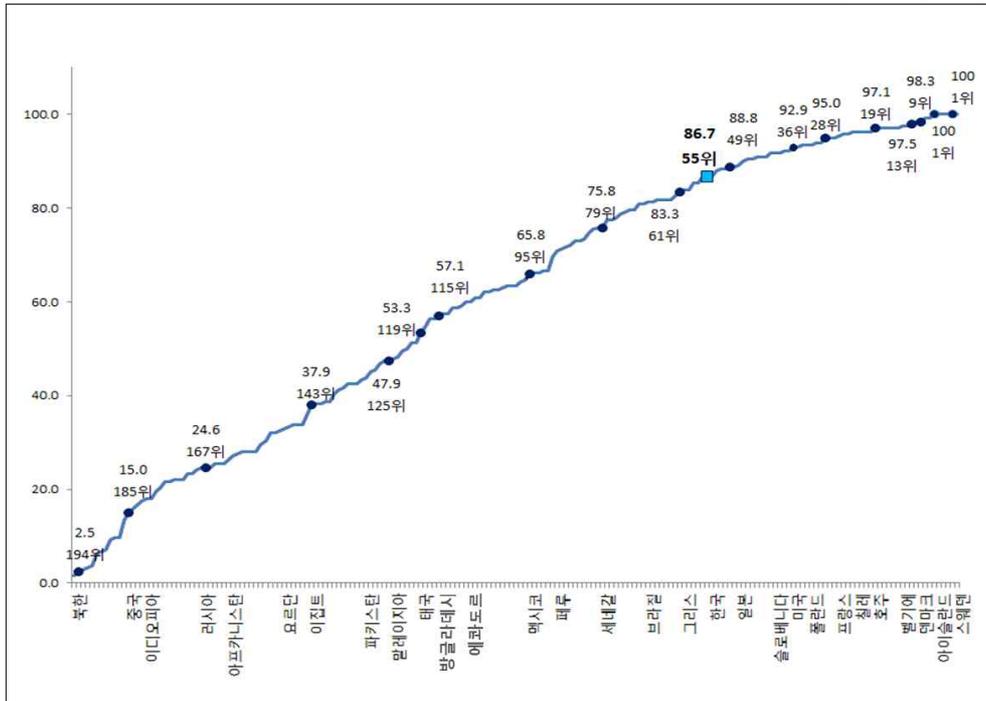


[ II-5] 우리나라 EIU 자유권 수준과 국제순위

연도별로 보면 EIU 지수에서 우리나라 자유권 수준은 2007년 79.6점에서 2010년 84.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1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83.1점 그리고 2012년에는 83.7점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국제순위를 보면 2007년 44위에서 2010년 크게 상승하여 28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국제순위가 33위로 하락하였고, 2012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167개 국가 중에서 31위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자유권 수준은 100점 만점에 83.7점으로 전체 분석대상 167개 국가 중에서 31위를 차지하였다. 자유권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99.4점이었고, 그 다음은 스웨덴(97.8점), 뉴질랜드(97.0점), 덴마크(96.1점) 순이었다. 독일은 86.4점으로 17위, 일본 86.2점으로 18위, 벨기에 86.0점 19위, 미국 82.5점 35위, 프랑스 81.6점으로 39위 등이었다. 자유권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시리아로 5.2점으로 167위이었고, 그 다음은 북한으로 7.0점, 사우디아라비아 14.0점으로 161위, 이란 18.2점 153위 등이었다.

(단위: 점,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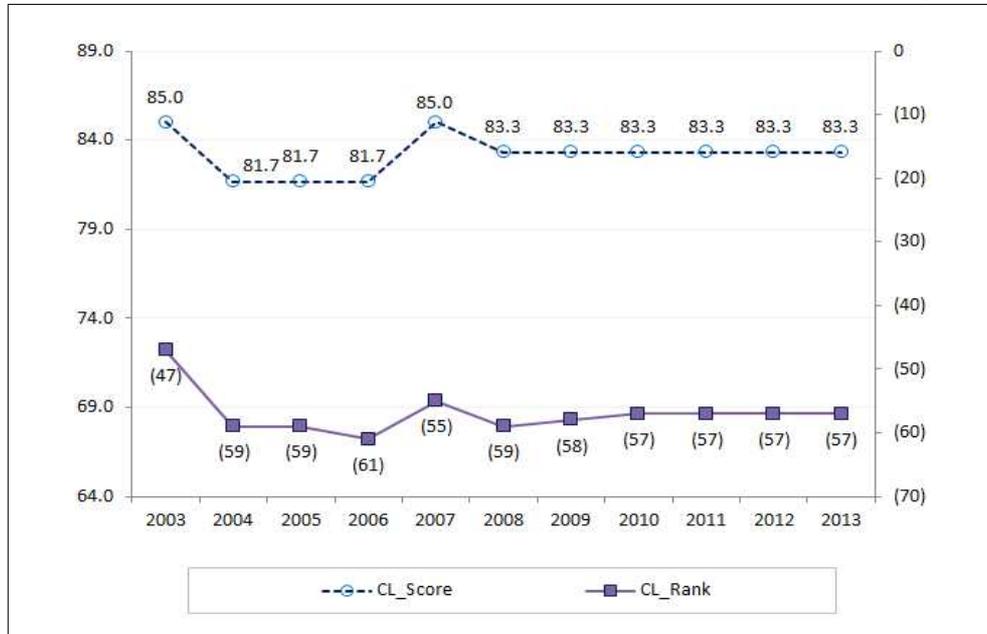


[ II-6] EIU 자유권 지표 값의 국가별 순위(2012년)

## (2) 시민권(Civil Liberty)

프리덤하우스 인권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민권 수준을 보면 지표 값이 2003년 85.0점에서 2004년 81.7점으로 하락한 이후 2006년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 다시 85.0점으로 상승한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83.3점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 시민·자유권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003년에는 195개국 중에서 47위였다. 그러나 이후 순위가 다소 하락하여 2004~05년 59위, 2006년 61위로 하락하였다. 2007년을 기점으로 순위가 53위로 다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57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단위: 점, 순위)



[ II-7]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 시민권 지표 및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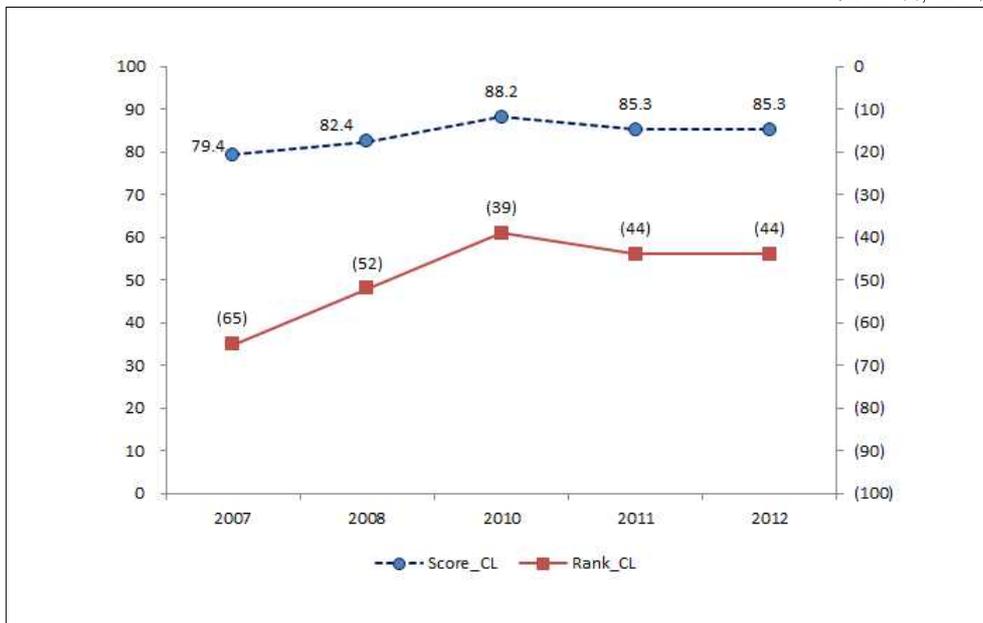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 측정된 우리나라 시민권 관련 인권수준을 보면 2007년 지표 값이 79.4점이었으나, 이후 2008년 82.4점, 2010년 88.2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다시 하락하여 2011년, 2012년 모두 85.3점이었다. 시민권 수준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7년 167개 국가 중에서 65위이었으나, 이후 크게 상승하여 2008년 52위, 2009년 39위였다. 2011년에는 순위가 다소 하락하여 44위

였고, 2012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요 국가의 시민권 현황을 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7개국의 지표 값이 100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아이슬란드, 핀란드, 몰타, 그리스 등 7개국(97.1점), 네덜란드, 일본, 대만, 스페인, 칠레 등 14개국(94.1점)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지표 값이 85.3점으로 남아프리카, 미국, 프랑스, 이태리, 우루과이 등과 함께 44위를 기록하였다. 북한은 동 지표 값이 0점으로 시리아와 함께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시민권 수준을 이러한 EIU 지표와 프리덤하우스 지표로 비교하면 지표 값은 프리덤하우스의 90점에 비해서 다소 낮으나, EIU 지표의 우리나라 국제순위는 40위 내외로 57위 내외로 측정된 프리덤하우스 지표에 비해서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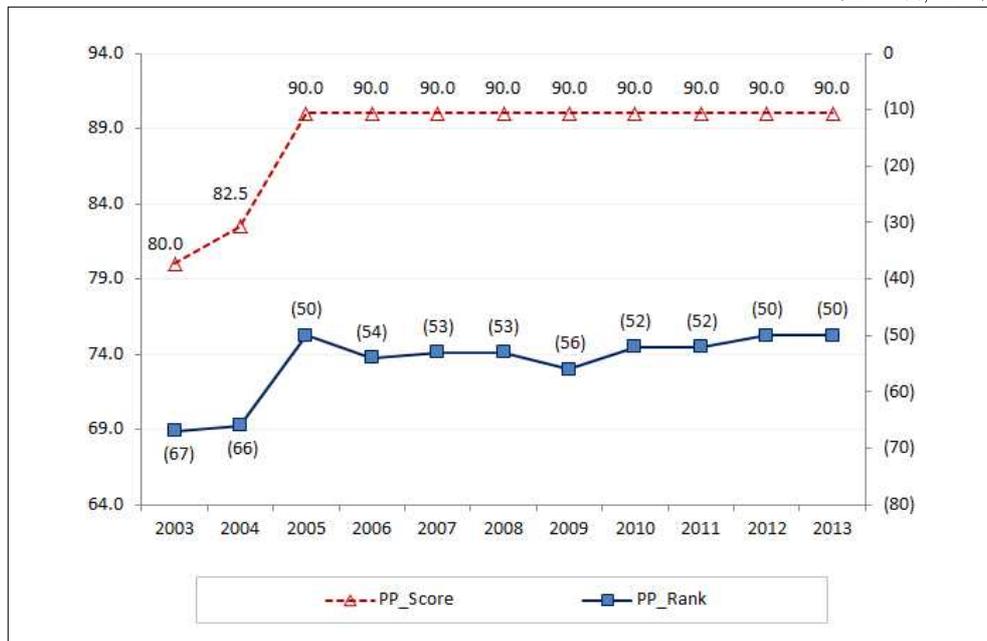
[ II-8] 우리나라 EIU 시민권 지표 값 및 순위 추이

### (3) 참정권

#### ① 참정권

프리덤하우스의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참정권 지표는 선거과정, 다원정치 및 선거참여, 정부의 기능이라는 세부지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참정권 지표를 백분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의 참정권 수준을 보면 [그림 II-9]와 같다. 즉, 2003년 우리나라 참정권 수준은 100점 만점에 80.0점이었다. 이후 2005년 90.0점으로 상승한 이후, 동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참정권 수준이 195개국 중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보면 2003년 67위이었으나 이후 다소 상승하여 2004년 59위, 2005년 50위가 되었다. 2006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순위가 등락을 보이며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2년, 2013년에는 2005년 수준인 50위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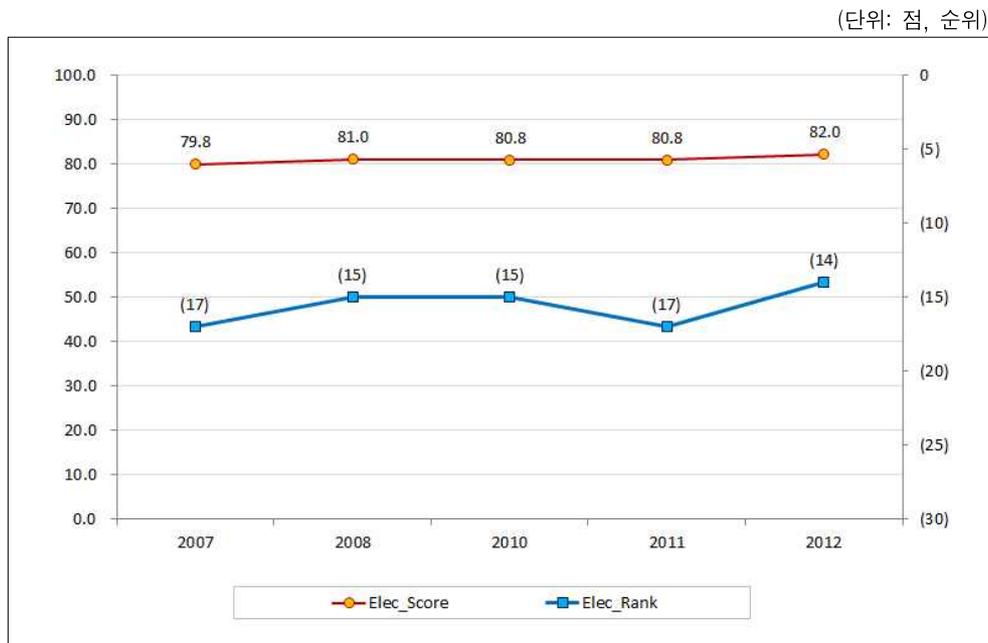
(단위: 점, 순위)



[ II-9] 우리나라의 프리덤하우스 참정권 지표 및 순위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 참정권과 관련된 지표로는 다원주의 및 선거절차, 정치참여 그리고 정부기능이 있다. 복합지수인 EIU 민주주의 지수를 산정하는 방

식과 동일하게 참정권관련 세부 지표 값을 단순 평균하여 측정한 우리나라 참정권 수준을 보면 2007년 지표 값이 79.8점이었으나, 2008년 소폭 증가하여 81점이었다. 그 이후 다시 소폭 하락하여 2010년, 2011년 각각 80.8점이었으나, 2012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82.0점이었다. 우리나라 참정권 수준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7년 167개 국가 중에서 17위로 상당히 높았다. 그 이후 우리나라 참정권 국제 순위는 소폭 상승하여 2008년, 2009년 각각 15위 그리고 2012년에는 14위이었다.



[ II-10] 우리나라 EIU 참정권 지표 값 및 순위 추이

② 선거과정과 정치참여

인권 및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다양한 복합지수에서 선거권과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고 있는 즉,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투표권의 지표 산정방법의 경우 투표권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면 (100점 환산) 0점, 제한적인 투표권이 보장되면 50점,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면 100점이다. 이와 같은 CIRI 투표권 지표 값을 보면 우리나라는 1987년까지는 50점이었으나, 이후 1990년과 1992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100점을 나타내었다.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에서 참정권관련 세부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표 II-2>에서와 같이 다원정치 및 정치참여 지표 값이 가장 높아서 93.8점이다. 동 점수는 2006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지수는 선거과정, 정부의 기능 순으로 각각 91.7점, 83.3점이었다. 동 지표의 점수 값도 2006년 이후 변화가 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참정권 하위지표의 국가순위를 보면 2013년 다원정치 및 정치참여 지표는 195개국 중에서 32위, 선거과정 지표는 59위, 그리고 정부기능은 35위였다.

선거과정 지표가 최하위(195위, 0점)인 국가는 북한, 중국 등을 포함하여 16개국이었다고, 최상위(1위, 100점)인 국가는 호주, 미국, 독일 등을 포함하여 58개국이었다. 다원정치 및 선거참여 지표는 북한, 중국, 시리아 등을 포함하여 8개국이 0점으로 최하위이고, 상위(1위, 100점)인 국가는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하여 31개국이었다. 정부기능 지표는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함하여 9개국이 0점이고, 상위(1위, 100점)인 국가는 벨기에, 영국, 칠레 등을 포함하여 20개국이었다.<sup>36)</sup>

< II-2>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의 참정권 세부 지표

			다원정치, 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06	91.7	63	93.8	29	83.3	34
2007	91.7	60	93.8	30	83.3	35
2008	91.7	62	93.8	29	83.3	38
2009	91.7	62	93.8	30	83.3	38
2010	91.7	62	93.8	30	83.3	39
2011	91.7	62	93.8	32	83.3	37
2012	91.7	60	93.8	31	83.3	37
2013	91.7	59	93.8	32	83.3	35

EIU 민주주의 지수의 참정권 하위 지표는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기능이다. 참정권 하위지표 수준을 자세히 보면 <표 II-3>과 같았다. 먼저 선

36) 중국은 174위로 16.7점이었음.

거절차 및 다원주의 지표 값은 2007년 95.8점이었으나, 2010년 91.7점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수준은 전 세계 167개국 중에서 2007년 10위였으나, 2010년에는 39위로 하락하였다. 국가별로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관련 인권수준을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 기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호주 등 8개국이 가장 높았고, 지표 값은 100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관련 인권수준이 높은 국가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등 30개국으로 공동 9위를 기록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헝가리 등 16개 국가와 함께 91.7점으로 38위를 기록하였다. 동 인권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해당 지표 값이 0점인 북한을 비롯한 18개 국가였다.

< II-3> 우리나라 EIU의 참정권 세부 지표

	및 다원주의		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07	95.8	10	72.2	17	71.0	38
2008	95.8	10	72.2	17	75.0	31
2010	91.7	39	72.2	14	79.0	22
2011	91.7	39	72.2	13	79.0	21
2012	91.7	38	72.2	13	82.0	14

주: 2007년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지표 값과 국제순위의 경우 노르웨이를 포함해서 9개국이 10점이었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를 포함 28개국이 9.58점으로 공동 10위였음.

EIU의 측정한 정치참여(PP)와 관련된 자유권 수준을 보면 2007년 72.2점이었는데, 이후 동 지표 값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동 지표 관련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007년 167개 국가 중에서 17위였는데, 이후 국제순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2012년에는 13위를 나타내었다. 국가별로 정치참여 관련 인권수준을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 기준으로 노르웨이가 단독으로 지표 값 10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스웨덴 94.4점 그리고 덴마크, 뉴질랜드 등 4개국이 88.9점이었다. 우리나라는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남아프리카 등 8개국과 함께 지표 값이 72.2점으로 167개 국가 중에서 13위를 차지하였다. 북한은 동 지표 값이 16.7점으로 미얀마와 함께 161위를 차지하였다.

정부기능과 관련된 인권수준을 보면 2007년 지표 값이 71.0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75.0점, 2011년 79.0점 그리고 2012년 82.0점이었다. 이와 같은 지표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동 지표 관련 인권수준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7년 167개국 중에서 38위에서 2010년 22위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1위, 14위로 상승하였다. 국가별로 정부기능관련 인권수준을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 지표 값 96.4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뉴질랜드, 스위스 등 4개국(92.9점), 호주, 네덜란드 등 3개국(8.93점)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 남아프리카 등 8개국과 지표 값 82.1점으로 14위를 차지하였다. 북한은 동 지표 값이 25.0점으로 135위를 차지하였고, 차드와 기니가 0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 지표 중에서 참정권 지표 값을 보면, 선거자기결정(Freedom of elections)의 경우 우리나라 지표 값은 100점이었고, 분석대상 143개 국가 중에서 77개국이 완전히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보면 지표 값이 100점인 국가는 덴마크,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77개이었다. 이에 비해 이집트는 75점(78위), 짐바브웨 25점(125위) 그리고 베트남은 0점으로 거의 자유로운 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선거과정 지표 값의 경우 우리나라는 75점으로 47위를 기록하였다. 다른 나라를 보면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은 100점(1위)이었다. 가나는 우리나라와 지표 값이 같은 75점인 반면에, 미국, 자메이카, 멕시코 등은 50점으로 143개 국가 중에서 74위를 기록하였다. 짐바브웨는 25점(109위) 그리고 중국과 코트디부아르는 0점으로 동 지표 값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했다.

제도적 특성 지수(IPD)의 영역별 지표 값은 세부 지표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한다.<sup>37)</sup> 이에 따라 선거 자유와 공정한 선거과정 변수 값을 단순 평균하여 세부 지표 선거과정 지표 값으로 산정하면 우리나라 지표 값은 2012년 88점이 되고, 국제순위는 143개 국가 중에서 42위가 된다.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가나, 페루, 파나마 등을 포함한 16개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42위를 기록하였다. 선거과정 지표 값 순위가 1위인 국가군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뉴

37) 지표 코드 A100은 변수 코드 A1000~A1003의 지표 값을 단순 평균하여 산정함. IPD 2012 - Composition of indicators 참조.

질랜드, 영국 등 41개 국가로서 지표 값이 100점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 다음으로 지표 값 수준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 국가집단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II-4> 우리나라 IPD의 참정권 세부 지표

	선거의 자유		공정한 선거과정		국가명	선거의 자유		공정한 선거과정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덴마크	100	1	100	1	인도	100	1	50	74
오스트리아	100	1	100	1	브라질	100	1	50	74
핀란드	100	1	100	1	루마니아	100	1	25	109
프랑스	100	1	100	1	튀니지	75	78	50	74
독일	100	1	100	1	이집트	75	78	25	109
영국	100	1	100	1	잠비아	50	109	100	1
스웨덴	100	1	100	1	쿠바	50	109	75	47
일본	100	1	100	1	아프가니스탄	50	109	25	109
인도네시아	100	1	75	47	이란	50	109	25	109
터키	100	1	75	47	러시아	50	109	25	109
미국	100	1	50	74	짐바브웨	25	125	25	109
멕시코	100	1	50	74	중앙아프리카	25	125	25	109
한국	100	1	75	47	베트남	0	132	100	1

베텔스만재단(BTI) 전환지수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전히 구축된 국가는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동 지수에서 참정권관련 지표를 보면 <표 II-5>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정선거의 경우 지표 값이 100점으로 대만, 우루과이, 칠레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1위를 나타내었다. 정치참여 수준은 88점으로 128개국 중에서 19위였다.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정치참여 순위가 높은 국가는 대만, 우루과이, 칠레, 인도 등이었고, 북한과 에리트리아는 순위가 가장 낮았다.

## &lt; II-5&gt; 우리나라 BTI의 참정권 세부 지표

	공정선거		정치참여		국가명	공정선거		정치참여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대만	100	1	100	1	인도네시아	90	12	75	40
우루과이	100	1	100	1	멕시코	80	31	73	47
칠레	100	1	95	9	러시아	60	63	53	76
인도	90	12	95	9	태국	60	63	45	80
아르헨티나	90	12	88	19	말레이시아	50	81	43	87
남아프리카	80	31	83	30	중국	10	121	18	119
터키	80	31	78	37	북한	10	121	10	126
한국	100	1	88	19	에리트리아	10	121	10	126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법의 지배 지수의 세부지표인 정부에 대한 권리청원과 시민참여 권리를 보면 우리나라의 권리수준은 2012년 지표 값이 66점으로 분석대상 97개 국가 중에서 18위를 차지하였다.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권리청원과 공식참여 권리 수준을 보면 네덜란드(100점)가 동 권리를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스웨덴(96점), 일본(88점), 프랑스(87점) 순이었다. 미국, 뉴질랜드, 영국(각각 78점), 독일(72점)도 동 지표 값이 높은 국가에 속했다. 이태리와 멕시코(각각 47점)는 동 지표 값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짐바브웨(21점)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중국(23점), 몽고(25점)도 상당히 낮아서, 분석대상 97개국 중에서 각각 96위, 95위를 기록했다.

## (4) 생명권 및 신체적 자유

정치테러척도(Political Terror Scale)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적 자유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다. 동 지수에 의한 우리나라 신체적 자유권 정도를 보면 [그림 II-11]와 같이 5점 척도를 배분비로 전환한 지표 값은 2012년 87.5점이었다.<sup>38)</sup>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2년 50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에는 87.5점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체적 자유권 수준은 2007년부터 다시

38) 미국 국무부 연차 인권보고서와 국제사면위원회의 연차 인권보고서를 기초로 각각 측정한 인권지표 값을 단순 평균한 자료를 사용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7년 75.0점, 2009년 62.5점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은 다시 급증하여 각각 100점이 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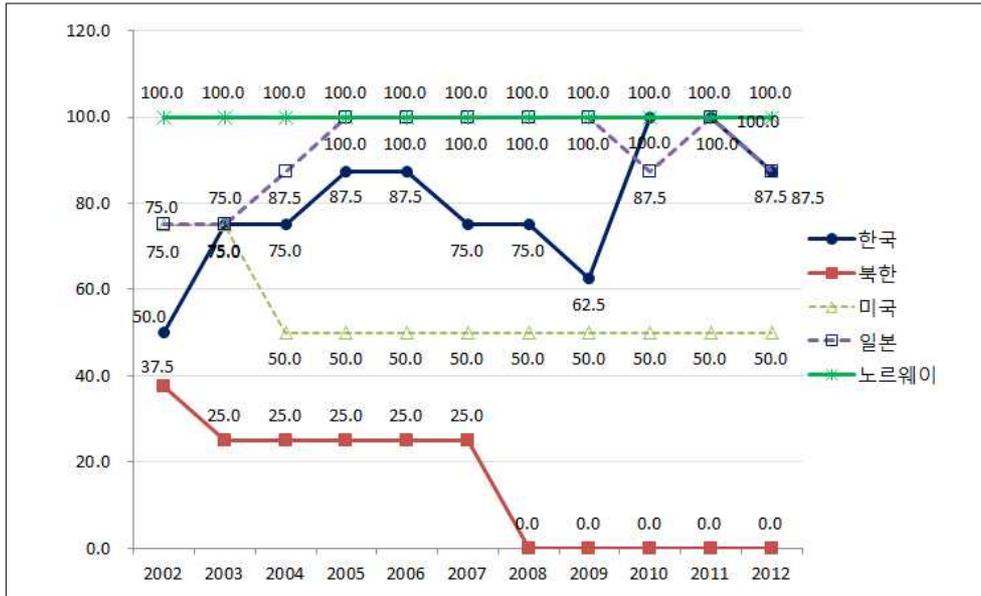
앞에서 싱그라넬리 리차드 데이터베이스의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 추이와 비교하면 CIRI의 경우 1980~1996년 동안에는 지표 값이 일시적으로 특정 연도에 크게 상승 혹은 하락한 적은 있으나, 대체로 50점을 유지하였다. 동 기간 중에 존엄권 지표 값이 크게 상승한 시기는 1984년, 1998년이었고, 하락한 시기는 1987년이었다. 비교가 가능한 시기를 보면 CIRI 지표 값의 경우 2009년 지표 값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PTS는 2009년 하락하였고 오히려 201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CIRI과 PTS의 측정방법, 시기 등에 기인한다. 예컨대 PTS의 2012년 지표 값은 2011년 말~2012년 말 인권현황을 평가하는 반면에, CIRI은 2011년도 현황을 평가한 것이다.<sup>39)</sup>

정치테러척도의 경우 주요 국가의 신체적 자유 정도를 보면 먼저 북한은 2002년 37.5점이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3~2007년 25.0점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0점이었다. 미국은 2002~2003년에는 지표 값이 7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004년 50.0점으로 하락한 이후, 이와 같은 수준을 2011년까지 유지하여 우리나라보다 신체적 자유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2년 75점에서 2005년 100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뒤, 2010년을 제외하고 2011년까지 100점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2012년에는 87.5점으로 하락하였다.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100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신체적 자유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12년 동안 정치테러척도의 지표 값이 지속적으로 100점을 유지한 국가로는 노르웨이 이외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였다.

39) CIRI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 산정방식 즉, 실종, 사법외적 살인, 정치적 구금, 고문으로 구성된 하위지표 값을 합산하는 방식에 기인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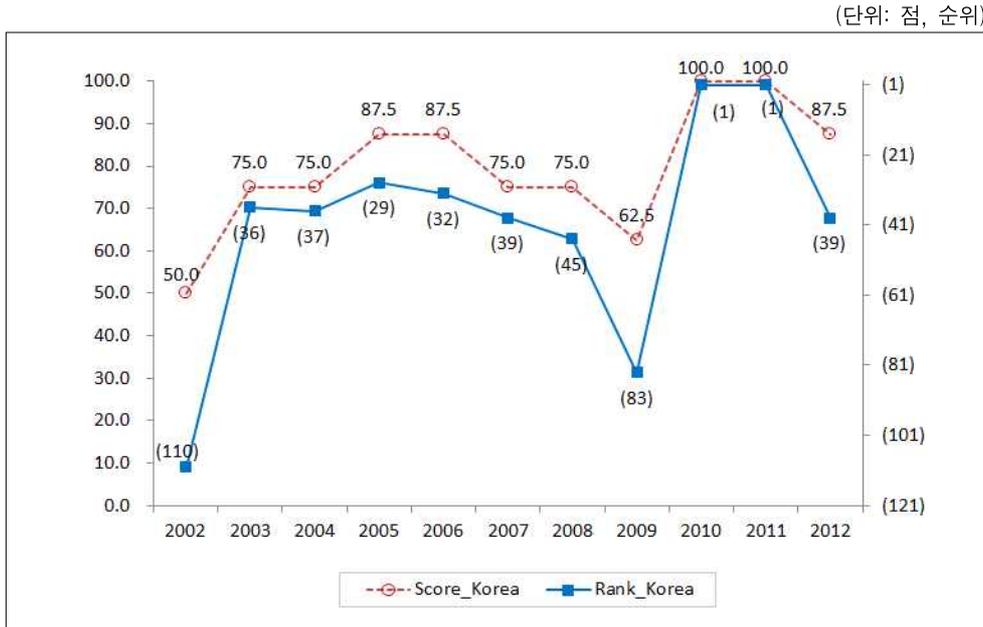
(단위: 점)



[ II-11] 주요국의 PTS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 추이

우리나라의 정치테러척도 값의 국제적 순위를 보면 [그림 II-11]에서와 같이 2002년에는 멕시코, 필리핀 등 35개 국가와 함께 189개국 중에서 110위(지표 값 50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지표 값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독일, 일본 등 48개국과 함께 36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등 49개국이 37위,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벨기에, 독일 등 14개 국가와 함께 29위를 차지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지표 값의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적 순위도 하락하여, 2006년 벨기에, 스위스 등 12개국이 32위, 2007년 스위스, 이태리 등 32개 국가와 함께 39위, 2008년에는 스위스, 영국 등 38개 국가와 함께 45위 그리고 2009년에는 이태리, 그리스 등 23개 국가와 함께 83위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테러척도 전환 지표 값이 100점으로 상승함에 따라 핀란드, 노르웨이 등 31개 국가와 함께 189개 국가 중에서 신체적 자유 정도가 1위로 상승하였다. 2011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이 유지되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2개 국가와 함께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다시 지표 값이 87.5점으로 하락하였고, 국제순위도 39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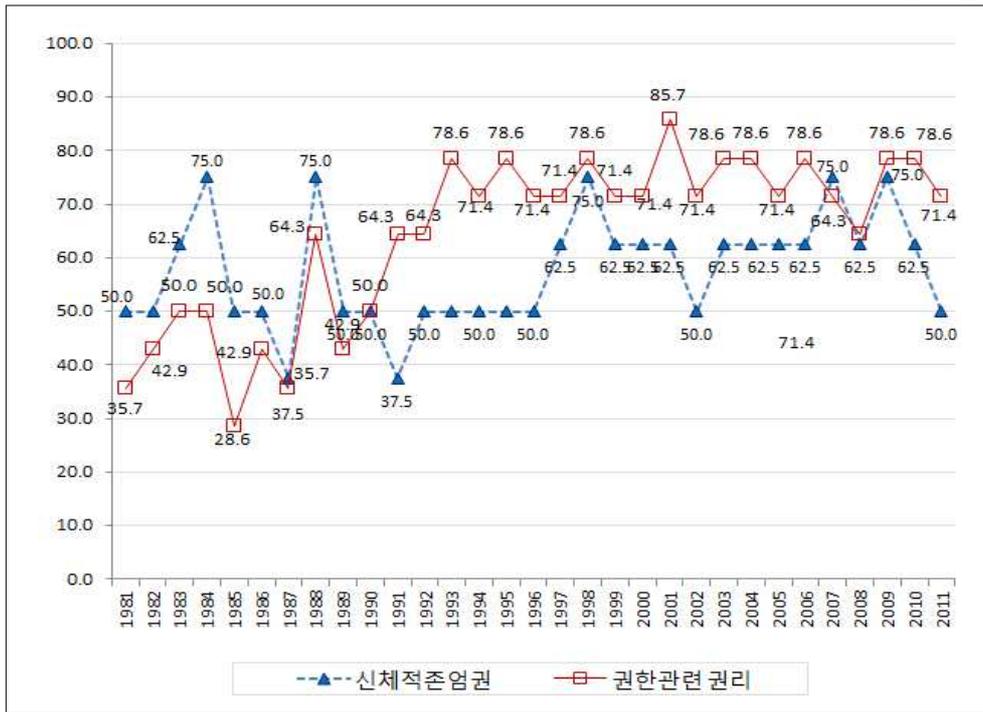


[ II-12] 연도별 우리나라 PTS의 신체적 존엄권 변환 지표 추이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의 우리나라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을 보면 1980~1996년 동안에는 지표 값이 일시적으로 특정 연도에 크게 상승 혹은 하락한 적은 있으나, 대체로 50점을 유지하였다. 동 기간 중에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이 크게 상승한 시기는 1984년, 1998년이었고, 하락한 시기는 1987년이였다. 1984년 지표 값 상승은 정치적 감금, 고문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증가한 데 기인하였고, 1987년의 지표 값 하락은 실종자 수와 사법외적 처형건수가 증가한 데 기인했다.

신체적 존엄권을 구성하는 세부지표를 보면 먼저 실종지표의 경우 우리나라는 1981년 이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법외적 살인지표는 1983년, 1986~1987년, 1991년 등 특정한 연도에 일정수의 살인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살인은 없었다. 정치적 감금지표의 경우 1983~1984년, 1988년, 1998년에 일부 감금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금이 없었다. 고문지표는 2000년대 후반을 제외하면 대체로 상당수 혹은 일부 감금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단위: 점)



[ II-13] 연도별 우리나라 CIRI의 신체적 존엄권 지표 추이

WJP 법의 지배 지수를 구성하는 생명 및 안전권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명권 지표 값은 83점으로 분석대상 97개 국가 중에서 24위를 기록하였다. 생명권 및 안전권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100점)였고, 그 다음은 핀란드(99점), 스웨덴(97점), 노르웨이와 덴마크(각각 96점) 순이었다. 그리고 네덜란드(94점), 뉴질랜드(92점), 독일(89점), 영국(86점), 이태리(85점)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일본, 프랑스는 동 지표 값이 각각 79점이었고, 미국도 76점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은 46점으로 73위를 기록하였고, 이란이 19점으로 최하위였다.



[ II-14] 주요국 WJP의 생명 및 안전권 지표(2012-2013년)

(5) 법의 지배(Rule of Law)

① 법의 지배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지수에서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사법부 독립, 민사 및 형사사건의 법의 지배 적용, 법 및 제도가 다양한 집단에 대한 동등 처우 보장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기초한 법의 지배 지표 값을 보면 우리나라 수준은 2013년 81.3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75.0점에서 2007년 81.3점으로 소폭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81.3점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6년 비교대상 195개 국가 중에서 56위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는 45위로 상승하였다. 2008년에는 다시 44위로 한 계단 상승하였는데, 이후 2009년 45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44위를 기록하였다.

프리덤하우스 지수에 의하면 2013년 법의 지배 지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7개 국가로 100점이었고, 그리고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등 29개 국가가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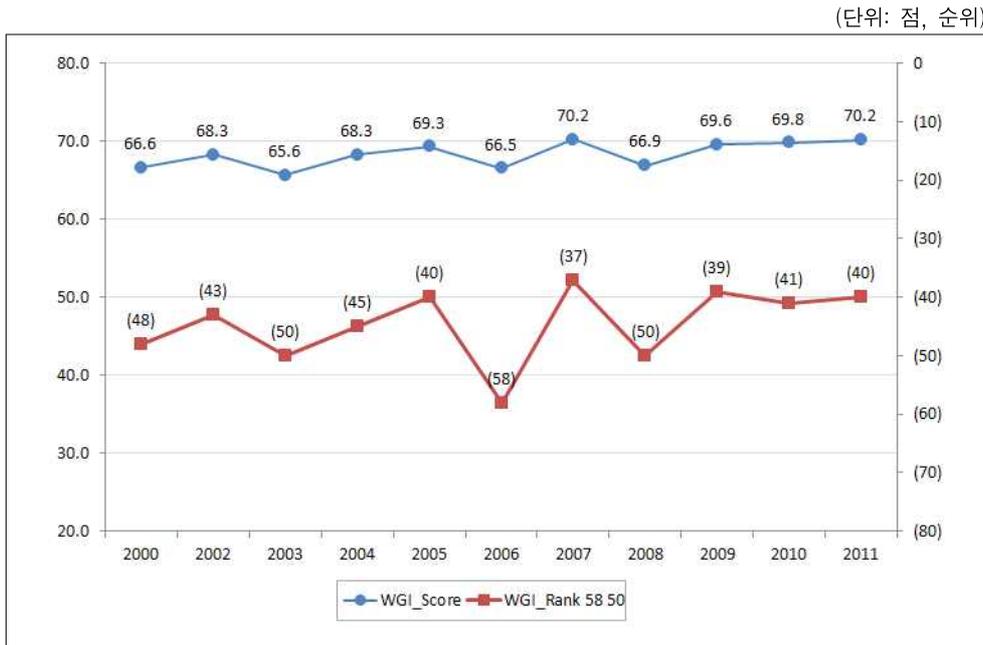
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미국, 스페인, 대만, 체코 등 7개 국가의 지표 값은 87.5 점이었다. 이 외에도 이태리는 75점(47위), 그리스 62.5점(68위), 터키 43.8점(92위), 중국 12.5점(163위) 그리고 북한은 0점으로 콩고, 수단 등 8개국과 함께 179위를 기록하였다.

세계은행 연구부의 연구프로그램 일환으로 카우프만과 크레이(D. Kaufmann, A. Kraay)가 개발한 국가거버넌스지수(WGI) 중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지표로는 법의 지배가 있다. 법의 지배 지표 값을 100점으로 전환시켜서, 우리나라의 법의 지배 지표 수준을 보면 [그림 II-15]와 같았다. 우리나라 지표 값은 연도별로 등락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국제순위를 보면 2011년에 214개 국가 중에서 40위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2006년 그리고 2008년에 국제순위가 50~58위로 가장 낮았다.

주요국 법의 지배 지표 값을 보면 핀란드는 88점대, 스웨덴 87점대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국가 중의 하나였다. 영국은 83점 전후로 대체로 13위, 미국은 80점 전후로 18위 정도였다. 일본은 75점 전후로 우리나라보다 지표 값 수준이 높았고, 국제순위도 20위권 후반이었다. 포르투갈은 2000년에 73.4점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2000년대 전반에는 우리나라보다 법의 지배 지표 값이 더 높았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거의 같아졌다. 그리스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와 지표 값 수준이 비슷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70위권으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북한은 2000년 32.8점으로 국제순위가 148위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지표 값이 하락하여 2011년 24.0점으로 국제순위가 200위로 하락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40.4점(127위)이었던 지표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011년 41.4점으로 125위였다. 법의 지배 지표 값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는 소말리아는 지표 값이 10점미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국제순위도 210위권을 계속 유지하였다.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전환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법의 지배 지표 값을 보면 2012년 85.0점으로 분석대상 128개 국가 중에서 불가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와 함께 10위를 기록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 85.0점(12위)에서 연도별로 등락을 보여 2008년 82.5점(14위), 그리고 2010년 87.5점(11위), 2012년 85.0점이었다.



[ II-15] 우리나라 WGI의 법의 지배 지표 값 추이

②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

먼저 싱그라넬리 리차드 데이터베이스(CIRI Database)에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지표가 있다.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 수준을 살펴보면 1981년부터 2003년 동안에는 두 개 연도를 제외하고 모두 변환된 지표 값이 50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완전한 사법부 독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표 값이 100점으로 상승되었다.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 제도적 특성 지수(IPD)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관련하여 먼저 사법부 독립 지표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지표 값이 2012년 75점(29위)이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영국 등 27개국이 100점으로 지표 값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와 지표 값이 동일한 국가로는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미국 등이었다. 이집트, 도미니카, 헝가리, 러시아 등의 지표 값은 50점(56위),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25점(111위) 그리고 중국, 쿠바, 모로코 등은 0점으로 사법부 독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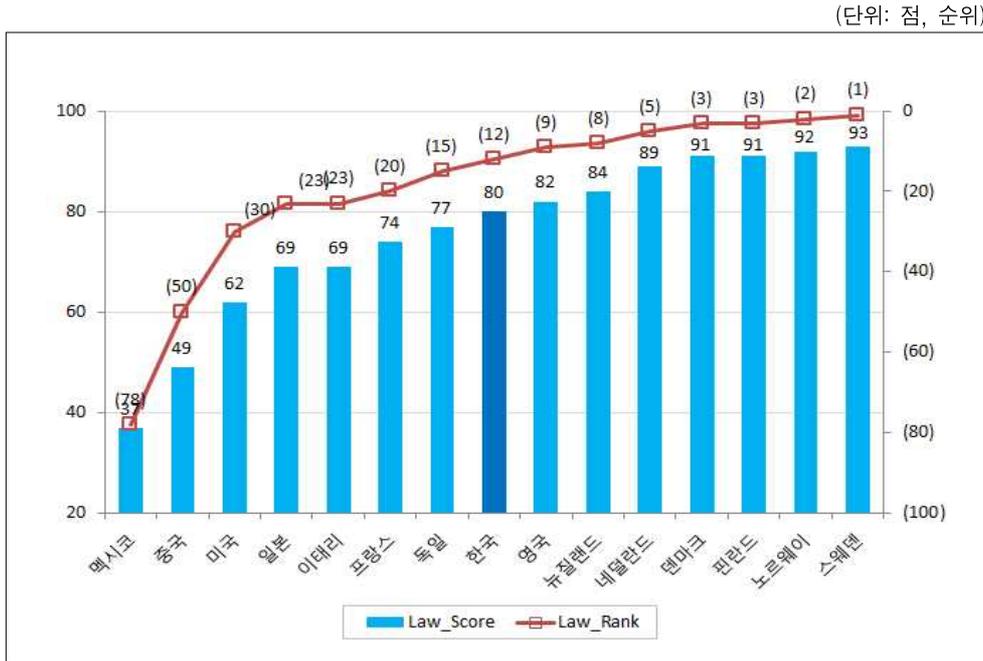
## &lt; II-6&gt; 우리나라 IPD의 사법부 독립과 법 앞의 평등 지표(2012년)

	사법부 독립		법 앞의 평등		국가명	사법부 독립		법 앞의 평등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오스트리아	100	1	100	1	아프가니스탄	50	56	75	21
덴마크	100	1	100	1	이집트	50	56	50	62
핀란드	100	1	100	1	루마니아	50	56	50	62
독일	100	1	100	1	러시아	50	56	25	105
스웨덴	100	1	100	1	터키	50	56	25	105
영국	100	1	100	1	인도네시아	25	111	25	105
프랑스	75	29	75	21	이란	25	111	50	62
브라질	75	29	50	62	멕시코	25	111	25	105
인도	75	29	25	105	튀니지	25	111	25	105
일본	75	29	75	21	베트남	25	111	50	62
미국	75	29	25	105	짐바브웨	25	111	25	105
잠비아	75	29	75	21	중앙아프리카	0	133	25	105
한국	75	29	75	21	쿠바	0	143	75	21

1) 지표 점수는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convert)한 것임.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관련 지표 값을 보면 우리나라는 75점으로 국가순위가 143개국 중에서 21위였다. 동 지표 값이 100점인 국가로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영국 등 20개 국가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프랑스, 이태리, 일본은 75점으로 동일하였다. 이에 비해 이집트, 그리스, 이란, 베트남 등은 50점 그리고 중국, 인도, 멕시코, 터키, 미국, 모로코, 아랍 에미리트 등은 25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수단 등은 0점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미국변호사협회 주도로 2006년에 출범한 비영리기구이다. 동 기구는 각국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인 적법절차 및 피고인 권리(Due process of law and the rights of the accused) 보장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80점으로 214개 국가 중에서 12위를 기록하였다.



[ II-16] 주요국 WGI의 피고인 권리보장 지표(2013년)

주요 국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지표 값을 보면 스웨덴이 9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 92점, 핀란드와 덴마크가 각각 91점이었다. 그리고 네덜란드(89점), 뉴질랜드(84점), 영국(82점)의 동 지표 값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그러나 독일(77점), 프랑스(74점) 그리고 일본(69점)과 미국(62점)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는 나이지리아로 지표 값이 21점이고, 순위는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97위였다.

또한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전환지수에서 법의 지배에 속하는 세부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 지표 값은 2012년 90점으로 128개 국가 중에서 5위를 기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동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대만, 우루과이였다. 동 지표 값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90점을 유지하였다. 동 지표와 관련된 평가에 의하면 사법부는 비록 정부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상당히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권이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이 합헌이라고 부분판결을 하였다. 또한 권력분리

(Separation of powers) 지표 값은 2006년, 2008년 각각 80.0점에서 2010년 90.0점으로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수준은 2012년에도 지속되었다. 2012년 동 지표의 우리나라 국제순위는 11위였다. 동 지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칠레, 체코 등 10개국으로 지표 값이 100점이었다. 동 지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검찰조사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사법부도 행정부와 입법부 활동을 감독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6) 언론의 자유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지수를 매년 생산,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 값에 의하면 언론자유 수준은 0점이 가장 높고, 100점이 가장 낮다. 이에 따라 동 연구에서는 지표 값을 '100-기준 언론자유 지수 값'으로 전환시켜서, 언론자유 수준이 가장 높으면 100점 그리고 가장 낮으면 0점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동 지수에서 조정된 값으로 우리나라 언론자유 수준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그림 II-7]과 같았다. 즉, 우리나라는 2002~2010년 기간 중에 지표 값이 68~71점을 계속 유지하여 언론자유 국가에 속했으나, 2011년에는 지표 값이 68점으로 소폭 악화된 이후 동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2013년까지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가로 평가되었다.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 지표를 기준으로한 우리나라 언론자유권 수준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2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67위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 국제순위는 소폭 하락하여 2003년 70위, 2006년 71위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다시 순위가 68위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1년 70위로 다시 하락하였다. 2013년에는 우리나라 국제순위가 66위로 상승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 언론지표의 세부영역별 지표 값을 보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영향, 법과 규제 지표 값이 각각 7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치적 압력과 통제는 67점으로 낮았다. 그러나 국제순위를 보면 경제적 영향 지표가 197개국 중에서 51위로 다소 높았다. 그 다음은 정치적 압력과 통제로 67위, 법과 규제가 72위순이었다. 이와 같은 국제순위를 2002년과 비교하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영향 지표의 순위를 2002년 112위에서 크게 순위가 향상되었다. 이에 비해 정치적 압력과 통제 지표는 2002년 63위에서 2013년 67위로 소폭 하락하였고, 법과 규제가 2002년 29위에서 72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언론자유 지표 값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로는 이태리, 이스라엘, 칠레,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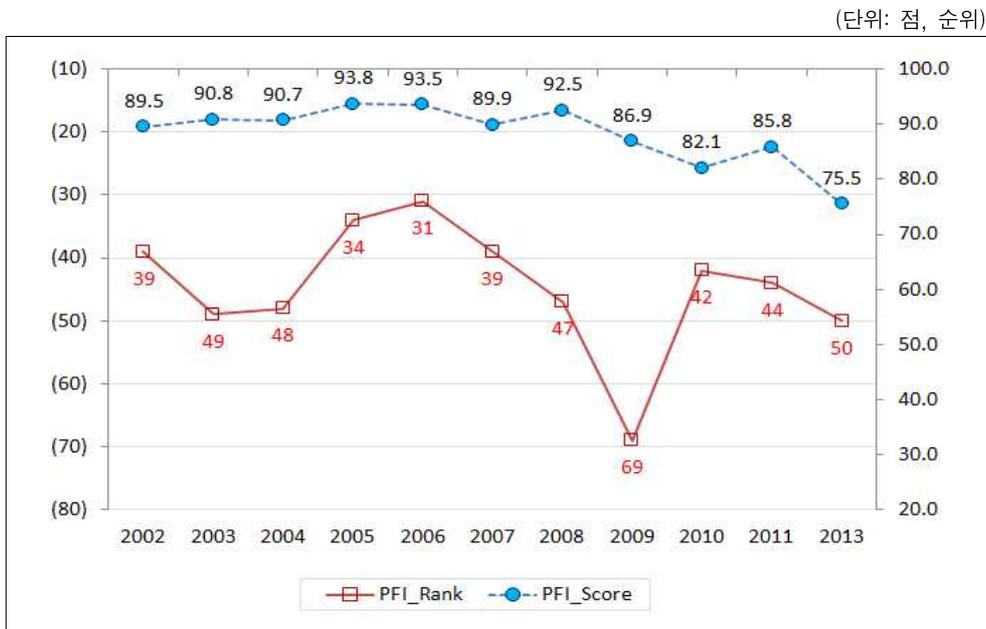
콩, 남아프리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태리의 언론자유 지표 값 추이를 보면 2002~2003년, 2007~2008년에만 언론자유 국가로 평가되었고, 이 외의 기간에는 지표 값이 65~68점으로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가로 평가되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평가국가 중에서 지표 값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서 동 기간 중에 지표 값이 지속적으로 100점 전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지표 값이 80~87점 수준으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언론자유 국가로 평가되었다.

또한 2013년 기준 주요 국가의 순위를 보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지표 값이 각각 9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로 2위(지표 값 각각 89점)이었고, 미국 23위, 영국 33위, 프랑스 36위, 일본 41위, 이태리 69위, 중국 180위, 그리고 북한은 197위로 최하위이었다.

< II-7> 주요국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 지표 값과 순위 추이  
(단위: 점, 순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언론자유 지표 값												
스웨덴	92.0	92.0	92.0	91.0	90.0	89.0	89.0	89.0	90.0	89.0	90.0	90.0
노르웨이	91.0	91.0	91.0	90.0	90.0	89.0	90.0	90.0	90.0	89.0	90.0	90.0
미국	84.0	83.0	87.0	83.0	84.0	84.0	83.0	82.0	82.0	83.0	82.0	82.0
영국	82.0	82.0	81.0	82.0	81.0	81.0	82.0	81.0	81.0	81.0	79.0	79.0
일본	83.0	83.0	82.0	80.0	80.0	79.0	79.0	79.0	79.0	79.0	78.0	76.0
이태리	73.0	72.0	67.0	65.0	65.0	71.0	71.0	68.0	67.0	66.0	67.0	67.0
북한	4.0	4.0	2.0	3.0	3.0	3.0	2.0	2.0	1.0	3.0	3.0	4.0
중국	20.0	20.0	20.0	18.0	17.0	16.0	16.0	15.0	16.0	15.0	15.0	17.0
한국	70.0	71.0	71.0	71.0	70.0	70.0	70.0	70.0	70.0	68.0	68.0	69.0
국제순위												
스웨덴	1	1	1	3	3	3	5	4	2	2	1	1
노르웨이	6	6	4	4	3	3	3	3	2	2	1	1
미국	21	31	17	25	20	21	24	24	24	22	23	23
영국	33	38	42	32	31	31	28	30	29	29	33	33
일본	28	34	33	37	39	40	37	35	34	34	38	41
이태리	62	67	74	80	79	64	66	74	74	75	71	69
북한	184	193	193	193	193	194	194	194	195	195	197	197
중국	167	174	175	178	178	182	183	182	184	184	188	180
한국	67	70	69	69	71	71	70	68	69	70	68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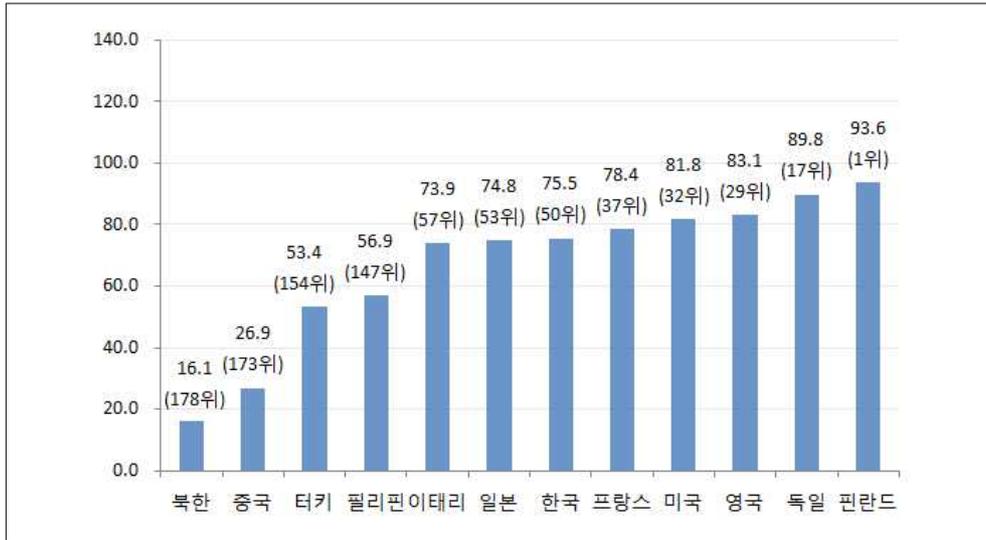
국경없는 기자회도 언론자유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의 우리나라 지표 값을 보면 2002년 89.5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93.8점이었다. 이후 2008년까지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지수 값이 하락하여 2010년 82.1, 2013년 75.5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언론자유권 수준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3년 49위에서 2006년 31위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는 급격한 하락을 보여 2007년 39위, 2009년 69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 다시 국제순위가 42위로 상승한 이후, 2013년 50위로 소폭 하락하였다.



[ II-17] 우리나라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표 수준

2013년 국경없는 기자회 지수를 기준으로 언론자유 국제순위를 보면 179개 국가 중에서 핀란드가 1위였고, 그 다음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안도라, 덴마크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17위, 영국 29위, 미국 32위, 프랑스 37위, 일본 53위, 필리핀 147위 등이었고, 북한은 178위 그리고 에리트리아는 179위로 가장 순위가 낮았다.

(단위: 점, 순위)



[ II-18] 주요국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표(2013년)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에서 측정한 언론의 자유 지표 값은 우리나라가 75점으로 143개국 중에서 50위였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지표 값이 100점으로 언론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75점인 국가는 이집트, 인도, 자메이카 등이었고, 중국, 멕시코 등은 50점으로 100위를 기록하였다. 언론자유 지수가 25점인 국가는 베트남, 소말리아 등이고 우즈베키스탄, 아랍 에미리트, 쿠바 등은 0점으로 언론 자유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적 특성지수 중에서 미디어 다원주의 즉, 미디어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세부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50점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97위였다. 미디어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국가로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으로 지표 값이 100점이었다. 이에 비해 호주, 이집트, 뉴질랜드 등은 75점이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멕시코 등은 50점 그리고 베트남, 시리아 등은 25점이었다. 미디어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등으로 동 지표 값이 0점이었다.

## &lt; II-8&gt; 우리나라 IPD의 언론 및 미디어자유 지표

	자유		미디어 자유			언론 자유		미디어 자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프랑스	100	1	100	1	인도	75	50	100	1
독일	100	1	100	1	이집트	75	50	75	36
인도네시아	100	1	100	1	잠비아	75	50	75	36
일본	100	1	100	1	짐바브웨	75	50	75	36
스웨덴	100	1	100	1	루마니아	75	50	50	97
영국	100	1	100	1	중앙아프리카	50	100	50	97
미국	100	1	100	1	멕시코	50	100	50	97
덴마크	100	1	100	1	튀니지	50	100	75	36
아프가니스탄	100	1	75	36	터키	50	100	50	97
오스트리아	100	1	75	36	러시아	25	126	50	97
브라질	100	1	75	36	이란	25	126	25	128
핀란드	100	1	75	36	베트남	25	126	25	128
한국	75	50	50	97	쿠바	0	139	0	139

1) 지표 점수는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convert)한 것임.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의 인권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언론자유권 수준은 1980년대 초까지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언론매체에 대한 완전한 검열(0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후 자유권이 향상되어 2000년대 후반까지 제한적인 검열(50점) 그리고 2009년 이후는 검열이 없는 수준(100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현 및 신념의 자유를 측정한 지표로는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가 있다. 프리덤하우스 지수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의 표현 및 신념의 자유 수준은 2013년 100점 만점에 87.5점이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대만, 필리핀, 크로아티아 등 16개국과 같이 분석대상 195개 국가 중에서 69위를 기록하였다.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 30개 국가가 공동으로 100점이었다. 북한, 소말리아, 시리아 등이 가장 낮아서 표현의 자유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

의 동 권리 지표 값은 2006년 87.5점(78위)에서 2013년까지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국제순위도 지속적으로 70위권을 유지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법의 지배 지수를 구성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지표 값을 보면 <표 II-9>에서와 같이 2012년 우리나라는 72점으로 분석대상 97개 국가 중에서 32위를 기록하였다. 다른 나라의 의사·표현의 자유 수준을 보면 덴마크(95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스웨덴(94점),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각각 90점)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지표 값이 높은 국가로는 일본(84점), 프랑스(83점), 독일과 미국(각각 80점), 영국(77점)이었다. 이에 비해 이태리(70점), 멕시코(64점)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중국은 동 지표 값이 10점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 II-9> 주요국 WJP와 BTI 의사·표현의 자유 지표 값 및 순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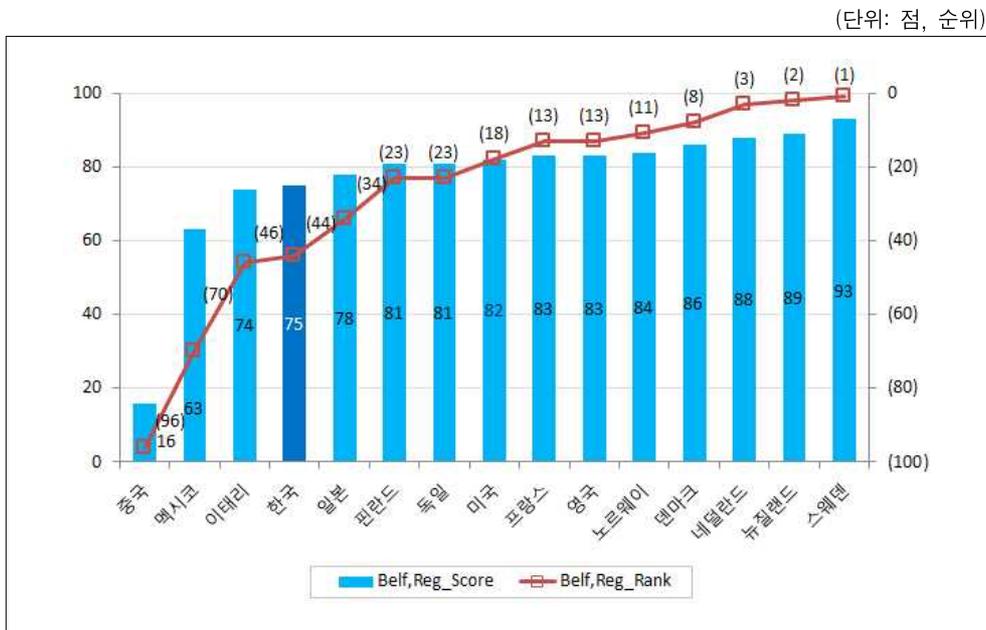
WJP ·표현의 자유 지표						BTI 표현의 자유 지표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덴마크	95	1	프랑스	83	13	대만	100	1	인도네시아	70	32
스웨덴	94	2	독일	80	14	우루과이	100	1	멕시코	60	54
노르웨이	90	3	미국	80	14	칠레	100	1	러시아	40	86
네덜란드	90	3	영국	77	16	인도	90	9	태국	50	76
핀란드	88	7	이태리	70	34	아르헨티나	80	17	말레이시아	50	76
뉴질랜드	88	7	멕시코	64	44	아프리카	80	17	중국	20	115
일본	84	12	베트남	27	92	터키	70	32	북한	10	122
한국	72	32	중국	10	97	한국	70	32	에리트리아	10	122

베텔스만재단의 전환지수(BTI)에서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동 지수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표현과 언론자유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나, 최근 반자유주의적(illiberal) 추세가 우려를 가지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평가는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전환지수에 있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지표 수준을 보면 2006년 90.0점에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2008년 90.0점, 2010년 80.0점, 그리고 2012년 70.0점이었다(<표 II-9>). 표현의 자유 수준의 우리나라 국제순위는 128개 국가 중에서 32위로 상

대적으로 낮았고, 대만, 우루과이, 칠레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 (7) 신념 및 종교의 자유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의 종교의 자유 지표 값은 종교관련 정부규제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면 (기존 점수를 100점의 환산하면) 0점, 부분적인 수준이면 50점 그리고 실제로 규제가 없으면 100점으로 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 수준은 1980년대 초반에 일부 제한 혹은 다소 제한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는 자유로운 상태로 개선되었다.



[ II-19] 주요국의 WJP 신념, 종교의 자유 지표(2012년)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의 하위 지표인 신념 및 종교 자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념 및 종교자유는 2012년 82점으로 분석대상 97개 국가 중에서 18위를 기록하였다. 신념 및 종교 자유 지표를 보면 스웨덴이 가장 높아서 지표 값이 93점이었고, 그 다음은 뉴질랜드(89점), 네덜란드, 포르투갈(각각 88점)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동 지표 수준이 높은 국가로는 프랑스와 영국(각각 83점),

미국(82점), 독일(81점) 등이었고, 일본(78점)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이태리의 동 지표 값도 74점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였다. 신념 및 종교 자유 지표 값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란(15점)이었고, 중국(16점)도 상당히 낮았다.

#### (8)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도를 측정하는 인권 관련 복합지수는 다수 있다. 먼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의 집회·결사의 자유 지표 값은 2012년 81점으로 22위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집회·결사의 자유 현황을 보면 스웨덴과 네덜란드(각각 98점)가 가장 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다음은 호주와 스페인(각각 97점), 오스트리아와 가나(각각 95점) 순이었다.

미국(85점), 일본(84점), 뉴질랜드(82점)도 동 지표 값이 상당히 높았다. 독일의 집회·결사 지표 값은 81점으로 우리나라와 같았고, 영국(79점)과 이태리(78점)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았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가장 적은 국가는 중국(13점)이었고, 베트남과 짐바브웨(각 18점)도 상당히 낮았다.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 집회·결사의 자유의 지표 값은 91.7점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분석대상 195개 국가 중에서 43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동 지표 수준의 추이를 보면 2006~2007년 동안에는 지표 값이 100점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었으나, 2008년에 91.7점으로 하락한 이후 동 수준을 2013년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분석대상 국가의 집회·결사 자유 수준을 비교하면, 2013년 동 지표 값이 가장 큰 국가는 덴마크, 포르투갈, 미국, 슬로베니아 등 42개 국가로 지수 값이 100점이었다. 우리나라는 91.7점으로 캐나다, 미국, 그리스, 대만, 인도 등 28개 국가와 함께 43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72위(83.3점)이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가장 낮은 국가는 북한과 에리트리아, 쿠바를 포함한 11개국으로 185위(0점)이었다.

## &lt; II-10 &gt; 주요 인권지수의 집회·결사의 자유 지표 값

	FH의 집회 자유		WJP의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명	FH의 집회 자유		WJP의 집회·결사의 자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스웨덴	100.0	1	98	1	프랑스	100.0	1	97	3
덴마크	100.0	1	94	8	일본	83.3	72	84	13
핀란드	100.0	1	90	10	영국	100.0	1	79	28
노르웨이	100.0	1	90	10	미국	91.7	43	85	12
뉴질랜드	100.0	1	82	17	이태리	100.0	1	78	30
네덜란드	100.0	1	98	1	멕시코	66.7	90	71	51
독일	100.0	1	81	22	중국	25.0	162	13	97
한국	91.7	43	81	22	베트남	8.3	181	18	95

제도적 특성 지수(IPD)에서 측정한 각국의 결사 및 자유의 지표 값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지표 값은 각각 100점(1위)으로 동 인권이 완전히 준수되고 있었다. 주요 국가의 결사의 자유 지표 값을 보면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도 100점이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케냐 등은 75점(73위)이었고, 이집트와 짐바브웨는 50점으로 111위를 기록하였다. 중국,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는 0점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나타났다.

집회의 자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지표 값이 100점이었다. 그리고 가나, 코트디부아르는 75점, 짐바브웨는 50점으로 103위였다. 베트남과 중국은 25점으로 120위를 나타내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미얀마의 지표 값은 0점으로 가장 낮았다.

< II-11> 우리나라 IPD의 집회·결사의 자유 지표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명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덴마크	100	1	100	1	스웨덴	100	1	100	1
핀란드	100	1	100	1	영국	100	1	100	1
프랑스	100	1	100	1	미국	100	1	100	1
독일	100	1	100	1	중앙아프리카	75	73	25	120
아프가니스탄	100	1	100	1	튀니지	75	73	50	103
오스트리아	100	1	100	1	터키	75	73	75	64
브라질	100	1	100	1	잠비아	75	73	75	64
인도	100	1	100	1	이집트	50	111	75	64
인도네시아	100	1	100	1	이란	50	111	25	120
일본	100	1	100	1	러시아	50	111	25	120
멕시코	100	1	100	1	짐바브웨	50	111	50	103
루마니아	100	1	75	64	베트남	25	127	25	120
한국	100	1	100	1	쿠바	0	138	0	138

1) 지표 점수는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convert)한 것임.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의 집회의 자유 지표 값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는 집회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 혹은 불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1992년 이후에는 다소 제한하거나 일부 집단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거나 혹은 완전히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즉, 1996~2000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제한하였고, 2000년대에는 2007년, 2009년은 부분제한, 2008년에는 엄격히 제한한 반면에 나머지 기간에는 완전히 보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12년 BTI 보고서 평가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8개 기본적인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2개 협약을 포함해서 4개를 비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회·결사의 자유 지표 값을 보면 2006년 80점 수준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012년에도 80점이었다.<sup>40)</sup> 우리나라 집회·

결사 자유 수준의 국제적 순위를 보면 2012년 128개 국가 중에서 35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 우루과이, 인도,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등이었고, 중국(20점, 117위), 북한 그리고 에리트리아는 각각 10점 125위로 가장 낮았다.

### (9) 사생활보호 및 이동자유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의 사생활 보호권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지표 값이 69점이었고 국제순위가 33위였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 수준을 보면 핀란드(지표 값 100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스웨덴(95점), 덴마크와 노르웨이(각각 94점), 호주(93점)이었다. 뉴질랜드(86점)와 네덜란드(85점)도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었다. 영국, 미국, 이태리도 동 지표 값이 80~81점 수준으로 높았다. 그리고 일본(71점)과 프랑스(68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생활 보호가 가장 잘 되고 있지 않은 국가는 벨라루스(4점)이었고, 이란(8점), 우즈베키스탄(17점)도 최하위그룹에 속했다.

이동의 자유권 수준을 측정한 복합지수 중에서 먼저 제도적 특성 지수(IPD)의 해외이동자유 지표를 보면 <표 II-12>와 같았다. 즉, 세계 모든 국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는 없어서 2012년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국가도 50점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이동자유 지표 값은 50점으로 국제순위는 1위이었는데, 143개 국가 중에서 93개국만 동 지표 값이 50점이었다.<sup>40)</sup> 지표 값이 25점인 국가로는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이라크 등이었고, 0점인 국가는 쿠바이었다. 출국의 자유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 미국, 덴마크 등 116개 국가와 함께 지표 값이 50점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은 25점으로 119위 그리고 쿠바와 투르크메니스탄은 각각 0점으로 142위로 가장 낮았다.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의 해외 및 국내이동 자유지표는 해외 및 국내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면 (100점으로 환산하여) 0점, 다소 제한되면 50점 그리고 자유로우면 100점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이동자유 지표 값을 보면

40) BTI 2012(2012), South Korea Country Report, p.6.

41) 동 지표 값이 50점인 국가가 93개, 25점 49개, 0점인 국가가 1개였음.

국내이동은 2000년대 중반까지 다소 제한되었으나, 그 이후 자유로운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에 비해 해외이동자유권은 1981~2006년까지는 자유로운 상태이었으나, 2007년부터는 다소 제한되는 상태로 변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II-12> 우리나라 IPD 이동의 자유 지표 값과 순위

	해외이동자유		출국의 자유		국가명	해외이동자유		출국의 자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오스트리아	50	1	50	1	루마니아	50	1	50	1
미국	50	1	50	1	러시아	50	1	50	1
덴마크	50	1	50	1	중앙아프리카	50	1	50	1
핀란드	50	1	50	1	잠비아	50	1	50	1
이집트	50	1	50	1	베트남	50	1	25	119
브라질	50	1	50	1	인도	25	94	50	1
프랑스	50	1	50	1	멕시코	25	94	50	1
독일	50	1	50	1	터키	25	94	50	1
인도네시아	50	1	50	1	아프가니스탄	25	94	25	119
일본	50	1	50	1	이란	25	94	25	119
스웨덴	50	1	50	1	튀니지	25	94	25	119
영국	50	1	50	1	짐바브웨	25	94	25	119
한국	50	1	50	1	쿠바	0	143	0	142

1) 지표 점수는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convert)한 것임.

(10) 평등권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에서 평등권 지표의 우리나라 수준을 보면 2012년 기준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국제순위가 14위였다. 평등권 즉, 동등처우와 차별해소 수준을 보면 핀란드(86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노르웨이(84점), 스웨덴과 뉴질랜드(각각 83점), 싱가포르(82점), 일본(81점) 순이었다. 독일과 스페인(각각 77점)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네덜란드(70점),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각각 69점)도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태리와 중국, 베트남(각각 60점), 미국(52점)은 다소 낮았고, 짐바브웨(36점)가 평가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97위였다. 멕시코도 동 지표 값이 39점(96위)으로 최하위권이었다.



[ II-20] 주요국의 WJP 평등권 지표 값과 순위(2012년)

또한 제도적 특성 지수(IPD)의 세부지표에는 동등처우, 소수자권리, 각종 차별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다. 이와 같은 평등권 관련 지표 값을 보면 먼저 동등처우의 경우 우리나라 지표 값은 75점으로 국제순위가 32위였다. 주요국의 동등처우 수준을 보면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31개국이 지표 값이 100점으로 동등처우를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우루과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동 지표 값이 75점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가나, 인도, 베트남은 50점(79위), 중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등 25점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미얀마, 소말리아 3개국은 0점으로 동등처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수자권리를 보면 우리나라는 50점으로 국제순위가 143개국 중에서 91위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이태

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34개국은 지표 값이 100점으로 소수자권리가 완전하게 존중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프랑스, 가나, 인도, 일본, 멕시코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동 지표 값이 75점이었다. IPD 지수는 성, 인종 그리고 종교 등에 기초한 차별관련 지표를 담고 있으며 동 지표는 0~4점 범주를 보이는데, 차별이 만연할수록 지표 값이 큰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차별 지표 점수도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100점으로 환산하였으나 다른 지표와는 달리 차별 지표 값이 100점이면 차별이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내고, 0점이면 차별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차별 지표 중에서 먼저 성차별 지표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75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143개 국가 중에서 91번째로 상당히 성차별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국가의 성차별 지표 수준을 보면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은 지표 값이 0점으로 성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국가 다음으로 성차별이 적은 국가는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대만,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25점이었다. 중국, 이태리, 자메이카, 멕시코, 미국은 동 지표 값이 50점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집트, 인도, 일본, 베트남, 터키 등은 75점이었고, 아프가니스탄, 말리,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은 100점으로 성평등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인종차별을 보면 우리나라는 75점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82위를 기록하였다. 즉, 성차별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국가로는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영국 등으로 지표 값이 0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인종차별이 적은 국가로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등으로 25점(19위)이었다. 지표 값이 50점(46위)인 국가는 그리스, 이태리, 이집트, 멕시코, 대만, 싱가포르 등이고, 75점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 베트남, 중국, 터키, 리비아, 에콰도르 등이었다.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국가들로는 페루, 바레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등이었다.

## &lt; II-13 &gt; 주요국 IPD의 소수자권리 및 차별 지표 수준과 순위

	소수집단 권리존중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노르웨이	100	1	0	1	0	1	0	1
뉴질랜드	100	1	0	1	25	19	25	26
덴마크	100	1	0	1	0	1	0	1
독일	100	1	0	1	0	1	0	1
멕시코	75	35	50	54	50	46	25	26
미국	100	1	50	54	75	82	25	26
베트남	50	91	75	96	75	82	25	26
벨기에	100	1	0	1	0	1	0	1
영국	100	1	0	1	0	1	0	1
이집트	50	91	75	96	50	46	75	118
이태리	100	1	50	54	50	46	50	75
인도	75	35	75	96	100	125	75	118
일본	75	35	75	96	25	19	0	1
자메이카	75	35	50	54	50	46	50	75
중국	25	128	50	54	75	82	25	26
캐나다	100	1	0	1	0	1	0	1
터키	50	91	75	96	75	82	75	118
프랑스	75	35	25	16	25	19	25	26
호주	100	1	0	1	25	19	25	26
한국	50	91	75	96	75	82	25	26

1) 지표 점수는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convert)한 것임.

우리나라 종교 차별 지표 값은 25점으로 상대적으로 종교로 인한 차별은 적어서 143개국 중에서 26위를 기록하였다. 종교차별이 거의없는 국가로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었다. 종교차별 지표 값이 25점으로 동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베트남, 프랑스, 호주, 중국 등이었다. 지표 값이 50점인 국가는 이태리, 자메이카 등이었고, 75점인 국가는 이집트, 인도, 터키, 이란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종교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을 함께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세 가지 차별의 지표 값이 모두 100점으로, 이들 차별이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말리아, 남수단, 아랍 에미리트는 성차별 지표 값이 75점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으나, 인종과 종교차별은 100점으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이라크,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인종차별 지표 값이 100점으로 가장 심하고, 성차별과 종교차별도 75점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홍콩,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은 성, 인종 그리고 종교차별 지표 값이 모두 0점으로, 이들 세 가지 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베텔스만재단의 전환지수(BTI)의 기회평등 지표 값을 보면 2006년 100점이었으나, 2008년 80점으로 하락한 이후 동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회평등과 관련해서는 인종, 종교, 성, 연령 혹은 민족에 기초한 차별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탈북자, 여성 및 청년층 전문가 등은 침해, 취업기회를 얻기 위한 접근, 동일임금 등과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개가 더 되는 법률을 개정해왔다. 그러나 2009년 민간기업의 경우 여전히 여성임원비율이 2% 미만이고, 공공부문의 경우 중간관리자 여성비율이 대략 11%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의 한국 순위가 134개국 중에서 115위인 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전환지수의 기회평등지표 값의 우리나라 기회평등 수준의 국제적 순위는 2012년 7위이었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대만, 우루과이, 칠레 등이었다.

< II-14 > 주요국 BTI의 기회평등권 지표 값 수준과 순위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대만	100	1	아르헨티나	80	17	인도네시아	70	32	말레이시아	50	76
우루과이	100	1	아프리카	80	17	멕시코	60	54	중국	20	115
칠레	100	1	터키	70	32	러시아	40	86	북한	10	122
한국	70	32	인도	90	9	태국	50	76	에리트리아	10	122

### (11) 사회권

경제사회권권한이니셔티브는 각국의 경제 및 사회권의 이행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경제 및 사회권 수준에 대한 분석은 중위 및 하위 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로 구분하여 분석,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8개 고소득국가집단에 속하는데 2011년 기준 경제 및 사회권 수준을 보면 복합지수 값은 92.3점으로, 평가대상 24개 국가 중에서 핀란드 94.6점, 스웨덴 92.8점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았다.<sup>42)</sup>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권 이행수준이 이와 같이 높은 것은 동 지수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성취 가능한 프론티어 수준으로 목표의무수준이 조정되어 지수 값을 산정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지수 값이 낮은 국가로는 룩셈부르크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그리스, 이태리, 슬로바키아, 미국 등으로 지표 값이 70점대이었다.

개별 권리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권이 99.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 순위는 3위였다. 이에 비해 건강권은 97.8점이었으나 국제 순위는 17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교육권의 지수 값은 95.7점, 국제 순위 2위였다. 노동권은 76.2점으로 분석대상 권리 중에서 지수 값이 가장 낮았으나 국제 순위는 5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즉, 우리나라의 식량권, 교육권, 양질의 노동권 수준은 다른 고소득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으나 건강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 및 사회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는 다른 권리들은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건권 수준이 낮은 국가에 속했다. 이에 비해 스웨덴, 노르웨이는 교육권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경제 및 사회권 수준이 낮은 국가 중에서 그리스, 이태리, 일본, 스페인 등은 특별히 보건권 수준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는 식량권 수준이 높았고, 벨기에, 헝가리는 교육권 수준이 높았다. 즉, 스피어만 상관 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면 경제 및 사회권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양질의 노동권 수준도 높았으며, 대체로 식량권과 교육권도 높았다. 그러나 보건권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권 수준이 높은 국가는 교육권과 노동권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sup>43)</sup>

42) 고소득국가집단 중에서 독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4개국은 관련 권리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음에 따라 비교가 불가능함.

43) 순위 상관 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면, 경제 및 사회권 수준

< II-15> 고소득국가의 경제사회권 이행지수 수준(2013년)

(단위: 점, 순위)

			보건권		교육권		노동권		SERF 지수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핀란드	99.8	2	98.4	13	100.0	1	80.4	4	94.6	1
스웨덴	100.0	1	99.9	1	82.7	15	88.5	2	92.8	2
노르웨이	97.8	5	99.6	3	79.3	21	89.3	1	91.5	4
덴마크	97.1	7	96.3	19	87.5	8	84.9	3	91.5	5
캐나다	95.3	10	98.0	16	90.6	6	73.5	6	89.4	6
네덜란드	96.8	8	98.8	10	92.1	4	67.7	9	88.8	7
호주	94.4	11	99.1	8	92.2	3	68.3	8	88.5	8
폴란드	96.1	9	92.8	22	90.9	5	67.2	10	86.8	9
오스트리아	92.5	18	98.6	12	82.5	16	72.3	7	86.5	10
프랑스	93.7	15	98.9	9	83.1	14	62.1	12	84.4	11
체코	94.0	13	95.8	20	84.5	12	62.5	11	84.2	12
스위스	93.2	16	99.2	7	82.5	17	60.2	14	83.8	13
스페인	93.0	17	99.3	6	83.6	13	57.9	16	83.4	14
헝가리	92.3	19	89.9	24	87.7	7	61.2	13	82.8	15
영국	91.8	20	97.5	18	81.4	18	59.7	15	82.6	16
아일랜드	98.0	4	98.7	11	86.7	10	44.0	22	81.9	17
일본	86.8	24	99.7	2	86.5	11	53.9	18	81.7	18
벨기에	91.0	21	98.1	15	86.9	9	48.4	20	81.1	19
미국	88.6	23	94.4	21	75.8	23	57.6	17	79.1	20
슬로바키아	94.2	12	91.8	23	81.3	19	48.4	19	78.9	21
이태리	93.9	14	99.5	4	76.0	22	43.4	23	78.2	22
그리스	89.2	22	99.4	5	80.8	20	42.6	24	78.0	23
룩셈부르크	97.5	6	98.3	14	58.9	24	44.6	21	74.8	24
한국	99.6	3	97.8	17	95.7	2	76.2	5	92.3	3

자료: Social Watch(2013), 『Social Watch Report 2013』, p.58.

순위와 노동권, 식량권, 교육권은 각각 0.956, 0.630, 0.623으로 상관유의수준이 0.01(양측)이었음. 이에 비해 보건권 수준 순위와 교육권 및 노동권은 각각 -0.213, 0.013이었음.

중위 및 하위 소득국가의 경제 및 사회권 수준을 보면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루과이로 94.1점(1위)이었고, 그 다음은 요르단 93.7점, 벨라루스 93.4점, 몰도바 92.2점 순이었다. 멕시코는 84.4점으로 24위, 터키 84.2점으로 25위, 중국 79.7점으로 41위였다. 동 지표 값이 가장 낮은 국가는 적도 기니로 20.2점(98위), 앙골라 34.8점(97위), 차드 39.8점(96위), 나이지리아 42.5점(95위)이었다.

식량권의 경우 지표 값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예멘 13.3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과테말라 17.8점(97위), 부룬디 19.4점(96위), 티모르 24.2점(95위) 순이었다. 이 외에도 인도 32.7점으로 89위, 베트남 58.4점으로 62위, 중국 90.4점으로 16위였다. 보건권의 경우 지표 값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적도 기니 23.1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안고라 23.5점, 차드 30.1점, 시에라리온 32.8점(95위) 순이었다. 이 외에도 인도 74.7점으로 50위, 터키 88.8점(15위), 멕시코 90.0점(12위)이었고,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98.6점으로 1위, 그 다음은 쿠바 97.2점, 우루과이 95.6점, 중국 94.8점이었다.

교육권을 보면 지표 값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적도 기니로 28.9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지부티 31.7점(97위), 차드 38.4점(96위), 부르키나파소 41.4점(95위) 순이었다. 이 외에 터키 79.0점(56위), 인도 82.6점으로 49위, 중국 83.6점으로 47위였다. 베트남은 85.8점으로 41위, 멕시코 92.7점(17위)이었고, 시에라리온 100점으로 1위, 라이베리아 99.1점으로 2위 그리고 우루과이 99.0점으로 3위였다. 주거권이 가장 낮은 국가는 적도 기니가 18.7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가봉 20.3점(97위), 에티오피아 25.9점(96위), 마다가스카르 26.0점(95위) 순이었다. 이 외에 인도가 62.6점으로 63위, 중국 65.8점 57위, 멕시코 78.0점 44위, 터키 89.0점(25위), 베트남은 92.5점으로 18위였다. 우루과이와 불가리아는 각각 100.0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은 알바니아 97.6점(3위), 키르기스스탄 97.5점(4위)이었다.

노동권을 보면 러시아, 세르비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등 17개 국가의 지표 값이 가장 높아서 100점이었다. 그 다음은 불가리아(99.5점), 칠레(99.3점), 요르단(98.4점) 순이었다. 75개 평가대상 국가 중에서 노동권 지표 값이 가장 낮은 국가는 적도 기니로 3.4점이었고, 그 다음은 탄자니아(11.6점), 스와질란드(18.6점), 나이지리아(21.5점) 순이었다. 이 외에 터키가 89.2점으로 36위, 멕시코가 88.4점으로 37위, 중국 64.0점 68위, 베트남 58.7점 72위 그리고 인도가 27.7점으로 93위였다.

< II-16 > 중위·하위소득국가의 경제사회권 이행지수 수준(2013년)

(단위: 점, 순위)

	보건권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SERF 지수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우루과이	79.5	31	95.6	3	99.0	3	100.0	1	96.2	24	94.1	1
요르단	96.3	7	84.6	34	93.8	13	95.3	11	98.4	20	93.7	2
벨라루스	95.8	8	85.2	31	92.5	19	93.6	17	100.0	4	93.4	3
몰도바	100.0	1	88.7	17	85.4	43	89.8	24	96.8	22	92.2	4
키르기스스탄	100.0	2	80.6	42	92.5	18	97.5	4	90.1	32	92.1	5
말레이시아	75.9	38	84.1	35	80.0	54	95.7	10	90.0	33	85.2	18
태국	79.4	32	88.1	19	74.5	67	96.2	9	87.5	39	85.1	19
러시아	76.2	37	82.2	40	85.5	42	80.2	37	100.0	8	84.8	21
멕시코	72.8	43	90.0	12	92.7	17	78.0	44	88.4	37	84.4	24
터키	75.3	39	88.8	15	79.0	56	89.0	25	89.2	36	84.2	25
중국	90.4	16	94.8	4	83.6	47	65.8	57	64.0	68	79.7	41
베트남	58.4	62	98.6	1	85.8	41	92.5	18	58.7	72	78.8	43
시에라리온	49.9	73	30.2	95	100.0	1	27.2	94	100.0	16	61.5	67
모잠비크	51.0	71	46.9	89	76.8	61	31.9	93	100.0	15	61.3	68
인도	32.7	89	74.7	50	82.6	49	62.6	63	27.7	93	56.1	80
나이지리아	47.7	77	33.4	93	66.7	79	43.3	88	21.5	95	42.5	95
차드	46.9	78	30.1	96	38.5	96	32.4	92	51.0	79	39.8	96
앙골라	26.6	94	23.5	97	45.8	94	45.3	85	32.6	91	34.8	97
적도 기니	27.0	93	23.1	98	28.9	98	18.7	98	3.4	98	20.2	98

자료: Social Watch(2013), 『Social Watch Report 2013』, p.56.

(12)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권 수준

앞에서 분석한 다양한 인권지수에서 산정한 각국의 인권수준과 국제순위를 기초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시민정치권의 경우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프리덤하우스(FHI),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산정한 우리나라 시민정치권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86점대로 세 기관이 평가한 우리나라 점수의 평균은 80.0점이었다. 국제순위는 대략 30~65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FHI),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시민권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시민권 점수는

85점 전후인데 두 기관 점수를 평균하면 84.3점이었다. 그리고 국제적 순위는 45~57위 정도이었다.

신체적 존엄성 즉,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지표 값은 정치테러지수(PTS),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에서 측정하고 있다. 이들 지수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의 지표 값을 보면 대략 50~87점 범위 그리고 국제순위는 25~39위 수준 정도이었다.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평가의 경우 상당히 제한된 범주를 척도로 하여 지표 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가가 동일한 점수와 순위를 보인다. 이에 따라 싱그라넬리 리차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로 우리나라 지표 값을 보면 동 지표 값은 85점이었다.

< II-17> 인권 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1)

	비교 국가	점수 (100점 환산)	순위	대상 연도
시민정치권				
CIRI	193	69.7점	65	2011
FHI	195	86.7점	55	2013
EIU	167	83.7점	31	2012
평균		80.0점		
시민권				
FHI	195	83.3점	57	2013
EIU	167	85.3점	44	2012
평균		84.3점		
생명 및 신체의 자유				
PTS	192	87.5점	39	2012
WJP	97	83.0점	24	2012-13
CIRI	193	50.0점	-	2011
평균		85.3점(73.5점)		

주: 평균점수는 CIRI 점수 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값이고, ( ) 점수는 CIRI 점수를 포함해서 산정한 값임.

참정권 지수를 평가한 기관으로는 프리덤하우스(FHI),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프랑스 개발청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베텔스만재단(BTI)이 있다. 참정권 수준은 프리덤하우스와 이코노미

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평가하였는데, 우리나라 참정권 수준은 100점 만점에 80~90점대이었고, 두 기관의 평균값은 86.0점이었다. 국제순위는 프리덤하우스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평가대상 국가 수와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다소 편차가 있어서, 각각 50위와 14위였다.

< II-18 > 인권 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2)

	비교 국가	점수 (100점 환산)	순위	대상 연도
<b>참정권</b>				
FHI	195	90.0점	50	2013
EIU	167	82.0점	14	2012
평균		86.0점		
<b>&lt;참정권 세부지표&gt;</b>				
<b>선거과정</b>				
FHI	195	91.7점	59	2013
EIU	167	91.7점	38	2012
IPD	143	100.0점	1	2012
BTI	128	100.0점	-	2012
평균		95.9점		
<b>공정한 선거</b>				
IPD	143	75.0점	47	2012
<b>선거과정/공정선거</b>				
IPD	143	88.0점	42	2012
<b>정치참여</b>				
FHI	195	93.8점	32	2013
BTI	128	88.0점	-	2012
평균		90.9점		
<b>정부기능</b>				
FHI	195	83.3점	35	2013
BTI	128	82.0점	14	2012
평균		82.7점		

참정권의 세부 권리지표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과정 정도를 측정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표 값은 90점 이상이었고, 평균값은 95.9점이었다. 동 지표 값은 대부분 일정한 점수 척도(예컨대 5점 척도 등)로 측정함

에 따라 동점인 국가 수가 상당히 많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순위는 IPD, BTI 평가 결과에서와 같이 100점인 경우에는 1위이나, FHI, EIU와 같이 평가점수가 두 번째나 그 이하 수준일 경우에는 국제순위가 크게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정치참여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 평가점수는 프리덤하우스의 경우 100점 만점에 93.8점, 베텔스만재단 88.0점으로 평균값이 90.9점이었다.

법의 지배 지수를 평가한 기관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국제거버넌스지수(WGI), 베텔스만재단(BTI)이 있다. 동 기관들이 평가한 우리나라 법의 지배 지표 값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85점대이고, 세 기관의 평균값은 85.0점이었다. 우리나라 국제순위는 40위대 전반이었다. 법의 지배에 속하는 세부 지표를 보면 사법부 독립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75~100점 수준이었다. 국제순위는 30위 이내이었다. 법 앞의 평등지표는 프랑스 개발청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 의해서 평가되었는데, 우리나라 평가점수는 각각 75점, 80점으로 평균 77.5점이었고, 국제순위는 각각 21위, 12위로 상당히 높았다.

< II-19> 인권 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3)

	비교 국가	점수 (100점 환산)	순위	대상 연도
법의 지배				
FHI	195	86.3점	44	2013
WGI	214	70.2점	40	2012
BTI	128	85.0점	-	2012
평균		80.5점		
사법부 독립				
IPD	143	75.0점	29	2012
CIRI	193	100.0점	-	2011
BTI	128	90.0점	-	2012
평균		82.5점(88.3점)		
법 앞의 평등				
IPD	143	75.0점	21	2012
WJP	97	80.0점	12	2012-13
평균		77.5점		

주: 평균점수는 CIRI 점수 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값이고, ( ) 점수는 CIRI 점수를 포함해서 산정한 값임.

시민권에 속하는 세부 인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는 <표 II-20>과 같았다. 먼저 언론자유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6.7~100.0점대로 점수 편차가 컸다. 그러나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평가의 경우 범주화된 척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점수대별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속한다. 따라서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평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언론자유 점수는 70점대이고, 국제순위는 50~66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사·표현의 자유 지표를 측정된 결과를 보면 프리덤하우스의 경우 우리나라 점수는 87.5점, 국제순위는 69위였다. 이에 비해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서는 72점, 32위였다. 그 결과 의사·표현의 자유 수준을 평가한 세계 기관의 우리나라 의사·표현의 자유 지표 평균값은 76.5점이었다. 신념 및 종교자유 지표 값을 측정된 지수는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와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뿐이었는데 우리나라 지표 값은 각각 100.0점, 82.0점이었고, 국제순위는 18위 이내로 상당히 높았다.

집회·결사의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았는데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집회의 지표 값은 97.7점 이상이었고, 결사의 자유는 80.0~100점이었다. 그 결과 집회자유 지표의 평균값은 82.2점, 결사 87.0점 그리고 집회와 결산을 모두 합친 평균값은 92.9점이었다. 국제순위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1위~43위 정도였다. 사생활 지표를 측정된 기관은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지표 값은 69.0점이었고 국제순위는 33위였다.

이동권 지표는 프랑스 개발청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와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에서 측정하였는데, 우리나라 이동권 보장 수준은 해외이동의 경우 50~66.7점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들 중에도 대부분 완전한 해외이동을 보장하는 국가가 없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순위는 1위였다. 국내이동의 자유 지표 값은 100.0점으로 국제순위는 1위였다.

## &lt; II-20&gt; 인권 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4)

	비교 국가	점수 (100점 환산)	순위	대상 연도
언론(표현) 자유				
FHI	195	69.0점	66	2013
RWB	179	75.5점	50	2012-13
CIRI	193	66.7점	-	2011
IPD	143	75.0점	50	2012
평균		73.2(71.6점)		
의사·표현				
FHI	195	87.5점	69	2013
WJP	97	72.0점	32	2012-13
BTI	128	70.0점	32	2011
평균		76.5점		
신념 및 종교				
CIRI	193	100.0점	-	2011
WJP	97	82.0점	18	2012-13
평균		82.0점(91.0점)		
집회·결사				
WJP (집, 결)	97	81.0점	22	2012-13
FHI (집)	195	97.7점	43	2013
IPD (집)	143	100.0점	1	2012
CIRI (집)	193	66.7점	-	2011
IPD (결)	143	100.0점	1	2012
BTI (결)	128	80.0점	35	2012
평균	집회·결사	91.7점(87.5점)		
	집회	92.9점(86.4점)		
	결사	87.0점		
사생활				
WJP	97	69.0점	33	2012
이동권				
IPD (해외)	143	50.0점	1	2012
IPD (출국)	143	50.0점	1	2012
CIRI (국내)	193	100.0점	-	2011
CIRI (해외)	193	66.7점	-	2011
평균		66.7점		

주: 평균점수는 CIRI 점수 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값이고, ( ) 점수는 CIRI 점수를 포함해서 산정한 값임

---

---

## III

---

---

### 우리나라 인권 현황과 지표 풀

---

---

- |                        |     |
|------------------------|-----|
| 1. 시민 정치적 권리 현황과 지표    | 87  |
|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현황과 지표 | 135 |
| 3. 소외계층 권리 현황과 지표 풀    | 169 |

## 1. 시민·정치적 권리 현황과 지표

### 가. 생명권 현황과 지표 풀

#### 1) 생명권의 현황과 추이

우리나라의 생명권의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생명권에 관한 쟁점 사항을 살펴보았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2016’<sup>44)</sup>에서 지적한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권 쟁점 사항은 ‘사형제도의 폐지’, ‘자살예방 대책’,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률 보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2016’의 생명권 관련하여 세부권리를 살펴보면,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는 생명권, ‘자유권규약 제 6조인 생명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사형선고 제한’, ‘사형선고자의 사면 또는 감형 청구권 등’, ‘아동권리협약 제6조인 아동의 생명권 및 생존권’, ‘18세 미만 자에 대한 사형선고 금지’,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에서의 생명권 및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명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생명권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및 사형선고 및 자살률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사형집행 건수를 살펴보면, 1997년에 23건으로 1998년부터 사형건수가 없어 사실상의 사형집행 국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998년에 사형집행을 받고도 사면 및 감형 등의 건수가 1998년에 2건, 1999년 5건, 2000년에 3건, 2002년에 4건, 2008년에 6건으로 나타났다.

< III-1> 사형집행 인원 및 사면·감형 인원(1997-2012)

(단위: 건수)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3-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집행인원	23	23	-	-	-	-	-	-	-	-	-	-	-
기타 (사면·감형 등)	19	-	2	5	2	-	4	-	6	-	-	-	-

자료: 법무부(2012), 『법무연감』.

사형선고 건수를 국제간 비교표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타 국가보다 사형선고 건수가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비슷한 국가인 수단과 비교

44) 대한민국 정부(20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pp.23-28.

해 볼 때 수단의 경우 사형선고 건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2007-2012년 기간 동안 최소 10배 최대 100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III-2> 국가 간 사형선고 건수(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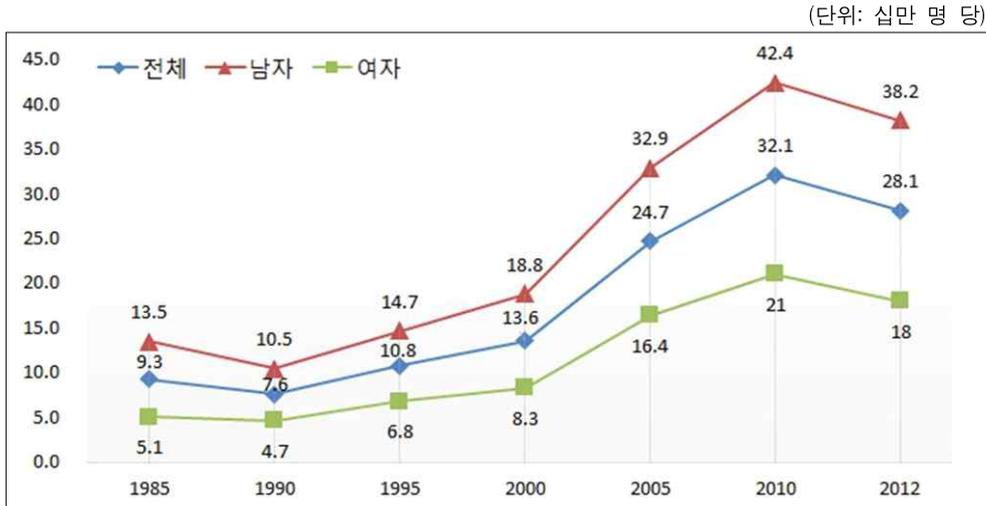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방글라데시	93	185+	최소 64		49+	45+
중국	1860+	7003+	+	+	+	
이란	+	+	+	+	156+	79+
이라크	199+	285+	최소 366	279+	291+	81+
일본	23	27	34	14	10	3
북한	+	+	+	+	+	+
한국	2	2+	최소 5	4	1	2
수단	23+	60	최소 60	10+	13+	199+
미국	100+	111+	최소 105	110+	78	77

주: + 의 의미는 한건 이상이며 정확한 통계 자료 모름, 숫자+ 의 의미는 최소한 지정된 숫자 이상이며 정확한 통계 모름

자료: Amnesty International,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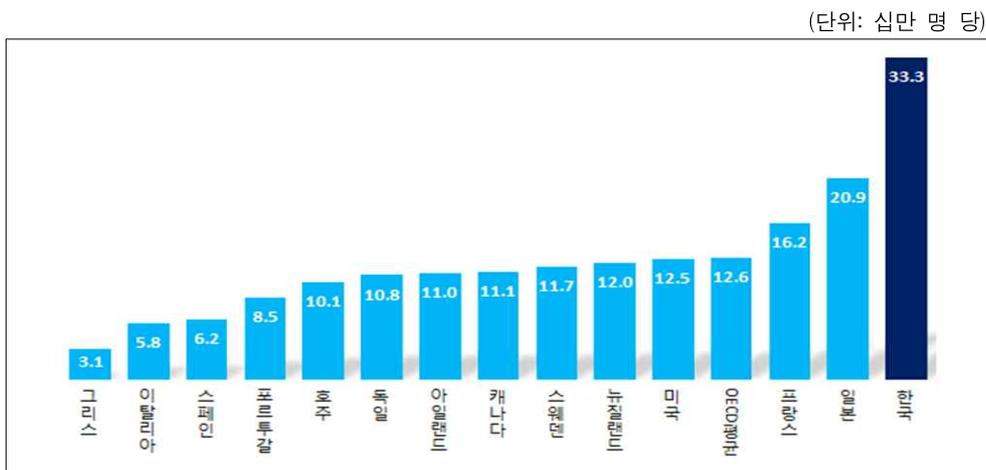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1985-2010년 동안 증가 추세이나 2012년에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85년에는 인구 십만 명 당 9.3명, 1990년, 7.6명, 1995년 10.8명, 2000년에는 12.6명, 2005년 24.7명, 2010년 32.1명, 2012년 28.1명으로 나타나 1차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인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 III-1] 성별 및 연도별 자살률(1985-2012)

OECD 평균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12.6명인 반면에 우리나라가 10만 명 당 33.3명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회문화를 가진 일본인 경우에도 인구 10만 명 당 20.9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12.4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그림 III-2] OECD 주요 국가별 자살률

이러한 생명권 관련 쟁점사항 외에도 낙태행위로 인한 태아 생명권 관련 사회적 문제가 존재한다.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는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침해가 대립되어 사회적 쟁점사항으로 존재한다.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 관련법이 존재하나, 모자보건법 4조를 살펴보면 ‘보건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사유’인 경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배치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 원인 중 경제·사회적 사유에 해당되는 원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6년에 자녀불원 30.0%, 터울조절 16.4%, 경제적 곤란 13.4%, 기타 11.5%, 임부의 건강상/자궁 외 임신 10.0%, 혼전 임신 7.9%,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 5.0%, 취업 중 2.5%, 태아가 딸 2.0%, 가정문제 1.3%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2009년에 자녀불원 31.2%, 터울조절 14.6%, 임부의 건강상/자궁 외 임신 14.1%,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 12.2%, 경제적 곤란 10.7%, 혼전임신 9.5%, 취업 중 2.4%, 가정문제 2.3%, 태아 딸 1.3%, 기타 0.9% 순으로 나타났다.

### < III-3> 인공임신중절 사유(2006-2009)

(단위: %)

임신중절 이유	2006	2009
자녀불원	30.0	32.1
터울조절	16.4	14.6
임부의 건강상/자궁 외 임신	10.0	14.1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	5.0	12.2
혼전임신	7.9	9.5
가정문제	1.3	2.3
경제적 곤란	13.4	10.7
태아가 딸이므로	2.0	1.3
취업중이어서	2.5	2.4
기타	11.5	0.9

자료: 보건복지부(2009), 『전국출산력 및 가족아동보건복지실태조사』.

생명권 관련 중요한 쟁점사항은 살인 건수와 실종 건수이다. 살인은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며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살인 건수와 실종 사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살인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인구 십만 명 당 살인건수가 2.3명, 2009년 2.8명, 2010년 2.5명, 2011년 2.4명, 2012년 2.0명으로 나타났다.

< III-4> 인구 십만 명 당 살인 건수 비율(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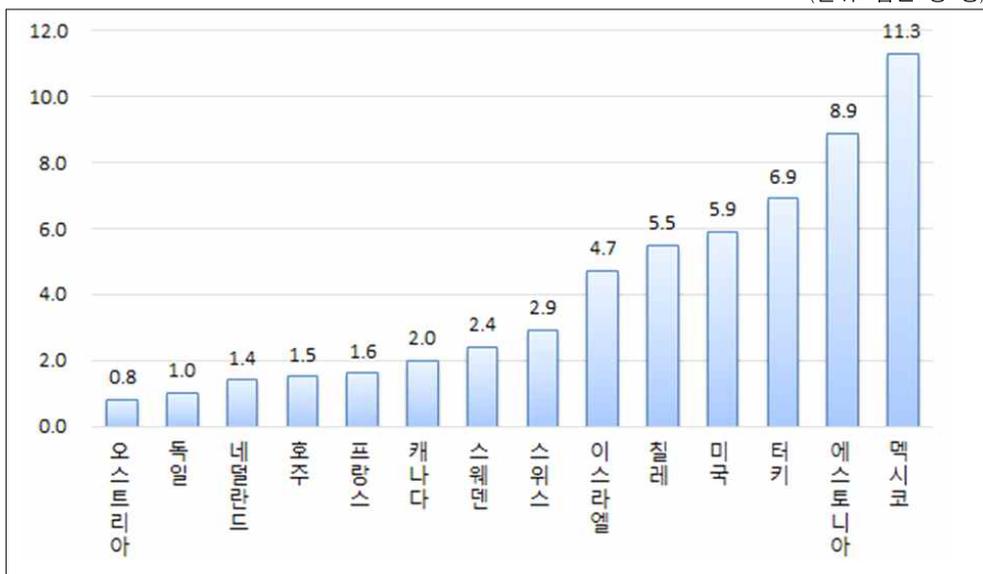
(단위: 십만 명 당)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비율	2.3	2.8	2.5	2.4	2.0

주: 인구 십만 명 당 살인 건수  
 자료: 경찰청(2012), 『범죄통계』.

자료의 제약으로 2004년 외국자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평균 2명인 데 반해 이스라엘의 경우 인구 십만 명 당 4.7명, 칠레 5.5명, 미국 5.9명, 터키 6.9명, 에스토니아 8.9명, 멕시코 11.3명으로 나타났다.

(단위: 십만 명 당)



[그림 III-3] 주요 국가별 살인건수(2004)

우리나라의 실종건수를 살펴보면, 아동인 경우 2007년 8,602명, 2008년 2,240명으로 증가되었으나 2009년에는 약간의 감소로 이어져 9,240명이었다. 2010년 들어 실종건수는 다시 반등하여 10,829명, 2011년 11,425명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다시 줄어들어 10,825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2007년 7,239명, 2008년에는 상당히 줄어들어 4,864명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5,564명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0년 6,699명, 2011년 7,377명, 2012년 7,43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III-5> 실종건수(2007-2012)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동	8,602	9,470	9,240	10,829	11,425	10,825
장애인	7,239	4,864	5,564	6,699	7,377	7,434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백서』.

출생 후 1년 안에 영아의 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영아사망률은 생명권과 관련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천 명 당 4.2명, 2006년 3.8명, 2007년 3.5명, 2008년 3.2명, 2010년 3.2명, 2011년 3.0명, 2012년 2.9명으로 점진적 하향 추세이다.

<표 III-6>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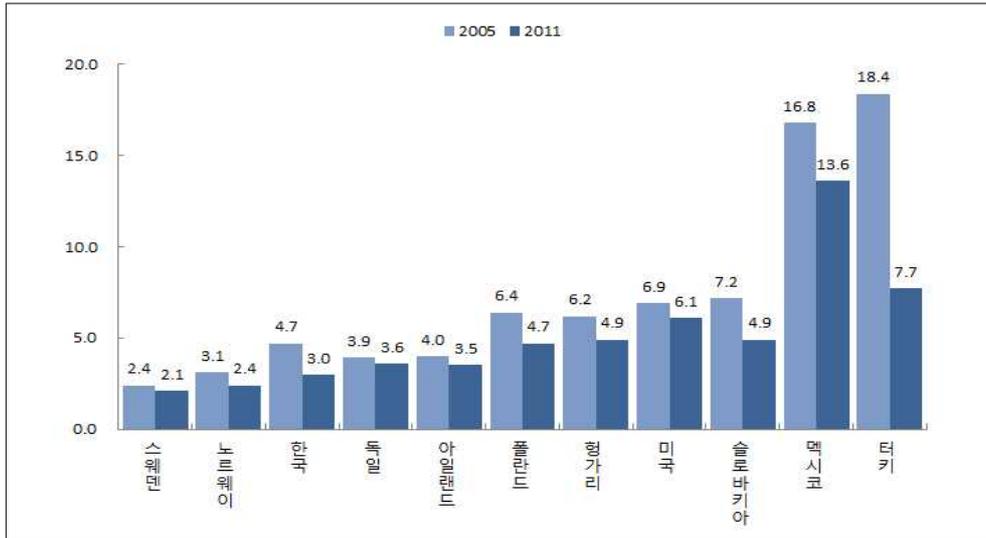
(단위: 천 명 당)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망률	4.2	3.8	3.5	3.4	3.2	3.2	3.0	2.9
사망수(명)	1,820	1,707	1,703	1,580	1,415	1,508	1,435	1,405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2005년과 2011년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별 영아사망률을 살펴보면 스웨덴,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타 국가들보다 낮은 추세에 있다. 한국의 경우 영아사망률이 천 명 당 2005년 4.7명에서 2011년 3.0명으로 감소하였다.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 III-4] 주요 국가별 영아사망률

2) 생명권 지표 풀

생명권 관련 쟁점 이슈와 생명권 현황 및 추이를 통하여 나타난 논의를 바탕으로 자살률, 사회 선고율/집행률, 인공임신중절률, 유아 및 아동 사망률, 살인 건수, 정치적 불법 살인, 실종으로 구성하였다. 정치적 불법 살인은 통계적 제약으로 지표 풀에만 제시되었다.

<표 III-7> 생명권 지표 풀

	자료원	비고
자살률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사회선고율/집행률	법무부, 『법무연감』	
인공임신중절률	보건복지부, 『전국출산력 및 가족아동보건복지실태조사』	
유아·아동사망률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살인건수	경찰청, 「범죄통계」	
정치적 불법 살인	-	
실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 나. 신체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 1) 신체의 자유의 현황과 추이

우리나라 신체의 자유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신체의 자유에 속하는 세부 권리를 보면,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고문과 인체실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5)</sup>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으며,<sup>46)</sup> 자유권 규약은 이를 구체화하여 신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고 활동할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고문과 인체실험에 관해서 자유권 규약은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인 고문과 잔혹한 형벌 및 비인도적인 처우와 인체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sup>47)</sup>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에서는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 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 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sup>48)</sup>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지표는 범죄자 기소인원 중 구속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인데,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군 영창 구금이나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 등 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다수인보호 시설의 강제수용 역시 신체의 자유와 관계된다.

45)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pp.70-71.

46) 신체의 안전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생물학적 외형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침해당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함.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함.

47) 국가인권위원회(2011), pp.72-73.

48) 이 협약에서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외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에 따라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 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되며, 다만 여기서의 고문에는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는 고통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자 구속현황을 보면, 2012년 현재 기소된 789,833명 중 구속은 27,615명으로 구속률은 3.5%를 차지한다. 연도별 구속률을 보면, 1999년 5.9%에서 2000년 7.7%로 증가하였다가 2001년 7.1%로 감소한 이후 2010년 3.0%에 이르기까지 2009년 3.4%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3.2%, 2012년 3.5%로 증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제198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재판 역시 이 원칙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다(제70조 제1항). 구속이 감소하는 것은 구속제도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및 재판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8> 범죄자 기소인원 중 구속인원 및 구속률

(단위: 명, %)

		구속인원	구속률
1999	241,307	14,193	5.9
2000	1,200,986	91,933	7.7
2001	1,306,204	93,030	7.1
2002	1,333,682	89,165	6.7
2003	1,288,885	83,160	6.5
2004	1,272,709	63,650	5.0
2005	1,021,230	46,126	4.5
2006	954,253	38,056	4.0
2007	1,042,473	33,632	3.2
2008	1,268,627	38,507	3.0
2009	1,154,372	39,453	3.4
2010	877,420	26,253	3.0
2011	817,289	26,515	3.2
2012	789,833	27,615	3.5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제도는 「형법」이 정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써(제69조 제2항) 벌금선고 시 납입하지 않은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70조).

< III-9>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수(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명, %)

	1	수용내용		
		수형자	미결수용자	노역장유치
2000	63,472(100.0)	37,120	24,745	1,607(2.5)
2001	62,235(100.0)	37,036	23,763	1,436(2.3)
2002	61,084(100.0)	37,111	22,911	1,062(1.7)
2003	58,945(100.0)	36,458	21,253	1,234(2.1)
2004	57,184(100.0)	34,609	20,638	1,937(3.4)
2005	52,403(100.0)	32,933	17,293	2,177(4.2)
2006	46,721(100.0)	29,923	14,816	1,982(4.3)
2007	46,313(100.0)	29,289	15,227	1,797(3.9)
2008	46,684(100.0)	30,280	14,368	2,036(4.4)
2009	49,467(100.0)	30,749	16,288	2,430(4.9)
2010	47,471(100.0)	30,607	14,819	2,045(4.3)
2011	45,845(100.0)	29,820	14,201	1,824(4.0)

주: 1.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

2. 피보호감호자 포함

자료: 법무연수원(2012), 『범죄백서』, p.293.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형의 집행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벌금분납 등의 대체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법률 제9523호, 2009.3.25. 제정, 2009.9.26. 시행). 이 법은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

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수를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된 1일 평균수용인원과 비교해 보면, 2000년 2.5%에서 2002년 1.7%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 2.1%로 증가한 이후 2009년 4.9%에 이르기까지 2007년 3.9%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 4.3%, 2011년 4.0%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노역장 유치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지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지표는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이 얼마나 많은 수용자를 관리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의 제한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5.6명에서 2011년 3.0명에 이르기 까지 1995년, 1997년 각 5.0명, 2007년 3.2명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III-10> 교도소 수용인원

(단위: 명)

	(단위:천명)	1일 평균수용인원	인구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1993	44,195(101)	59,145(107)	0.13	10,618(101)	5.6
1995	44,093(103)	60,166(109)	0.13	12,027(114)	5.0
1997	45,953(105)	59,327(108)	0.13	12,054(115)	5.0
1999	46,616(107)	68,087(124)	0.15	12,352(117)	5.5
2001	47,357(108)	62,235(113)	0.13	12,410(118)	5.1
2003	47,859(109)	58,945(107)	0.12	12,490(119)	4.7
2005	48,138(110)	52,403(95)	0.11	12,859(122)	4.1
2007	48,456(111)	46,313(84)	0.10	14,296(136)	3.2
2009	47,747(109)	49,467(90)	0.10	14,521(138)	3.4
2011	49,779(114)	45,845(83)	0.10	15,478(147)	3.0

자료: 법무연수원(2012), 『범죄백서』, p.295.

군 징계 중 영창제도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며, ‘영창’은 부대나 함정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제57조 제2항).

< Ⅲ-11>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단위: 명)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불문
2000	육군	13,422	33	10,700	2,437	245	7
	해군	1,100	0	895	151	64	0
	공군	201	0	113	60	25	3
	소계	14,733	33	11,708	2,648	334	10
2001	육군	15,266	38	11,596	3,255	372	5
	해군	1,177	0	984	157	36	0
	공군	265	1	155	67	42	0
	소계	16,708	39	12,735	3,479	450	5
2002	육군	16,183	30	11,548	4,069	533	3
	해군	1,107	0	900	163	44	0
	공군	211	0	112	72	25	2
	소계	17,501	30	12,560	4,304	602	5
2003	육군	18,329	31	12,618	4,997	540	53
	해군	1,237	0	1,019	182	36	0
	공군	196	0	82	89	19	6
	소계	19,762	31	13,719	2,268	595	59
2004	육군	18,647	0	11,539	6,084	849	175
	해군	1,104	1	849	202	52	0
	공군	218	0	88	90	32	8
	소계	19,969	1	12,476	6,376	933	183
합계	88,673	134	63,198	22,075	2,914	262	
2009	33,497	2	10,677	18,270	4,262	-	
2010	36,364	7	11,428	20,312	4,157	-	
2011	41,651	11	12,924	23,905	4,308	-	
2012	47,647	9	14,143	27,687	5,031	-	
합계	159,159	29	49,172	90,174	17,758	-	

주: 1. 원 자료에는 2005.4. 통계자료와 2013.6. 통계자료가 있었으나 제외하였음.

2. 2009년~2012년 자료는 육군 병에 대한 것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3),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p.19에서 재인용.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영창처분이 2009년 10,677명, 2010년 11,428명, 2011년 12,924명, 2012년 14,14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군인에 대한 징계로서의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며,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에 해당하는 영창처분을 법원의 판단 없이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행하는 것은 적법절차 준수 등 헌법적 원리 준수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41-42).

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의 보호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침해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현황을 통해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유형 중 불법/강제수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2008년 757건, 2009년 891건, 2010년 1,350건, 2011년 1,335건, 2012년 1,72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며(2009년 3월 시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이 강화되고, 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퇴원의사 확인이 의무화되었으며,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의무가 신설되었다.

강제 입원된 정신질환자의 경우 6개월마다 계속입원치료 여부에 대해 각 시·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수시로 병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퇴원요청 또는 처우개선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에 보장되어 있다.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미신고시설(정신질환자 입소시설) 등에 환자 인권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시·도 단위로 인권보호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신고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인권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방지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환자나 그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 또는 종사자는 그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로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조사 할 수 있고 시설수용자의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할 수 있다.

## &lt; III-12 &gt;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누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20,669	1,996	2,623	3,250	4,119	5,774
불법/강제수용	7,446	757	891	1,350	1,335	1,729
폭행/가혹행위	2,102	220	298	302	363	376
외부교통권 제한	1,429	135	220	188	283	397
의료조치 미흡	803	105	83	96	136	236
강제노동	263	36	37	54	34	62
인격권 침해	1,232	86	110	82	256	553
시설/환경	794	97	117	132	135	164
퇴원요청	4,111	329	558	645	1,061	1,518
기타	2,489	231	309	401	516	739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3), 『2012 인권통계』, p.3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직권남용 및 학대사례는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수사·재판 이외에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의 폭행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 4명이 구속기소되었다. 이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시적으로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고문신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총 15건이 접수되었고, 진정 2건이 각하 처리되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사기관 등의 고문행위 및 부당한 처우에 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55명, 불법체포 및 감금죄 10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15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33명이 기소되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 「인권보고서」의 2010년-2012년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2010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2명이 기소되어 14명이 유죄확정되었고, 사전허가 없이 북한에 입국한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10년형을 선고하였다. 2011년에는 북한공작원을 접촉, 북한 지도자 김정일 찬양문건을 배포한 혐의로 2명 징역, 2명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10명 구속, 6명이 기소되었으며, 기소자 2명은 유죄확정되었다. 또한 북한정부, 지도자를 찬양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남성이 체포,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2012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59명이 기소되었으며, 기소자 중 15명이 유죄확정, 3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또한 2008년-2012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2008년에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진상조사 진행과 함께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립 이래 11월 현재 신고된 13,348건 중 11,241건을 심의하여 그 중 8,908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009년에는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금지 규정을 정부 관계자들이 준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010년에는 국방부가 상해를 초래한 가혹행위가 14건 있었고, 그 중 9명이 기소되었으며, 2011년에는 상해를 초래한 가혹행위가 14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이러한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13> 가혹행위 발생 현황

(단위: 건)

	2010	2011	2012
정치적 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2명 기소, 14명 유죄확정</li> <li>· 사전허가 없이 북한에 입국한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10년형 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공작원 접촉, 북한 지도자 김정일 찬양문건 배포혐의로 2명 징역, 2명 집행유예 선고</li> <li>·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0명 구속, 6명 기소, 기소자 2명 유죄확정</li> <li>· 북한정부, 지도자 찬양게시물 인터넷 게재 남성 체포, 집행유예 2년 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59명 기소, 기소자 중 15명 유죄확정, 3명 무죄선고</li> </ul>
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를 초래한 가혹행위 22건, 9명 기소(국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를 초래한 가혹행위 14건(국방부)</li> </ul>	-

자료: 주한미국대사관(각 연도), 「인권보고서」.

## 2) 신체의 자유 측정 지표 풀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의 규정을 기초로 신체의 자유에 관한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위의 규약과 협약에 의하면 신체의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고 활동할 자유를 의미한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의 특성을 기초로 <표 III-14>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기본적인 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지표체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된 과제를 기초로 구축하였다.

< III-14> 신체의 자유 지표 풀

지표 풀(Pool)	자료원	비고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	대검찰청, 『범죄분석』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건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수용인원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군 영창 구금자수	국가인권위원회,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다수인보호시설의 강제수용건수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통계』	
정치적 구금	CIRI	
고문	CIRI	

## 다.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 1)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추이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당한 사람의 구제받을 권리의 하나로서 보장받게 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82). 우리나라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보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담당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으며, 권리구제의 최종적 수단인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재판은 공개되어야 하며, 형사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주요 지표의 하나인 변호사 선임률과 관련하여 현재 입수할 수 있는 통계에는 국선변호인 선임비용에 관한 것이 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게 되며,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원하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선임현황을 보면, 2002년 39,147건에 인원이 43,387명이었던 것에서 2012년에는 74,053건에 82,053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III-15 > 국선변호인 선임현황(1심)

(단위: 건, 명)

	건수	인원수
2002	39,147	43,387
2003	58,416	61,815
2004	61,975	59,340
2005	42,203	46,442
2006	42,525	47,323
2007	55,991	61,590
2008	66,236	72,647
2009	70,322	79,921
2010	67,909	75,529
2011	65,894	72,941
2012	74,053	82,053

주: 1. 치료감호처분사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이 포함되어 있음.  
 2. 건수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의 건수(국선변호인 선정건수가 아님)이고, 인원수는 피고인 수입.  
 자료: 법원행정처(각 년도), 『사법연감』.

시민은 법원에 대하여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결정에 대한 시정요구를 위한 행정적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미결구금일수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인용률은 2010년 98.6%, 2011년 99.1%, 2012년 99.6%로 2010년 이후 98%를 넘고 있다.

< III-16 > 형사보상처리 인용률(1심)

(단위: 건, %)

		결정	인용률
2002	129	110	85.3
2003	189	161	85.2
2004	272	233	85.7
2005	160	148	92.5
2006	177	145	81.9
2007	239	195	81.6
2008	250	222	88.8
2009	251	216	86.1
2010	8,349	8,230	98.6
2011	20,802	20,625	99.1
2012	41,908	41,732	99.6

자료: 법원행정처(각 연도), 『사법연감』.

적법 절차 및 고소인의 권리보장이나 사법부 독립정도는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이것에 관한 직접적인 통계는 생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권지수는 국제인권지수를 참고하여 개발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 독립정도는 CIRI의 인권지수를 참고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의 정도를 지수화하여 독립적이지 않으면 '0', 부분적으로 독립적이면 '1', 보편적으로 독립적이면 '2'의 3단계로 분화하는 방식을 차용하게 된다.

## 2)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측정 지표 풀

본 연구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개념 등을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

약 등의 규정을 기초로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관련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이 규약과 협약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와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질서,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형사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으며, 형사상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권리,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 권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하게 하고 증언을 받도록 할 권리,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무죄판결시 보상을 받을 권리, 유죄확정 행위에 대해 다시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의 특성을 근거로 다음의 표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기본적인 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지표체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된 과제를 기초로 구축하였다.

< III-17>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지표 풀

지표 풀(Pool)	자료원	비고
변호사 선임비용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건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WJP	
사법부 독립정도	CIRI	

**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1)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의 현황과 추이**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나 국가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권리를 의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82). 우리나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협약의 기준을 살펴보면, 유럽인권협약은 모든 사람이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권규약은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

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의 행사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공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의 주요 지표의 하나인 개인정보 침해 건수를 검토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신고건수는 2008년 988건에서 2012년 2,058건에 이르기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2008년 38,823건, 2009년 33,028건, 2010년 53,044건, 2011년 119,659건, 2012년 164,74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III-18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단위: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39,811	35,167	54,832	122,215	166,801
신고	988	2,139	1,788	2,556	2,058
상담	38,823	33,028	53,044	119,659	164,743

자료: 안전행정부(2013),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폐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즉,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민등록제도가 국가서비스를 위한 기초적 제도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제한, ②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범위 축소, ③ 신원확인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억제, ④ 부정사용 처벌 등을 추진하고 특히 전산 시스템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2011년 1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서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사용 이외의 본인 확인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다(2012.2.17 개정, 2012.8.18 시행). 이 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이외의 본인 확인방법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대면확인,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I-PIN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통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의 인권보고서를 중심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건수’를 지표화하였으며, WJP자료를 기준으로 ‘사생활 보호인식’을 지표화하였다.

2)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측정 지표 풀

본 연구에서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개념과 정부 책무 등을 자유권 규약, 유럽인권협약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이 규약과 협약에 의하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개인이나 국가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말하며, 모든 사람이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은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기본적인 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지표체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된 과제를 기초로 구축하였다.

< III-19>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지표 풀

지표 풀(Pool)	자료원
개인정보침해 건수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민간인 불법 사찰건수	주한미국대사관, 『인권보고서』
사생활보호 인식	WJP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 건수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 마. 이동의 자유 현황과 지표 플

### 1) 이동의 자유 현황과 추이

거주의 자유 또는 이동의 자유란 적극적으로는 개인이 자기의 생활 본거지를 정하고 머물러 사는 자유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는 자기 의사에 반해 특정 장소에 거주하거나 체류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73).

우리나라 이동의 자유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동의 자유에 속하는 국제협약의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인권선언은 각국의 영역내외에서의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자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국내외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동의 자유가 문제되는 영역은 장애인, 시설의 장기입소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등을 위한 대책을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상버스로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법정대수(2,785대)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가 추진하고 있다. 도서와 도서 간의 교류 증진 및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객운임을 지원하되, 운임 인상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실 소요예산이 요구된다. 도서지역의 경우 내륙과 도서간 이동에 있어 육상교통수단에 비하여 훨씬 높은 내항여객선 운임으로 인한 부담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동의 자유에 관한 주요 지표로서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보면, 전국 수준에서 2005년 162대에서 2006년 364대, 2007년 304대, 2008년 500대, 2009년 978대, 2010년 838대로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하였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서울 19.3%, 강원 14.3%, 경남 13.8%, 충북 13.0%로 10%가 넘는 지역이 있지만 경북 1.6%, 충남 2.0%, 전북 2.1%, 전남 2.5%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있다.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급률에서 지역적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 간 편차를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II-20> 저상버스 도입현황

(단위: 대, %)

	보급률	전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10.0	3,206	162	364	304	500	978	838
서울	19.3	1,468	67	194	108	260	482	322
부산	4.4	112	5	7	7	5	25	60
대구	7.7	128	5	10	20	30	35	26
인천	7.2	149	20	20	30	17	28	30
광주	6.9	62	10	10	10	8	12	10
대전	9.0	87	14	8	8	8	12	25
울산	7.8	50	3	10	7	10	6	12
경기	7.6	717	-	77	89	125	200	226
강원	14.3	79	-	6	6	12	18	37
충북	13.0	70	3	9	8	6	36	8
충남	2.0	14	-	-	-	3	5	6
전북	2.1	17	-	-	-	4	10	11
전남	2.5	17	-	-	1	-	5	3
경북	1.6	18	-	8	1	2	3	4
경남	13.8	208	30	-	9	10	101	58
제주	6.1	10	5	5	-	-	-	-

주: 1) 2011년 기준임

2)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1)임

자료: 고용노동부(2012), 『2012 장애인 통계』, 국가인권위원회(2013), 『2012 인권통계』, p.178 재인용

과도한 출입국 규제의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므로 해외입출국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인의 입출국도 그에 준하여 보장될 필요가 있다. 2010년도 내국인 출입국자는 25,585,627명으로 전년도 19,586,995명보다 30.6% 대폭 증가했고, 외국인 출입국자도 2009년 15,619,509명보다 11.4% 증가한 17,402,474명을 기록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권발급 거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급거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아 입국거부의 남용 우려가 있다.<sup>49)</sup>

국내 이동의 자유, 외국여행, 이민, 송환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실향민, 난민, 복귀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보호, 지원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려는 여행자는 많은 경우 사전에 통일부 방북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방북자는 정치적인 목적의 여행이 아니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한국 정부를 비난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일부 북한이탈주민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2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자에게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의 인정비율은 이동의 자유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난민신청자 중 난민신청이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가 인정되는 경우보다 불인정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난민처리가 불인정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를 통해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인정결정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III-21 > 난민처리 현황

(단위: 명)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총계	5,992	349	176	2,644	1,074
1994-2003	251	14	13	50	39
2004	148	18	1	7	9
2005	410	9	13	79	29
2006	278	11	13	114	43
2007	717	13	9	86	62
2008	364	36	14	79	109
2009	324	70	22	994	203
2010	423	47	35	168	62
2011	1,011	42	20	277	90
2012	1,143	60	31	558	187
2013.9월	923	29	5	232	241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9월호, p.32.

- 49) 대법원은 황장엽씨의 미국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이 거부된 사건에 대하여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판 2008. 1. 24. 2007두10846).

2) 이동의 자유 측정 지표 풀

본 연구에서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개념 및 정부 책무 등을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동의 자유에 관한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자유권규약에 의하면 이동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 부티도 출국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 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특성을 기초로 다음 <표 III-22>와 같이 이동의 자유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기본적인 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지표체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이동의 자유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된 과제를 기초로 구축하였다.

< III-22 > 이동의 자유 지표 풀

지표 풀(Pool)	자료원
장애인 만 명 당 저상버스	고용노동부, 『2012장애인통계』
여권발급 거부건수	법무부 내부자료
망명신청 거부건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출입국 불허비용	법무부 내부자료
이동자유 인식 수준	CIRI

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현황과 추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는 시민적 권리로 국가의 통치권에 대항해 발전해 온 고전적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사상의 자유는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하며,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하지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국내외 규약과 법률을 보면,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8조 제3항)은 공공의 안녕·공공질서·공중건강·도덕·타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약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 등을 고려해 이 영역의 우리나라 인권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엠네스티의 연례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처에 부정적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00명의 사례를 들며 2012년 현재 병역거부자 중 최소 750명이 수감 중이라고 언급하고 이들에 대한 검토 및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증가를 언급하면서 더불어 한국에서 온라인 상 게시물의 삭제 건수가 상승한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병역거부권은 미국, 유럽, 중화민국,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병역 면제나 대체복무제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 아르메니아, 터키 등 일부 나라에 불과하며 G20 국가 중에는 한국<sup>50)</sup>이 유일하다.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2004년에서 2013년 6월까지 총 6,090명이다(병무청 내부 자료). 이 중 형사 처분 확정자는 5,695명으로 전체 병역거부자의 93.5%를 차지한다. 형 확정자의 대부분은 징역을 살았으며, 단지 26명(전체 병역거부자의 0.4%)만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3년 6월 말 현재 재판계류 등에 있는 병역거부자는 395명으로 동기간 병역거부자의 6.5%이다.

50) 우리나라는 2007년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2009년 대체복무제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된 바 있음.

< 표 III-23 > 병역 거부자 중 형사 처벌 비율(2004~2013.6.30 기간 중)  
(단위: 명, %)

	계	형 확정자			재판계류등
		소계	징역	집행유예	
인원	6,090	5,695	5,669	26	395
비중	100.0	93.5	93.1	0.4	6.5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

한편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문제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쟁점은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반민주성’으로 말미암아 태생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동안 인권 침해 소지로 국내외에서 폐지 여론이 높았던 법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는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까지 소폭 증가한다.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2012년 88명으로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2012년은 입건자 수 뿐 아니라 2009년 이후 하락추이를 보이던 기소율 또한 상승했다. 즉, 2009년 75.4%를 보이던 기소율은 2011년 71.7%까지 하락했지만 2012년 84.1%로 크게 상승했다.

< 표 III-24 >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기소 및 구속자 수  
(단위: 명, %)

연도	입건자수	기소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01	222	126(56.8)	110(49.5)	96(43.2)	0(0.0)
2002	236	145(61.4)	115(48.7)	91(38.6)	0(0.0)
2003	149	101(67.8)	72(48.3)	48(32.2)	0(0.0)
2004	98	69(70.4)	31(31.6)	29(29.6)	0(0.0)
2005	67	37(55.2)	11(16.4)	28(41.8)	2(3.0)
2006	50	29(58.0)	11(22.0)	20(40.0)	1(2.0)
2007	45	28(62.2)	13(28.9)	14(31.1)	3(6.7)
2008	46	32(69.6)	16(34.8)	10(21.7)	4(8.7)
2009	57	43(75.4)	18(31.6)	9(15.8)	5(8.8)
2010	52	38(73.1)	16(30.8)	14(26.9)	0(0.0)
2011	53	38(71.7)	14(26.4)	13(24.5)	2(3.8)
2012	88	74(84.1)	26(29.5)	14(15.9)	0(0.0)

주: ( )는 입건자수 대비 비율.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주한미국대사관 인권보고서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대체로 잘 보장돼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 활동은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종립학교의 특정 종파 교육의 강요를 막기 어렵다. 2010년 4월 22일 대법원은 종립학교가 종교행사 불참에 대해 사실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않은 종교과목 수업을 진행해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 등을 위법한 행위로 보았다(2008다38288). 하지만 대다수의 종립학교는 특정 종교과목 이외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고 특정 종교의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제2기 인권NAP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종립학교에 입학하고 싶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에 배정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적 추진과제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종교의 신념 표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와 관련해 부모의 양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10년 여호와 증인인 신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결국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sup>51)</sup>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리 생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환자에게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유기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으며, 종교적 신념인 부모의 양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사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어느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학생이 해당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 또한 대법원은 학생을 교칙위반으로 제적한 학교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76.4.27. 75누249참조) 이는 미국에서 충성선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양심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판결이다.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9.6.106 법률 제4132호)이다. 보안관찰제도는 2007년 11월 헌법재판소(92헌바28결정)에서 범상의 보안관찰처분

51) 나달술(2010),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 개념의 비교적 고찰, 『법학논총』, 34(2).

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보안관찰제도는 국가보안법이나 그 외 형법, 군형법 상의 일부 죄목에 의해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범의 행위’로 인한 처벌이 아닌 ‘재심의 위험성’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보안관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형의 전부를 집행 받은 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1항)’과 충돌된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행하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관에 의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등을 침해하고 있고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제12조, 제17조, 제18조)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보안관찰대상자 통계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정확한 통계는 생산되고 있지 않다.

## 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지표 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기 인권NAP의 중점 추진과제와 국내외적 쟁점 및 권고 사항,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사상·양심 및 종교 자유’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지표는 총 5개로, ‘국가보안법의 입건자 수와 기소율’,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비율’,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으로 처벌 받은 사람 중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비율’,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신념표명 자유와 종교행사’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입건자수 및 기소율’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비율’은 제2기 인권 NAP의 핵심추진과제로,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국내 인권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한국 인권과 깊은 관계를 갖는 지표이다. 더불어 종교와 관련된 2개의 지표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선정해, 국제기구(혹은 단체)의 한국 평가와 현실을 담고자 했다.

## &lt; III-25&gt;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지표 풀

지표 풀	자료원	비고
국가보안법의 입건자수 및 기소율	대검찰청, 『범죄분석』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으로 처벌 받은 사람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비율	법무부 내부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비율	병무청, 내부자료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미생산	
신념표명 자유와 종교 행사	미생산	

## 사. 언론·출판의 자유

## 1) 언론·출판의 자유 현황과 추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표현의 자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제20조는 사적, 공적부분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 2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이 자유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언론·출판의 자유 측정은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접근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현재 통계로 나타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언론·출판의 자유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of Index)는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집계해 발표하는 국가별 언론자유 점수다. 이

지수는 국경없는 기자회의 협력기관(다섯 대륙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18개 단체)과 전 세계 150명의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와 인권운동가 등이 작성하는 것으로 2013년 1월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수준은 179개국 중 50위로 2010년 이후 하락 추이를 보였다. 언론자유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2년에는 한국은 39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2005년 34위, 2006년 31위로 상승하지만 이후 2009년까지 하락했고 2010년 42위로 회복하지만 다시 2년 연속 하락했다.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일본과 비교해 2003~2007년 사이는 순위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2008년 들어 점차 순위에서 차이가 벌어졌고 2012년 발표에서는 22위의 차이를 보인다. 단, 2013년은 일본이 크게 하락해 한국이 약간 높은 순위를 보인다. 한편 언론자유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 2009년 이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 III-26 > 언론자유지수의 한국순위

(단위: 순위, 점)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12	2013
한국	39 (10.50)	34 (7.50)	31 (7.75)	39 (12.13)	47 (9.00)	69 (15.67)	42 (13.33)	44 (12.67)	50 (20.48)
핀란드	1	1	1	5	4	1	1	1	1
일본	26	37	51	37	29	17	11	22	53

주: ( )는 점수이며, 낮을수록 좋음.

자료: 국경없는 기자회(각 연도), 국가별 언론자유점수

표현의 자유의 핵심 중 하나로 떠오른 한국의 인터넷 자유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sup>52)</sup> 건수는 2012년 총 75,661건이고, 이중 71,925건(95.1%)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 건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한 2008년 29,589건에서 2009년 24,346건으로 감소하지만,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해 2010년 45,758건, 2011년 57,944건, 2012년 75,661건으로 크게 증가한다. 심의 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더욱 빨리 상승해, 2008년 50.7%에서 2012년 96.1%로 급등한다. 이처럼 시정요구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법기관이

52) 심의대상 정보는 『2011 방송통신심의연감』, p.80을 참조할 것.

아니지만 시정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서비스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III-27> 연도별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2008	29,589	6,442	4,731	80	3,686	65	15,004(50.7)
2009	24,346	4,538	7,043	-	5,829	226	17,636(72.4)
2010	45,758	7,320	22,853	-	10,771	159	41,103(89.8)
2011	57,944	9,058	31,357	-	12,398	672	53,485(92.3)
2012	75,661	17,827	39,296	-	14,342	460	71,925(96.1)

주: 1) 심의 건수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건수가 포함됨.

2) ( )는 심의 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각 연도), 『방송통신심의연감』.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868건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해 제재조치 및 행정지도를 의결하였다. 제재종류별로 보면 행정지도가 497건(57.3%)로 가장 많고 법정제재가 370건(39.4%)으로 나타난 반면, 과징금은 1건으로 매우 낮았다. 법정제재는 370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 191건(22.0%), ‘경고’ 120건(13.8%),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24건(2.8%), ‘시청자에 대한 사과’ 18건(2.1%) 순으로 나타난다. 즉, 법정제재는 경고와 주의가 총 311건으로 법정제재의 84.1%를 차지하였다. 반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중지등의 제재는 전체 법정제재건수와 과징금 건수는 2011년과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2년 8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조치가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지도는 총 497건으로, 권고 342건(39.4%), 의견제시 155건(17.9%)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는 2011년과 비교하여 23% 증가하였다.

< III-28 > 제재종류별 방송심의 의견 현황

(단위: 건, %)

	2011					2012					
	보도 교양	연예 오락	상품 판매 방송	방송 광고	계	보도 교양	연예 오락	상품 판매 방송	방송 광고	계	
과징금	3	9	0	0	12(1.5)	0	0	1	0	1(0.1)	
법정 제재	병행제재	6	22	1	0	29(3.6)	8	7	2	0	17(2.0)
	시청자사과	9	39	6	10	64(7.9)	4	8	0	6	18(2.1)
	정정·중지	0	0	0	13	13(1.6)	22	1	0	1	24(2.8)
	경고	26	67	9	13	115(14.2)	27	62	16	15	120(13.8)
	주의	33	66	15	57	171(21.2)	52	76	16	47	191(22.0)
	소계	74	194	31	93	392(48.5)	113	154	34	69	370(42.6)
행정 지도	권고	60	137	21	79	297(36.8)	128	138	28	48	342(39.4)
	의견제시	23	30	10	44	107(13.2)	37	44	7	67	55(17.9)
	소계	83	167	31	12	404(50.0)	165	182	35	115	497(57.3)
계	160	370	62	216	808(100.0)	278	336	70	184	868(100.0)	

주 : 병행제재는 심의 대상 방송프로그램(또는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를 동시에 의결한 경우임.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각 연도), 『방송통신심의연감』.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2001년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되었다가 2007년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임시조치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신속하게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계재자의 권리가 무차별적으로 침해될 수 있고, 권력에 대한 비판 글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다. 또한 정보복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제도이다. 2011년 3개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임시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98,620건이다. 임시조치 중 절반(50.0%)은 이용해지였고, 30.7%가 접속차단, 18.7%가 게시물 삭제로 나타났다.

## &lt; III-29 &gt;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단위: 건)

	3개 주요 사업자 임시조치 건수				
	전체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2008	120,196(100.0)	31,953(26.6)	27,454(22.8)	691(0.6)	60,098(50.0)
2009	193,006(100.0)	37,342(19.3)	57,712(29.9)	1,449(0.8)	96,503(50.0)
2010	149,336(100.0)	27,914(18.7)	45,798(30.7)	956(0.6)	74,668(50.0)
2011(추정)	198,620(100.0)	37,125(18.7)	60,911(30.7)	1,274(0.6)	99,310(50.0)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율은 비공개 결정의 사유,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기간과 연계되어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질적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는 333,006건으로 전년대비 2,700건(0.8%) 감소했고, 공개율은 95.0%를 나타냈다. 2012년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5%에 해당하는 16,560건은 비공개됐다. 주된 비공개 결정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비밀정보(30%),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30%),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12%), 법인의 영업상 비밀 정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up>53)</sup>

## &lt;표 III-30&gt; 행정정보 공개율

(단위: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보공개율	90.5	90.8	91.1	91.1	89.7	90.7	95.0
청구건수	132,964	197,617	229,650	301,332	322,018	335,706	333,006
전부공개	106,423	157,958	183,722	244,604	259,739	272,779	285,669
부분공개	13,970	21,479	25,516	30,682	29,271	31,791	30,777
비공개	12,571	18,180	20,412	26,046	33,008	31,136	16,560

자료: 안전행정부(각 연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53) e-나라지표(2013), ‘행정정보공개율’ 지표 설명.

정보격차지수는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국민과 정보 취약계층 간의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지수화한 것이다. 2012년 종합격차지수는 26.0점으로,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장애인, 50대 이상의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 격차가 26.0 점이다. 정보격차지수는 처음 발표한 2004년 55.0점 이래 정보격차 수준이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격차는 범 부처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이 매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접근 격차, 역량 격차, 양적활용 및 질적 활용 격차 모두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접근 용이성을 보여주는 접근격차지수는 2004년 36.3점에서 2012년 6.6점으로 29.7점 감소했고, 컴퓨터 응용 S/W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인 역량격차지수는 동기간 28.6점, 그리고 양적활용지수와 질적활용지수는 동기간 각각 25.5점과 30.8점 감소했다.

< III-31> 정보격차 현황

(단위: 점)

	종합 격차지수	접근 격차지수	역량 격차지수	양적활용 격차지수	질적활용 격차지수
2004	55.0	36.3	72.5	65.8	70.4
2005	46.7	29.0	65.8	57.8	62.3
2006	38.0	19.8	57.1	49.7	53.6
2007	34.1	13.5	55.5	47.2	52.0
2008	32.0	10.3	54.3	45.6	49.9
2009	30.3	9.0	51.1	44.3	47.7
2010	28.9	8.2	49.2	42.5	45.9
2011	27.6	7.3	47.2	41.4	43.2
2012	26.0	6.6	43.9	40.3	39.6

주: 1) 정보격차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격차가 큰 것을 의미  
 2) 접근격차: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접근 용이성 등  
 역량격차: 컴퓨터 응용 S/W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 등  
 활용격차: 컴퓨터, 인터넷의 이용량(양적활용), 일상생활 도움 및 활용정도(질적활용)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2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2) 언론·출판의 자유 지표 풀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대표적 인권이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핵심은 사전 검열이나 강제 보도 통제 등과 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지표구성은 이 권리의 개념과 쟁점을 잘 보여주는 지표를 선정해 <표 III-32>와 같이 구성했다. 선정된 지표는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건수’,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방송광고 심의 건수’,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률(정보접근정도)’, ‘정보격차 수준’이다. 이들 지표는 제1기의 이행평가와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나타난 논의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 III-32> 언론·출판의 자유 측정 지표 풀

지표 풀	자료원	비고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미생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료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미생산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율(정보접근정도)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방송광고 심의 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연감'	
정보격차 수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아. 집회·결사의 자유

### 1) 집회·결사의 자유 현황과 추이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sup>54)</sup>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

54) 두산백과, 집회·결사의 자유.

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 또는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등이 포함되고, 소극적으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자유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다만 집회에서의 연설이나 토론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결성·불결성, 단체의 가입·탈퇴·불가입 등에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와 단체로서의 의사를 형성하고, 그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sup>55)</sup> 이를 기반으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회·시위 신청 건수를 보면 2007년 96,142건에서 점차 증가해 2010년 195,21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현재 164,032건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지난 4년 간 집회·시위를 신청한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집회 신청에 대해 경찰이 불허한 건수를 보면 2007년 368건, 2009년 900건, 2010년 957건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은 352건으로 크게 감소한다. 비율로 보면 2007년 0.39%, 2009년 0.58%, 2011년 0.21%로 2009년의 불허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1년은 지난 5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III-33 > 집회·시위 신청 대비 불허 비율

(단위: 건, %)

	집회신고 건수	금지통고 건수	금지통고율
2007	96,142	368	0.39
2008	123,495	299	0.24
2009	155,030	900	0.58
2010	195,213	957	0.49
2011	164,032	352	0.21

자료: 경찰청(각 연도), 『경찰백서』.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의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보고서는 촛불시위 기간 중 기소된 전경 26명에 대해 구속된 경우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2009년 보고서는 경찰은 통상적 시위는 허가하지만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는

5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집회·결사의 자유.

금지하고 있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보고서는 사전에 신고한 노동·정치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할 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했다는 보고를, 2012년 보고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민들을 체포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즉, 한국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보고는 매년 부정적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2년 1,093명으로 2011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검거된 사람 중 기소를 당한 비율은 2012년 47.6%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비율과 기소중지 등 기타 비율, 미제 비율은 각각 28.1%, 5.1%, 19.2%로 전년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다.

< III-3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단위: 명, %)

	검찰송치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포함)	기타 (기소중지 등)	미제
2010	1,262	575(45.6)	526(41.7)	81(6.4)	80(6.3)
2011	1,559	590(37.8)	562(36.0)	106(6.6)	301(19.3)
2012	1,093	520(47.6)	307(28.1)	56(5.1)	210(19.2)

주: 형사공판 1심 기준.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우리나라 단체조직 현황을 보면, 2012년 현재 노동조합수는 5,177개이며 조합원은 1,781천명,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이다. 노동조합조직률은 2003년 11.0%에서 2010년 9.8%로 정체와 하락을 이어왔으나,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III-35 >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단위: %, 개소, 천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노동조합 조직률	11.0	10.6	10.3	10.3	10.8	10.5	10.1	9.8	10.1	10.3
노동조합수	6,257	6,017	5,971	5,889	5,099	4,886	4,689	4,420	5,120	5,177
조합원	1,550	1,537	1,506	1,559	1,688	1,666	1,640	1,643	1,720	1,781
조직대상근로자	14,144	14,538	14,692	15,072	15,651	15,847	16,196	16,804	17,090	17,338

주: 조직률 산정방식: 조합원수/조직대상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단, 민간노동조합과 달리, 일반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은 불인정한다. 2011년 공무원 노동조합수는 99개로 가입 조합원수는 165,566명이다. 가입대상 공무원이 295천명이므로 조직률은 56.1%이다. 공무원 조직률은 첫 통계가 잡힌 2007년 59.7%에서 2008년 72.1%로 크게 높아졌지만 2009년 53.1%로 크게 하락하는 등 가입자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가입자가 안정화되면서, 조직률은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표 III-36>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개소, 명, %, 천 명)

연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명)	조직률	가입대상 공무원 (천 명)
2007	98	173,125	59.7	290
2008	95	215,537	72.1	299
2009	95	158,910	53.1	299
2010	96	164,147	55.6	295
2011	99	165,566	56.1	295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노동조합 조직현황」.

## 2) 집회·결사의 자유 지표 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지표는 현대사회의 보편적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국제기구나 국제규약에 규정하는 해당 권리 항목을 준수하여 국제적 논의 및 권고하는 인권지표 중 비교 가능한 인권지표 항목을 검토했다. 이에 선정한 지표는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집회신청 대비 불허 비율’, ‘단체조직의 자유정도’, ‘집회·시위 및 단체 조직의 자유’ 등 4개이다. 4개 지표의 자료원은 <표 III-37>과 같다.

< III-37 > 언론·출판의 자유 측정 지표 풀

지표 풀	자료원	비고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대검찰청, 『범죄분석』	
집회신청 대비 불허 비율	경찰청, 『경찰백서』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자. 참정권 현황과 지표 풀

### 1) 참정권의 현황과 추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정치적 인간은 자기가 속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인권위원회, 2011).<sup>56)</sup>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구현방법이며 대의민주주의를 가동하는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며,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가조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등을 말한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이들 중 특히 국민의 자격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김태홍 외, 2012).<sup>57)</sup>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56)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p.80.

57) 김태홍 외(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p.195.

Political Rights, ICCPR) 제25조(Article 25)에 의거하여 모든 시민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않고 ①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②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권리 ③일반적인 평등 조건 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법률로 정하는 선거권이 있으며(제24조), 모든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공무를 맡을 권리(제25조)가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참정권과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가호, 나호<sup>58)</sup> 및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5조 c항<sup>59)</sup> 등에 의거하여 성·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참정권의 보장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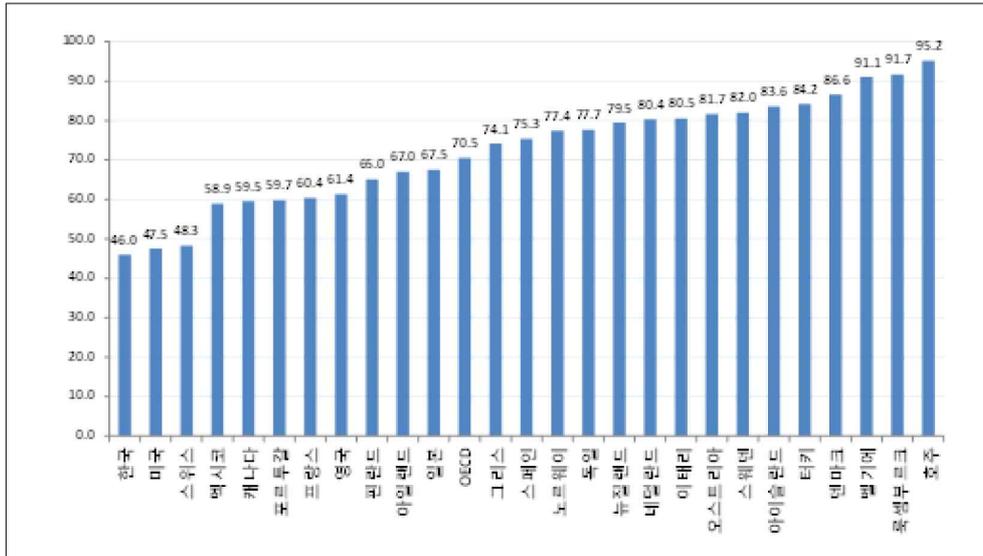
이와 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참정권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투표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투표율은 46.0%로 OECD 평균인 70.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58) 선거·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을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하고 정책입안·정책시행에의 참여, 공직담당 및 공무수행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함.

59)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선거에 참가할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 공무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평등하게 보장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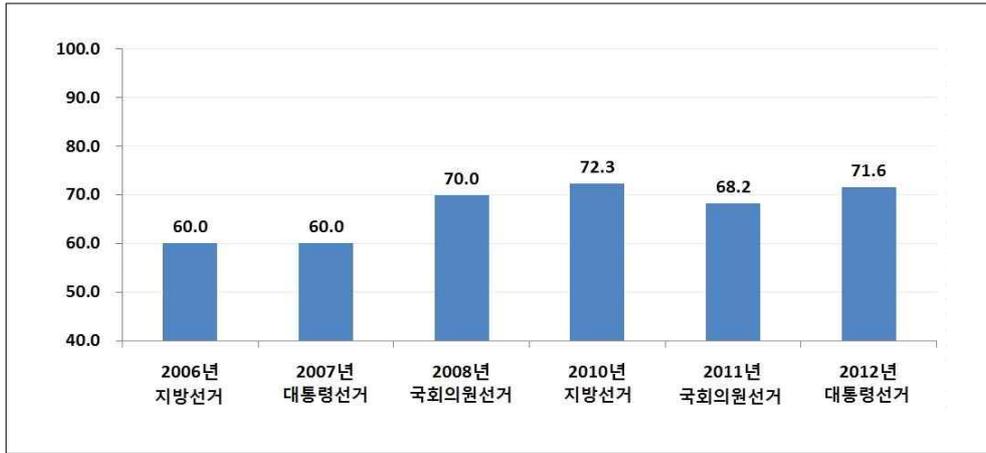
주: 포르투갈: 2009년,  
 한국,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이태리, 오스트리아: 2008년,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터키, 덴마크, 벨기에, 호주: 2007년,  
 미국, 멕시코, 네덜란드, 스웨덴: 2006년  
 영국, 일본, 노르웨이, 독일: 2005년  
 룩셈부르크: 2004년 선거 기준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2011)

[ III-5] OECD 주요국의 투표율

한국의 투표율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한국의 참정권 수준을 준거점으로 놓고 선거의 종류에 따라 투표율의 차이를 감안하여 실시된 선거의 종류별로 정규화하여 연도별 투표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의 경우 선출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성격에 따라 투표참여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상이한 종류의 선거 간에 단순히 최종 투표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무리가 있다. 이에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정규화하여 산출된 값을 토대로 연도별 투표율 추이를 산출한 결과가 아래 [그림 III-6]에 제시되어 있다.

(단위: %)



주: 선거의 종류에 따라 투표율의 차이를 감안하여 정규화하여 비교를 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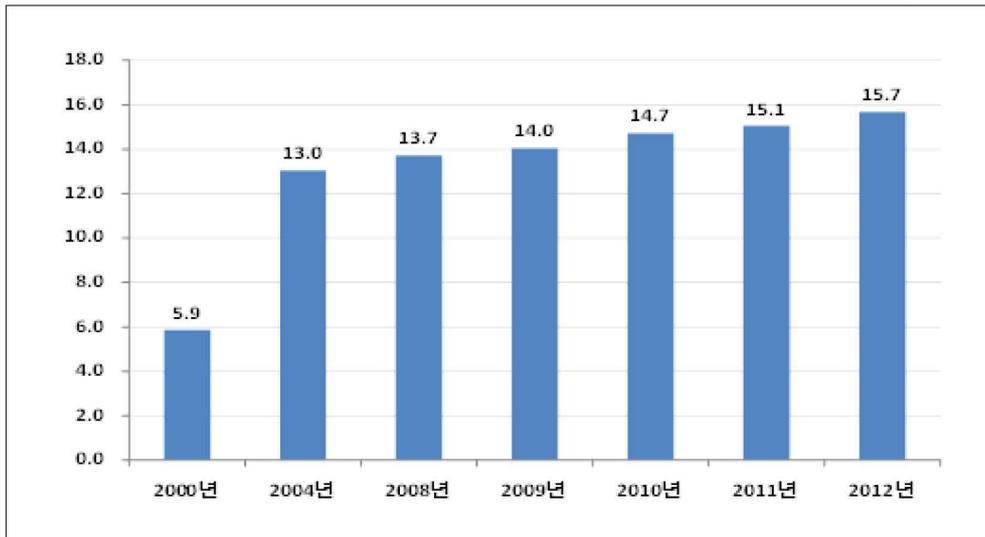
[ III-6] 연도별 투표율 추이

성별·피부색·인종 등의 구별 없이 참정권은 평등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참정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유권자, 농어촌지역 유권자 등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편의 제공 방안과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성별·장애·지역·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김태홍 외 2012).<sup>60)</sup>

참정권이 성별로 얼마나 평등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국회의원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5.9% 수준에 그치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4년 13.0%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은 각각 총 전국지역구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4.0%, 2011년과 2012년 각각 15.1%, 15.7%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60) 김태홍 외(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p.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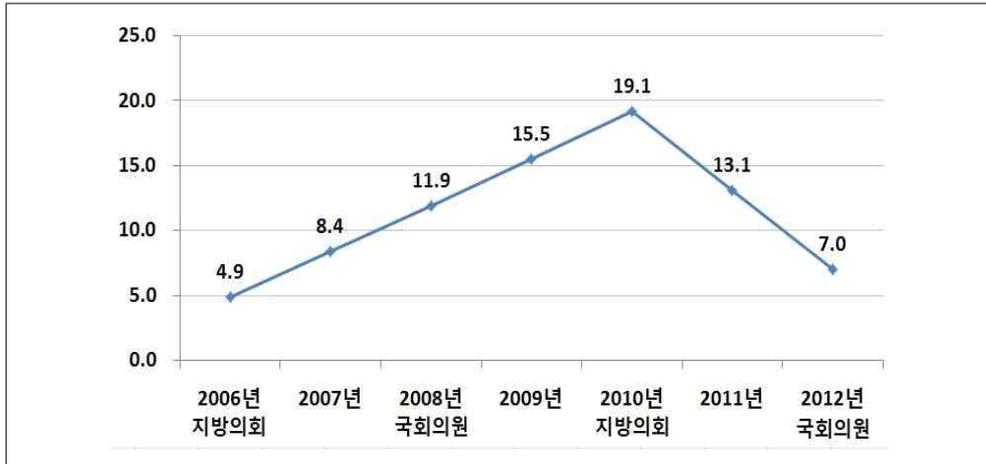
(단위: %)



[ III-7] 국회의원 여성 비율

당선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종선거에서의 여성공천자 비율 또한 참정권이 성별로 얼마나 평등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선거에서의 여성공천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성공천자 비율이 4.9% 수준에 그쳤으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해당 비율이 각각 11.9%와 19.1%로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성공천자 비율이 7.0%에 그쳐 이전에 비해 한 풀 꺾이긴 하였으나 선거의 여성공천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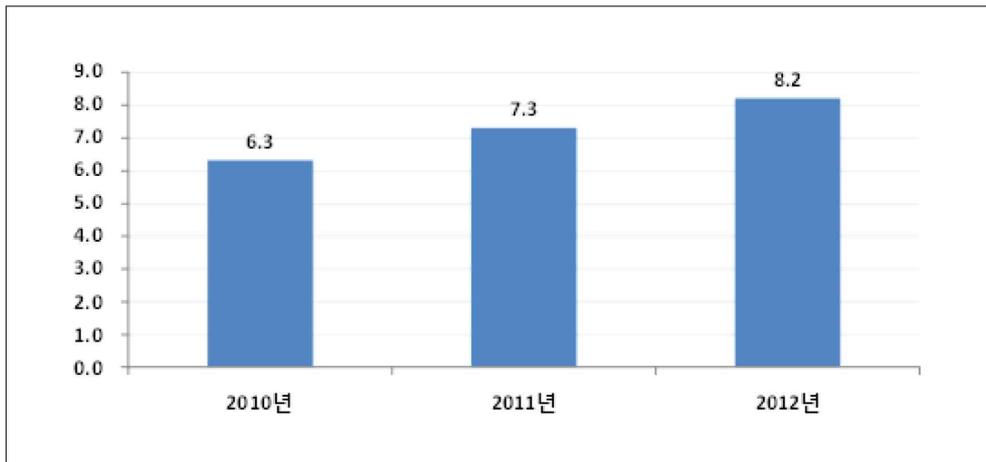


주: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던 2007, 2009, 2011년의 경우 직선보간법을 통한 추정값 적용

[ III-8] 선거의 여성공천자 비율

선출직 대표뿐만 아니라 비선거직에 관한 공무담임권이 얼마나 평등하게 잘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6.3%, 2011년 7.3%, 2012년 8.2%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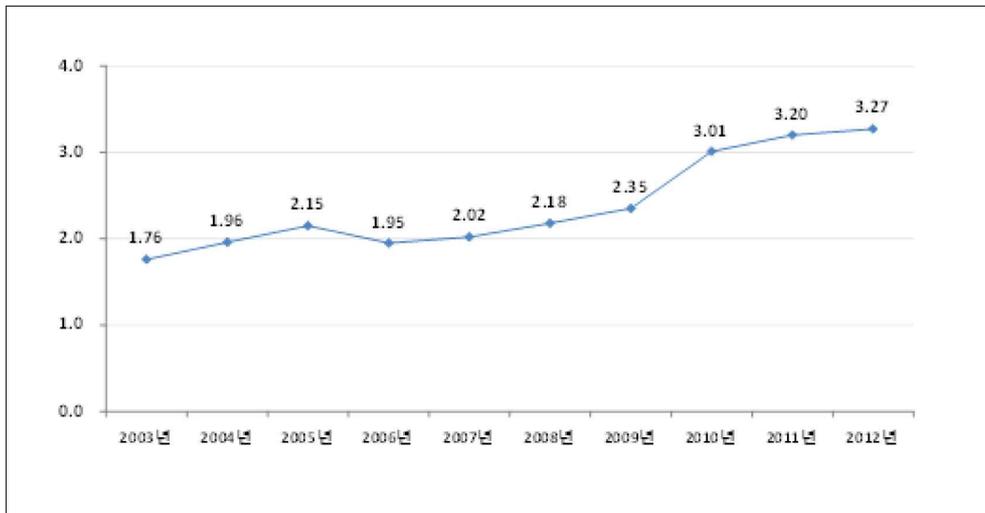


[그림 III-9] 관리직(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참정권 분야에 있어서 성별 측면에서의 평등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도 공직진출 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제도(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5%(2014년 이후 2.7%)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장애인의 진출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관점에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76% 수준에 그치던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은 2004년 1.96%, 2007년 2.02%로 2%대로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3.01%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1년과 2012년 각각 3.20%와 3.27%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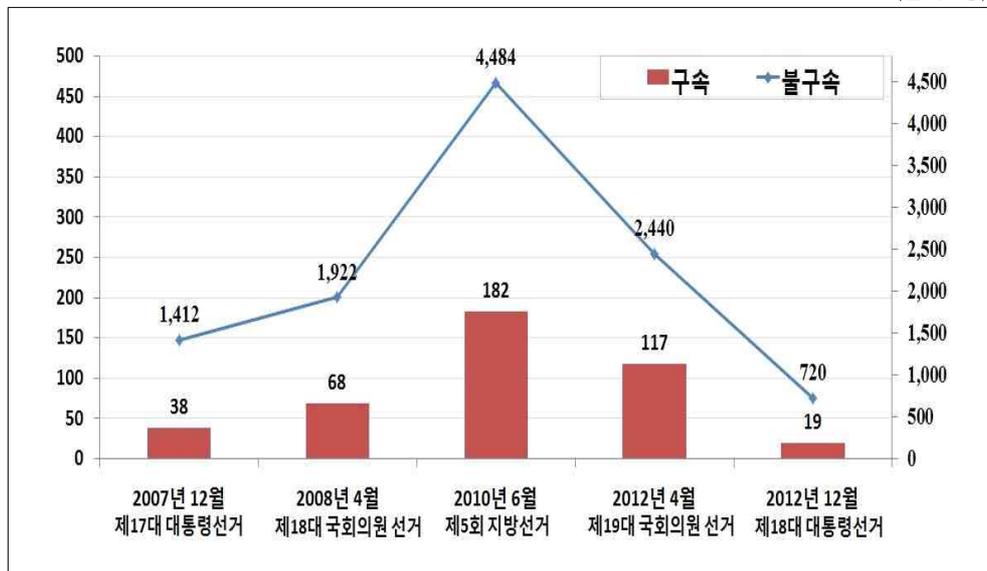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III-10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참정권과 관련해서 투명한 선거과정 또한 참정권 보장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와 관련하여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정량지표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선거과정과 관련해 선거사범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선거사범 공안사건 처리와 관련해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도별로 선거사범의 구속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 제17대 대

통령선거와 관련된 구속자는 38명,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관련된 구속자가 68명으로 나타났다. 차기 선거와 비교해보면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구속자는 19명으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와 비교해 감소하였으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관련 구속자가 117명으로 4년 전 17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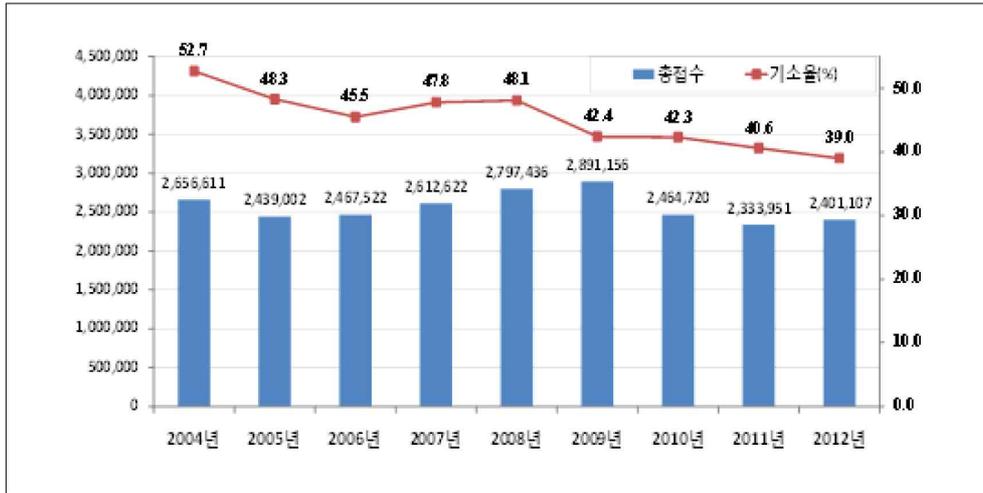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선거관리시스템)

[ III-11] 선거사범 공안사건 처리현황

선거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인원을 기준으로 2004년 2,656,611명, 2005년 2,439,002명 등 연인원 200만 명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2009년 2,891,156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0년 이후 240만 명 안팎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율에 있어서는 2004년 52.7%를 기록한 후 이후 낮아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2005년 48.3%, 2008년 48.1%, 2011년 42.3%를 기록한 후 2012년에는 39.0%로 40% 미만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소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



주: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최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기소율(%)=(기소/처분계)×100  
 자료: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 III-12] 선거사범 전체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 참정권 측정 지표 풀

여기서는 참정권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과 같은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을 염두하고 한국의 참정권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규약과 협약에 의하면 참정권은 개괄적으로 ‘참여정도’, ‘공정선거’, 및 ‘평등원칙’ 등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권리 특성(attributes)을 기초로 <표 III-38>과 같이 참정권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기본적인 지표는 UNDP 정치적 자유지수(PFI)를 구성하는 하위영역(개인의 안전, 법의 지배,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 기회평등) 중 정치참여와 기회평등 영역을 중심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참정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된 과제를 기초로 구축하였다.

< III-38 > 참정권 지표 풀

지표 풀(Pool)	자료원	비고
투표율 (무효투표율)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nternational IDEA)	
취약계층 참정권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대검찰청 (선거관리시스템),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국회의원 여성비율		
선거의 여성공천자 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각 년도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현황과 지표

가. 사회보장권 현황과 지표 풀

1) 사회보장권 현황 및 추이

사회보장권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행 사회보장기본법<sup>61)</sup>을 살펴보았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법 1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보장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곤’과 ‘불평등’ 측

6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면에서 상대빈곤율,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고용보험 적용률,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시장소득의 중위 소득 50%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6년 16.6%, 2007년 17.3%, 2008년 17.5%, 2009년 18.1%로 점진적으로 증가되었으나 2010년 18.1%로 약간 감소하였다, 2010년 대비 2011년 18.3%로 약간 높아졌으나 2012년 17.6%로 다시 낮아졌다.

< 표 III-39 > 상대적 빈곤율(2006-2012)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가구	16.6	17.3	17.5	18.1	18.0	18.3	17.6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2.9%, 2009년, 3.2%, 2010년 2.9%, 2011년 2.7%, 2012년 2.6%로 나타나 연도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40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2008-2012)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2.9	3.2	2.9	2.7	2.6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주: 총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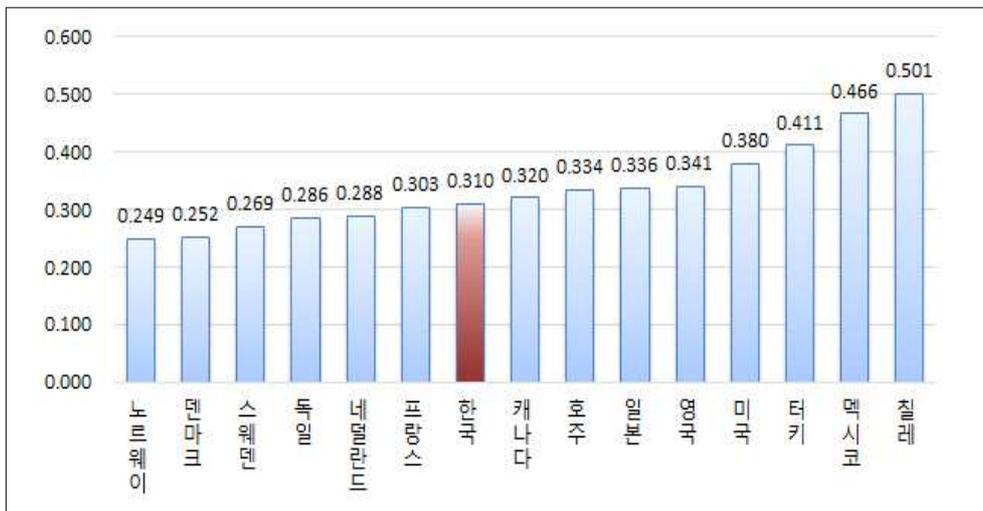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시장소득 기준 2006년 0.330, 2007년 0.340, 2008년 0.344, 2010년 0.341, 2011년 0.342, 2012년 0.338로 나타났다. 또한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6년 0.306, 2007년 0.312, 2008년 0.314, 2009년 0.314, 2010년 0.310, 2011년 0.311, 2012년 0.307로 나타났다.

< III-41 > 지니계수 현황 및 추이(2006-201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시장소득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가처분소득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의 국가 간 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미국, 터키, 멕시코, 칠레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 값은 0.310으로 나타났다.



자료: OECD.

[그림 III-13] OECD 주요 국가별 지니계수(2010)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2006년 6.65배, 2007년 7.09배, 2008년 7.38배, 2009년 7.70, 2010년 7.74배, 2011년 7.86배로 점진적으로 증가되었다.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 7.51배로 약간 감소하였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 5분위 배율로 살펴보면, 2006년 5.38배, 2007년 5.60배, 2008년 5.71배, 2009년 5.75배로 점진적으로 증가되었다. 2010년 5.66배, 2010년 5.73배. 2011년 5.73배, 2012년 5.54배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 &lt; III-42 &gt; 5분위 배율 지수 현황 및 추이(2006-201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시장소득	6.65	7.09	7.38	7.70	7.74	7.86	7.51
가처분소득	5.38	5.60	5.71	5.75	5.66	5.73	5.54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률이 2007-2012년 동안 85% 이상이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큰 차이는 없었다. 정규직의 고용보험률은 2007-2012년 동안 93%~95%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률은 51%~57%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 &lt;표 III-43&gt;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전체 근로자	85.2	95.0	85.5	95.2	85.9	96.2	86.0	96.8	85.1	96.3	87.5	97.3
정규직 근로자	93.0	95.8	94.0	95.9	95.6	97.0	95.7	97.6	94.9	96.8	95.4	97.6
비정규직 근로자	52.1	90.9	51.3	91.5	51.9	92.3	52.1	93.1	53.5	94.2	57.8	96.9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회보험 가입률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2010-2013년 기간동안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인 경우 정규직인 2013년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은 50% 미만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 III-44>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 현황 및 추이  
(단위: %, %p)

	근로형태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증감 (전년동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감 (전년동월)
2010.08	임금근로자	65.0	0.3	67.0	-0.1
	정규직	78.4	-0.5	79.5	-0.3
	비정규직	38.1	-0.1	42.1	-1.3
2011.08	임금근로자	65.1	0.1	68.3	1.3
	정규직	79.1	0.7	80.9	1.4
	비정규직	38.2	0.1	44.1	2.0
2012.08	임금근로자	66.5	1.4	69.9	1.6
	정규직	80.3	1.2	82.2	1.3
	비정규직	39.0	0.8	45.4	1.3
2013.08	임금근로자	67.6	1.1	71.3	1.4
	정규직	81.2	0.9	83.5	1.3
	비정규직	39.2	0.2	46.2	0.8

자료: 통계청(각 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근로자 대비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 2) 사회보장권 지표 풀

지금까지의 사회보장권 현황 및 추이를 바탕으로 상대빈곤율,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지니 계수, 소득5분위 배율, 고용보험 가입률,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로 지표 풀을 구성하였다.

<표 III-45> 사회보장권 지표 풀

사회보장권	자료원	비고
상대빈곤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5분위 배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고용보험 가입률	고용노동부,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나. 노동권 현황과 지표 풀

### 1) 노동권의 현황과 추이

우리나라 노동권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노동권에 속하는 세부 권리를 보면, 세계인권선언에서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보장과 필요한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sup>62)</sup>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좀 더 세분해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동등한 승진기회’, ‘합리적인 노동시간, 휴식, 여가 및 정규유급휴일, 유급 공휴일’과 관련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sup>63)</sup> 이 외에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과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강제근로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관련 국제 규약 및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의 우리나라 현황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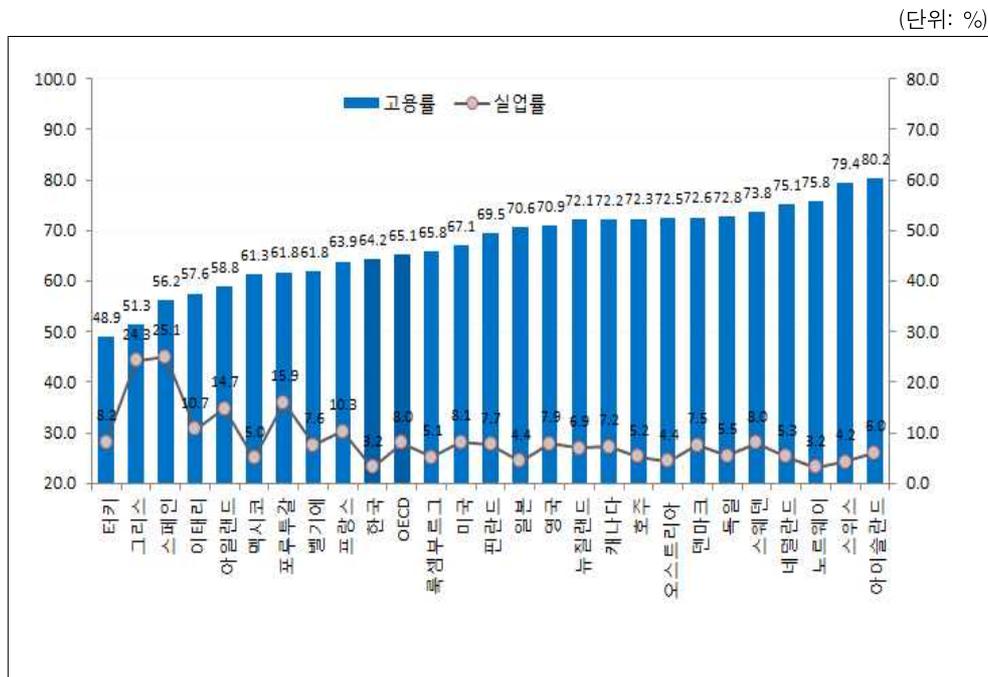
먼저 완전고용 달성과 관련된 주요 지표인 고용률을 보면 우리나라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00년 65.4%에서 2007년 66.5%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1년에는 63.9%, 2012년 64.2%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고용률 수준은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22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80.2%이고 그 다음은 스위스 79.4%, 노르웨이 75.8%이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41.0%로 고용률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터키(48.9%), 그리스(51.3%) 순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25-54세 주된 노동력과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각각 74.7%, 63.1%로 OECD 평균(각각 75.6%, 55.6%)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 이에 비해 15-24세 청년층 고용률은 24.2%로 OECD 평균 39.7%보다 훨씬 낮아서, 이들 청년층집단의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sup>64)</sup> 성별로는 남성이 2012년 15-64세 74.9%인데 비해서 여성은

62) 정인섭(2008), 『국제인권조약집』,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p.654 재인용.

63)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p.674.

53.5%에 불과했고,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도 35.5%로 상당히 낮았다.

또한 실업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3.7%에서 연도별 등락을 보여 2007년 3.3%, 2011년 3.4% 그리고 2012년에는 3.2%이었다. 이와 같은 실업률은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2년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8.0%이고, 그리스와 스페인 실업률은 각각 24.3%, 25.1%에 달했다.<sup>65)</sup>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실업률은 외국에 비해서 낮으나, 청년층 취업난으로 15-24세 실업률은 9.0%, 25-29세 6.6%로 다소 높았다.



자료: OECD(2013), Employment Outlook 2013, Table A, B, pp.238-239

[ III-14] OECD 회원국 고용률과 실업률(2012년)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계비를 벌 수 있는 상황은 전체근로자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근로자 비율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비율을 보면 2004년(8월 기

64) OECD(2013), Employment Outlook 2013., Table B. p.240.

65) OECD(2013), Table A. p.238.

준) 37.0%에서 연도별로 등락을 하면서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2007년 35.9%, 2011년 34.2% 그리고 2012년에 33.3%이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로 조건을 보면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로 임금근로자 64개월의 44% 수준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의 55.8%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 40.0%(정규직 81.3%), 건강보험 46.8%(83.2%), 고용보험 43.9%(80.5%)로 상당히 낮았다.<sup>66)</sup>

< III-46 >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구성비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32.6	37.0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남성	27.6	32.2	31.5	30.4	31.5	28.8	28.2	27.1	27.8	27.2
여성	39.5	43.7	43.7	42.7	42.1	40.8	44.1	41.8	42.8	41.5

주: 각 연도 8월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KOSIS.

사회권 규약에 의하면 높은 고용수준 유지와 함께 직업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벌 수 있는 노동자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근로자가 받는 최저 임금수준을 결정, 공시하여 사용주가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이에 따라 동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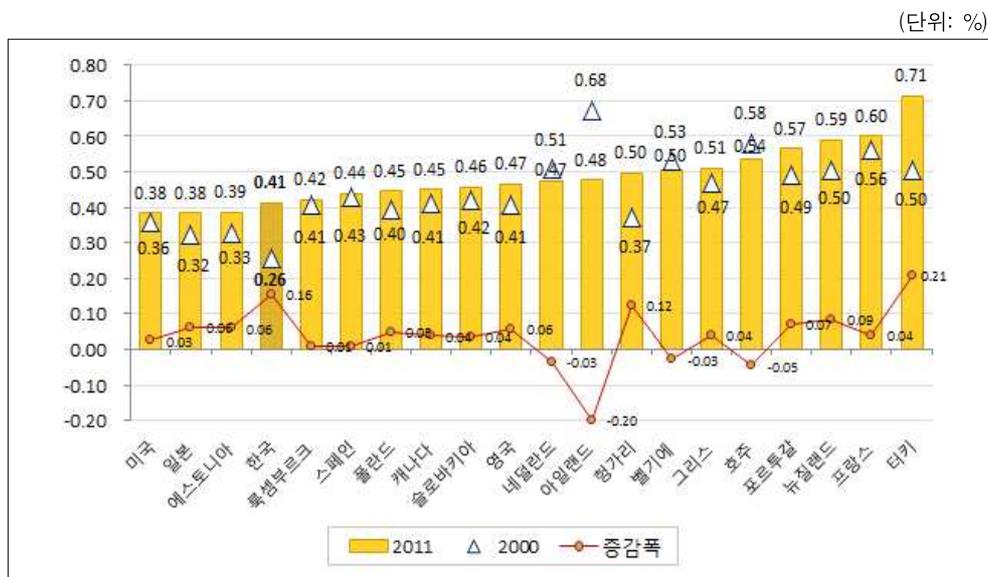
최저임금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 상대비(relative ratio)이다.<sup>67)</sup>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도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비를 보면 2000년 0.2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0.33, 2008년 0.39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0.41이었다.<sup>68)</sup> 2011년 OECD 회원국 상대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분석대상 20개 회원국 중에서 미국, 일본, 에스

66) 통계청, KOSIS.

67) 평균임금으로는 풀타임근로자의 중위(median)임금을 주로 사용함. 특히 국제비교를 할 경우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의 국가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평균(mean)임금보다 중위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68)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상대비는 2010년 0.407, 2011년 0.406 그리고 2012년 0.413임.

토니아 다음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비가 낮은 국가이었다. 이에 비해 터키, 프랑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호주 등은 상대비가 0.50 이상이었다. 2001~11년 동안 상대비 변화를 보면 터키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이었다. 아일랜드,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에는 지난 10년 동안 상대비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상대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 기준으로 여전히 상대비가 낮은 국가에 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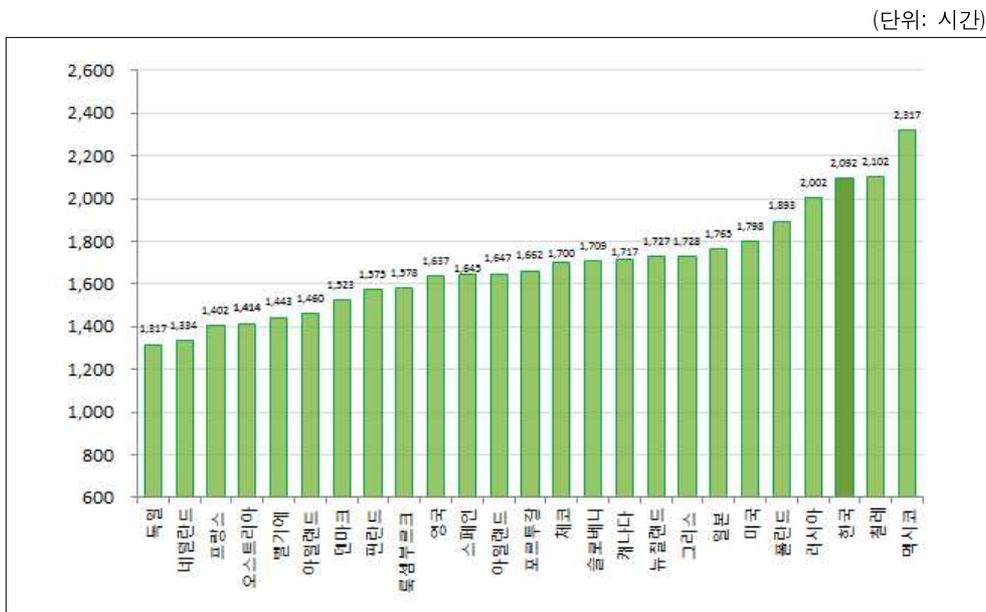
자료: OECD.Stat, Data extracted on 24 Sep 2013.

[ III-15] OECD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비(2011년)

또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일반시민 278명을 최저임금의 지킴이로 위촉하여 청소·경비·용역업체, 비정규 근로자,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1,647개소가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이행상황 점검,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장시간노동은 개별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함과 동시에 작업장의 안전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는 근로시간협약, 주말협약, 야간근로협약, 심야근로협약 등 건강한

근로시간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007년 2,090시간, 2011년 2,116시간 그리고 2012에 2,092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sup>6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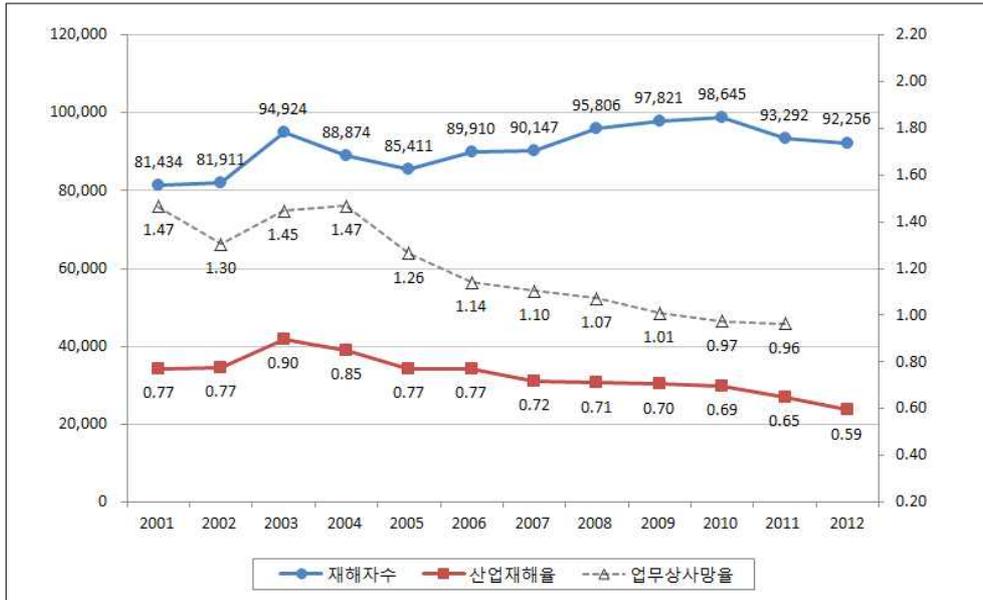
자료: OECD.Stat, Data extracted on 24 Sep 2013.

### [ III-16] OECD 주요국의 연간 실근로시간(2012년)

사회권 규약에 의하면 각국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노동권은 산업안전관련 지표를 통해서 준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 수는 2001년 81천명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10년 99천명이었다. 2010년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여 2011년 93천명 그리고 2012년에는 92천명이었다. 그러나 재해율은 2000년대 전반기에 0.90%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0.59%이었다. 업무상 사망만인율(fatal injury rate)도 2004년 1.47%에서 2011년 0.9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69) OECD(2013), 『Employment Outlook 2013』, Table K. p.256.

(단위: 명, %, ‰)



자료: 고용노동부(2013), 「산업재해현황」, 통계청, KOSIS.

[ III-17] 우리나라 산업재해자수 및 재해율

각국의 산업안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사망만인율을 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0.96‰인데 비해서, 영국 0.05‰, 일본 0.19‰, 미국 0.35‰, 2008년 기준 노르웨이 0.20‰, 스페인 0.33‰, 이태리 0.40‰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러시아 1.1‰(2008년)보다는 낮았다. 또한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말레이시아(1.08‰), 태국(0.91‰), 미얀마(0.86‰), 카자흐스탄(0.82‰) 등 일부 국가와 유사하고 인도(11.7‰)보다는 훨씬 낮았으나,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대체로 사망만인율이 높았다.<sup>70)</sup>

특히 유해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자수가 2008년 5,108명에서 2012년 6,29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만인율이 1.63‰로 전체근로자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국의 제2차 정례인권검토(UPR)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진전되었으나, 이들

70) 말레이시아는 2002년, 태국, 인도는 2007년, 미얀마, 카자흐스탄은 2008년 기준 자료임. ILO(2013), LABORSTA Labour Statistics Database.

종사형태가 다양하여 직종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sup>71)</sup>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국에 310명의 산업 안전·복지 감독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감독관들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의 반대로 인해 감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차별 현황을 보면 차별은 통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차별진정 건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2년 말까지 고용차별 진정 건수는 4,677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19건에서 2005년 503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578건, 2012년 774건으로 이었다. 고용차별 유형별로 보면 입직구에 해당하는 모집·채용차별이 전체 건수의 41.7%로 가장 많았다. 모집·채용차별 진정 건수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200~250건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해고, 정년, 배치, 정년, 승진 등의 순이었다.

#### < III-47 > 차별 진정 건수 추이

(단위: 건)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관련	정년	퇴직	해고	기타	소계
2001년	4	0	0	2	9	0	1	2	1	19
2005년	238	17	6	36	62	3	10	45	86	503
2010년	230	33	5	16	75	32	18	43	126	578
2011년	189	28	7	14	73	14	16	49	90	480
2012년	263	27	11	21	148	58	23	44	179	774
2001 ~2012	1,925 (41.2)	231 (4.9)	56 (1.2)	177 (3.8)	694 (14.8)	174 (3.7)	142 (3.0)	444 (9.5)	834 (17.8)	4,677 (1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2), 『2012년 연차보고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은 2007년부터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신청사건을 처리하고 있다.<sup>72)</sup>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2007년 145건이었고,

71)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2012),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Republic of Korea, Fourteenth session, Geneva, 22 October - 5 November 2012.

72)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공공부문은 근로자 1인 이상 포

2010년 152건 그리고 이후 감소 추이를 보여 2012년 78건이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처리건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건수에 포함시키면 고용형태별 차별 진정 건수는 훨씬 많아진다.<sup>73)</sup>

한국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상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와 함께 형사처벌제도를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인권, 고용, 노사관계, 노동행정, 근로기준, 사회보장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중에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조직률 현황을 보면 1977년에 단위 노동조합 수는 538개, 노동조합 조직률은 25.4%이었다. 노동조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 7,861개에 달했으나, 그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4,420개, 5,120개였다. 노동조합조직률은 1977년 25.4%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1990년 18.4%, 그리고 2010년 9.8%, 2011년 10.1%이었다.

< III-48> 연도별 노동조합원 및 조직률

(단위: 천 명, %)

		1977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조합원	전체	955	948	1,887	1,527	1,506	1,643	1,720
	남성	635	600	1,385	1,221	1,183	1,272	1,328
	여성	320	348	502	306	324	371	392
조직대상근로자		3,752	4,516	10,264	12,701	14,692	16,804	17,090
조직률		25.4	21	18.4	12	10.3	9.8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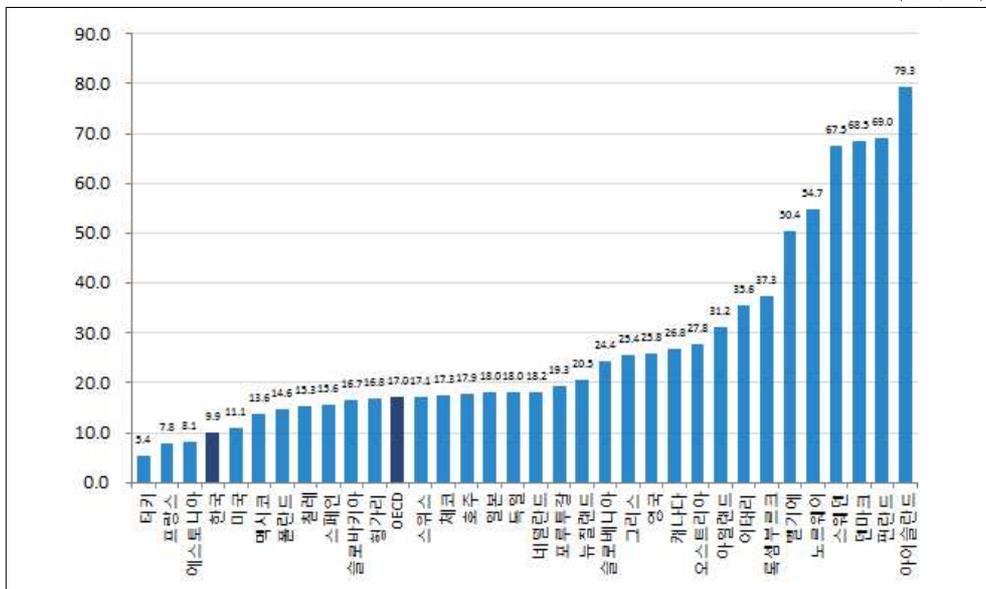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2013), 『고용노동백서』, p.678.

합 사업장)에 근무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됨.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08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0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음.

73) 중앙노동위원회(2012), 『노동위원회 브리프』, 통권 51호, p.90.

우리나라와 다른 OECD 회원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을 살펴보면 [그림 II-18]과 같다. OECD 평균 노동조합조직률은 17.0%이고, 아이슬란드를 비롯하여 북유럽 국가 즉,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노동조합조직률이 55~79%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다. OECD 평균 수준인 국가로는 스위스, 체코, 호주, 일본 그리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전체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5.4%), 프랑스(7.8%), 에스토니아(8.1%)에 이어서 네 번째로 조직률이 낮은 국가에 속했다.

(단위: %)



주: 기본적으로 2012년 기준임. 그러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는 2011년,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는 2010년, 체코 2009년, 헝가리,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는 2008년 자료임.

자료: 고용노동부(2013), 『고용노동백서』, p.678.

[ III-18] OECD 회원국 노동조합조직률

## 2) 노동권 측정 지표 풀

본 연구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개념 및 속성 그리고 정부 책무 등을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권과 관련된

협약 등의 규정을 기초로 노동권 관련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규약과 협약에 의하면 노동권은 개괄적으로 ‘근로의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공정한 임금과 동등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확보’, ‘이 외에도 결사 자유 및 단체교섭권’ 등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권리 특성(attributes)을 기초로 <표 III-49>와 같이 노동권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기본적인 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지표체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정지표와 성과지표 중심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노동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된 과제를 기초로 구축하였다.

< III-49 > 노동권 지표 풀

지표 풀(Pool)	자료원	비고
<b>① 고용수준</b>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b>② 고용안정</b>		
비정규근로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특별조사』	
<b>③ 임금, 근로조건 및 안전</b>		
<적정임금 및 소득>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자료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자료	
<근로시간>		
연간 실근로시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b>④ 고용평등</b>		
고용차별 진정 건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
성별 임금격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b>⑤ 노사관계</b>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노동부 내부행정자료	
단체교섭 적용률	ILO, 한국 통계 없음	
ILO 핵심협약 중 단결권, 단체협상권 협약 비준 여부	ILO(국제노동기구)	*

## 다. 건강권(환경권)

### 1) 건강권, 환경 현황 및 추이

건강권과 관련한 1946년 세계보건기구 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제25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강권의 세부 내용은 사회권 관련 건강권이다. 사회권 관련 건강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의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다<sup>74)</sup>. 즉,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적 및 사회적 여건 정도에 따라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건강권 수준의 상이성이 존재할 수 있어 사회적 건강권은 우리나라의 쟁점 이슈가 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 부담률, 활동 의사 수, 공공의료비 비중으로 우리나라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건강보험보장률 및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 부담률<sup>75)</sup>을 살펴보면, 2006년 건강보험보장률은 2006년 64.5%, 2007년 65.0%, 2008년 62.6%, 2009년 65.0%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 63.6%, 2011년 63.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 부담률의 경우 2006년 22.1%, 2007년 21.3%, 2008년 21.9%, 2010년 20.6%, 2011년 20.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6년 13.4%, 2007년 13.7%, 2008년 15.5%로 점진적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 13.7%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15.8%, 2011년 17.0%로 다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74) 대한민국 정부(201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2016』, pp.130-131.

75) 본인부담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text{인부담률} = \frac{\text{법정본인부담금} + \text{비급여본인부담금}}{\text{건강보험급여비} + \text{법정본인부담금} + \text{비급여본인부담금}} \times 100$$

건강보험보장률은 건강보험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text{건강보험보장률} = \frac{\text{건강보험급여비}}{\text{건강보험급여비} + \text{법정본인부담금} + \text{비급여본인부담금}}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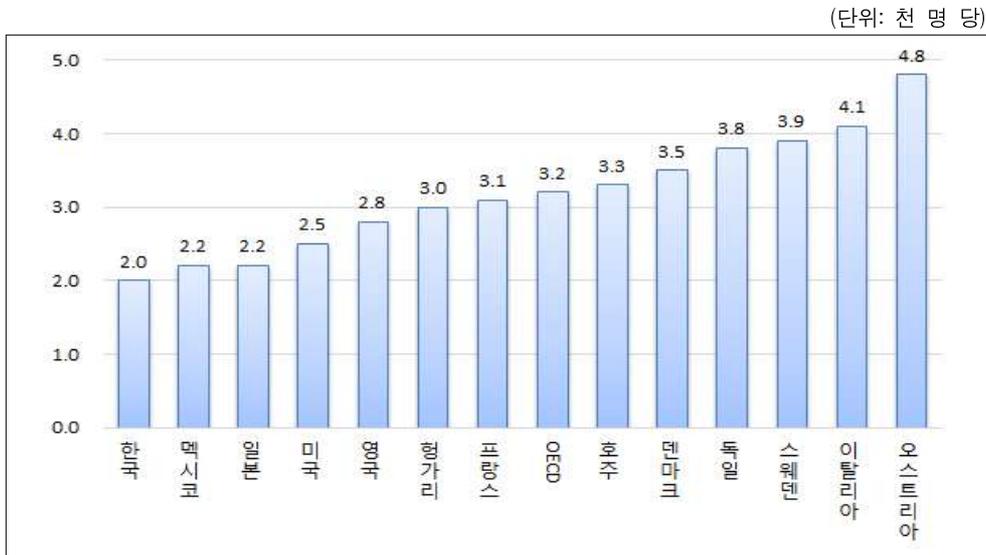
< III-50 > 건강보험/법정보인 부담률/비급여 본인 부담률(2006-2011)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강보험보장률	64.5	65.0	62.6	65.0	63.6	63.0
법정 본인 부담률	22.1	21.3	21.9	21.3	20.6	20.0
비급여 본인 부담률	13.4	13.7	15.5	13.7	15.8	17.0

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1),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2. 보도자료

주: 본인부담상한제 및 임신출산 진료비 현금지급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율

2011년 인구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 측면에서 국가 간 통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명으로 OECD 평균인 3.2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의 그림에 나타난 OECD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그림 III-19] OECD 주요국의 인구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2011년)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를 살펴보면, 2009년 78,675명, 2010년 78,325명, 2011년 84,544명, 2012년 86,761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 III-51 > 활동 의사 수(2009-201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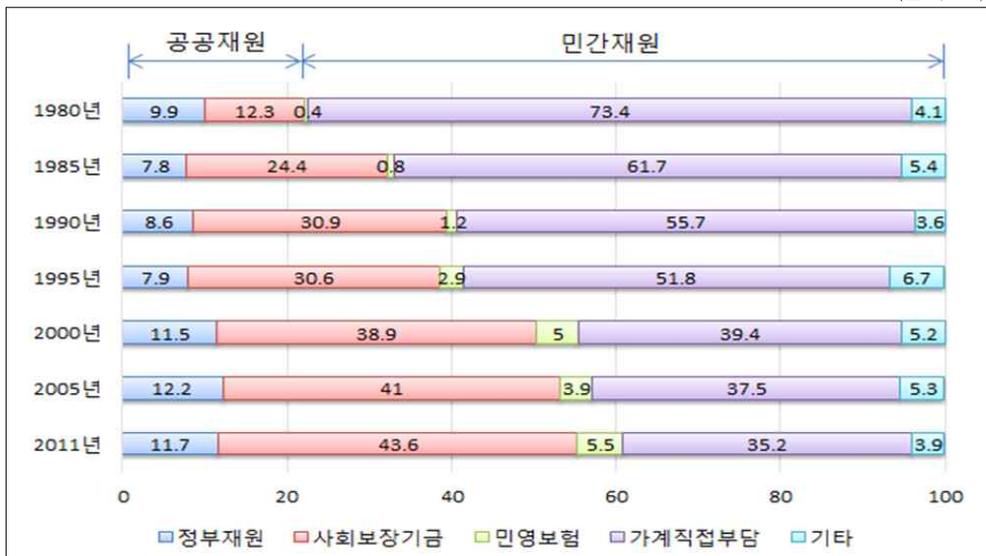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활동 의사 수	78,675	78,325	84,544	86,76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지역별의료이용현황

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1980-2011년 공공 의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재원과 사회보장 기금을 합친 공공재원 비율은 1980년 22.2%, 1985년 32.2%, 1990년 39.5%, 1995년 38.5%, 2000년 50.4%, 2005년 53.2%, 2011년 55.3%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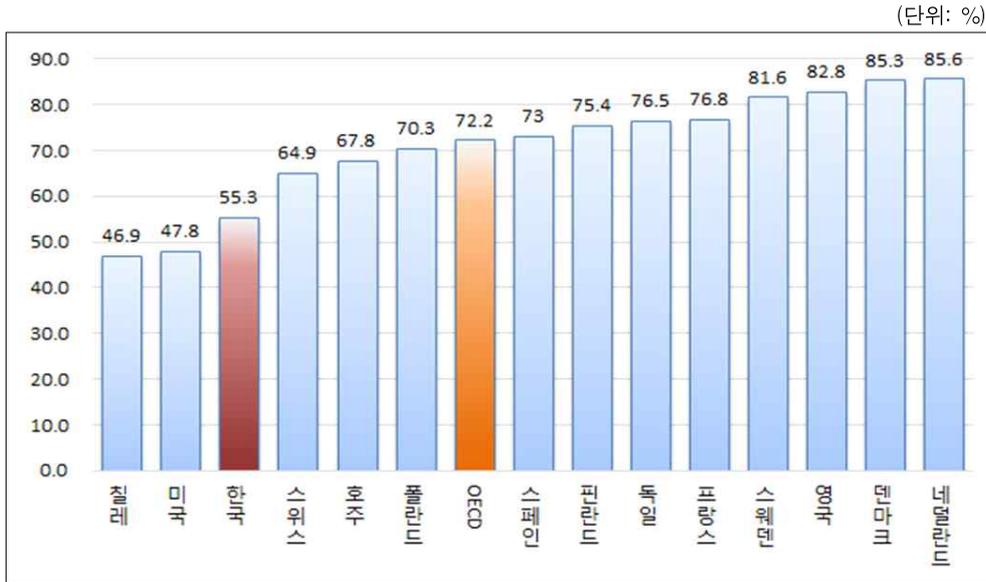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1),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주: 공공재원(정부재원, 사회보장기금), 민간재원(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 기타), 기타에는 민간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포함됨.

[그림 III-20] 공공 의료비 비중(1980-2011)

그러나 2011년 OECD 국가 간 공공 의료비 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인 72.2% 보다 낮은 55.3%에 그치고 있다. 다음의 그림에 나타난 국가 중 칠레와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의 공공 의료비 비중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 III-21]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2011년)

건강권 중 우리나라의 개인 건강 수준 및 건강검진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 건강 수준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19세 이상 남성과 여성 모두 1998년과 2005년까지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좋은+매우 좋은)한 비율이 증가추세이지만 2007년에 급격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다시 약간 반등하다가 2010년에는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며 2011년 36.0%, 2012년 33.1%만이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은 남성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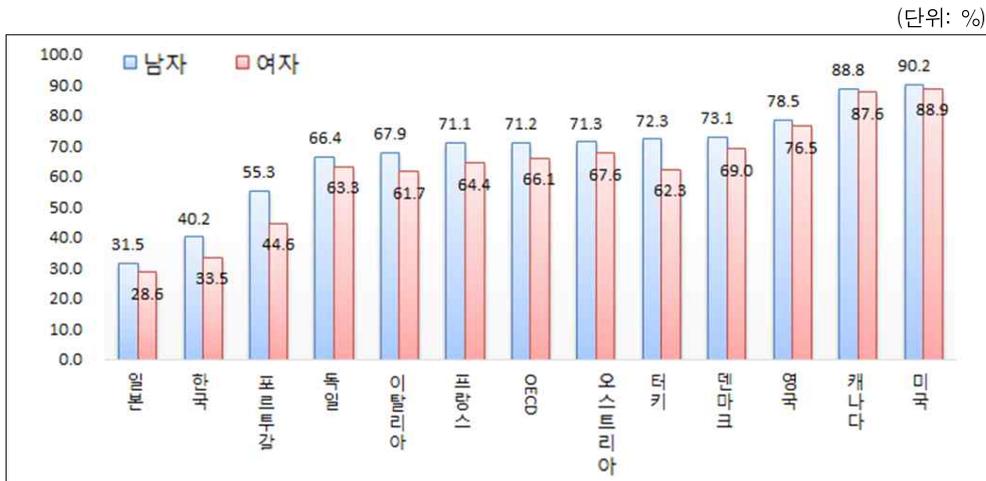
<표 III-52> 주관적 건강 인지율(1998-2012)

(단위: %)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42.5	44.7	46.8	32.4	42.8	43.9	36.6	36.0	33.1
남성	46.6	50.2	52.0	36.2	47.1	47.7	40.3	38.9	38.4
여성	38.9	40.4	41.7	28.7	38.7	40.2	32.9	33.2	28.3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을 비교하면, OECD 평균인 남성 비율은 71.2%, 여성은 66.1%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은 40.2%, 여성은 33.5%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 III-22] 주요 국가별 주관적 건강상태

기대수명은 2003년 77.44세, 2005년 78.63세, 2007년 79.56세, 2009년 80.55세, 2011년 81.20세, 2012년 81.44세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되어 2012년 남성은 77.95세인 반면 여성은 84.64세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수명은 2003년 67.8세에서 2007년에는 71세로 증가되었다.

<표 III-53>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2003-2012)

		2003	2005	2007	2009	2011	2012
기대여명	계	77.44	78.63	79.56	80.55	81.20	81.44
	남자	73.86	75.14	76.13	76.99	77.65	77.95
	여자	80.81	81.89	82.73	83.29	84.45	84.64
건강수명		67.8(2002)	-	71.0	-	-	-

자료: 기대수명: 통계청(각 연도), 생명표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률이 전반적으로 2007-2012년 기간 동안 증가 추세에 있다.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2012년 70% 수준에 도달했지만 암검진 및 영유아 건강검진인 경우 2012년 각기 39.4%, 55.4%인 것으로 나타났다.

< III-54> 건강검진 수검률(2007-2012)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건강검진	60.0	65.3	66.0	68.2	72.6	72.9
암검진	35.4	40.3	45.3	47.8	50.1	39.4
생애전환기건강진단	46.1	53.2	56.1	65.2	70.7	71.7
영유아건강검진	-	36.7	40.7	50.1	53.8	55.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건강검진통계연보』.

주: 암검진의 경우 대장암 검진주기 변경으로 인하여 2012년 전년대비 수검률 감소

최근 보건 환경의 문제가 건강권의 쟁점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sup>76)</sup> 우리나라의 환경성 질환 유병율과 생활소음도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1998-2011년 천식 유병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1.2%, 2001년 1.4%, 2009년 2.8%, 2011년 3.0%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2011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2.8%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여성의 천식 유병율이 남자의 천식 유병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천식 유병률(1998-2012)

(단위: %)

	1998	2001	2005	2009	2011	2012
전체	1.2	1.4	2.1	2.8	3.0	2.8
남성	1.1	1.4	2.1	2.5	2.6	2.8
여성	1.3	1.3	2.1	3.0	3.4	2.9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76) 대한민국 정부(20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 1998년 1.2%, 2001년 2.7%이었으나, 2005년 8.3%, 2009년 11.9%로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2011년에는 14.5%, 2012년 15.7%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알레르기성 비염 유병율 증가 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56 > 알레르기성 비염(1998-2012)

(단위: %)

	1998	2001	2005	2009	2011	2012
전체	1.2	2.7	8.3	11.9	14.5	15.7
남자	1.0	2.3	7.0	10.6	12.5	14.1
여자	1.5	3.1	9.7	13.3	16.6	17.1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지난 4년간 환경 소음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 주거지역 낮에는 65dB, 밤에는 55dB인 환경기준치로 살펴보면, 2012년 낮에는 광주와 대전만이 환경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고 밤에는 대전만이 환경기준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57 > 주요 대도시 환경소음도(2009-2012)

(단위: dB)

	2009		2010		2011		2012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서울	68	64	68	65	68	65	68	65
부산	67	63	67	63	67	62	67	62
대구	68	64	67	63	67	62	68	63
인천	67	63	66	63	66	62	67	63
광주	63	58	64	59	64	59	63	58
대전	62	56	62	56	61	55	61	55

주: 도로변 주거지역 환경기준(낮: 65dB, 밤: 55dB). 낮(6:00-22:00), 밤(22:00-6:00).

자료: 환경부(각 연도), 『환경통계연감』.

2) 건강권 지표 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건강권 관련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률, 활동의사 수, 공공의료비 비중, 환경성 질환유병률, 생활소음도를 건강권 지표 풀로 구성하였다.

< III-58> 건강권 지표 풀

세부 지표 풀	자료원	비고
주관적 건강상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대수명/건강수명	통계청	
건강검진 수검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건강보험보장률·의료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활동의사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현황』	
공공의료비 비중	보건복지부,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환경성 질환유병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라. 교육권(문화권)

1) 교육권, 문화 현황과 추이

교육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31조 1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교육권 관련 세부적 내용으로는 ‘교육내용 정비’,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사회적 취약 계층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자’는 데 있다.<sup>77)</sup>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권 현황 및 취학을, 학교 중퇴자 비율, 평생교육 참여비율, 사교육비 비율, 장애인 대비 특수학교 규모를 살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권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유치원인 경우 2000-2012

77) 대한민국 정부(20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pp.83-93.

년 기간 동안 증가 추세이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선택사항이지만 2000년 26.2%에서 최근 2012년 44.0%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 기간 동안에는 큰 변화 없이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경우에도 큰 변화 없이 90% 수준이며 최근 2012년 92.6%로 나타났다. 전체 고등교육 기관의 경우 2000년 52.5%, 2005년 65.1%, 2006년 69.4%, 2008년 70.5%로 증가 추세로 나타나다가 2009년부터 7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2012년 68.4%로 낮아졌다.

< III-59 > 취학률(2000-2012)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치원	26.2	31.1	33.9	36.2	37.5	39.5	40.2	40.9	44.0
초등학교	97.2	98.8	98.8	99.3	99.0	97.9	99.2	99.1	98.6
중학교	95.0	94.6	96.2	96.0	93.2	96.2	97.0	96.7	96.1
고등학교	89.4	91.0	90.3	91.3	90.0	92.5	91.5	91.9	92.6
전체고등 교육기관	52.5	65.1	66.7	69.4	70.5	70.4	70.1	71.0	68.4

자료: 교육부(2012), 『교육통계연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1980-2011년 기간 동안 학업중단율이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1990년 학업중단율은 0.1%이나 2000년에 0.4%, 2005년 0.5%, 2010년 0.6%, 2011년 0.6%로 나타났다.

< 표 III-60 > 초등학교 학업중단율(1980-2011)

(단위 %)

	초등학교								
	재적학생수			유예 및 면제자			학업중단율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1980	2,912,620	2,745,382	5,658,002	1,996	1,860	3,856	0.1	0.1	0.1
1985	2,449,724	2,357,028	4,856,752	862	774	1,636	0.0	0.0	0.0
1990	2,506,470	2,362,050	4,868,520	726	573	1,299	0.0	0.0	0.0
1995	2,035,924	1,869,239	3,905,163	686	533	1,219	0.0	0.0	0.0
2000	2,129,416	1,890,575	4,019,991	8,559	6,175	14,734	0.4	0.3	0.4
2005	2,123,107	1,899,694	4,022,801	10,225	8,178	18,403	0.5	0.4	0.5
2010	1,723,894	1,575,200	3,299,094	9,967	8,869	18,836	0.6	0.6	0.6
2011	1,634,825	1,497,652	3,132,477	10,251	8,912	19,163	0.6	0.6	0.6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우리나라의 중학교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1980-2011년 기간 동안 학업중단율의 큰 차이는 없고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61 > 중학교 학업중단율(1980-2011)

(단위 %)

	중학교								
	재적학생수			유예 및 면제자			학업중단율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1980	1,310,646	1,161,351	2,471,997	18,487	12,141	30,628	1.4	1.0	1.2
1985	1,439,842	1,342,331	2,782,173	16,884	12,526	29,410	1.2	0.9	1.1
1990	1,172,529	1,103,222	2,275,751	13,221	9,127	22,348	1.1	0.8	1.0
1995	1,278,180	1,203,668	2,481,848	12,874	11,693	24,567	1.0	1.0	1.0
2000	971,830	888,709	1,860,539	9,787	9,310	19,097	1.0	1.0	1.0
2005	1,063,730	946,974	2,010,704	8,610	7,059	15,669	0.8	0.7	0.8
2010	1,037,038	937,760	1,974,798	9,787	9,079	18,866	0.9	1.0	1.0
2011	999,789	910,783	1,910,572	9,241	8,570	17,811	0.9	0.9	0.9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업중단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1980년, 1985년 2.5%-3.0% 수준이며 최근 2010년, 2011년 거의 2.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III-62 > 고등학교 학업중단율(198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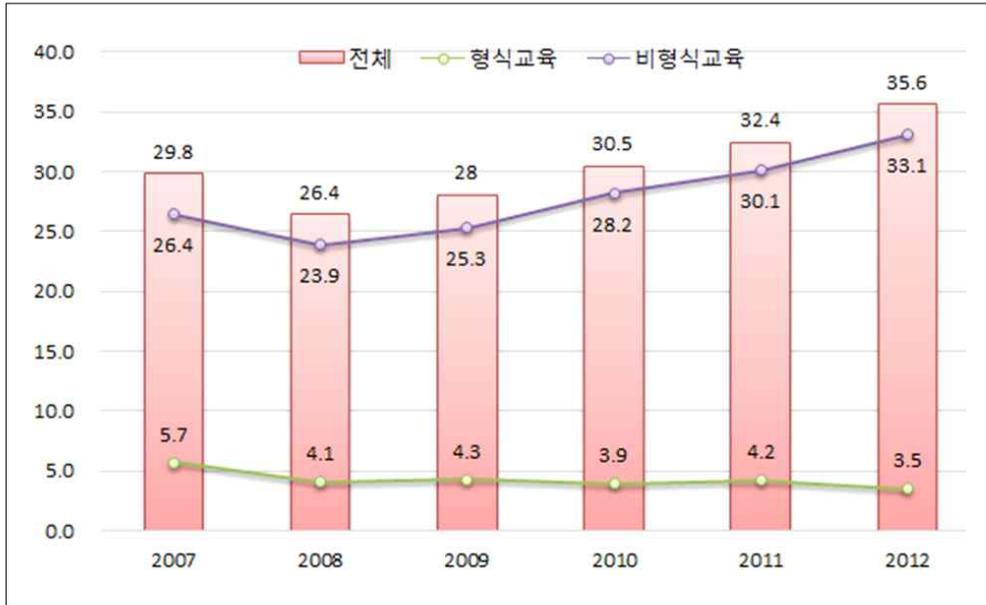
(단위 %)

	고등학교 학업중단율(1980-2011)								
	재적학생수			유예 및 면제자			학업중단율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1980	974,398	722,394	1,696,792	32,024	11,064	43,088	3.3	1.5	2.5
1985	1,160,571	992,231	2,152,802	43,000	20,841	63,841	3.7	2.1	3.0
1990	1,210,627	1,073,179	2,283,806	30,852	11,690	42,542	2.5	1.1	1.9
1995	1,119,284	1,038,596	2,157,880	33,657	20,086	53,743	3.0	1.9	2.5
2000	1,078,140	993,328	2,071,468	31,244	20,892	52,136	2.9	2.1	2.5
2005	930,023	832,873	1,762,896	13,333	9,743	23,076	1.4	1.2	1.3
2010	1,043,637	918,719	1,962,356	22,573	16,314	38,887	2.2	1.8	2.0
2011	1,033,540	910,258	1,943,798	21,627	15,764	37,391	2.1	1.7	1.9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형식 교육과 비형식교육을 포함한 전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대비 2008년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이다. 2007년 29.8%에서 2012년 35.6%로 증가하였다.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의 평생교육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비형식 교육비율이 형식 교육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증가추세이다. 최근 2012년의 비형식 교육 비율이 33.1%인 반면 2012년 형식 교육의 비율이 3.5%로 나타났다.

(단위: %)



자료: 교육부(2012),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 III-23] 연도별 평생교육 참여비율

사교육비 비율을 2007-2012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평균 최소가 2007년에 22.2만원이며 2010년, 2011년 최대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63> 사교육비 비율(2007-2012)

(단위: 만 원)

	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22.2	22.7	23.4	19.7	24.0
2008	23.3	24.2	24.1	20.6	24.9
2009	24.2	24.5	26.0	21.7	26.9
2010	24.0	24.5	25.5	21.8	26.5
2011	24.0	24.1	26.2	21.8	25.9
2012	23.6	21.9	27.6	22.4	26.5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실질 GDP 대비 총 사교육비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과 비교하여 2008년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2008년 수준과 같다. 2009년 이후 점진적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2.36에서 현재 2012년 실질 GDP 대비 총 사교육비 수준은 1.58 수준이다. 그러나 2004년 기준 OECD 국가평균 GDP 대비 총 사교육비 비중이 0.7로 나타나 2012년의 1.58 수준과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 표 III-64 > GDP 대비 총 사교육비 비중(2007-2012)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질 GDP 대비 총 사교육비 비중	2.36	2.27	2.27	2.00	1.79	1.58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특수학교 1개교 당 학생 수를 1980-2013년 기간 동안 살펴보면, 1980년에 252명이었으나 1985년에 423명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1990년 이후 1995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과 2005년에 약간 감소되었다. 2010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501명으로 증가되었고 2013년에도 534명으로 증가되었다. 반면에 교원 1명 당 학생 수는 1980년 15명, 1985년 23명, 1990년 18명이었으나 2000년 이후 6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4명으로 감소하였다.

< 표 III-65 > 특수학교 및 교원 수 대비 장애인 학생 수(1980-2013)

(단위: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특수학교 수	56	87	102	108	129	142	150	162
(1개교 당 학생 수)	252	423	489	491	424	411	501	534
전체학생 수	14,139	36,849	49,936	53,079	54,732	58,362	75,187	86,633
전체교원 수	904	1,565	2,746	-	8,201	10,429	15,244	17,446
(교원 1명당 학생 수)	15	23	18	-	6	5	4	4

자료: 교육부(2013), 『특수교육통계』.

세계인권선언 제 27조 제1항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sup>78)</sup>라고 규정하

고 있다. 사회권 규약 제 15조 1항에서도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로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아동의 문화생활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문화 지표와 관련한 쟁점이슈는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 및 소외계층(노인 등)이 문화 및 예술을 즐길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지표 중 문화예술 관람률, 여가활동 만족도, 공공도서관 수를 살펴보면, 우선 조사대상자 중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한 비율을 나타내는 문화예술 관람률은 2006년 65.8%, 2008년 67.3%, 2010년 67.2%, 2012년 69.6%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그러한 지역들과 비교하여 군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66 > 도시규모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2006-2012)

(단위: %)

		2006	2008	2010	2012
전체		65.8	67.3	67.2	69.6
도시규모	대도시	69.6	70.6	68.8	72.5
	중소도시	63.2	67.6	67.7	73.9
	군 지역	57.0	48.9	56.8	-
	읍면지역	-	-	-	5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2011년 매우 만족한 비율이 3.4%이며, 약간 만족한 비율이 15.9%, 보통이 48.6%, 약간불만족 비율이 24.1%, 매우 만족한 비율이 7.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 약간 만족한 비율이 65세 이상의 집단에서 제일 낮게 나타났다.

78) 대한민국 정부(201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2016』, p.145.

## &lt; III-67 &gt; 여가활동 만족도(2011)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전체	3.4	15.9	48.6	24.1	7.9
13-19세	6.9	22.8	45.5	19.4	5.3
20-29세	3.5	19.6	51.4	19.8	5.7
30-39세	2.5	14.2	48.2	25.7	9.3
40-49세	2.8	15.4	46.4	25.3	10.1
50-59세	2.9	15.7	47.5	25.7	8.2
60세 이상	3.1	11.2	52.2	26.1	7.3
65세 이상	2.8	10.2	53.9	25.8	7.3

자료: 통계청(2011), 「사회조사」.

자료의 제약으로 기준연도가 다르나 외국 및 한국의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및 장서 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1관 당 인구수가 제일 높고 인구 1인 당 장서 수 면에서는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관 당 인구수가 64,547명이며 인구 1인당 장서 수는 1.43권으로 나타났다.

## &lt;표 III-68&gt; 외국 및 한국의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및 장서 수

(단위: 개, 명, 권)

	도서관수	인구수	1관 당 인구수	장서 수	인구 1인당 장서(인쇄)수	기준년도
한국	786	50,734,284	64,547	72,475,471	1.43	2011
미국	9,225	308,745,538	33,468	815,909,000	2.64	2009
영국	4,517	61,380,700	13,589	99,748,215	1.63	2008-2009
독일	8,131	81,800,000	10,060	124,000,000	1.52	2011
일본	3,210	127,799,000	39,813	400,119,000	3.13	20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2) 교육권, 문화 관련 지표 풀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권, 문화 관련 지표는 취학률, 학교 중퇴자 비율, 평생교육 참여 비율, 사교육비 비율, 장애인 대비 특수학교 규모, 문화예술 관람률, 여가활동 만족도,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로 나타났다.

< III-69> 교육권·문화 관련 지표 풀

문화 세부 지표 풀	자료원	비고
취학률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학교 중퇴자 비율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평생교육 참여 비율	교육부,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사교육비 비율	통계청(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장애인 대비 특수학교 규모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여가활동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마. 주거권

1) 주거권 지표 및 추이

주거권 관련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의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sup>79)</sup>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에서도 주택과 관련하여 가정과 자신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거주권 관련 쟁점 사항을 나타낸다. 다른 주거지역으로 이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퇴거 조치를 실행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노숙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sup>80)</sup>. 이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중위소득가구 월소득 대비 주거비, 주택 자가

79) 대한민국 정부(201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2016』, p.116.

80) 대한민국 정부(201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2016』.

보유율, 주택 만족도, 주거 환경만족도, 홈리수 수에 관한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를 살펴보았다. 최저주거기준 항목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등을 고려하였다. 전체 가구 수 대비 미달 가구 수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16.6%, 2008년 12.7%, 2010년 10.6%, 2012년 7.2%로 나타나 감소추세를 알 수 있다.

< III-70>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2006-2012)

	2006	2008	2010	201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총가구대비 미달가구 비율, %)	288만 (16.6%)	212만 (12.7%)	184만 (10.6%)	128만 (7.2%)

자료: 국토교통부(2012), 『주거실태조사』.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를 살펴보면, 2006년 소득 대비 월평균 주거비 비율은 2006-2010년 까지 8%대였으나 2012년 11.7%로 상승하였다.

<표 III-71> 중위소득가구 월소득 대비 주거비(2006-2012)

(단위: 만원, %)

	2006	2008	2010	2012
월평균 주거비(만원)	18.7	21.2	24.2	24.7
소득대비 월평균 주거비(%)	8.5	8.9	8.6	11.7

자료: 국토교통부(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주택 자가보유율(자가 점유가구수+임차 가구 중 타지 주택 소유가구수)/전체 가구)을 살펴보면, 2006-2010년까지 60%대이나 2012년 약간 낮아져 58.4%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우 2006년 56.8%에서 2012년 52.3%로 감소 추세이다. 광역시인 경우 연도별 60%대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도 지역에서도 67%대로 연도별 큰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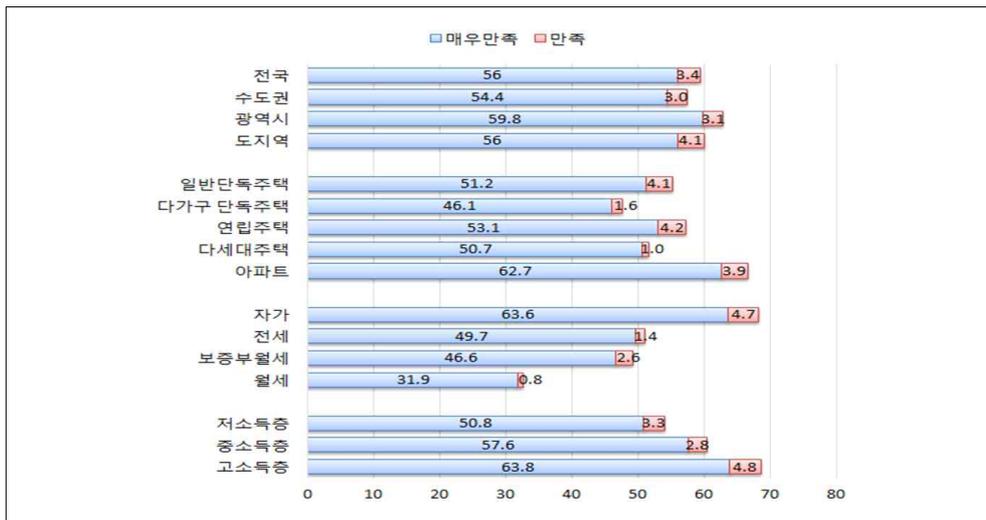
< III-72> 주택 자가보유율(2006-2012)

(단위: %)

	2006	2008	2010	2012
전국	61.0	60.9	60.3	58.4
수도권	56.8	56.6	54.6	52.3
광역시	59.3	60.3	61.2	59.0
도지역	68.1	67.7	68.3	67.2

자료: 국토교통부(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2012년 지역규모, 주택 형태, 주택 종류, 소득계층에 따른 주택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지역별로는 절반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수도권과 도지역과는 큰 차이가 없으나 광역시인 경우 3-4% 수준의 차이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주택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에 대해 매우 만족한 비율이 62.7%로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립주택(53.1%), 일반단독주택(51.2%), 다세대 주택(50.7%), 다가구 단독주택(46.1%)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자가가 63.6%로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49.7%), 보증부 월세(46.6%), 월세(31.9%)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이 63.8%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득층이 57.6%, 저소득층이 50.8%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국토교통부(2012), 『주거실태조사』.

[그림 III-24] 특성별 주택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최고 5점 기준으로 3.50 수준으로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73 > 주거환경만족도(2006-2012)

	2006	2008	2010	2012
평균	3.58	3.44	3.55	3.50

자료: 국토교통부(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홈리스 수를 살펴보면, 재활 및 요양시설, 일시보호, 거리노숙인, 쪽방주민을 포함한 전체 수에서 2005년-2007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07년과 비교하여 2008년에 약간 증가되었다. 2009-2012년 동안 다시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2012년 12,391명으로 감소하였다. 노숙인(재활·요양시설)의 경우 2005년 11,063명에서 2012년 8,569명으로 줄어들었고 노숙인(재활시설·일시보호)의 경우 2005년 3,763명에서 2012년 2,741명으로 줄어들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2005년 959명에서 2012년 1,081명으로 약간 증가되었다. 쪽방주민인 경우 2008년 6,119명에서 2012년 5,891명으로 줄어들었다.

< 표 III-74 > 홈리스 수(2005-2012)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15,785	15,173	14,266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노숙인(재활·요양시설)	11,063	10,317	9,722	9,492	9,266	8,958	8,742	8,569
노숙인(재활시설·일시보호)	3,763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2,741
거리노숙인	959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081
쪽방주민	-	-	-	6,119	6,394	6,232	5,991	5,891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백서』.

2) 주거권 지표 풀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중위소득가구 월소득 대비 주거비, 주택 자가보유율, 주택 만족도, 주거 환경만족도, 홈리스 수로 구성하였다. 강제퇴거 건수는 통계적 제약으로 지표 풀에만 존재하고 있다.

< III-75> 주거권 지표 풀

세부 지표 풀	자료원	비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택 자가보유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택만족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거환경만족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홈리스 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강제퇴거 건수	-	

3. 소외계층 권리 현황과 지표 풀

가. 여성 인권의 현황과 지표 풀

1) 여성 인권의 현황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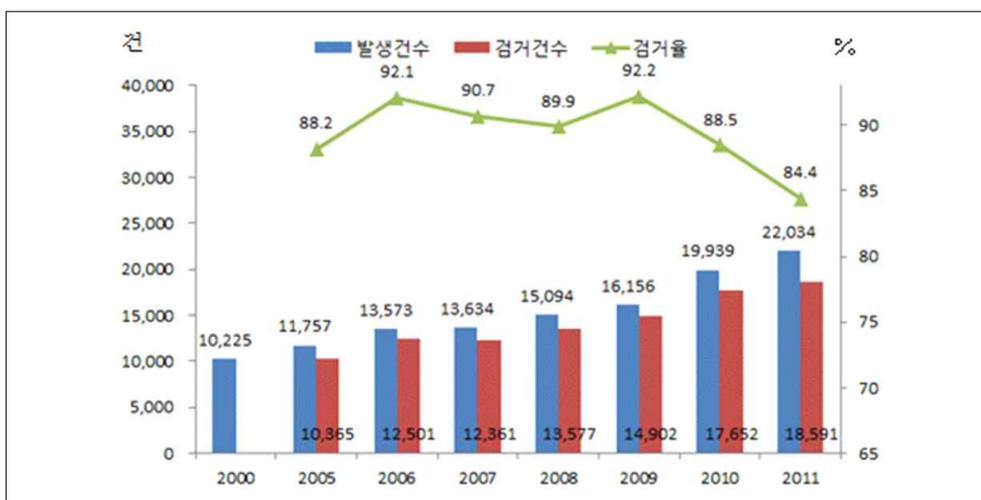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 인권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 인권에 속하는 국제 협약의 기준을 보면, 세계인권선언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유권 규약은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향유에 대한 남녀 동등한 권리를 사회권 규약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에 대한 남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인권 협약 가운데 1979년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여성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으로 풀이했다.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불가양, 불가결, 불가분한 보편적 인권의 한 부분이며, 국가, 지역, 국제차원에서 여성이 정치, 시민,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모든 성차별의 철폐를 국제사회의 우선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여성 인권과 관련된 주요 지표의 하나인 성폭력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해서는 발생건수가 아닌 신고건수라고 할 수 있다.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이 범죄발생건수가 늘어나서이기도 하겠지만 피해자들의 의식변화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있다는 변화의 반증인 면을 간과할 수 없다. 발생건수는 2000년 10,225건에서 2011년 22,03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검거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주재선 외(2013),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서 재인용.

### [ III-25] 성폭력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두 번째 지표인 가정폭력 피해경험률은 가정폭력 발생건수로 확인이 가능하다. 1999년-2009년까지는 10,000건이 넘었으나 2010년 이후 7-8,000건대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의 발생건수는 자연 발생건수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신고건수의 감소가 자연적인 감소인 경우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경험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III-76 > 가정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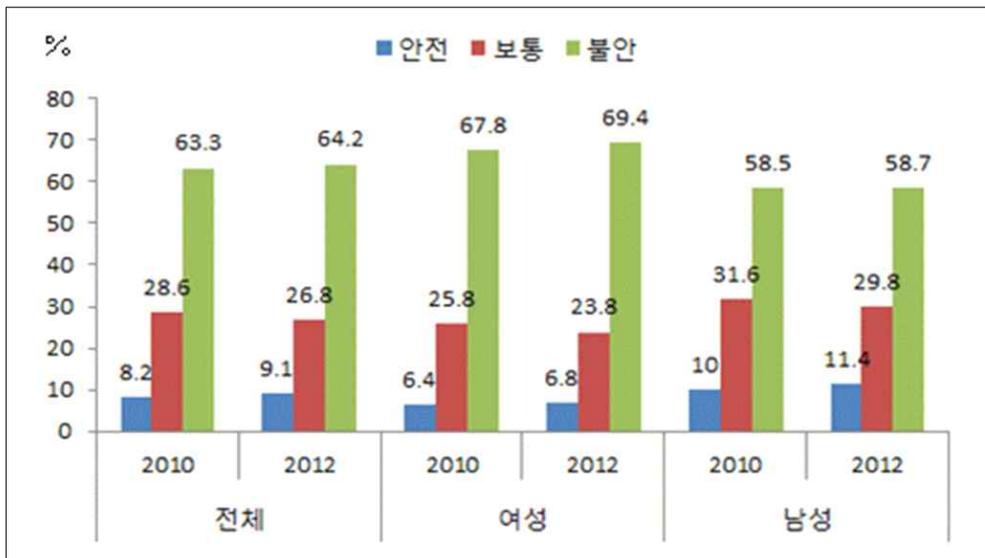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수	인원
1998하반기	3,687	4,002	498	3,491	13	89	97
1999년	11,850	12,719	868	11,804	47	990	1,031
2000년	12,983	14,105	678	13,380	47	3,813	4,040
2001년	14,585	15,557	691	14,760	106	4,559	4,818
2002년	15,151	16,324	586	15,127	611	3,702	4,083
2003년	16,408	17,770	496	16,787	487	4,186	4,459
2004년	13,770	15,208	329	13,969	910	2,587	2,616
2005년	11,595	12,775	181	11,800	794	1,881	2,022
2006년	11,471	12,837	113	12,011	713	1,722	1,903
2007년	11,744	13,165	87	12,587	491	1,455	1,629
2008년	11,461	13,143	77	12,748	318	940	1,044
2009년	11,025	12,493	87	12,064	342	657	756
2010년	7,359	7,992	60	7,719	213	425	450
2011년	6,848	7,272	51	6,925	296	336	341
2012년	8,762	9,345	73	8,984	288	451	494

자료: 경찰청 자료, 김은경(2013), 현행 가정폭력 대응 입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013.10.24, p.65에서 재인용

세 번째 지표인 여성의 사회안전 인식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위협은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각

중 법과 지원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느끼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안전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커졌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형법범죄의 증가비율이 높고, 형법범죄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로 나뉘보면 특히 성폭력 범죄의 증가율이 높다.<sup>81)</sup>

범죄 위험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 여성의 비율은 2010년 67.8%에서 2012년 69.4%로 증가하였으며, 남성도 2010년 58.5%에서 2012년 58.7%로 증가하였으나 여성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야간 보행 시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실제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여성이 더 높다.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비율은 1995년 29.9%에서 2000년 71.2%로 증가한 이후 2010년 77.3%에 이르기 까지 7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81.6%, 2012년 85.0%로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주재선 외(2013),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서 재인용.

### [ III-26 ] 범죄의 위험에 대한 인식

81) 1989년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 범죄 발생비는 12건이었으나 2009년 발생비는 32.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함(대검찰청, 『범죄분석』).

< III-77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단위 : %)

연도	성	계	두려운곳 없음	두려운곳 있음	야간보행방법					
					사람 동행	택시 이용	두려운 곳 피해 다님	그냥 다님	호신도구 휴대	기타 <sup>1)</sup>
2001	전체	100.0	51.4	48.6	7.1	8.3	13.4	60.1	0.2	10.9
	여성	100.0	41.2	58.8	8.4	9.2	14.3	55.5	0.2	12.3
	남성	100.0	62.2	37.8	4.9	6.7	12.0	67.6	0.3	8.4
2005	전체	100.0	57.4	42.6	8.3	7.6	15.2	56.9	0.4	11.6
	여성	100.0	46.1	53.9	9.7	8.8	15.9	51.4	0.3	13.9
	남성	100.0	69.2	30.8	5.6	5.4	13.9	67.0	0.5	7.4
2010	전체	100.0	59.4	40.6	6.9	6.0	14.6	56.2	0.4	16.0
	여성	100.0	48.3	51.7	8.2	7.0	15.7	48.8	0.4	19.9
	남성	100.0	70.9	29.1	4.4	4.1	12.5	69.9	0.3	8.8
2012	전체	100.0	56.0	44.0	7.6	6.6	16.6	52.4	0.5	16.3
	여성	100.0	43.3	56.7	9.2	7.9	18.7	43.7	0.5	20.0
	남성	100.0	69.1	30.9	4.7	4.1	12.6	58.9	0.4	9.2

주: 1) 야간보행방법의 총합은 100.0%.

2) 15세 이상 인구(2012년은 13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주재선 외(2013),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서 재인용.

< 표 III-78 >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비율

(단위: 건, %)

연도	전체	여성	남성	불상	여성비율 %
1995	7 947	2 377	5 570	-	29.9
2000	8 765	6 245	2 520	-	71.2
2005	18 860	14 847	3 736	277	78.7
2006	20 038	15 938	3 838	262	79.5
2007	20 449	16 006	4 355	88	78.3
2008	22 430	17 479	4 712	239	77.9
2009	25 188	19 254	5 649	285	76.4
2010	27 074	20 930	4 403	1 741	77.3
2011	28 854	23 544	4 553	757	81.6
2012	26 328	22 381	3 754	193	85.0

주: 1)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포함함.

2) 미상 포함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네 번째 지표인 여성고용률을 보면,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별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IMF 이후 남성 1인 가장부양모델이 무너지고 맞벌이 모델이 선호되고 있으며 가족임금경제에서 여성의 기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가정, 사회에서 여성을 부차적인 생계부양자로 보는 차별의식과 성별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남성(73.3%)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42.8%)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05년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하였으며, 이후 2010년 49.4%로 약간 하락하지만 2012년 다시 상승하여 49.9%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76.4%에서 2000년 74.4%, 2005년 74.6%, 2010년 73.0%로 점차 하락하다가 2011년 73.1%로 다시 상승하고 2012년 73.3%로 높아졌다. 이러한 남녀의 증감 추이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서 남녀차이는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15세 이상 인구는 여성이 21,254천 명으로 남성(20,329천 명)보다 많지만, 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4,282천 명 적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3.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규모에서도 남녀차이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III-79 >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1,000명, %, %p)

	여성		남성		남녀차이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1980	5,412	42.8	9,019	76.4	3,607	33.6
1985	5,975	41.9	9,617	72.3	3,642	30.4
1990	7,509	47.0	11,030	74.0	3,521	27.0
1995	8,410	48.4	12,435	76.4	4,025	28.0
2000	9,101	48.8	13,034	74.4	3,933	25.6
2005	9,860	50.1	13,883	74.6	4,023	24.5
2010	10,256	49.4	14,492	73.0	4,236	23.6
2011	10,416	49.7	14,683	73.1	4,267	23.4
2012	10,609	49.9	14,891	73.3	4,282	23.4

주: 2000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4주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주재선 외,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편이다. OECD평균이 61.8%인데 비해 한국여성의 경우는 54.9%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가사 및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 시 근로조건이 하향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 III-80 > OECD 회원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미국	영국	덴마크	호주	OECD 평균
54.9%	76.8%	70.4%	76.1%	70.5%	61.8%

자료: OECD(2012),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다섯 번째 지표인 여성비정규직 비율과 관련하여 2012년 8월 비정규직 여성 임금근로자는 3,154천 명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41.5%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1년에 이르기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2년 3,154천 명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남성 역시 2007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12년 2,757천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여성이 남성보다 14.3%p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2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215천 명 많으나, 2005년은 여성이 남성보다 11천 명 많고 2012년은 397천 명 여성이 더 많다.

여성의 전체적인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여성이 다수인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서비스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이나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전문직과 고위직을 포함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지속되고 여성 내부의 차이와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lt; III-81 &gt;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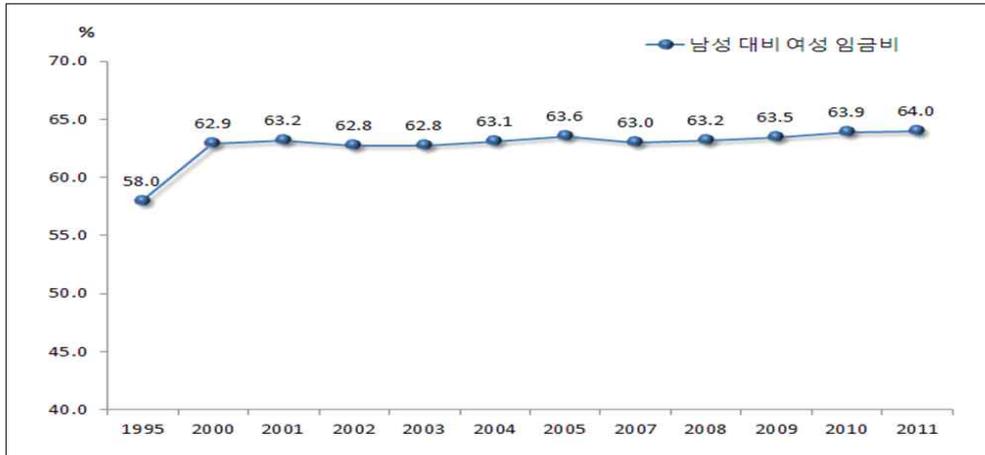
(단위: 1,000명, %, %p)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2002	14,030	5,772	8,258	2,486	3,513	1,649	1,864	215	25.0	28.6	22.6	-6.0
2003	14,149	5,866	8,283	2,417	4,606	2,320	2,286	-34	32.6	39.5	27.6	-11.9
2004	14,584	6,096	8,489	2,393	5,394	2,662	2,732	70	37.0	43.7	32.2	-11.5
2005	14,968	6,286	8,682	2,396	5,482	2,747	2,736	-11	36.6	43.7	31.5	-12.2
2006	15,351	6,442	8,909	2,467	5,457	2,752	2,705	-47	35.5	42.7	30.4	-12.3
2007	15,882	6,647	9,235	2,588	5,703	2,796	2,907	111	35.9	42.1	31.5	-10.6
2008	16,104	6,737	9,367	2,629	5,445	2,746	2,699	-47	33.8	40.8	28.8	-12.0
2009	16,479	6,964	9,515	2,551	5,754	3,073	2,681	-392	34.9	44.1	28.2	-16.0
2010	17,048	7,265	9,783	2,518	5,685	3,036	2,649	-387	33.3	41.8	27.1	-14.7
2011	17,510	7,476	10,034	2,558	5,994	3,203	2,791	-412	34.2	42.8	27.8	-15.0
2012	17,734	7,600	10,134	2,534	5,911	3,154	2,757	-397	33.3	41.5	27.2	-14.3

주: 각 통계는 8월에 조사된 통계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SIS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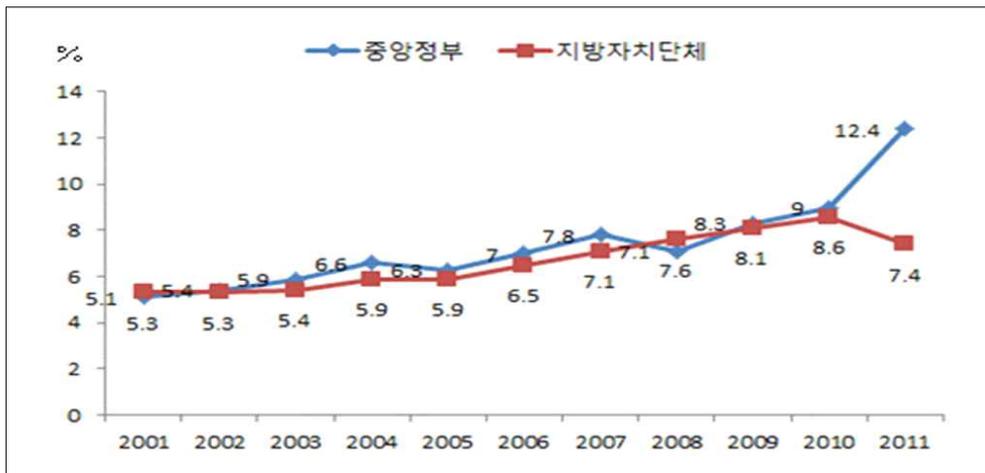
여섯 번째 지표인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보면, 2011년 여성의 평균 임금은 2,121천 원으로 남성(3,312천 원)보다 월평균 1,191천 원 낮으며, 월평균 임금차이는 2000년 688천 원, 2010년 894천 원, 2012년 1,191천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비는 1993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비는 1995년 58.0%에서 2000년 62.9%로 증가한 이후 약간의 증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64.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60% 초반 대에 머물고 있고 2000년 이후 상승비율 또한 1%p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주재선 외(2013),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

[ III-27]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

일급 번째 지표인 관리직(고위, 관리)의 여성비율을 보면, 2011년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중앙정부 12.4%, 지방자치단체 7.4%로 중앙정부는 전년대비 각각 3.4%p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1.25%p 감소하였다.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1년과 비교하면 중앙정부는 7.3%p, 지자체는 2.1%p 상승하였다.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통계」, 내부자료, 주재선 외(2013),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서 재인용.

[그림 III-28]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여덟 번째 지표인 모성사망률에 대해서 보면, 영아사망률은 1985년 1,000명 당 12.5명에서 2011년 1,000명 당 3.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모성사망비는 1985년 10만 명 당 175명에서 2011년 10만 명 당 17.2명으로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런데 모성사망비가 200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문제이며,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III-82 >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

(단위: (출생아 1,000명 당, 100,000명 당)명)

	영아사망률 (1,000명당)	모성사망비 (100,000명당)
1985	12.5	175
1990	12.8	140
1991	10.0	137
1992	8.8	-
1993	9.9	-
1994	9.0	-
1995	8.6	20.0
1996	7.7	20.0
1999	6.2	18.0
2000	-	15.0
2002	5.3	16.0
2003	-	15.0
2005	4.7	14.0
2006	4.1	15.0
2007	3.6	14.6
2008	3.5	12.4
2009	3.2	13.5
2010	3.2	15.7
2011	3.0	17.2

주: 1) 아사망률 =  $\frac{\text{연간 영아(1세미만) 사망아수}}{\text{당해년 출생아수}} \times 1,000.$

2) 모성사망률 =  $\frac{\text{임신기간과 산욕기간 동안 사망한 임산부}}{\text{연간 출생아수(추정치)}} \times 100,000.$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주재선 외(2013),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서 재인용.

아홉 번째 지표인 여성가구주 빈곤율에 대해서 보면, 2인 이상 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절대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2011년 현재 전체 가구는 10%를 차지하는데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는 21.8%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시장소득 비율은 2003년 이후 2011년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III-83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단위: %)

	전체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경상 소득	가처분 소득	소비 지출	가계 지출	시장 소득	경상 소득	가처분 소득	소비 지출	가계 지출
2003	7.8	6.1	7.1	7.8	39	14.7	11.7	13.5	13.3	7.7
2004	8.2	6.1	7.1	7.6	39	15.8	11.6	13.7	13.1	7.7
2005	9.4	6.8	8.3	9.3	5.1	19.1	13.3	16.7	16.5	10.6
2006	9.7	6.8	8.1	10.1	5.3	20.0	14.9	16.9	18.8	11.0
2007	10.0	7.0	8.1	10.3	5.9	18.2	12.1	14.5	18.9	12.2
2008	10.2	7.0	8.3	10.3	5.7	19.8	13.6	15.4	18.4	12.0
2009	10.9	7.0	9.0	13.3	7.4	21.3	14.1	17.3	22.2	13.8
2010	10.0	6.3	7.8	10.0	5.1	19.9	12.1	16.4	18.1	11.5
2011	10.0	6.3	8.0	9.7	5.2	21.8	14.6	17.6	18.8	11.6

주: 1인가구와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빈곤통계연보』, 주재선 외(2013),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서 재인용.

## 2) 여성 인권 측정 지표 풀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인권의 개념 및 속성 그리고 정부 책무와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엔나 인권선언 등을 근거로 여성 인권 관련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비엔나선언에 의하면 여성과 여아의 인권축진을 위하여 인권의 완전·평등한 향유의 촉구, 공적·사적 생활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제거, 모든 형태의 성희롱, 착취, 인신매매의 제거, 사법운영에 있어서의 성별에 근거한 편견의 제거, 여성의 권리와 전통, 관행, 편견간의 갈등의 불식,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의 촉구,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과 보건 및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한 재확인, 여성에 특유한 인권폐습의 인식 및 조사, 정부·지역조직·국제조직에 있어 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위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참여의 축진을 촉구하고, 여기서의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상황에 성차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특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여성 인권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풀을 구축하였다. 기본적인 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지표체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정지표와 성과지표 중심으로 선정하고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된 과제를 기초로 구축하였다.

### < III-84> 여성 인권 지표 풀

지표 풀(Pool)	자료원	비고
성폭력 발생(신고)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가정폭력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의 사회안전 인식	통계청, 『사회조사』	
여성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 비정규직 비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성별임금격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한국의 성 인지 통계』	
관리직(고위, 관리) 여성비율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	
모성사망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여성가구주 빈곤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 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 1) 아동·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추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을 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리라는 4개의 주요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의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달의 권리’는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 활동,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주요 지표의 하나인 아동사망자수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OECD 통계로 보는 여성 고령자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여성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83.8년으로 32개국 중 6번째로 길고, 한국 남성은 76.8년으로 20번째였다(뉴시스, 2012.7.6). 이는 한국인의 기초보건의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연령대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10-19세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20-29세와 30-39세도 자살이었다. 1-9세의 경우에는 1위가 암이고, 2위가 운수사고이며, 10-19세의 사망원인 2위도 운수사고인 점에서 안전사고와 자살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세의 사망원인은 암, 운수사고, 선천기형, 10-19세는 자살, 운수사고, 암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31명으로 2위인 일본의 21명보다도 훨씬 높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인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아동기부터 공부압박이 심하고 청소년기에는 대학진학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도 취업 등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상급 학교로 갈수록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학습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수면시간을 과도하게 줄이며, 방과 후에도 학원 등을 다니느라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 III-85 > 연령별 3대 사망원인 및 구성비  
(단위: %, 인구 10만 명 당)

	1		2위		3위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원인	구성비
1~9세	암	17.8	운수사고	14.2	선천기형	9.2
10~19세	자살	26.5	운수사고	22.6	암	14.6
20~29세	자살	47.2	운수사고	15.3	암	10.2
30~39세	자살	36.7	암	18.7	운수사고	8.1
40~49세	암	28.1	자살	18.1	간 질환	8.4
50~59세	암	37.6	자살	10.1	심장 질환	7.2
60~69세	암	42.3	뇌혈관 질환	8.5	심장 질환	8.1
70~79세	암	33.3	뇌혈관 질환	11.6	심장 질환	9.9
80세 이상	암	16.1	심장 질환	12.5	뇌혈관 질환	12.2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두 번째 지표인 학대피해아동비율을 보면, 통계는 아동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11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계한 아동학대를 보면 6,058명이고, 이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4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방임 29.4%, 정서학대 15.0%, 신체학대 7.7%, 성학대 3.7%, 유기 0.9% 등이었다. 아동학대가 늘어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신고율이 높아진 탓도 있겠지만,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별거와 같은 가정상황과 경제적 위기, 실업,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적절히 양육 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III-86 > 아동학대 사례유형(중복 포함)

(단위: 명)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0. 10~12	464	180	30	23	205	26	-
2001	2,105	476	114	86	672	134	623
2002	2,478	254	184	65	814	212	949
2003	2,921	347	207	134	965	113	1,155
2004	3,891	364	350	177	1,367	125	1,508
2005	4,633	423	512	206	1,635	147	1,710
2006	5,202	439	604	249	2,035	76	1,799
2007	5,581	473	589	266	2,107	59	2,087
2008	5,578	422	683	284	2,237	57	1,895
2009	5,685	338	778	274	2,025	32	2,238
2010	5,657	348	773	258	1,870	14	2,394
2011	6,058	466	909	226	1,783	53	2,621
계	50,253	4,530	5,733	2,248	17,715	1,048	18,979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 번째 지표인 요보호아동발생률과 관련하여, 요보호아동이 발생되면, 국가는 아동의 욕구와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가정보호나 시설보호를 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시설보호가 57.0%이고, 가정보호가 43.0%로 시설보호가 더 많았다. 시설보호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일부만 장애아시설에 입소시킨다. 가정보호는 가정위탁보호가 28.7%, 입양이 12.5%, 소년

소년가정은 1.8%이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추이를 보면 가정보호보다는 시설보호가 다소 늘어났고, 입양, 소년소녀가정이 조금 줄며 가정위탁보호는 큰 변화가 없었다.

< III-87 >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단위: 명, %)

	계	기·미아	미혼모 아동	빈곤, 실직 등
2011년 6월	4,286(100)	109(3)	1,390(32)	2,787(65)
2010년	8,590(100)	401(4)	2,804(33)	5,385(63)
2009년	9,028(100)	257(3)	3,070(34)	5,701(63)
2008년	9,284(100)	353(4)	2,349(25)	6,582(71)
2007년	8,861(100)	342(4)	2,417(27)	6,102(69)

< 표 III-88 >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시설보호			가정보호			
		소계	아동 시설	장애아 시설	소계	소년소녀 가정	입양	위탁 보호
2011. 6.	4,286 (100)	2,442 (57.0)	2,432 (56.7)	10 (0.3)	1,844 (43.0)	78 (1.8)	534 (12.5)	1,232 (28.7)
2010	8,590 (100)	4,842 (56.4)	4,819 (56.1)	23 (0.3)	3,748 (43.6)	231 (2.7)	1,393 (16.2)	2,124 (24.7)
2009	9,028 (100)	4,767 (52.8)	4,732 (52.4)	35 (0.4)	4,261 (47.2)	213 (2.3)	1,314 (14.5)	2,734 (30.2)
2008	9,284 (100)	4,964 (53.4)	4,925 (53)	39 (0.4)	4,320 (46.5)	178 (1.9)	1,304 (14)	2,838 (30.6)
2007	8,861 (100)	3,245 (36.6)	3,206 (36.2)	39 (0.4)	5,616 (63.3)	247 (2.8)	1,991 (22.4)	3,378 (38.1)

많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이혼·별거·사망 등으로 한부모가정에서 살고 있고, 한부모가족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어렵기에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가정에서 취약할 수도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서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우선 가정에서 보호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보호하지만, 국가는 아직도 50명 이상이 함께 사는 대규모 아동 양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비교하여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하여 아동복지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절대아동빈곤율은 2003년 5.4%에서 2005년 5.7%, 2010년 4.7%, 2011년 4.4%의 분포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60여만명의 아동이 절대빈곤층이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43만명의 아동이 절대빈곤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상대아동빈곤율은 2001년 10.3%에서, 2005년 11.8%, 2010년 10.1%, 2011년 10.3%의 분포로 약간의 상승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숫자상으로 보면 2003년 118만명의 아동이었는데, 2005년에는 131만명으로 약간 늘었다가, 2011년 현재 101만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1인가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그 추이는 거의 비슷하나, 최근에는 상대아동빈곤율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122).

### < III-89 > 아동빈곤율

(단위: %, 명)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	절대아동빈곤수	상대아동빈곤수
<1인가구 제외>				
2003	5.4	10.3	642,798	1,182,289
2004	6.4	11.1	610,066	1,254,024
2005	5.7	11.8	632,989	1,310,398
2006	5.7	11.0	621,665	1,199,704
2007	5.2	11.4	632,164	1,221,469
2008	7.8	10.6	558,849	1,117,698
2009	4.8	10.9	505,817	1,125,185
2010	4.7	10.1	473,056	1,016,567
2011	4.4	10.3	432,740	1,013,005
<1인가구 포함>				
2006	5.7	10.6	621,665	1,156,079
2007	5.7	11.1	632,164	1,189,325
2008	5.2	10.1	558,849	1,064,976
2009	4.8	10.2	505,817	1,052,925
2010	4.7	9.5	473,056	956,177
2011	4.4	9.9	432,740	973,665

주: 빈곤아동수는 아동빈곤율을 이용하여 추계함.

자료: 김문길 외(201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13), 『국가통계포럼, 장애인구추계』,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아동빈곤율에 관한 국제비교를 보면 아동빈곤율이 10% 미만인 저빈곤율 국가와 아동빈곤율 10-20%사이인 중빈곤율 국가로 나누어진다. 저빈곤율 국가는 전체 빈곤율에 비해 아동빈곤율의 차이가 적거나 아동빈곤율이 전체 빈곤율에 비해 약간 높지만 중빈곤율 국가는 대체로 아동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아동빈곤율이 중인 국가에 속한다.

< III-90>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08년, 중위소득 50%)

(단위: %)

	국가	전체빈곤율 (A)	아동빈곤율 (B)	A-B	아동빈곤율 평균
저빈곤율 국가 아동빈곤율 10% 미만	덴마크	6.1	3.7	2.39	7.3
	핀란드	8.0	5.4	2.62	
	노르웨이	7.8	5.5	2.31	
	아이슬란드	6.4	5.7	0.71	
	스웨덴	8.4	7.0	1.40	
	슬로베니아	8.0	7.2	0.81	
	헝가리	6.4	7.2	- 0.85	
	오스트리아	7.9	7.9	- 0.01	
	독일	8.9	8.3	0.64	
	체코	5.5	8.4	2.86	
	프랑스	7.2	9.3	2.10	
	스위스	9.3	9.6	0.34	
	네덜란드	7.4	9.7	2.31	
	중빈곤율 국가 아동빈곤율 10-20% 미만	슬로바키아	7.2	10.1	
한국		15.0	10.3	4.78	
벨기에		9.4	11.3	1.86	
아일랜드		9.1	11.4	2.33	
에스토니아		12.5	12.1	0.32	
그리스		10.8	12.1	1.39	
뉴질랜드		11.0	12.2	- 1.20	
영국		11.0	12.5	1.49	
룩셈부르크		8.5	13.4	4.85	
호주		14.6	14.0	0.68	
일본		15.7	14.2	1.48	
폴란드		11.2	14.5	3.35	
캐나다		12.0	15.1	3.06	
이태리		11.4	15.3	3.90	
포르투갈		12.0	16.7	4.78	
스페인	14.0	17.7	3.69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p.110.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자 검거인원을 보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청소년성매매 행위자 및 업주 등을 검거하였다. 대상 청소년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전원 입건하도록 한 대검찰청 수사지침에 따른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 이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III-9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조치 현황

(단위: 건, 명)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5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1,745	1,502	183	60	149	1,596
2007	2,582	1,835	242	505	126	2,456
2008	2,112	1,464	196	452	81	2,031
2009	2,182	1,543	264	375	125	2,057
2010	1,345	972	164	209	56	1,289
2011	2,006	1,494	162	350	41	1,945
2012	4,457	-82)	-	-	124	4,333

자료: 2005-2011은 경찰청(2012) 자료, 여성가족부(2012)에서 재인용.

2012는 경찰청 내부통계자료(2013), 여성가족부(2013)에서 재인용.

영양섭취부족 및 과잉아동·청소년비율에 관해서 보면, 영양소 섭취부족 대상자 비율은 12~18세에 15.3%, 19~29세에 14.9%로 이들 연령층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지방 섭취과잉은 19~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82) 경찰청 내부통계자료(2013)에 의하면, 2006년부터의 검거인원을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검거인원만 집계하고 있음.

< III-92> 영양소 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대상자 분율

(단위 :%)

	영양소 섭취부족*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2세	4.9	2.8	7.2	0.9	0.0	1.9
3-5세	7.1	4.7	9.7	3.2	3.8	2.6
6-11세	6.6	6.3	7.0	4.0	3.8	4.2
12-18세	15.3	16.3	14.0	8.5	9.6	7.2
19-29세	14.9	10.3	19.8	10.0	14.3	14.3

\* 영양소 섭취부족: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

\*\*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인면서 지방 섭취량이 적정 에너지 섭취비율을 초과한 분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여성가족부(2012)에서 재인용.

2) 아동·청소년 권리 측정 지표 풀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제시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권리’라는 4개의 주요 영역을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측정 지표 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영역 및 통계의 이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아동(10만 명 당) 사망자, 학대피해아동 비율(혹은 보호건수), 요보호 아동 발생률, 아동빈곤율,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자 검거인원, 영양섭취 부족 및 과잉아동·청소년비율을 통해 아동·청소년권리 지표 풀을 구성하였다.

## &lt; III-93 &gt; 아동·청소년권리 지표 풀

지표 풀(Pool)	자료원	비고
아동(10만 명 당) 사망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학대피해아동 비율(혹은 보호건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요보호 아동 발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아동빈곤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자 검거인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영양섭취 부족 및 과잉아동·청소년비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다. 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1) 장애인 권리 현황과 추이**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sup>83)</sup> 「헌법」 제 34조는 모든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개인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장애인 인권은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교육, 의료, 고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폭력경험률을 살펴보면 여성 장애인의 폭력경험률은 2005년 1.5%에서 2011년 2.0%로 0.5%p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 장애인의 폭력경험률은 2005년 0.2%에서 2011년 0.0%로 여성에 반해 감소하였다. 연령대별 장애인의 폭력경험률을 살펴보면 2005년, 2008년, 2011년 모두 45세 이상보다 44세 이하 장애인의 폭력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83) 인터넷 위키백과

< III-94 > 장애인의 폭력경험률

(단위 : %)

		여성	남성	17세 이하	18세 ~ 44세	45세 ~ 64세	65세 이상	전체
2005	있다	1.5	0.2	1.4	1.3	0.8	0.2	0.7
	없다	98.5	99.8	98.6	98.7	99.2	99.8	99.3
2008	있다	2.1	0.3	1.8	3.1	0.9	0.0	1.0
	없다	97.9	99.7	99.0	98.2	96.9	100.0	99.0
2011	있다	2.0	0.0	5.0	2.6	0.4	0.1	0.8
	없다	98.0	100.0	95.0	97.4	99.6	99.9	99.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권리를 말한다. 이동의 문제는 전반적인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로 장애인의 이동의 편리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거리나 건물의 설계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높은 문턱, 휠체어를 수용할 수 없는 버스나 택시, 각종 장애물이 많은 보도 등)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표 III-95 > 저상버스 보급률

(단위: 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규모	364	304	500	978	838	693	903
저상버스	592	1,279	1,583	2,083	3,061	3,899	4,802
보급률	2.0	3.1	4.8	8.2	11.0	12.0	14.8

자료: 국토해양부(내부자료).

장애인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가용을 제외하면 일반버스가 가장 많지만 일반버스의 이용은 저상버스가 아니면 지체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저상버스 규모는 2012년 4,802대이며, 일반버스 대비 보급률은 14.0%이다. 저상버스의 증가규모는 일반버스 대비 보급률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

이다. 2006년 저상버스 보급률은 2.0%로 매우 낮았지만, 이후 매년 저상버스 증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09년 8.2%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 14.0%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2년도에 서울시가 최초로 ‘장애인 콜택시’라는 이름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한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 운행해야 한다. 즉, 1급과 2급 장애인이 2,000명이라면 1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 2011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특별교통수단은 1,492대로서 법정 의무대수의 50.2%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2011년 5월 현재 경남이 법정기준 대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남과 제주의 보급률이 12.8%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 < III-96 > 특별교통수단 도입 실적

(단위: 건, %)

	1급·2급 장애인수	법정기준 대수	보급대수 (11.5.31기준)	보급률(%)
계	593,515	2,968	1,492	50.2
서울	96,232	481	300	62.4
부산	39,140	196	100	51.0
대구	28,034	140	60	42.8
인천	28,534	143	112	78.3
광주	15,503	78	40	51.3
대전	16,347	82	60	73.2
울산	10,348	52	24	46.2
경기	114,077	570	212	37.2
강원	43,747	219	130	59.4
충북	21,979	110	61	55.4
충남	30,149	150	27	18.0
전북	28,968	146	77	52.7
전남	31,212	156	20	12.8
경북	39,776	198	55	27.8
경남	41,559	208	209	100.4
제주	7,910	39	5	12.8

주: 2011년 5월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내부자료).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는 그들의 자립을 위한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9년 고용률은 2008년에 비해 1.6%p 상승하여 2010년까지 유지되다가 2011년에 0.4%p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반인의 고용률과 같이 장애인의 고용률은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률이 높다. 2011년 현재 장애인의 고용률은 일반인의 고용률에 비해 16.7%p 낮다. 2008년 장애인과 일반인의 고용률 격차가 18.7%p인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률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2011년 장애인과 일반인의 고용률 격차는 여성이 21.1%p로 남성(18.3%p)보다 약간 더 크다.

< III-97 > 장애인 고용률

(단위: %, %p)

		2008	2009	2010	2011
장애인(A)	전체	40.8	42.4	42.4	42.0
	여성	24.5	27.0	27.0	26.7
	남성	49.8	52.0	52.2	51.6
일반인(B)	전체	59.5	58.6	58.7	59.1
	여성	48.7	47.7	47.8	48.1
	남성	70.9	70.1	70.1	70.5
격차 (B-A)	전체	18.7	17.8	16.3	16.7
	여성	24.2	23.2	20.8	21.1
	남성	21.1	20.3	18.1	18.3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 연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관련 차별이 발생하

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월평균 142만 원으로, 상용근로자 일반인의 임금과 비교하면 50%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 임금은 2005년 79.2만 원에서 점차 높아져 2005년 114.9만 원, 2008년 115.6만 원, 2011년 142.0만 원으로 점차 높아졌다. 하지만 일반인과 비교한 임금비는 2000년 43%에서 2005년 45%, 2008년 43%, 2011년 5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III-98> 일반인 대비 장애인 임금격차

(단위: 만 원, 비)

	2000	2005	2008	2011
상용근로자(일반인)	183.7	258.0	266.0	286.0
전체 장애인	79.2	114.9	115.6	142.0
일반인 대비 장애인 임금비	0.43	0.45	0.43	0.50

주: 1) 일반인은 월평균 임금임.  
2) 장애인은 3개월 평균 임금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 교육은 일반인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통합교육과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교육이 있다. 먼저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수 및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장애인의 교육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학자수에 따른 진학률은 2008년 45.4%에서 2009년 44.8%, 2010년 39.8%로 하락한다. 그러나 2011년 45.3%로 다시 상승하며 2012년 45.9%로 높아진다.

< III-99 > 고등학교 장애인진학률

(단위: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졸업생수	특수학교	2,062	2,181	2,258	2,365	2,469
	특수학급	1,102	1,641	2,195	2,273	2,576
	일반학급	467	667	1,456	894	1,094
	계	3,631	4,489	5,909	5,532	6,139
진학자수	특수학교	1,039	1,099	1,147	1,205	1,336
	특수학급	374	524	750	790	909
	일반학급	234	300	456	509	572
	계	1,647	2,013	2,353	2,504	2,817
진학률		45.4	44.8	39.8	45.3	45.9

주: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 현황

$$\text{학률 \%} = \frac{\text{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연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선거권은 헌법에 의해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로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투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한 17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투표율을 살펴보면 2004년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의 장애인 추정 인구수 1,995,791명 중 76.5%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실시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74.0%,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71.6%가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 이후 투표율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III-100 > 장애인 투표율

(단위 : 명, %)

구분	전국추정수	예	아니오	비해당 (투표권 없었음)
2004	1,995,791	76.5	23.5	-
2008	2,137,226	74.0	21.8	4.2
2010	2,611,126	71.6	24.1	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의 이용범위는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 및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정보격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부문별 일반인 대비 장애인 정보화격차를 보면 일반인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전반적인 정보화격차는 매년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의 정보격차수준을 보면, 접근부문은 93.9%, 역량부문은 79.0%, 활용부문은 74.1% 종합부문은 83.4%로 전반적인 정보화 격차는 많이 좁혀졌으나, 역량부문과 활용부문이 아직 70%대로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 III-101> 일반인 대비 장애인 정보화 격차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접근	73.0	77.6	85.4	88.8	92.6	92.7	93.4	93.5	93.9
역량	41.1	50.0	61.0	63.4	66.0	72.2	72.8	75.1	79.0
활용	48.1	57.1	66.1	66.7	68.8	70.6	71.7	72.9	74.1
종합	57.5	65.2	73.9	76.0	78.8	80.3	81.3	82.2	83.4

주: 일반인 대비 장애인 정보화 격차는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을 말함. 즉,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 2) 장애인 인권 지표 풀

장애인 인권 지표 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기존지표체계를 기반으로 각 영역별로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장애인 인권은 7개의 지표 안으로 구성했다. 지표는 장애인과 일반인을 비교하여 보여줄 수 있는 지표와 장애인으로 경험하는 인권 특성을 반영했다. 장애인 인권 지표 중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임금격차’, ‘장애인 정보화격차’ 등은 장애인과 일반인의 비교 지표로 선정했고 ‘장애인 폭력경험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고등학교 장애인 진학률’, ‘장애인 투표율’ 등은 장애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권지표로 선정했다. 장애인 인권 지표 안의 자료원은 <표 III-102>와 같다.

< III-102 > 장애인 인권 지표 풀

지표 풀	자료원	비고
장애인의 폭력경험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보건복지부, 『장애인통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장애인 고용률	보건복지부, 『장애인통계』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장애인 임금격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고등학교 장애인 진학률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인 투표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 정보화격차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마. 소수자(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1) 난민, 탈북자 지표 및 추이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22조인 경우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국내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난민 심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및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체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자인 경우 국내 쟁점사항으로 북한이탈자 사회적 적응문제로 인한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문제 및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중도탈락률 등이 지적되고 있다.<sup>84)</sup>

이러한 측면에서 난민자격인정률, 북한이탈자 취업률,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을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난민자격 인정률(난민인정률=인정자/심사종료자(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철회)을 살펴보면, 2003년 이전에는 10% 미만수준이나 2003년 44.4%에서 2004년 51.4%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2005년부터 다시 10% 미만이었으나 2008년 2010년 15.1%로 증가하였다. 최근 2011년 2012년 다시 1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84) 대한민국 정부(201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2016』.

## &lt; 표 III-103 &gt; 난민자격인정률(1994-2012)

(단위: 명, %)

		심사종료(3,736)				난민인정률
		인정	인도적체류	불인정	철회	
총계	5,069	320	171	2,412	833	8.6
'94-'00	133	1	-	38	20	1.7
2002	34	1	8	7	14	3.3
2003	84	12	5	5	5	44.4
2004	148	18	1	7	9	51.4
2005	410	9	3	79	29	6.9
2006	278	11	13	114	43	6.1
2007	717	13	9	86	62	7.6
2008	364	36	14	79	109	15.1
2009	324	70	22	994	203	5.4
2010	423	47	35	168	62	15.1
2011	1,011	42	20	277	90	9.8
2012	1,143	60	31	558	187	7.2

자료: 법무부(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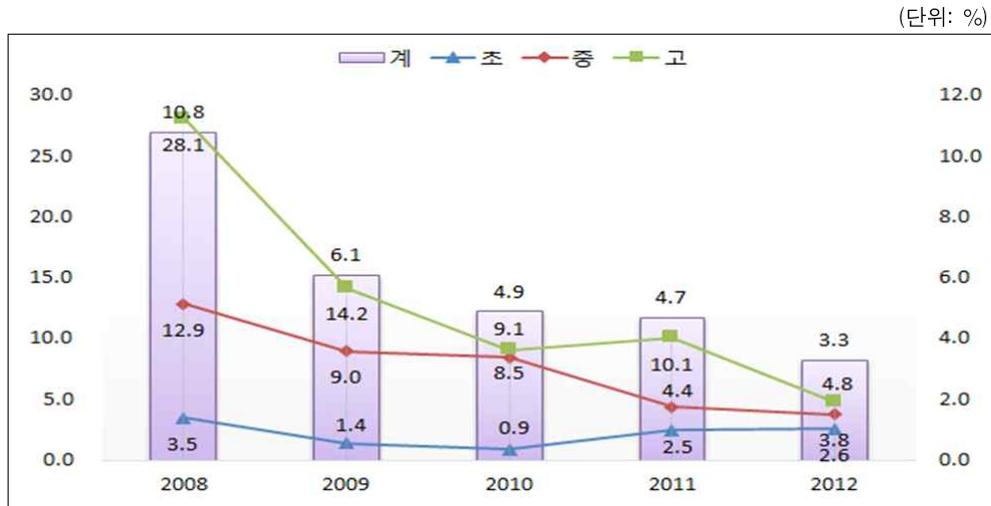
2011년 북한이탈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6.5%로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61.0%)보다 낮았다. 비경제활동참가율은 43.5%로 일반국민의 비경제활동참가율(39.0%) 보다 높았다. 실업률 또한 일반국민 보다 높았다(12.1% vs. 3.7%).

## &lt; 표 III-104 &gt; 북한이탈자취업률(2012)

구분	2011년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경제활동 참가율	56.5	61.0
비경제활동 비율	43.5	39.0
고용률	49.7	58.7
실업률	12.1	3.7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1), 『생활실태조사』.

탈북청소년 학업 중도탈락률((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연도별 재학생 총수)\*100)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 경우 2008년 10.8%, 2009년 6.1%, 2010년 4.9%, 2011년 4.7%, 2012년 3.3%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다. 2008년 고등학교 학업 중도탈락률이 10.8%, 2009년 6.1%, 2010년 9.1% 로 감소추세였으나 2011년 10.1%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고등학교 학업 중도탈락률이 4.8%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중학교 학업 중도탈락률은 2008년 12.9%, 2009년 9.0%, 2010년 8.5%, 2011년 4.4%, 2012년 3.8%로 감소추세이다.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08년 3.5%, 2009년 1.4%, 2010년 0.9%로 감소추세였으나 2011년 2.5%, 2012년 2.6%로 약간 증가되었다.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청소년 백서』.

[ III-29] 탈북청소년 학업중단 현황

## 2) 난민 북한이탈자 지표 풀

앞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난민자격인정률, 북한이탈자 취업률, 탈북청소년 학업 중단율을 지표 풀로 구성하였다.

### < III-105 > 난민 북한이탈자 지표 풀

지표명	자료원	비고
난민자격인정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북한이탈자 학교 중도탈락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실태조사』	
북한이탈자 취업률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백서』	

## 라. 노인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 1) 노인인권의 현황과 추이

노인인권이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85)</sup> 국제사회에서 고령화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을 위한 유엔규칙’ 및 ‘마드리드 행동계획’ 등이 발표됐고 이를 통해 노인의 인권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다.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인 학대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05년 2,038건에서 2010년 3,068건, 2012년 3,424건으로, 2005년 대비 2012년 신고건수는 1.68배 증가하였다. 더욱이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재신고 건수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신고 건수는 2005년의 경우 90건으로 전체 학대신고 건수의 4.4%에 불과했지만, 2009년 269건으로 전체 학대건수의 10.1%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2년 298건으로 8.7%가 재신고건수로, 재신고 비율은 최근 8~10%를 유지하고 있었다.

85)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신고부터 예방까지“

< III-106 > 연도별 학대 신고 건수와 재신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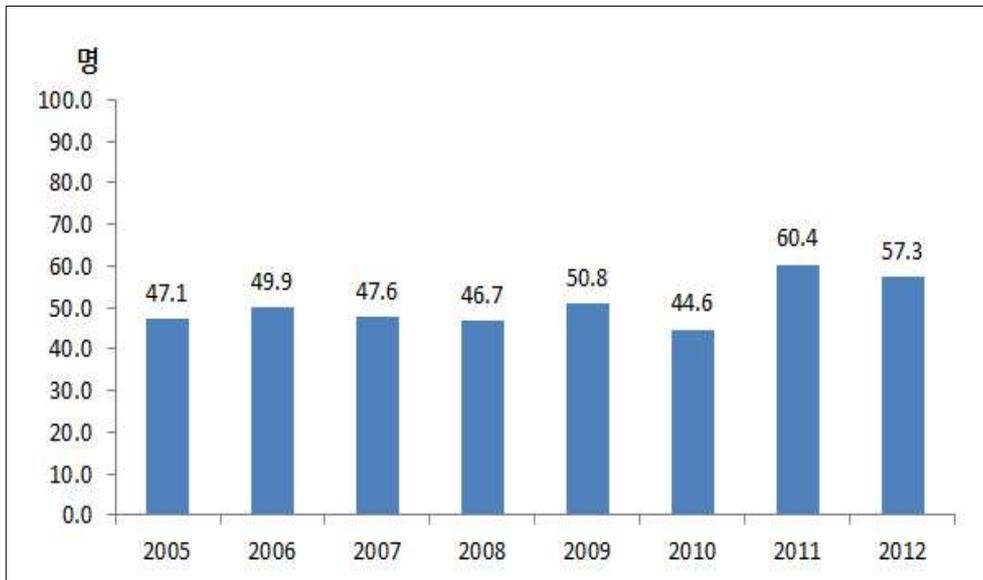
(단위: 건수,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고건수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재 신고	90	97	178	218	269	295	338	298
재신고 비율	4.4	4.3	7.7	9.2	10.1	9.6	9.8	8.7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한편 노인인구 10만 명당 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57.3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신고 건수는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당 학대 신고건수인 47.1건과 비교하면 10.3건 많은 것이다. 이는 노인 학대 신고건수의 증가가 최근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보다 더 빠른 증가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단위: 건)



[그림 III-30] 노인인구 10만 명 당 학대 신고 건수

이와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의 노인 학대경험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이 조사에 의하면 노인 중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08년 10.2%에서 2011년 12.7%로 2.5%p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2011년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학대경험률이 높으며, 유형별 학대경험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한 학대경험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8년은 여성 남성 각각 78.1%, 75.5% 이며 2011년은 여성 남성 각각 10.1%,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III-107 > 노인 학대경험률

(단위: %)

		학대 경험률	학대 유형				
			부터의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2008	전체	10.2	5.6	75.8	12.8	16.3	28.2
	여성	11.3	5.5	78.1	12.6	13.2	24.7
	남성	8.5	5.8	75.5	17.3	14.6	23.1
2011	전체	12.7	0.5	9.4	1.5	1.4	2.5
	여성	13.4	0.6	10.1	1.4	1.7	2.8
	남성	11.7	0.3	8.5	1.6	1.0	2.0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른 노인의 일반적 건강상태 만족도를 보면 2008년 대비 2011년 전체적인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도는 상승하였고, 불만족도는 하락하여 노인의 건강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여성의 건강상태 “매우만족” 비율은 1.6%에서 1.2%로 0.4%p 하락한 반면 남성의 “매우만족” 비율은 3.9%에서 5.3%로 1.4%p 상승하여, 전체적인 만족도가 올라간 이유가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II-108 > 노인의 일반적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2008	전체	2	22.2	21.2	40.2	14.4
	여성	1.6	18.3	22.5	43.6	14
	남성	3.9	36.1	19.9	29.4	10.7
2011	전체	3	31	21.3	36.1	8.7
	여성	1.2	23.8	23.5	41.9	9.6
	남성	5.3	40.6	18.4	28.4	7.4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의 건강상태는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OECD 주요국가에 대해 노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한국의 노인비율이 다른 국가의 비율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한국 노인은 26.3%로, 캐나다 77.1%, 미국 75.2%, 영국 59.5%, 프랑스 37.3%와 비교해 매우 낮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더 나빴다. 여성 노인 중 건강하다고 말한 노인은 22.3%지만 남성 노인은 31.9%로 나타난다. 이는 캐나다, 미국 등 OECD 회원 국가들이 2~5%p 차이인 것과 비교해 매우 큰 차이이다.

<표 III-109 > OECD 주요국가 노인의 건강상태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한국	전체	34.4	32.7	29.7	26.3
	여성	28.4	28.0	24.5	22.3
	남성	43.1	39.6	37.1	31.9
캐나다	전체	74.8	75.5	75.6	77.1
	여성	75.1	75.1	75.6	76.9
	남성	74.4	75.9	75.7	77.3
프랑스	전체	36.0	36.1	35.7	37.3
	여성	34.8	33.9	33.7	34.4

		2008	2009	2010	2011
일본	남성	37.5	38.9	38.3	41.1
	전체	-	-	18.4	-
	여성	-	-	17	-
	남성	-	-	20.1	-
영국	전체	58.2	58.8	60.6	59.5
	여성	56.9	58.2	60.5	58.8
	남성	60.0	59.6	60.7	60.2
미국	전체	75.1	75.8	75.4	75.2
	여성	74.9	75.9	75.7	74.7
	남성	75.5	75.8	75	75.7

주: 건강상태가 좋다(good)고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비율

자료: OECD, OECD Stat Extracts.

노인빈곤율이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의 50% 미만인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빈곤통계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노인빈곤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의 노인빈곤율은 2010년도 보다 2.5%p 상승한 값으로 어느 해보다도 많이 상승하여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 < III-110 > 노인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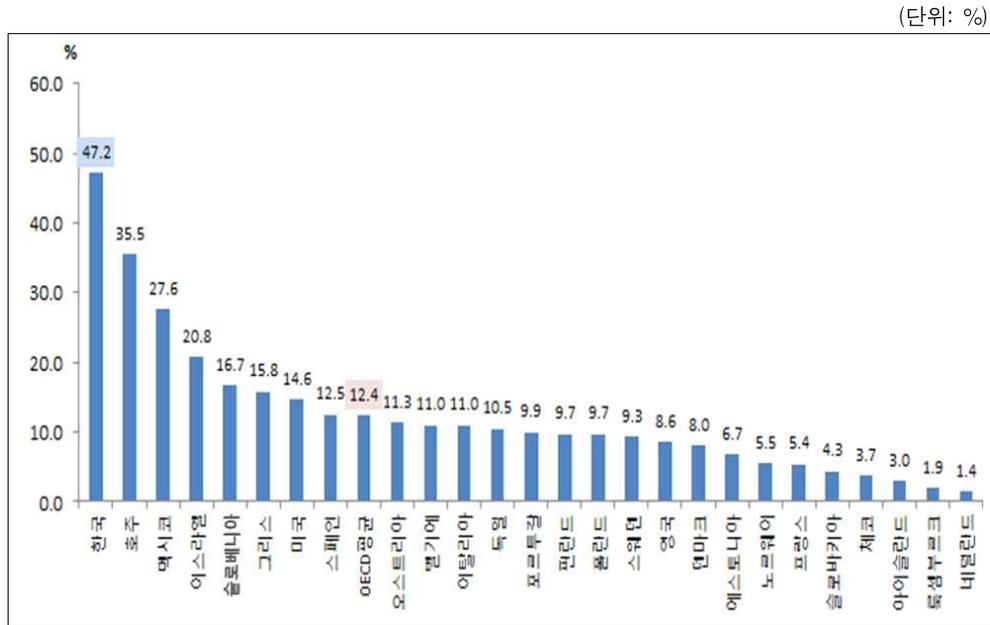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경상소득	39.4	40.0	40.1	4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빈곤통계연보』.

OECD에서 발표한 주요회원국별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10년 47.2%로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인 12.4%보다 34.8%p 높으며, 하위 2위인 호주(35.5%)보다 11.7%p 더 높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1.4%로 나타났고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체코, 프랑스

등을 포함한 14개 이상의 OECD 회원국이 10% 미만의 노인빈곤율을 보였다. 한편 노인빈곤율이 20% 이상인 OECD 회원국은 한국, 호주, 멕시코, 이스라엘 등 4개 국가에 불과했다.



주: 세후 빈곤율.  
 자료: OECD. StatExtracts

[ III-31 ] OECD 주요회원국 노인빈곤율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공적연금의 수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수급자수 및 수급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의 공적연금수급률은 34.8%로 5년 전인 2007년의 공적연금수급률 22.4%에 비해 12.4%p 증가했다. 공적연금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으로 전체 공적연금수급자의 89.5%를 차지한다.

## &lt; Ⅲ-111 &gt; 공적연금수급자 비율 수급률 현황

(단위: %,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급자	계	704,194	870,495	1,078,954	1,252,152	1,432,387	1,606,024	1,800,167	2,050,717
	국민연금	600,421	751,897	944,651	1,103,007	1,268,935	1,428,414	1,605,959	1,835,624
	공무원연금	93,468	104,188	118,503	131,482	143,882	155,777	169,979	188,006
	사학연금	10,305	13,656	15,800	17,663	19,570	21,833	24,229	27,087
수급률	계	16.1	18.9	22.4	24.8	27.3	29.5	31.8	34.8
	국민연금	13.7	16.4	19.6	21.8	24.1	26.2	28.4	31.2
	공무원연금	2.1	2.3	2.5	2.6	2.7	2.9	3	3.2
	사학연금	0.2	0.3	0.3	0.3	0.4	0.4	0.4	0.5

자료: 국민연금공단(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각 연도),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각 연도), 『사학연금통계연보』.

노인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수를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의 반복을 보이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급자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2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 &lt;표 Ⅲ-112 &gt;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717,861	753,681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850,689	821,879
노인세대	238,790	240,030	244,565	242,470	245,935	243,132	244,529	243,708	237,213	236,617
비율	33.3	31.8	30.2	29.2	28.9	28.5	27.7	27.7	27.9	28.8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노인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형태의 변화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 이지 인터내셔널’이 91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한 보고서, Global Age Watch Index 2013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소득분야 복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

가된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전반적으로 참가율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다가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012년에 다시 증가한다. 남성의 경우 2004년에는 41.4%를 기록했으나 2005년에는 0.2%p 감소한 후 2006년과 2007년, 2년에 걸쳐 다시 상승해 42.8%를 기록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또 다시 감소하였다가 2012년에 다시 상승해 41.6%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 III-113>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9.8	30.0	30.5	31.3	30.6	30.1	29.4	29.5	30.7
여성	22.2	22.4	22.7	23.3	22.9	22.2	21.7	21.8	23.0
남성	41.4	41.2	42.0	42.8	41.8	41.5	40.6	40.6	41.6

주: 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60세 이상 노인의 선거투표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투표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으며,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투표율 차이보다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투표율 차이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4> 60세 이상 노인의 선거투표율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2002 16대 대통령 선거	73.9	85.06
2007 17대 대통령 선거	71.2	83.3
2012 18대 대통령 선거	77.1	85.9
2004 17대 국회의원 선거	65.0	80.7
2008 18대 국회의원 선거	59.1	74.3
2012 19대 국회의원 선거	62.7	76.4
2006 4회 지방 선거	65.4	78.7
2010 5회 지방 선거	64.0	76.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분석

## 2) 노인인권 지표 풀

노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노인 인권실태에 기초해 노인인권 지표 풀은 <표 III-115>와 같이 구성했다. 국가인권지표 측정을 위해 선정된 최종 지표 안은 총 6개이다. 노인안전의 지표로 ‘노인학대경험률’을 선정했고, 건강과 관련된 지표로 ‘노인의 일반적 건강상태’를, 복지지표로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을 경제활동 지표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리고 정치참여와 관련된 인권지표로 ‘노인의 선거투표율’을 선택했다.

< III-115> 노인인권 지표 풀

지표 풀	자료원	비고
노인학대경험률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노인의 일반적 건강상태 만족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노인빈곤율	OECD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국민연금공단, 『국민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인의 선거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분석	

---

---

## IV

---

---

###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지표 체계와 산정방법

---

---

- |                     |     |
|---------------------|-----|
| 1. 지수의 유형과 개발과정     | 209 |
| 2. 인권지수의 영역 및 지표 구성 | 211 |
| 3. 인권지수의 산정절차와 방법   | 255 |

## 1. 지수의 유형과 개발과정

### 가. 지수의 정의와 유형

지표(Indicator)의 사전적 의미는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지표란 인권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수(Index)는 수량의 대비에서 기준치를 100으로 했을 때의 100분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즉,  $\text{지수} = (\text{비교량}) \div (\text{기준량}) \times 100$ 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단일한 속성을 가지는 1계열을 취급할 때는 개별지수(individual indices)라 하고, 서로 관련된 많은 계열을 취급할 때를 복합지수(composite indices)라고 한다. 이 중 복합지수는 여러 가지 지표 혹은 하위지수로서 산정한다. 즉, 정교한 지수는 하위지수(sub-indices)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지수점수는 하위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은 지수로 대표적인 것이 환경지속가능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국가 성평등지수(Gender Equality Index) 등이 있다. 단순한 지수로는 하위 지표(subset of indicators)로서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지수로 유엔개발기구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등이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인권지수를 보면 휴매너(Humana) 인권지수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하는 하위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복합지수이고, 경제사회권이행지수는 하위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회권 복합지수, 프리덤하우스 인권지수는 유엔개발기구의 정치적 자유지수는 하위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자유권 복합지수이다. 이 외에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인권지수는 하위지표로 구성된 인권지수에 속한다.

### 나. 인권지수 개발 절차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역(dimension)을 선택해야 한다. 영역 선택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각 영역의 분산(variance)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가이다. 두 번째는 영역들 간의 경험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특정 영역을 선택하고, 각 영역들 간에 어느 정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영역 간에 상관관계가 크면 영역을 통합하게

나 해당 영역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든지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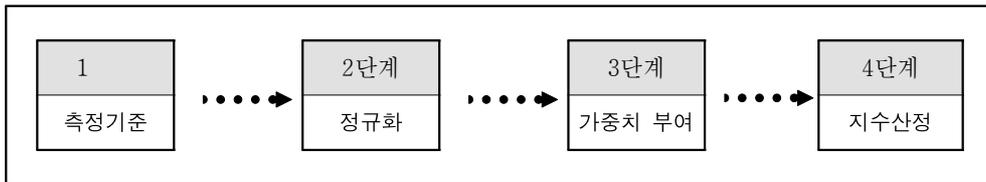
여러 지표 값을 하나의 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 IV-1]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지수산정과 여러 지표를 지수화 하는 일련의 단계로 볼 수 있다. ① 먼저 인권지수 개발의 시작은 인권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 즉, 인권지표의 측정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인권지표의 경우 인권수준을 인권침해로 측정할 것인지 혹은 인권향유로 측정할 것인지, 투입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혹은 산출지표로 평가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인권지수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소극적인 권리인 자유권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인권침해 정도 중심으로 측정하고 적극적인 권리인 사회권 연구는 인권향유 정도 중심으로 인권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권에 따라 인권을 일률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권리마다 측정기준이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인권을 측정하는 지표가 어떠한 지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야 한다.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권을 지표로 전환하는 방법에 따라 원칙상 권리, 실제상 권리 그리고 정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권기준에 대한 책무, 책무의 이행노력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개념화한 구조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가 있다. 실제 자유권 지수, 사회권지수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하는 지수들은 투입지표(input or means indicators)와 산출지표(outcomes indicators)를 복합해서 사용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개발한 지표개념에서 보면 대체로 과정지표는 투입지표, 그리고 성과지표는 산출지표를 나타낸다. 그러나 과정지표는 투입지표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의 성격도 가진다. 성과지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향지표의 성격도 띈다.

그리고 자유권 지수들은 주로 투입지표, 사회권지수는 산출지표를 주로 사용하여 인권수준을 산정하고 있으나, 개별 권리의 특성 혹은 자료의 입수한계 등으로 인해서 자유권 지수 혹은 사회권 지수 중에서도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혼재해서 권리의 이행 혹은 향유 수준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국가인권지수 개발이기 때문에 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과정 지표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료

입수 한계 등으로 인해서 필요하면 자유권, 사회권 그리고 연대권 지표를 각각 구축할 때에도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혼합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김태홍 외(2012).

[ IV-1 ] 지수의 개발단계

## 2. 인권지수의 영역 및 지표 구성

### 가. 인권지수의 영역 구성

인권지수는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종합적이며 균형적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인권문제와 현안, 주요 인권침해 집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인권정책 개발과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기능을 해야 한다. 인권지수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합지수(composite index)와 마찬가지로 인권지수의 지표체계 구축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권지수의 영역은 인권의 내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권내용은 기본적으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표 IV-1>의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생명권, 신체적 자유와 안전,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참정권, 권익 피해를 구

제받을 권리, 평등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표 IV-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근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에 관한 권리, 주거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인 기반은 취약하지만 자유권과 시민권에 이어서 제3세대 인권인 연대권이 있다. 연대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으나 대체로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의사소통권, 인도적 구조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IV-1>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권리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 및 규약 <sup>1)</sup>	주요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UDHR 3조/ ICCPR 6조	생명권
	UDHR 3~5조, 9조/ ICCPR 7~9조	신체의 자유
	UDHR 6~8조, 10~11조 / ICCPR 14~1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UDHR 12조, 16조/ ICCPR 17조, 23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 보호받을 권리
	UDHR 13조/ ICCPR 12~13조	이동의 자유
	UDHR 18조/ ICCPR 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UDHR 19조/ ICCPR 19조	언론, 출판 및 표현의 자유
	UDHR 20조/ ICCPR 21~22조	집회·결사의 자유
	UDHR 21조/ ICCPR 25조	참정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UDHR 22조, 25조/ ICESCR 9조, 11조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할 권리
	UDHR 23~24조/ ICESCR 6~7조	근로권, 근로3권, 경제활동권리
	UDHR 25조/ ICESCR 12조	건강권
	UDHR 25조/ ICESCR 11조	주거권
소수자 권리	UDHR 2조, 14조/ CEDAW, CRC, CRPD, CMM,	여성, 아동,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이주민(난민)

주: UDHR: 세계인권선언, ICCP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ICESC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CRC: 아동권리 협약, CRPD: 장애인권리협약, CMM: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 권리보호협약임.

인권지수의 영역을 기존 인권지수와 개발된 인권지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역을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구분한 인권지수 혹은 지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구성하는 하위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수의 하위 영역을 보기 위해서 국내외 13개 인권지수의 영역구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 13개 지수 혹은 지표를 구분하면, <표 IV-2>와 같이 자유권과 사회권 영역을 모두 구성하고 지수가 8개, 자유권만 있는 지수가 3개 그리고 사회권만 있는 지수가 2개였다.<sup>86)</sup> 이러한 13개 지수 및 지표를 대상으로 지수의 영역구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유권과 사회권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8개 지수와 자유권 영역만으로 구성된 3개 지수를 합한 11개 지수의 세부 영역구성을 보면, <표 IV-2>와 같이 11개 지수 중 9개 지수가 법의 지배 영역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8개 지수에서 신체의 자유, 참정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영역을 구성하고 있었고, 7개 지수에서 생명권, 그리고 6개 지수에서 이동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을 각각 구성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사생활보호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가 각각 5개, 평등권 영역이 있는 지수가 5개이었다.

자유권과 사회권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8개 지수와 사회권 영역만으로 구성된 2개 지수를 합한 10개 지수의 영역구성을 보면 먼저 9개 지수가 교육권 영역을 구성하고 있었다.<sup>87)</sup> 그리고 건강권 영역을 가진 지수가 8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가진 지수가 각각 7개이었다. 주거권과 적정생활을 할 권리 영역을 가진 지수는 9개 중에서 5개이었고, 평등권 영역을 가진 지수도 5개이었다. 이 외에 2개 지수는 문화권, 식량권 영역을 그리고 1개 지수는 환경권영역을 구성하고 있었다.

86) 분석대상인 지수 및 지표 중에서 상당수는 복합지수가 아니라 일종의 지표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분석대상 지수 및 지표 중에서 지수 영역이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표 IV-2>에서 국가인권기분계획에서 굽타(K. Gupta) 인권지수까지임. 자유권만 구성하고 있는 지표는 UNDP PFI, CIRI, Freedom House 인권지수이고, 사회권만 구성하고 있는 지표는 SERF와 문진영 지수임. 굽타 인권지수는 시민권, 참정권, 평등권과 사회권의 세부 권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포괄하는 지수임, UNDP PFI, CIRI는 노동권과 소수자인 여성,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권리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 지수로 분류하였음.

87) 인권백서에 있는 지표체계의 경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영역이 포괄적으로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동 지표를 제외하면 9개 지수가 모두 교육권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국제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기존 인권지수 및 지표 체계 등을 감안하고, 인권지수 영역구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의 영역을 <표 IV-3>의 2013년 연구(안)과 같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권리의 특성 등이 상이하다. 즉, 자유권은 일정한 생활 영역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와 정체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업무에 참여하고 국가 업무를 통제하는 권리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서 사회권은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인권으로 국가,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자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자유권과 사회권의 지표 단위(units)가 상당히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권리별로 입수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의 정도가 다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 영역을 각각 별도로 구축하였다. 여기서 영역을 별도로 구축한다는 의미는 자유권, 사회권 구분 없이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은 자유권 영역간의 그리고 사회권은 사회권 영역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가인권지수의 지표체계를 보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영역은 8개 영역 즉, 생명권, 신체의 자유, 권익피해 구제권리, 인격·프라이버시권, 이동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영역은 5개 영역 즉, 사회보장권, 노동·경제활동권, 건강·환경권, 교육·문화권, 주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음에 따라 본 연구에는 인권지수 지표체계에 소수자 인권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체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들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인권을 하나의 영역으로 별도로 구축하여, 자유권 및 사회권과 함께 복합지수인 인권지수(composite human rights index)로 구축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 권리 및 취약계층 인권이 모든 인권규범 혹은 원칙에 걸쳐져 있음에 따라 인권지표체계에 별도로 구축하였다.

< IV-3>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 지표 영역 구분

	2012 연구(안)		1차,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인권의 해설	2013년 연구(안)	
	영역	세부영역	영역 / 세부영역	영역 / 세부영역	영역 / 세부영역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권	생명권	생명권	생명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적정절차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권익피해 구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유권	사생활, 가족생활 보호받을 권리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사생활 및 가족생활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 가족생활 보호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거주·이전 자유	거주·이전 자유	이동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상과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참정권	참정권	참정권	참정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보장권	사회보장, 적정한 생활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적정한 생활할 권리	사회보장권
노동권		근로권, 근로3권, 경제활동권리	근로권, 근로3권, 경제활동권리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 경제활동권	
건강권		건강권	건강·보건 및 환경권	건강권	건강권, 환경	
교육권		교육권	교육받을 권리	교육권	교육권	교육권, 문화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주거권	주거권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문화권	주거권		

## 나. 영역별 가중치 산정 방법과 결과

인권지수의 지표체계를 구축할 때 각 권리지표가 갖는 중요성 내지 개인 및 사회적 인식이 다를 경우 영역별로 적절한 가중치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른 인권현안이 있고, 또한 개인 및 사회의 개별 인권들에 대한 의식과 평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경험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가인권지수가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종합적이며 균형적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인권문제와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적절한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합지수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방법 중에서 통계모델을 통해서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자료포괄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비관측요인 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 등이 있다.<sup>88)</sup> 이 외에도 상당수의 지수개발에서 사용하는 동등한 가중치 부여 방법(equal weighting)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결과 자료를 이용한 계층적 분석법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가중치 설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권리를 구분하여 각각 설정하였다.

국가인권지수는 세 개의 권리 영역에 대해 측정하며, 각 권리별로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가중치 부여 방법은 계층적 분석법, 주성분분석, 여론 분석법 등의 다양하다. 본 연구는 가중치 선정 방법으로 전문가 조사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사용한다. 계층적 분석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영역에 대해 상대적 선호를 비교하여 작성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해야한다. 이에 조사를 위해 설문지는 <표 IV-4>와 같이 구성하였다.

---

88) OECD(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p.31, <Table 4. Compatibility between aggregation and weighting methods>.

< IV-4> 영역 가중치 산정을 위한 조사문항 구조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A)
		9 · 7 · 5 · 3 · 1 · 3 · 5 · 7 · 9			
1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② 신체의 자유
2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③ 법의 지배
3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④ 사생활보호
4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이동의 자유
5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6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⑦ 언론·출판
7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⑧ 집회·결사
8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순 참정권

계층적 분석법(AHP)이란 1970년대 초 사티(Saaty)에 의해 개발된 분석방법으로 의사결정 목표나 평가기준이 다수일 때 개별항목의 가중치 산정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계층적 분석법은 n개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이원 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s)  $\times_n$ 을 구성하고 A의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를 찾는 과정과 동일하다.

$$A \cdot W = \lambda_{max} \cdot W \quad (\lambda: A \text{의 최대 고유치})$$

$$\text{여기서, } A = [a_{ij}] = \begin{pmatrix} a_{11} & a_{12} & a_{13} & \dots & a_{1n} \\ a_{21} & a_{22} & a_{23} & & a_{2n} \\ \vdots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_{n1} & a_{n2} & \dots & \dots & a_{nn} \end{pmatrix} = \begin{pmatrix} w_1/w_1 & w_1/w_2 & \dots & w_1/w_n \\ w_2/w_1 & w_2/w_2 & & w_2/w_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w_n/w_1 & w_n/w_2 & \dots & w_n/w_n \end{pmatrix}$$

$W = (w_1 \cdot w_2 \cdot \dots \cdot w_n)$  으로 고유벡터이다. 가중치는 고유벡터  $W$  중에서  $\sum_{j=1}^n W_j = 1$ 을 만족하는 고유벡터를 구하는 것이고 고유벡터의 각 요소가 가

중치가 된다. 한편 이원비교는 응답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계층적 분석법에서 일관성 검증은  $a_{ij}$ 와  $a_{jk}$ 가 각각  $w_j/w_i$ 와  $w_k/w_j$ 의 값을 갖는다면  $a_{ij} \times a_{jk} = a_{ik}$ 가 성립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성 검증은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sup>89</sup>)와 무작위지수(Random Index: RI<sup>90</sup>)의 비로 나타내며, 이를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sup>91</sup>)이라 한다( $CR = \frac{CI}{RI} \times 100$ ). 일관성비는 0.1 미만이면 이원비교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조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는 총 93명이다. 성별로 남성이 61명(65.6%)이고 여성이 32명(34.4%)이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7명(39.8%)으로 가장 많고, 50대 33명(35.5%), 30대 18명(19.4%)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학력은 박사 학위자가 52명(55.9%)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석사와 학사 학위자가 각각 15명(16.1%)과 26명(28.0%)로 나타났다. 소속을 보면, 교수 집단인 학계가 37명(39.8%), 정부기관이 26명(28.0%), 시민단체가 19명(20.4%), 그리고 연구기관이 11명(11.8%)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관심(혹은 전공) 인권유형별로 보면 자유권이 46명, 사회권이 47명으로 반반 정도 차지하였다.

89)  $I = \frac{(\lambda_{\max} - n)}{n - 1}$  로 계산하며, 여기서  $\lambda_{\max}$ 는 최대 고유치이며,  $n$ 는 벡터의 요소인.

90) RI는 척도 1에서 9사이의 값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하여 입력행렬을 만들어 일관성지수(CI)를 산정하는 것으로, 사티와 컨스(Saaty & Kearns)는 이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무작위지수값을 소개함.

	1×1	2×2	3×3	4×4	5×5	6×6	7×7	8×8	9×9	10×10
RI	0.00	0.0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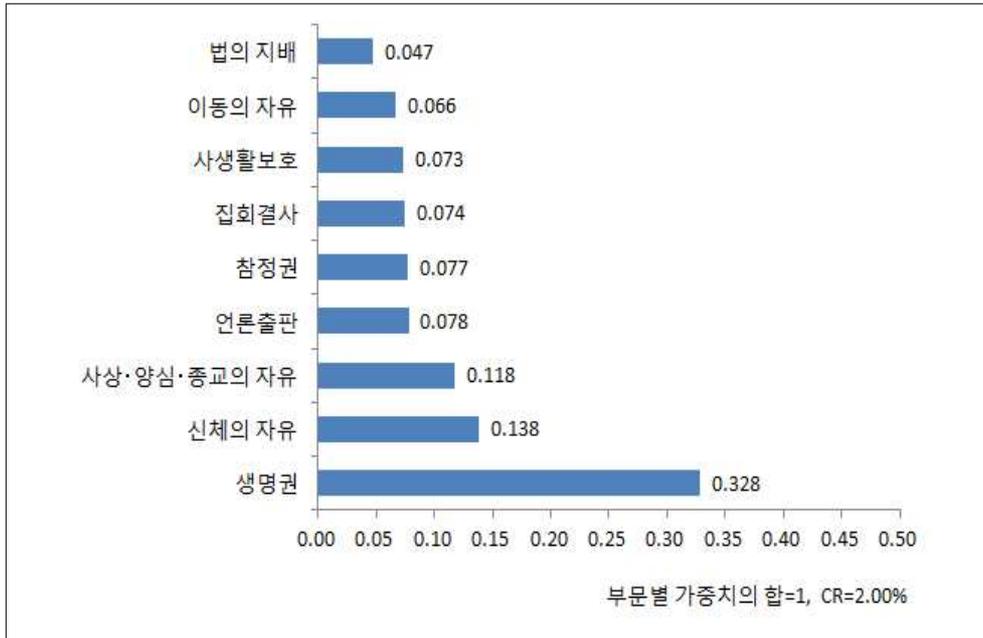
91) CR값은 10% 이하일 때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다고 하며, 20%이내는 용납할 수 있는 비율로 보고 있음.

## &lt; IV-5&gt;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사례수	응답자 특성	
			%	N
전체		(93)	100.0	93
성별	남성	(61)	65.6	61
	여성	(32)	34.4	32
연령	30세 미만	(2)	2.2	2
	30~39세	(18)	19.4	18
	40~49세	(37)	39.8	37
	50~59세	(33)	35.5	33
	60세 이상	(3)	3.2	3
학력	대졸	(26)	28.0	26
	석사	(15)	16.1	15
	박사	(52)	55.9	52
소속1	학계	(37)	39.8	37
	연구소	(11)	11.8	11
	정부기관	(26)	28.0	26
	시민단체	(19)	20.4	19
소속2	학계	(37)	39.8	37
	정부/연구	(37)	39.8	37
	시민단체	(19)	20.4	19
인권유형	자유권	(46)	49.5	46
	사회권	(47)	50.5	47

영역에 대해 전문가 조사결과는 세 개의 영역에 대해 실시되었다. 먼저 시민·정치적 권리영역의 가중치 결과를 보면 [그림 IV-2]와 같다. 총 9개 영역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인권 영역은 생명권이였다. 생명권은 전체 가중치 합('1')의 0.328을 차지했고 신체의 자유가 0.138로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0.118, 언론·출판이 0.078, 참정권이 0.077, 집회·결사의 자유가 0.074, 사생활 보호가 0.073, 이동의 자유가 0.066이고 법의 지배가 가장 낮은 0.047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정치적 권리영역에 대한 응답자의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은 2.00%이고 일치성지수(CI)는 0.028로 매우 양호한 수치를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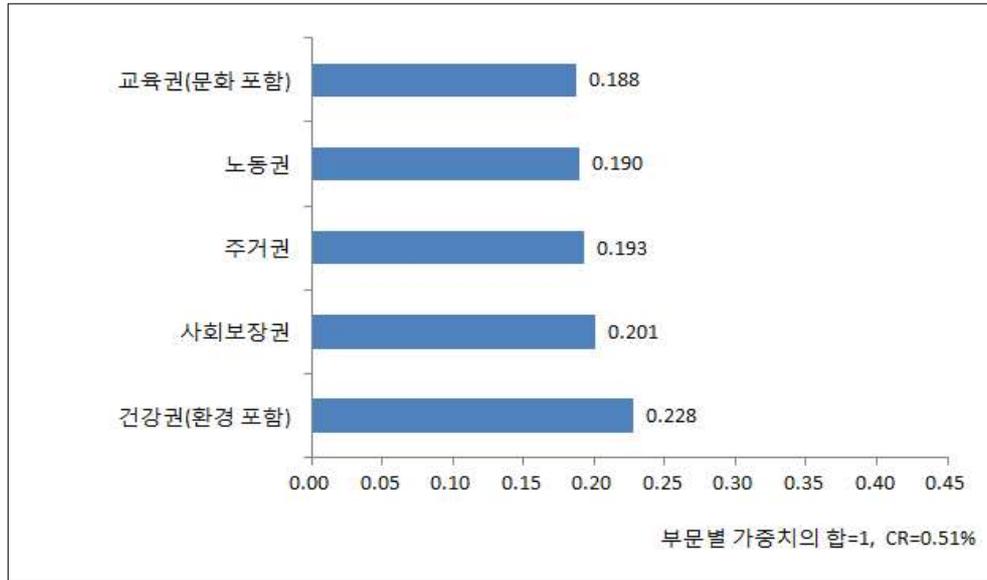


[ IV-2]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의 가중치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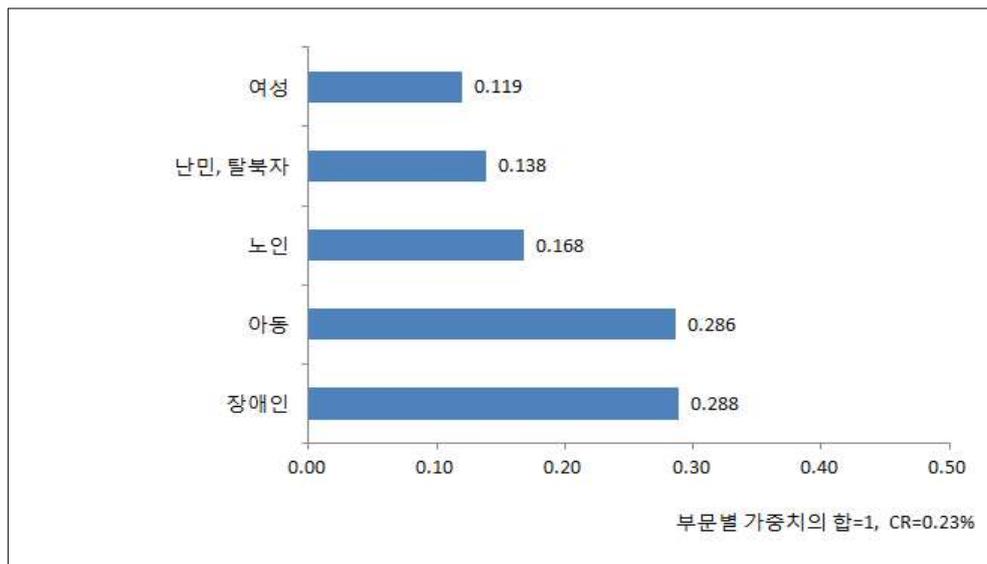
다음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의 가중치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비해 가중치가 균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5개의 영역 중 건강권(환경권 포함)이 가장 높은 0.228를 보였고 사회보장권이 0.201로 다음으로 높았다. 이외 주거권은 0.193, 노동권은 0.190, 교육권(문화권 포함)은 0.188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 대한 응답자의 일치성지수(CI)는 0.006이고 일관성 비율은 0.51%로 매우 높은 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소수자 인권 영역의 경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동일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중요도를 쌍대비교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 소수자 인권 5개 영역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인 영역은 장애인으로 0.288을 보였다. 아동은 장애인과 비슷했지만 약간 낮은 0.286를 보였고, 노인이 0.168, 난민·이주자·탈북자가 0.138, 그리고 여성이 0.1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수자 영역에서 응답자의 일치성지수(CI)는 0.003이고 일관성 비율은 0.23%로 일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IV-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의 가중치 산출 결과



[그림 IV-4] 소수자 권리 영역의 가중치 산출 결과

## 다. 영역별 인권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인권 지표 구성은 연구진과 자문회의를 통해 영역별 지표를 선정하였고, 전문가를 통해 영역별 인권지수에 활용될 지표를 선정보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영역별 지표 선정은 지표별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영역별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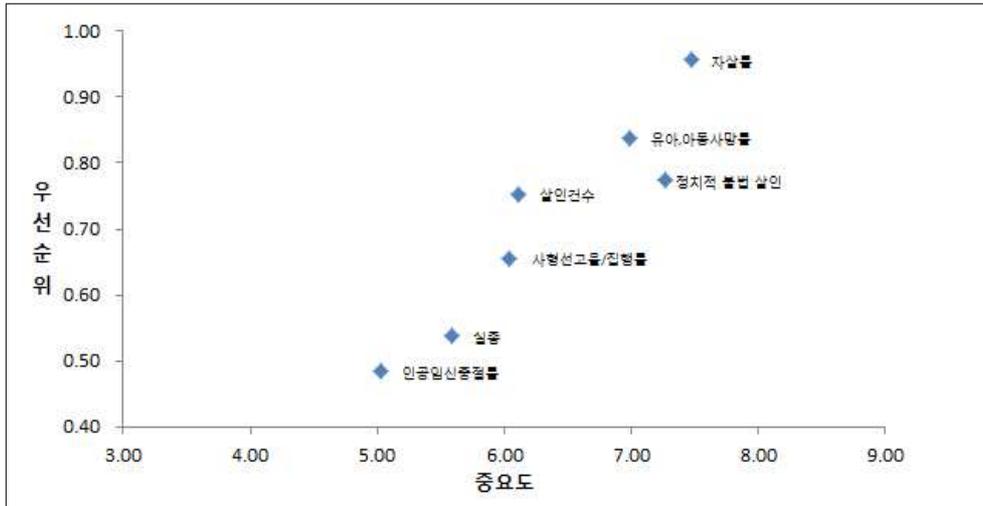
#### 가) 생명권

생명권 영역은 연구진의 자문을 통해 선정된 7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이들 지표에 대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자살률, 정치적 불법 살인, 유아·아동사망률 등이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모두 높았고, 사형선고율/집행률, 인공임신중절률, 실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였다. 한편 살인건수는 7개 지표 중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중간정도의 위치를 차지했다.

< IV-6> 생명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자살률	7.47	0.96
정치적 불법 살인	7.27	0.77
유아·아동사망률	6.99	0.84
살인건수	6.11	0.75
사형선고율/집행률	6.04	0.66
실종	5.59	0.54
인공임신중절률	5.03	0.48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5] 생명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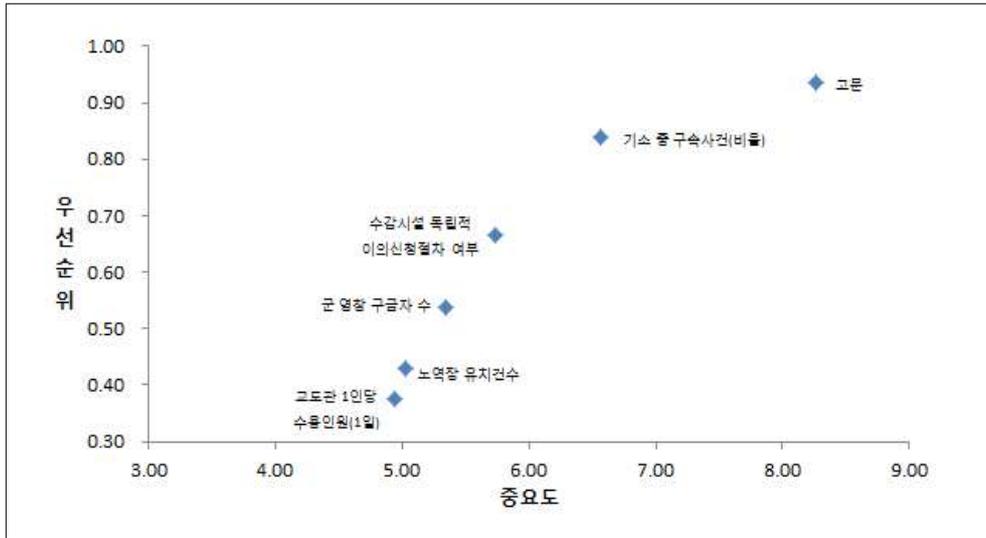
나)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영역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 조사결과, 가장 높은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인 지표는 고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소 중 구속사건(비율), 수감시설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여부, 군 영창 구금자 실종,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건수,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1일) 등의 순서대로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의 경우 중요도와 우선순위 점수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IV-7> 신체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고문	8.26	0.94
기소 중 구속사건(비율)	6.57	0.84
수감시설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여부	5.74	0.67
군 영창 구금자 수	5.34	0.54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건수	5.03	0.43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1일)	4.95	0.38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6] 신체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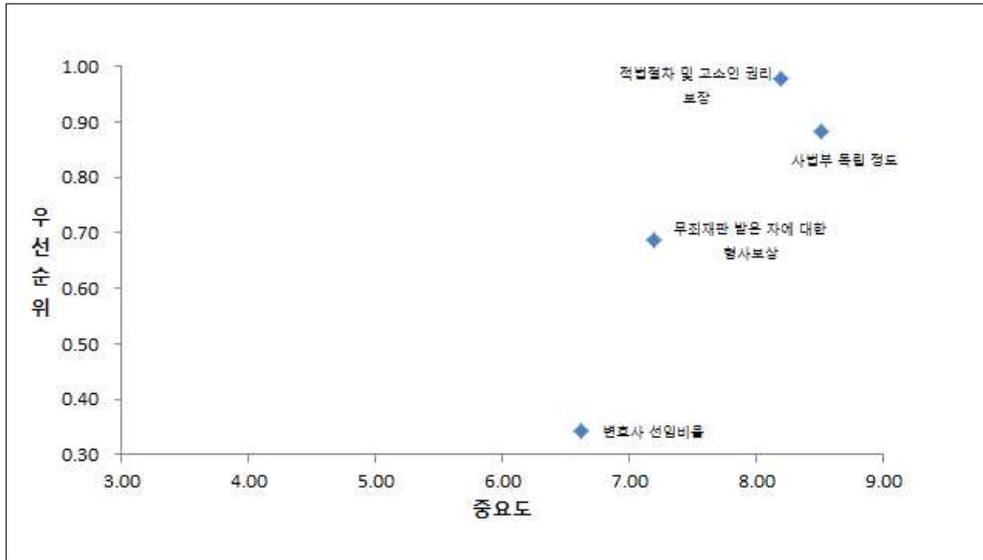
다)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작은 4개의 지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사법부 독립정도와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였다. 변호사 선임비율과 무죄재판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지표의 경우 중요도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우선순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 선임 비율은 중요도에 비해 우선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IV-8> 법의 지배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사법부 독립 정도	8.51	0.88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8.19	0.98
무죄재판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7.19	0.69
변호사 선임비율	6.62	0.34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7] 법의 지배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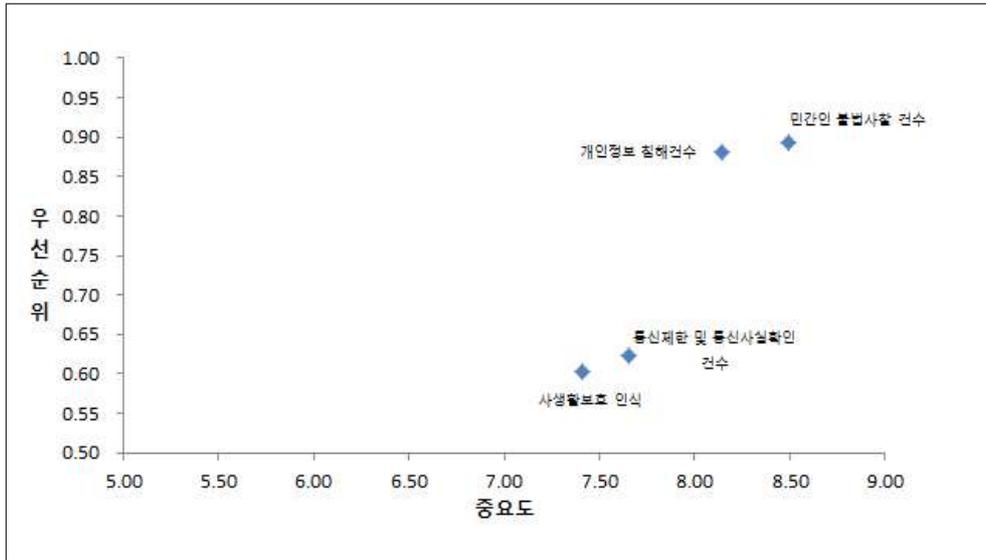
라)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 영역은 4개의 지표로 비교적 적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면 중요도는 4개의 지표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민간불법사찰 건수가 가장 높은 8.49점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8.14점으로 높았다. 이는 우선순위에서도 동일했다. 사생활보호 인식은 중요도에서 7.41점으로 비교적 높지만, 우선순위는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IV-9> 사생활보호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	8.49	0.89
개인정보 침해 건수	8.14	0.88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 건수	7.66	0.62
사생활보호 인식	7.41	0.60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8] 사생활보호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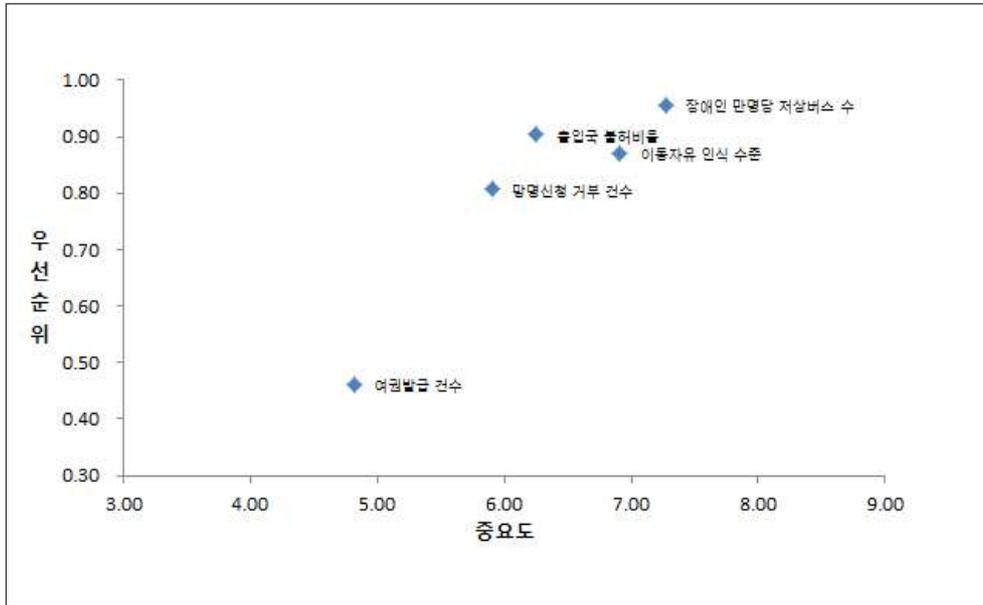
마) 이동의 자유

이동의 자유 영역은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장애인 만 명당 저상버스 수가 가장 높았고 이동자유 인식 수준, 출입국 불허비율 등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다. 반면, 망명신청 거부 건수와 여권발급 건수는 비교적 낮은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여 주었다.

<표 IV-10> 이동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장애인 만 명 당 저상버스 수	7.28	0.96
이동자유 인식 수준	6.91	0.87
출입국 불허비율	6.25	0.90
망명신청 거부 건수	5.90	0.81
여권발급 건수	4.82	0.46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4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9] 이동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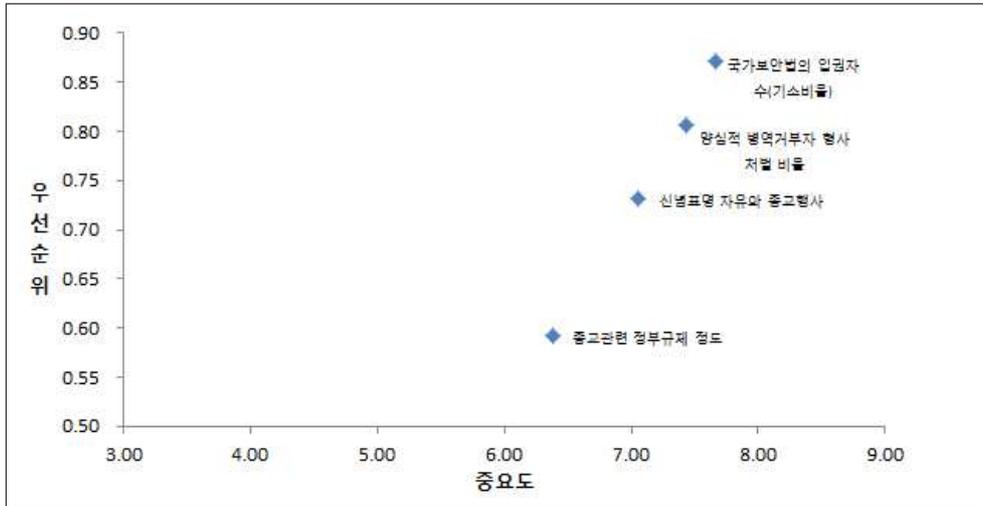
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은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조사 결과를 보면 4개의 지표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국가보안법의 입건자 수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비율이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와 신념표명 자유와 종교행사의 경우 중요도는 낮지 않았으나, 우선순위는 낮게 나타났다.

<표 IV-1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국가보안법의 입건자 수(기소비율)	7.67	0.87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비율	7.43	0.81
신념표명 자유와 종교행사	7.05	0.73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6.39	0.59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10]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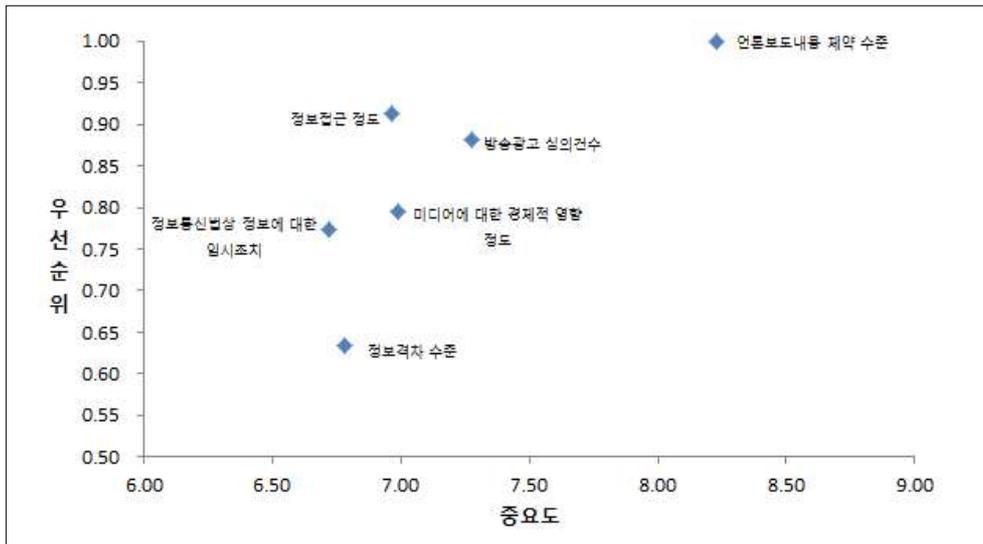
사)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는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언론보도 내용 제약수준이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다른 지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외 지표는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단, 중요도 점수로 보면, 방송광고 심의 건수,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정도, 정보접근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우선순위 점수에서는 정보격차 수준이 언론·출판의 자유 지표 중 가장 낮았다.

<표 IV-12> 언론·출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8.23	1.00
방송광고 심의 건수	7.28	0.88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6.99	0.80
정보접근 정도	6.97	0.91
정보격차 수준	6.78	0.63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6.72	0.77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11] 언론·출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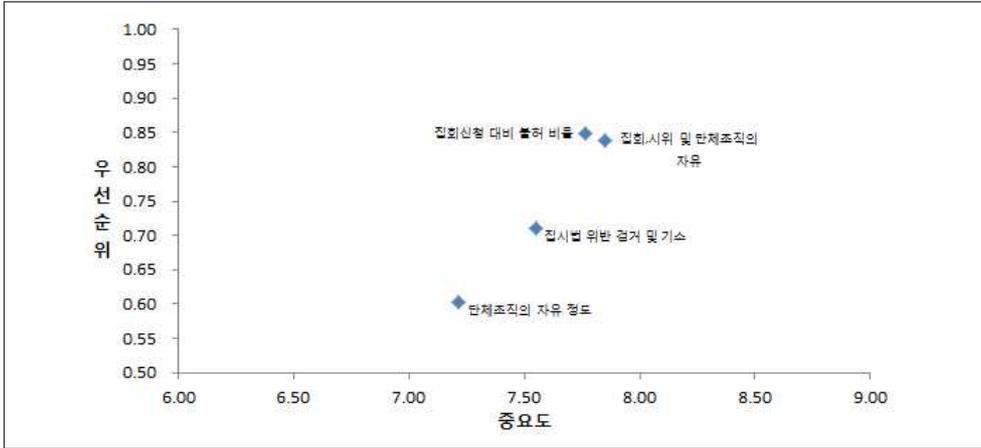
아)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은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중요도는 집회, 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에서 가장 높고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에서 가장 낮다. 하지만 그 차이는 0.63점으로 크지 않다. 우선순위로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가 0.60으로 가장 낮고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도 0.71로 낮은 편이다. 집회, 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0.84)와 집회 신청 대비 불허비율은 중요도뿐 아니라 우선순위도 0.8 이상 높게 나타난다.

<표 IV-13>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7.85	0.84
집회신청 대비 불허 비율	7.76	0.85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7.55	0.71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7.22	0.60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12]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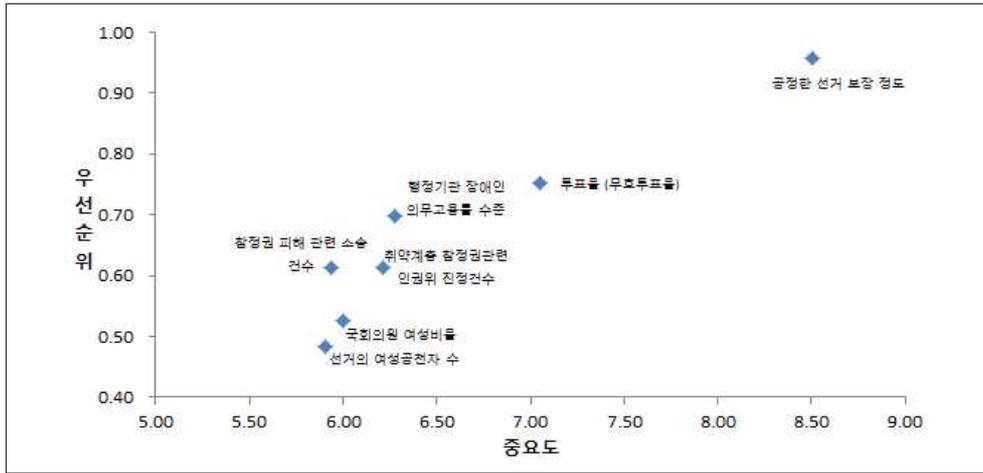
자) 참정권

참정권 영역은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 산정에 활용될 지표선정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보면, 참정권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지표는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로 나타났다.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는 중요도에서 9점 만점에 8.51점을 받았고 우선순위도 응답자의 96%인 0.96점을 받았다.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와 순위는 투표율(무효투표율) 지표가 차지했고,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과, 선거의 여성공천자 수, 국회의원 여성비율 등과 같은 지표는 중요도와 우선순위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IV-14> 참정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8.51	0.96
투표율 (무효투표율)	7.05	0.75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	6.28	0.70
취약계층 참정권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6.22	0.61
국회의원 여성비율	6.00	0.53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5.94	0.61
선거의 여성공천자 수	5.90	0.48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55	0.35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13] 참정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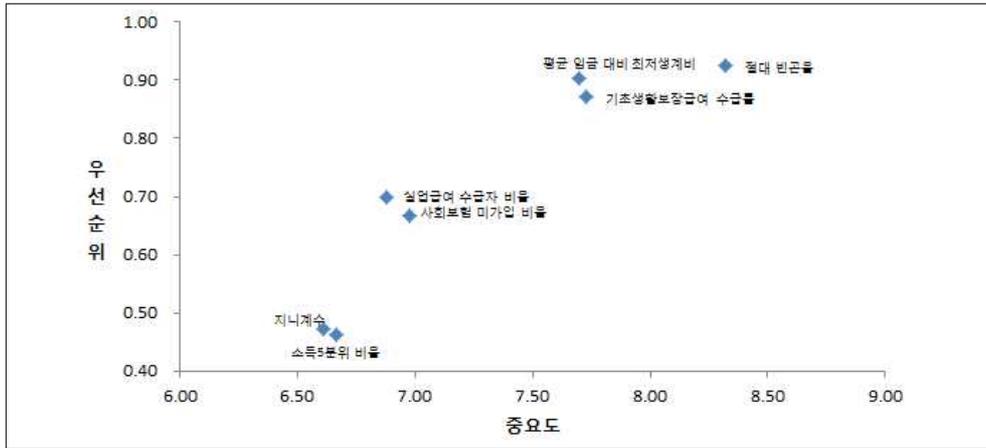
### 가)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 영역은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7개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절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과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가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에 비해 소득5분위 비율과 지니계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 등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표 IV-15> 사회보장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절대빈곤율	8.32	0.92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7.73	0.87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7.70	0.90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	6.98	0.67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6.88	0.70
지니계수	6.67	0.46
소득5분위 비율	6.61	0.47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14] 사회 보장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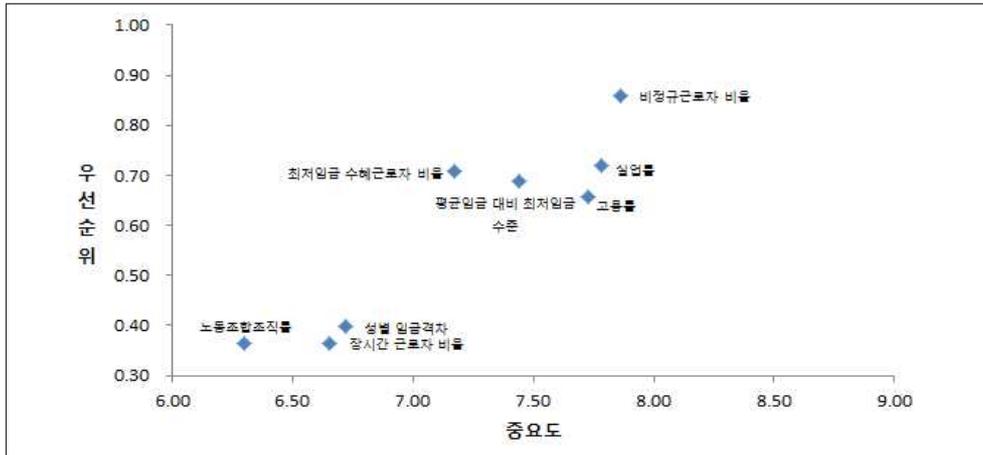
나) 노동권

노동권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지표에 대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정규근로자 비율, 실업률, 고용률 등은 상위 그룹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은 중위그룹에 위치해 있다. 성별 임금격차, 장시간 근로자 비율, 노동조합조직률, 단체교섭 적용률 등은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표 IV-16> 노동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비정규근로자 비율	7.86	0.86
실업률	7.78	0.72
고용률	7.73	0.66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7.44	0.69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	7.17	0.71
성별 임금격차	6.72	0.40
장시간 근로자 비율	6.66	0.37
노동조합조직률	6.30	0.37
단체교섭 적용률	6.14	0.01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15] 노동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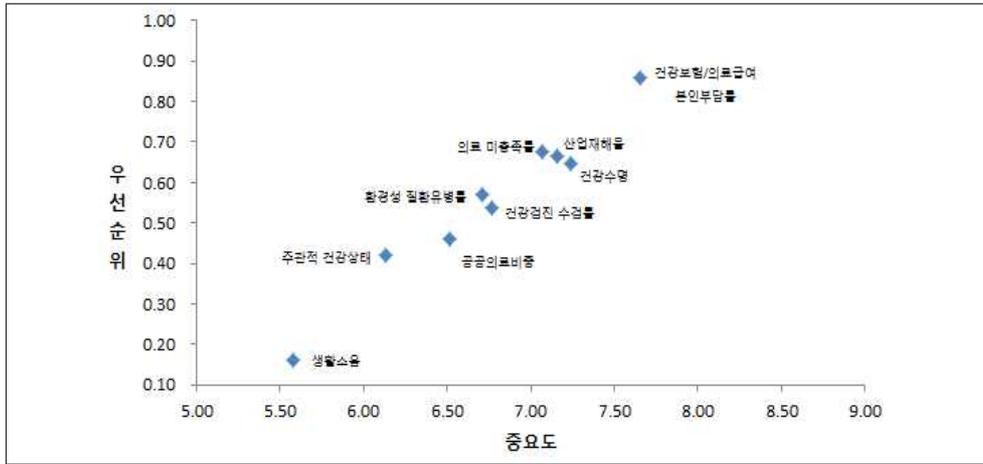
다) 건강권(환경권)

건강권 영역은 노동권과 동일하게 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중요도 점수는 노동권에 비해 건강권 영역 지표의 점수들이 약간 낮은 편이다. 우선순위로 볼 때,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 부담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건강수명, 산업재해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한편, 공공의료비중,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소음 등의 경우 다른 지표에 비해 우선순위와 중요도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표로 나타났다.

<표 IV-17> 건강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률	7.66	0.86
건강수명	7.24	0.65
산업재해율	7.16	0.67
의료 미충족률	7.06	0.68
건강검진 수검률	6.76	0.54
환경성 질환유병률	6.71	0.57
공공의료비중	6.52	0.46
주관적 건강상태	6.13	0.42
생활소음	5.58	0.16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16] 건강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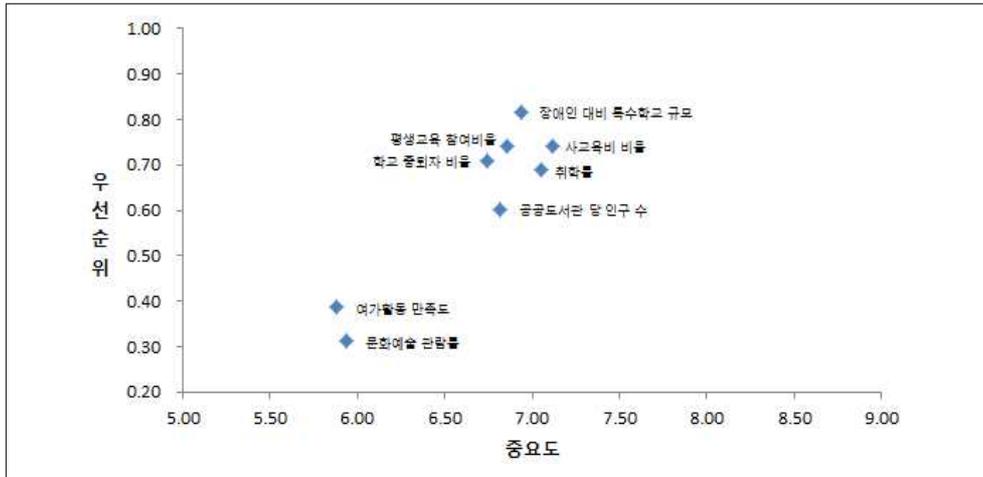
라) 교육권(문화권)

교육권 영역은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사교육비 비율이 중요도와 우선순위 모두에서 가장 높았으며 취학률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장애인 대비 특수학교 규모와 평생교육 참여비율,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등은 중요도와 우선순위 모두에서 중상위 그룹으로 묶였다. 반면 여가활동만족도와 문화예술 관람률 지표는 중요도와 우선순위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IV-18> 교육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사교육비 비율	7.12	0.74
취학률	7.05	0.69
장애인 대비 특수학교 규모	6.94	0.82
평생교육 참여비율	6.86	0.74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6.82	0.60
학교 중퇴자 비율	6.74	0.71
문화예술 관람률	5.94	0.31
여가활동 만족도	5.88	0.39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17] 교육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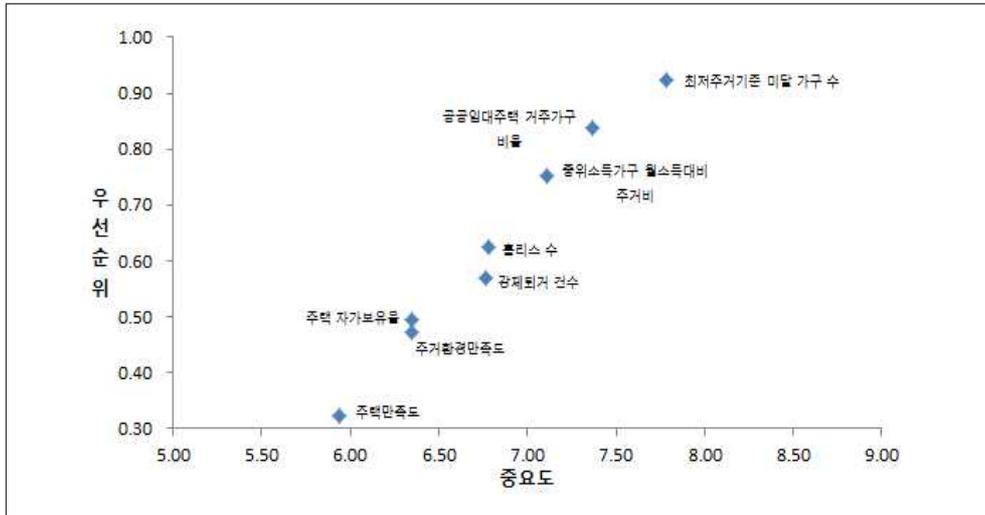
마) 주거권

주거권 영역은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에 대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가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과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는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상위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비해 주거권 지표 중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는 중요도와 우선순위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주거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7.78	0.92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7.37	0.84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	7.11	0.75
홀리스 수	6.78	0.62
강제퇴거 건수	6.76	0.57
주택 자가보유율	6.34	0.49
주거환경만족도	6.34	0.47
주택만족도	5.94	0.32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 IV-18] 주거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 라. 영역별 인권지표 선정

국가인권지수의 영역별 지표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영역별 지표 선정은 지표별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영역별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데, 델파이조사 결과 지표 선정기준은 먼저 중요도가 10점 만점에 최소 5점 이상 그리고 우선순위는 1.0을 기준으로 0.5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거나 혹은 미충족하더라도 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가 추가로 주요한 지표로 제안한 내용과 전문가 및 연구진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해당 인권영역에 필요한 지표 여부, 통계생산 여부 및 생산 주기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영역별 과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된 통계 중에서 성과지표 성격을 가진 지표 중 일부도 대표 혹은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크게 대표지표와 관리지표로 구분하였다. 먼저 대표지표는 국가인권지수 산정과정에서 포함된 각 영역의 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관리지표는 국가인권지수 산정에는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나 대표지표를 보조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지표들로서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를 말

한다. 관리지표의 다수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혹은 대표성 없는 지표로서, 정기적으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로 생산되어야 할 지표들이다.

### 1) 시민·정치적 권리의 영역별 최종 지표

영역별로 최종 선정한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시민정치권의 생명권 영역 지표의 경우 텔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자살률’, ‘사형집행률’, ‘살인건수’, ‘영아사망률’, ‘사법의 정치적 살인’, ‘정치적 실종’을 최종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텔파이조사결과 추가해야 할 지표로 제안한 ‘모성사망률’을 추가하되 모성 및 영아사망률로 통합해서 지표 값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기초로 지표가 나타내는 권리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표 명을 살인건수는 ‘살인사건 건수’, 실종은 ‘정치적 실종’, 유아·아동사망률은 ‘영아사망률’로 변경하였다. 이들 지표는 생명권 영역의 대표지표로서 인권 현황과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동 영역의 지표 값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비해 자살률 지표에 포괄되는 ‘노인/여성/청년 자살률’, 사망률에 해당되는 ‘만성질환 사망률’, ‘군대내 사망 사건’, ‘대상별 사망사건’, 텔파이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인공임신중절률’ 등은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 관리지표는 국가인권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표지표를 보조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지표들로서, 국가인권지수 산정에는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나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를 말한다. 통계구축 필요지표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혹은 대표성 없는 지표를 나타낸다. 이들 지표의 경우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로 생산되어야 할 지표들이다.

< IV-20 > 생명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자살률	노인/여성/청년 자살률
사형집행률	군대내/대상별 사망 사건
살인사건수	인공임신중절률
사법외 정치적 살인	만성질환사망률
정치적 실종	행려사망률( ✓ )
영아사망률	안락사비율( ✓ )
모성사망률	

신체의 자유 영역에서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 ‘군영창 구급자 수’, ‘고문’, ‘정치적 구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로 제안한 ‘폭행 건수’, ‘약취, 유인건수’, ‘노역장 유치건수’,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를 동 영역 지표로 선정하였다. ‘수감시설 독립적 이의 신청절차 여부’는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으나 통계 생산이 되는 지표가 아니라 대표지표에는 포함시킬 수 없었다.

델파이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낮은 ‘교도관 1인당 재소자 수용인원’, ‘구금·보호시설/교정시설 인권침해 진정 및 인용률’, ‘인신보호구체 청구 건수’, ‘인신매매사건 건수’ 그리고 ‘학교사회에서의 폭력과 가혹행위’와 관련한 유일한 통계인 피해응답자비율은 2012년 1.9%까지 하락함에 따라 관리지표에 편성시켰다. 이 외에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신체적 자유 관련 인권침해 접수 건수’, ‘보호외국인 보호일지 해제 건수’를 관리지표로 설정하였다.<sup>92)</sup>

9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에 수록된 신체적 자유관련 정책과제 이행점검 통계로는 유치장 감찰(2012년 3,005회 실시 및 불법구금 등 사례 0건),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 실적(2012년 2,622건),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2012년 관련 인권침해 접수 14건(사건접수 7건, 접수불요 등 7건), 국민소통 ombudsman 운영(2012년 2,104회 상담, 125건 개인 의견 반영), 재소자 회복적 교정프로그램 시행(2012년 가족만남의 집 수행자 1,177명 이용, 수용자 인성교육 312회 6,789명, 문화적 교정프로그램 449회, 78,716명 시행), 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대책 지속 (2012년 채권회수, 신병 치료

## &lt; IV-21 &gt; 신체적 자유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	교도관 1인당 재소자 수용인원
군 영창 구금자 수	수감시설 독립적 이의 신청 절차 여부
노역장 유치 건수	구금·보호시설/교정시설 인권침해 진정 및 인용률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	신체적 자유 관련 인권침해 접수 건수
정치적 구금	학교 사회에서의 폭력과 가혹행위 건수
고문	수사기관의 강제연행 건수( ✓ )
폭행 건수	인신보호구제(사적 보호시설 등) 청구 건수
약취, 유인 건수	인신매매 사건 건수( ✓ )
	보호외국인 보호일지 해제 건수

법의 지배 영역에서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임률’, ‘형사보상 인용률’, ‘적법절차와 고소인 권리 보장 정도’, ‘사법부 독립 정도’를 모두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자문에서 추가 지표로 제안한 ‘구속영장 기각률’ 지표를 추가하였다. 델파이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로 제안한 위헌법률 접수 건수는 2012년 22건, 인용은 0건, 헌법소원 인용 건수는 47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어서 지수 산정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관리지표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델파이 전문가 제안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국민대비 변호사 숫자와 접근가능성’, ‘헌법소원 인용 건수’, ‘상고심,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 사건 계류사건 처리 기간’, ‘상고심(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비율’, ‘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관리지표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법원 행정관련 인권침해 신청사건 인용률’을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sup>93)</sup>

및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보호일시해제자 116명) 등이 있음.

9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이행지표에는 법원행정관련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2012년 침해사건 접수 1,374건, 인용구제 81건, 각하 743건, 이첩 391건, 기각 139건), 군대 내 인권보호를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인력 2011년 95명, 2012년 148명, 2017년 목표 357명)이 있음.

< IV-22> 법의 지배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국선 변호사 선임비율	국민대비 변호사 숫자와 접근가능성
형사보상 인용률	위헌법률 인용 건수
구속영장 기각률	헌법소원 인용 건수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상고심,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 사건 계류사건 처리 기간( ✓ )
사법부 독립 정도	법원행정관련 인권침해 신청사건 인용률
	상고심(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비율( ✓ )
	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시민의식( ✓ )

사생활보호 영역의 경우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건수’, ‘통신 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건수’, ‘사생활보호 인식’ 지표를 선정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추가해야 할 지표에 대한 제안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통해서 ‘정보통신의 개인권리 침해율’, ‘감청(CCTV 설치, 운영) 건수’를 추가 지표로 포함시켰다.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던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와 전문가가 제안한 ‘학생의 사생활 침해 진정 건수’, ‘인터넷 실명제, 주민등록번호 수집률’, ‘금융정보 조회, 개인정보 누출, 신상털기 건수’, ‘언론 및 수사 당국의 피의사실 공표 건수’, ‘미등록 이주자 강제출국 시 가족과 분리한 강제출국 건수’,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은 정기적으로 대표성 있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음에 따라서 대표지표에서 제외시켰다.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법원행정관련 인권침해 신청사건 인용률’을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sup>94)</sup>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특정 범죄자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 인용률’을 관리지표로 포함시켰다.

9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사생활관리영역의 이행지표에는 보안관찰처분 면제 확대(‘12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3회 개최-보안관찰처분 면제 1명, 기간 갱신 및 기각 2명 의결 등), 공공 및 민간기관 웹 사이트 I-PIN 의무 도입(보급대상 15,070개 사이트 중 보급완료 11,663개(77.4%), 미수집 전환 3,407개), 개인 영상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관련 법령 준수(안내판 부착, 백신무로 설치 지원 등 필수 조치사항 지원: 12,965개 업체 방문, 지원), 특정범죄자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 인용률(신청 223명, 114명 인용: 인용률 64.6%) 등이 있음.

## &lt; IV-23&gt; 사생활보호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개인정보 침해 건수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 ✓ )
정보통신의 개인권리 침해율	학생의 사생활 침해 진정 건수( ✓ )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건수	인터넷 실명제, 주민등록번호 수집률( ✓ )
감청(CCTV 설치, 운영) 건수	금융정보 조회, 개인정보 누출, 신상털기 건수( ✓ )
사생활보호 인식	언론 및 수사 당국의 피의사실 공표 건수( ✓ )
	특정 범죄자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 인용률
	등록이주자 강제출국 시 가족과 분리한 강제출국 건수( ✓ )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정도( ✓ )

이동의 자유 영역에서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저상버스 보급률’, ‘이동자유 인식 수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대상자인 전문가 제안과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추가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던 ‘망명신청 거부 건수’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주자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동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되어 제외시켰다. ‘출입국 불허비율’은 이동의 자유를 광의로 이동 및 여행의 자유영역으로 설정할 경우에 적합함에 따라 관리지표로 하였다.

델파이 조사대상자인 전문가집단과 그 이외 인권자문위원이 제안한 지표로 ‘도서지역 교통수단 보급률’과 ‘전동휠체어 보급률’은 정기적인 통계 확보가 불가능하여 각각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 ‘공공건물, 지하철 등에 장애인 접근 용이성’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 지표에 포괄되고, ‘도로, 인도 상의 이동의 자유 침해 진정 건수’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처리결과 44건, 인용 건수가 1건에 지나지 않아서 지표의 정규화가 힘들어 따라 각각 관리지표로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보급률’, ‘출입국 불허비율’, ‘여권발급 건수’를 관리지표로 포함시켰다.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은 현행 5천원 이하 운임은 20% 정률지원, 5천원 초과 시 최고운임제(도서민 5천원만 부담)를 적용하고 있으나 운임인상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한 실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이동편의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sup>95)</sup>

< IV-24> 이동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저상버스 보급률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정도	도서지역 교통수단 보급률( ✓ )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	대중교통 보급률
이동자유 인식 수준	도로, 인도 상의 이동의 자유 침해 진정 건수
	전동휠체어 보급률( ✓ )
	출입국 불허비율
	여권발급 건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에서는 텔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기소유예 처분 건수’, ‘입영 및 징총거부자 형사처벌’,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텔파이 조사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추가 지표와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정치적 표현 관련 기소자 수’, ‘자유로운 정당활동 보장 정도’, ‘내부고발자 보호 정도’, ‘인터넷 실명제 여부’, ‘종교선택 및 탈퇴의 자유 수준’, ‘무종교의 자유 수준’, ‘학교급별 종교관련 수업 현황과 진정 건수’는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대표성 있는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으나,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지표로 포함시켰다.

<표 IV-25> 사상·양심·종교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대표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국가보안법사범 기소유예 처분 건수	정치적 표현 관련 기소자 수( ✓ )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비율	자유로운 정당활동 보장 정도( ✓ )
신념표명, 종교행사 자유	내부고발자 보호 정도( ✓ )
종교관련 정부 규제 정도	인터넷 실명제 여부( ✓ )
	종교선택 및 탈퇴의 자유, 무종교 자유 수준( ✓ )
	종교계 학교의 종교 강요 정도( ✓ )
	학교급별 종교 관련 수업 현황과 진정 건수( ✓ )

9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이동자유영역의 이행지표로는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2012년 3,586천명 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수(2010년 45건, 2011년 96건, 2012년 115건)가 있음.

언론·출판의 자유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방송광고심의 건수’, ‘정보격차 수준’, ‘미디어 콘텐츠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정보접근 정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추가 지표와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심의 건수’,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율’ 지표를 추가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던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는 통계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언론사 노동조합활동 권한’, ‘국가기관 명예훼손 기소자 중 무죄 처분자 비율’ 등은 통계를 생산해야 함에 따라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시각장애인, 난청노인 등의 ‘방송소외 계층의 방송시청권 보장 정도’도 정규화가 힘들어서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sup>96)</sup>

#### < IV-26> 언론·출판·의사표현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방송광고 심의 건수	방송소외계층 방송시청권 보장 정도
정보통신 심의 건수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 )
정부·공공기관 정보공개율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 )
정보격차 수준	언론사의 노조활동권한( ✓ )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시청권 보장 정도
정보접근 정도	국가기관 명예훼손 기소자 중 무죄 처분자 비율
	등록 언론매체 수와 폐간 언론매체 수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서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집회신청 대비 금지 통고율’,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집회·시위 및 단체

9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언론·출판자유영역의 이행지표로는 공공정보 민간 개발 확대(공유서비스 OpenAPI 누계: 2011년 13종, 2013년 35종(5월 현재),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2011년 408건, 2012년 475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확대(2012년 61개사),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에 의한 지상파에서의 유료방송 제공(2013년 154개사), 시각장애인, 난청노인 방송시청권 보장 정도(2012년 방송시청권보장 정도: 자막방송수신기 9,175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7,500대, 난청노인용수신기 3,084대)임.

조직의 자유'를 최종 지표로 선정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가 추가 제안하거나 자문위원이 제안한 추가지표 중에서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채증 건수 혹은 비율'의 경우 대부분의 집회에서 채증을 하는데, 이 중에서 불법 채증 여부를 구분한 통계, '학교에서의 집회 자유', '(손해배상 청구 등) 집회·결사에 대한 간접적인 법적 규제', '단체가입 및 탈퇴의 자유정도' 등의 통계는 생산되지 않음에 따라 관리지표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집회 신고 후 미개최율'은 최근 96%대를 기록함에 따라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sup>97)</sup>

< IV-27>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채증 건수 혹은 비율( ✓ )
집회신청 대비 금지통고율	집회 신고 후 미개최율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학교에서의 집회 자유 정도( ✓ )
집회·시위·조직의 자유	집회·결사에 대한 간접적인 법적 규제( ✓ )
	단체가입 및 탈퇴의 자유정도( ✓ )
	민간단체 등록현황과 민간단체 해산현황

참정권 영역의 경우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먼저 '투표율', '국회의원 여성비율',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 '공정한 선거보장 정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결과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소 낮았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는 인권전문가 자문회의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정책과제인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공직내 여성대표성 제도,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등을 감안하여 공무담임권 보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지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선거의 여성공천자 비율'은 선거별로 공천자비율 편차가 상당히 컸고, 델파이 조사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던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와

9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이행지표인 집회신고 후 미개최율(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소선점 신고 후 미개최하여 타인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사례)은 '11년 96.17%, '12년 96.20%임.

‘취약계층 참정권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건수’는 상당히 건수가 적어서 지표의 정규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sup>98)</sup> 이외에도 델파이 조사대상자가 추가적으로 제안한 지표의 경우 통계생산이 되지 않아서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장애인/국가유공자/저소득층 공직 임용자 수’, ‘고위공무원/공공기관/임원 여성비율’을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sup>99)</sup>

< IV-28> 참정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투표율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국회의원 여성비율	취약계층 참정권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건수
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국가유공자/저소득층 공직 임용자 수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선거의 여성공천자 비율
	고위공무원/공공기관/임원 여성비율
	국민 청원권에 의한 정책발의, 입법발의청원 건수
	청소년 정치적 권리( ✓ )
	정부기관의 선거개입여부( ✓ )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참정권보장 유무( ✓ )

98)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선거소송 건수는 2013년 11월 누계 기준 1심 처리: 2건 상고심: 0건, 대법원 단심 5건임.

9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동 영역의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행지표는 고위공무원 여성 1인 이상 임용 달성 부처(2011년 19개 기관, 2012년 20개 기관), 장애인 공직임용(7·9급 공채 2011년 97명, 2012년 123명 선발,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2011년 25명, 2012년 26명 선발),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구분모집(9급 공채 및 기능직 2012년 65명), 9급 선발예정인원 2% 이상 저소득층 선발(법령상 1% 이상): 2011년 13명, 2012년 41명, 기능직 채용시험 1% 이상 저소득층 선발: 2011년 9명, 2012년 24명 선발 등임.

## 2) 경제·사회·문화권의 영역별 지표

사회권의 영역별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보장권 영역의 경우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빈곤율’,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 ‘고용보험 적용률’,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을 선정하였다.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소 높았던 ‘전체 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권 수준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 결과에서 제외시켰고<sup>100)</sup>,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소 낮았던 ‘지니계수’, ‘소득10분위 배율’은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냄에 따라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델파이조사에서 추가지표로 전문가가 제안한 육아 및 보육관련 지표로 ‘보육시설 취원율’ 지표를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빈곤율은 상대빈곤율, 소득5분위 배율은 최신 통계의 한계로 인해서 소득10분위 배율로 교체시켰다. 그리고 소득5분위 배율, 사회복지법인 수와 복지기관 이용자수, 개인회생 신청 건수, 개인신용회복 비율 등은 관리지표로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가구 자립, 자활지원 건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sup>101)</sup>

100) 기초생활수급률의 경우 전체 국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3%내외('05년 3.1%, '10년 3.1%, '12년 2.7%)임. 이에 따라 사회보장권 수준의 지표 값을 산정하는데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음.

10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동 영역의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행지표로는 근로 능력 있는 빈곤층 일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가구 수(누적 가입가구 2010년 10천, 2011년 15천, 2013년 18천 가구), 고령·취약 농어촌가구 지원(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2011년 14천가구, 2012년 15천 가구), 고령·취약 농어촌가구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2011년 14천가구, 2012년 10천가구), 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건수(2010년 41개, 2011년 50개, 2012년 62개 그리고 2017년 목표 93개임). 그리고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농작물 2011년 40.2%, 2012년 45.1%, 가축 각각 54.5%, 71.4%, 양식수산물 32.9%, 43.1%, 어선원 요양지원 병원 체결 건수: 2010년 478개소, 2011년 494개소, 2012년 508개소임) 등이 있음.

## &lt; IV-29&gt; 사회보장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상대 빈곤율	소득5분위 배율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사회복지법인 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사회복지기관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자
지니계수	사회복지법인 이용자 중 사회복지율
소득10분위 비율	개인회생신청 건수
고용보험 적용률	다중채무자 수와 개인 신용회복 비율(✓)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가구 자립, 자활지원 건수
보육시설 취원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노동권 영역에서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비정규근로자 비율’, ‘고용률’, ‘실업률’,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소 높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보장권으로 이동시키고, 중요도는 적절하나 우선순위 점수가 다소 낮은 ‘연간 실근로시간’, ‘성별 임금격차’, ‘노동조합조직률’도 노동권 지표로 포함하고, 건강권에 있는 ‘산업재해율’을 노동권 영역의 대표지표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델파이조사에서 추가지표로 전문가가 제안한 ‘특수형태 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건수’를 관리지표로 포함시켰고, 정기적으로 통계가 생산되지는 않으나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 ‘ILO 권고사항 수용률’도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비정규직·사내도급·연령차별·최저임금·연소근로자 관련 법 위반을 나타내는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는 대표지표에 그리고 경제활동권에 해당하는 저작권관련 3개 지표를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sup>102)</sup>

10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동 영역의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행지표로는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점검, 사내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점검, 모집, 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점검, 최저임금 준수 지도·감독,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인원(새일), 특성화고 취업률 및 진학률,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통한 지원인원,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 -공익변리사 상담 서비스, 디지털화된 저작권 보호 - 저작권 침해범죄 조사 및 수사 지원 건수, 저작권 합법시장 침해율 등임.

## &lt; IV-30&gt; 노동·경제활동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고용률	특수형태 취업자
실업률	파견/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정규근로자 비율	자영업 폐업자 수
연간 실근로시간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건수( ✓ )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비율	단체교섭 적용률( ✓ )
성별 임금격차	ILO 제소 건수 및 권고사항 수용률( ✓ )
노동조합조직률	저작권 합법시장 침해율
산업재해율	저작권 침해범죄 조사 및 수사 지원 건수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공익변리사 지식재산권 보호 상담 건수

건강권 영역에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기대수명’, ‘병·의원 치료율’, ‘건강검진 수검률’, ‘환경성 질환유병률’, ‘의료 미충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텔파이조사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로 제안된 ‘활동의사 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병·의원 치료율’을 포함시켰고, 이 외에 ‘의료급여 수급률(총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은 2005년 3.6%에서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2010년 3.7%, 2012년 3.0%로 3%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대표지표보다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보장 수준’은 ‘의료급여 본인부담률’과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지표에 포괄되고, ‘무의촌 수’, ‘국·공립 의료원 비율’, ‘노인의료시설 수’는 ‘의료충족률’ 지표에 포괄됨에 따라 관리지표에 포함시켰고, ‘의료분쟁건수’와 ‘수질, 대기,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유병률’은 정규화하기 힘들에 따라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sup>103)</sup>

10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보건 및 환경영역의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행지표로는 병원 당 환자 만족도, 치매환자의 치매치료 관리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추진 건수, 각급 학교 흡연, 음주 예방교육 실시율, 알레르기질환 어린이 및 가족 캠프프로그램 지원,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등이 있음.

## &lt; IV-31 &gt; 건강·환경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기대수명	의료급여 수급률
건강검진 수검률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보장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종합병원 중) 국·공립 의료원 비율
활동의사 수	노인의료시설 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무의촌 수(산부인과 등 포함)( ✓ )
병·의원 치료율(의료 총족률)	의료분쟁 신청 건수
환경성 질환유병률	각급 학교 비흡연, 비음주 학생비율
	수질, 대기,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유병률

교육권 영역의 경우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부문 공교육비 부담률’, ‘취학률’, ‘평생교육 참여율’,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학교 중퇴자 비율’을 최종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및 연구진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인 대비 특수학교 규모’는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률’로 교체하였고, ‘사교육 비율’은 표본조사에 전체 교육비 통계가 없음에 따라 ‘정부부문 공교육비 부담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문화권과 관련된 지표의 경우 전문가 자문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다소 낮은 ‘문화예술 관람률’, ‘여가활동 만족도’ 지표를 포함시켰다.

델파이조사에서 추가지표로 전문가가 제안한 학교급별 및 장애인 취학률, 사교육비는 대표 지표에서 이미 포괄하고 있고, 장애인 관련 학교지표도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률’에 일부 포괄되어 있음에 따라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 ‘점자 또는 음성 도서 제공 건수’는 정규화가 힘들에 따라 관리지표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중도입국 다문화 자녀의 재학률/예비학교’,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인원’, ‘노인의 생산적 문화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관리지표로 설정하였다.<sup>104)</sup>

10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이행지표로는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교원평가전문성 향상, 기초학력미달 학생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실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자녀 재학률 제고,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 지역계층간 영어교육격차 해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확대, 문화나눔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인원, 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이 있음.

< IV-32> 교육·문화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취학률	유치원 취원율/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별 취학률
학교 중퇴자 비율	장애인 취학률, 진학률
평생교육 참여비율	무상교육율 (초등, 중등, 고등)
정부부문 공교육비 부담률	교사 1인당 학생 수
특수학교 교원 법정 총원률	사교육비 수준( ✓ )
문화예술 관람률	총 학생 대비 대안학교 학생 비율( ✓ )
여가활동 만족도	장애인 대비 특수학교 수/장애인통합교육 학교 수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1인당 문화예술 행사 참가비율 (무료) 점자 또는 음성 도서 제공 건수

주거권 영역은 조사결과에 의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중위소득가구 월소득 대비 주거비’, ‘홈리스 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추가 지표와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주택 자가보유율’, ‘주거환경만족도’를 추가로 최종 지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하위에 속했던 주택만족도는 관리지표에 포함시켰고,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통계생산이 되고 있지 않은 에너지빈곤가구 수와 강제퇴거 건수는 관리지표에 포함시켜서 정책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sup>105)</sup>

<표 IV-33> 주거권 영역의 대표 및 관리 지표

대표지표	관리지표 (✓: 통계구축필요 지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주택만족도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주택 자가보유율	저소득층, 노숙인, 사회복귀 시설생활인 대상 주택지원율
주거환경만족도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대상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지원율
홈리스 수	에너지빈곤가구 수( ✓ ) 강제퇴거 건수( ✓ )

10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의 이행지표로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 장기임대주택 정부지원 단가 상향 등이 있음.

### 3) 인권지수의 영역별 최종 지표

2012년 인권지수 지표 풀 구축 연구결과와 금년도 영역별 후보 지표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앞에서 부문별로 최종 선정한 지표는 <표 IV-34>~<표 IV-36>과 같았다.

< IV-34> 자유권 및 사회권 영역별 최종 지표 수

영역	대표 지표 수
○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7개
신체의 자유권	8개
법의 지배	5개
사생활 보호권	5개
이동의 자유	4개
사상·종교의 자유	4개
언론·표현의 자유	6개
집회·결사의 자유	4개
참정권	5개
소계	48개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보장권	7개
노동권	9개
건강권	7개
교육권	8개
주거권	5개
소계	36개
○ 전체 인권지표	84개

< IV-35 > 시민정치권 영역별 최종 지표

		신체의 자유	
I-1	자살률	II-1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
I-2	사형집행률	II-2	군 영창 구급자 비율
I-3	살인사건수	II-3	노역장 유치건수
I-4	사법의 정치적살인	II-4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
I-5	정치적 실종	II-5	정치적 구금
I-6	영아사망률	II-6	고문
I-7	모성사망비	II-7	폭행 건수
		II-8	약취, 유인건수
법의 지배		사생활 보호	
III-1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IV-1	개인정보 침해 건수
III-2	형사보상 인용률	IV-2	정보통신의 개인권리 침해율
III-3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IV-3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건수
III-4	구속영장 기각률	IV-4	감청(CCTV 설치, 운영 등) 건수
III-5	사법부 독립 정도	IV-5	사생활보호 인식
이동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V-1	저상버스 보급률	VI-1	국가보안법의 입건자 수(기소비율)
V-2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VI-2	입영 및 징총거부자 형사처벌
V-3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VI-3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V-4	이동자유 인식 수준	VI-4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
언론·출판·의사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VII-1	방송광고 심의 건수	VIII-1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VII-2	인터넷 게시판 시정요구율	VIII-2	집회신청 대비 금지통고율
VII-3	정부, 공공기관 정보공개율	VIII-3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VII-4	정보격차 수준	VIII-4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VII-5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VII-6	정보접근 정도		
참정권			
IX-1	투표율		
IX-2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IX-3	국회의원 여성비율		
IX-4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		
IX-5	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 &lt; IV-36 &gt; 경제·사회·문화권 영역별 최종 지표

		노동권	
X-1	상대빈곤율	XI-1	고용률
X-2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	XI-2	실업률
X-3	지니계수	XI-3	비정규근로자 비율
X-4	소득10분위 배율	XI-4	장시간 근로자 비율
X-5	고용보험 적용률	XI-5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
X-6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	XI-6	성별 임금격차
X-7	보육시설 취학률	XI-7	노동조합조직률
		XI-8	산업재해율
		XI-9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율
건강·환경권		교육·문화권	
XII-1	기대수명	E-1	취학률
XII-2	건강검진 수검률	E-2	학교 중퇴자 비율
XII-3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E-3	평생교육 참여비율
XII-4	활동의사 수	E-4	정부부문 공교육비 부담률
XII-5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E-5	특수학교 교원 법정 총원율
XII-6	병·의원 치료율	E-6	문화예술 관람률
XII-7	환경성 질환유병률	E-7	여가활동 만족도
A-1	결식 인구비율	E-8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주거권			
H-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H-2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		
H-3	주택 자가보유율		
H-4	주거환경만족도		
H-5	홀리스 수		

### 3. 인권지수의 산정절차와 방법

#### 가. 인권지수의 정규화

##### 1) 지표 자료의 정규화 방법

정규화(Normalization)는 여러 개의 지표를 가지고 하나의 지수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sup>106)</sup> 정규화는 측정단위가 서로 다른 각 지표 값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표들 간 비교 가능한 값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다. 즉, 정규화는 지표 단위를 제거하여 동일한 척도로 통일시킴으로써, 지표들 간의 사칙연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정규화 방법은 다양한데 주요한 방법은 <표 IV-37>과 같다. 먼저 최저-최대(min-Max) 방식은 <표 IV-37>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값에서 최솟값을 공제한 뒤에 지표 값의 범위(range of the indicator values)로 나눔으로써 지표들이 동일한 범주를 가지도록 정규화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규화 방법은 상당히 간격이 좁은 지표의 경우 범주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극단값(extreme values) 혹은 이상치(outlier)가 지표 값을 왜곡시키는 단점이 있다.

기준점 거리방식(Distance to a reference)은 특정한 기준에 대한 지표의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기준점은 기준이 되는 인권 보호 혹은 향유 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노동권 지수에서 고용률 100.0% 등이 국가가 실행해야 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범주화 방식(Categorical scales)은 범주형 척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범주는 숫자 혹은 정량적인 분류로 될 수 있다. 통상 범주화 방식에 의한 점수는 지표 분포의 백분비를 기초로 부여하기도 한다. 예컨대, 상위 5% 미만에 100점, 상위 5%~10% 미만에 95점 등으로 부여한다. 이 방식의 경우 원 지표점수의 분산을 적절히 감안하여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열화 방식은 가장 단순한 정규화방식으로, 서열로서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상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준 점수(Z-score) 방식은 지표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표준점수방식은  $(x - \mu) / \sigma$ 으로 정규화 한다. 여기서  $x$ 는 정상화되는 원수

106) 일반적으로 정규화(normalization)는 표준화, 정상화라고도 함.

치, 는 표준편차,  $\mu$ 는 모집단 평균을 나타낸다. 즉, 동 방식은 평균 0, 표준편차 1인 공통된 척도를 가진 지표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평균 이하와 이상 지표화(Indicators above or below the mean) 방식, 연속된 기간 동안 차이의 백분비 방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권지수개발에서 지표의 정규화는 개별 권리들에 대한 지표의 성격을 감안한 이후에 적절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IV-37> 지표의 정규화 방식과 산식

	등식(Equation)
최저, 최대 방식 (Min-Max)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기준점 거리방식 (Distance to a reference)	$I = x / x_{ref}, \quad I = (x_{ref} - x) / x_{ref}$
범주화방식 (Categorical scales)	$I = 0, \quad \text{일 } x_t < p^{10},$ $1, \quad \text{만일 } p^{10} \leq x_t < p^{20},$ .... $10, \quad \text{만일 } p^{90} \leq x_t$
서열화 방식 (Ranking)	$I = \text{Rank}(x)$
표준점수 (Standardisation 혹은 z-scores)	$Z = (x - \mu) / \sigma$
차이백분비방식 (Percentage of differences over consecutive years)	$I = (x_t - x_{t-1}) / x_t$

자료: 김태홍 외(2012)에서 재인용, OECD(2008), <Table 3. Normalisation methods>, p.30.

## 2) 인권지표 자료의 유형과 정규화

### (가) 최저-최대 방식에 의한 정규화

인권지수의 개별 지표 자료는 그 유형이 다양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규화 방식 중에서 시민정치권에 속하는 상당수 지표의 경우 인권침해를 나타내는 자료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 지표는 최저, 최대 방식(Min-Max)으로 정규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저, 최대 방식의 경우 인권침해의 최대 및 최소값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인권침해의 최소값은 '0'인데 비해서 최대값 설정은 지표 성격에 따르게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표의 최대값 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①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인권침해가 컸던 시점의 침해수준, ②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시기부터 현재 동안에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가장 컸던 국가의 침해수준 등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댓값을 설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③ 주요 국제 인권지수에서 측정된 특정 지표에 대한 우리나라 지표 값 혹은 국제 순위를 기준점(reference point; <sup>ef</sup>)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점에 근접하는 지표 값이 산출되는 지표 수준을 최댓값으로 설정하고, 해당 최댓값을 분석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당 지표 값을 산정할 때 사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 최솟값이 설정되면 앞에서 언급한 최저-최대 방식을 이용하여 지표 값을 정규화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표 값이 작을수록 인권보장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아래 식 (1)과 같은 등식을 사용하여 정규화 한다. 그렇지 않고 지표 값이 클수록 인권보장 수준이 높으면 식 (2)와 같은 등식을 사용하여 정규화 한다. 통상 시민정치권에 속하는 지표의 경우 대부분 인권침해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표 수준이 낮을수록 인권보장 수준이 높아서 식 (1)을 사용하여 정규화해야 한다. 이에 비해 경제·사회·문화권 지표는 인권향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표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보장 수준이 높아서 식 (2)을 사용하여 정규화해야 한다.

$$I = [(Max(x) - x) / [(Max(x) - Min(x))] \dots\dots\dots (1)$$

$$I = [(x - Min(x)) / [(Max(x) - Min(x))] \dots\dots\dots (2)$$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정규화 하는 권리지표는 대부분이 시민정치권에 속하는 세부 지표이다. 즉, 최저-최대 방식에서 식(1)과 같은 방식으로 정규화 하는 지표로는 통계 값이 낮을수록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지표들로서, 신체의 자유 영역의 지표인 ‘교도관 1인당 평균 수용인원’, 사생활보호권 영역 지표의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건수’, ‘감청(CCTV 설치, 운영 등) 건수’이다. 그리고 경제·사회·문화권에 속하는 지표로는 사회보장권 영역의 ‘소득10분위 배율’, 노동권 영역의 ‘비정규근로자 비율’, 교육·문화권 영역의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그리고 주거권 영역의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 지표이다.

이에 비해 지표 통계 값이 클수록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지표들로서 최저-최대 방식에서 식 (2)와 같은 방식으로 정규화 하는 지표로는, 사회보장권 영역에 속하는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 건강권 및 환경 영역에 ‘건강수명(기대수

명), '활동의사 수', 교육권 영역의 '공교육비 비율', 그리고 주거권 영역의 '주택 자가보유율'이다.

(나) 기준점 거리방식에 의한 정규화

인권지수 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정규화 방법은 기준점(Distance to a reference) 방식이다. 기준점 거리방식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식 (3), 식 (4)와 같이 특정한 기준( $x_{ref}$ )에 대한 지표의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식 (3)의 경우는 지표 값이 높아질수록 인권 이행과 보호가 높아질 때에 적용하는 정규화 산식이고, 식 (4)는 지표 값이 낮아질수록 권리수준이 높아질 때에 적용하는 산식이다. 그리고 지표 정규화에 사용되는 기준점( $x_{ref}$ )은 개별 권리의 목표 수준(Goalpost)을 나타낸다. 국제인권규약에 의하면 자유권규약은 국가에게 즉각적 실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권규약은 점진적 실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107)</sup> 이에 따라 경제사회권 이행지수(Index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Fulfillment)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의 자원동원능력(resource capability)을 감안하여 자유권 지표 기준점 즉, 목표수준을 국가별 즉, 고소득국가와 저소득 및 중소득국가로 구분하여 달리 설정하였다.<sup>108)</sup>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고소득국가에 속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권리의 목표수준을 인권의 완전한 이행 및 보호 수준으로 설정하고, 정규화하였다.

$$= x / x_{ref} \dots\dots\dots (3)$$

$$Y = (x_{ref} - x) / x_{ref} \dots\dots\dots (4)$$

본 연구에서 인권지수에 속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기준점 거리방식으로 지표를 정규화하였다. 먼저 식 (3)의 방식으로 정규화한 지표를 보면 시민정치권에 속하는 권리 지표를 보면, 신체의 자유 영역의 '구속영장 기각률', 법의 지배 영

107)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호.

108) S. Fukuda-Parr, T. Lawson-Remer, S. Randolph(2008), Measuring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Obligations: An Index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Fulfillment, Economic Rights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8, The Human Rights Institute, University of Connecticut, pp.1-2.

역의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형사보상 인용률’,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이었다. 사생활보호 영역에서는 ‘정보통신의 개인권리 침해율’, ‘사생활보호 인식’, 이동자유 영역의 ‘저상버스 보급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그리고 사상·양심·종교자유 영역의 ‘국가보안법의 입건자 수(기소비율)’,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이다. 그리고 언론·출판·의견·표현 영역의 ‘방송광고 심의 건수’, ‘인터넷 게시판 시정 요구율’, ‘정부, 공공기관 정보공개율’, ‘정보격차 수준’, ‘정보접근 정도’이었고, 집회·결사영역의 ‘집회신청 대비 금지통고율’,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이다. 참정권 영역은 ‘투표율’,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국회의원 여성 비율’,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이었다.

경제·사회·문화권의 경우 사회보장권 영역의 ‘고용보험 적용률’,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 ‘보육시설 취학률’, 노동권 영역의 ‘고용률’, ‘성별 임금 격차’, ‘노동조합조직률’,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정도’, 건강권·환경 영역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률’, ‘공공의료비 비중’, ‘병·의원 미치료율’, ‘환경성 질환유병률’, 교육권·문화 영역의 ‘취학률’, ‘평생교육 참여비율’,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률’, ‘문화예술 관람률’, ‘여가활동 만족도’, 그리고 주거권 영역의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이다.

식 (4)의 방식으로 정규화한 지표 즉, 제시된 산식과 같이 지표의 통계 값이 낮아질수록 권리수준이 높아질 때에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도출한 정규화 지표를 보면 생명권 영역의 ‘사형 선고율/집행률’, ‘인공임신중절률’, ‘영유아사망률’, ‘살인건수’이고, 신체의 자유 영역의 ‘사건 비율’, ‘군 영창 구금자 비율’,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 ‘폭행 건수’, ‘약취, 유인건수’ 그리고 사생활보호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건수’이다. 이 외에 사상·양심·종교자유 영역의 ‘입영 및 집총 거부자 형사처벌’,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의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정규화 하였다. 경제·사회·문화권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규화한 지표는 사회보장권 영역의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노동권 영역의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 ‘산업재해율’, 교육권 영역의 ‘학교 중퇴자 비율’ 그리고 주거권 영역의 ‘홈리스 수’ 지표이다.

## (다) 범주화 방식에 의한 정규화

본 연구에서 권리지표 정규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범주화 방식(Categorical scales)이다. 동 방식은 식 (5)에서와 같이 지표자료의 분산을 적절히 감안한 범주형 척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범주는 숫자 혹은 정량적인 분류로 될 수 있으나, 동 연구에서는 숫자(numeric values)로 점수를 부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합적인 인권지수 혹은 권리지표와 관련된 자료가 정량적으로 산출된 경우, 예컨대 인권침해 건수 등과 같은 자료로 된 지표의 경우 식 (5)와 같은 방식을 통해 범주형 척도로 정규화 한다. 이 외에도 일반인조사, 전문가조사 등 실태조사로 인권 및 개별권리 이행 및 보호를 측정할 경우에는 응답항목의 척도를 범주화하여 정규화하거나 혹은 범주화된 척도의 측정방법을 조정하여 사용한다.<sup>109)</sup>

$$\begin{aligned}
 & 0 \text{ if } p \leq x < p^1, \\
 & = 1 \text{ if } p^1 \leq x < p^2, \\
 & , \dots \dots \dots \\
 & = 5, \text{ if } p^5 \leq x \dots \dots \dots (5)
 \end{aligned}$$

인권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는 크게 사건자료(event based data), 기준에 기초한 자료(standard based data) 그리고 조사자료(survey data)로 구분할 수 있다.<sup>110)</sup> 이러한 자료 중에서 사건자료 즉, 인권침해의 빈도와 정도 등과 같은 자료로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범주화방식으로 지표를 정규화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앞에서 설명한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이다. 실제 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개별 권리지표를 범주화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치테러척도(PTS)도 싱그라넬리 리차드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범주화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은 민주주의 지수,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자유지수, 베텔스만재단은 전환지수,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는 법의 지배 지수,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MINEFE)는 제

109) 응답항목의 척도는 측정방법에 따라 구간척도(interval scale), 명목척도(nominal scale), 순서척도(Ordinal scale), 비율척도(Ratio scale) 등이 있음.

110) 김태홍 외(2012), p.34.

도적 특성지수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사자료(survey data)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지표 값을 산정하는 인권지수들은 응답항목에 대한 범주화된 척도를 조정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범주화 방식으로 지표를 정규화하게 될 인권지표는 대부분이 시민·정치권 지표인데, 개별적인 지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시민·정치권의 경우 생명권 영역의 ‘정치적 불법 살인’, ‘실종’, 신체의 자유 영역의 ‘정치적 구금’, ‘고문’, 법의 지배 영역의 ‘사법부 독립 정도’, 이동자유 영역의 ‘이동자유 인식 수준’, 사상·양심·종교자유 영역의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언론·출판·의견표현 영역의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그리고 집회·결사 영역의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지표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속하는 지표 중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규화해야 할 지표가 거의 없다.

#### 나. 인권지수의 산정방법

##### 1) 정규화한 지표 산정방법

인권지수 값을 산정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규화한 개별지표의 단위를 표준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식들과 같이 정규화한 지표 값을 백분비로 환산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규화한 지표의 산정방법은 정규화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에 따라 정규화 방식별 지표 유형과 함께 해당 지표 값 산정방법을 정리하였다.

##### (가) 최저-최대 방식으로 정규화한 지표 산정방법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최소-최대 방식(Min-Max)으로 정규화하는 지표 집단의 경우 식 (6) 또는 식 (7)과 같이 먼저 지표 수준이 낮을수록(높을수록) 인권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최댓값에서 실제 값(실제 값에서 최댓값)을 차감하고, 차감하고 남은 값을 지표 값의 범위(즉, ‘최댓값-최솟값’)로 나누어서 정규화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정규화 된 지표 값을 백점으로 환산한다.

$$[(x - X^{Min}) / (X^{Max} - X^{Min})] \times 100 \dots\dots\dots (6)$$

$$I = [(X^{Max} - x) / (X^{Max} - X^{Min})] \times 100 \dots\dots\dots (7)$$

① 본 연구에서 최소-최대 방식으로 정규화한 인권지표의 지표 값 산정에 사용된 최대 및 최솟값을 보면, 먼저 지표의 통계치가 높을수록 인권침해가 적고 인권보장이 높은 지표는 식 (6)과 같이 지표 값을 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표 값을 산정하는 지표의 경우 최댓값과 최솟값 설정을 보면, 먼저 사회보장권 영역에 속하는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풀타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은 2000년 0.220, 2011년 0.335이었다. 이에 비해 2000~2011년 동안 동 지표 값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뉴질랜드로 2009년 0.516이었고, 가장 낮았던 국가는 멕시코로 2008년 0.181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의 목표치인 최고값은 0.600, 최솟값은 0.100으로 설정하였다. 건강권 및 환경 영역의 ‘기대수명’ 지표는 일본이 2012년 83.6세로 가장 높았고, 시에라리온 1990년 38.7세가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 지표 값 산정을 위한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각 83.6세, 38.7세로 설정하였다.<sup>111)</sup> ‘활동의사 수’의 경우 세계은행 147개 국가의 천 명 당 의사 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상위 9개국만 4.08명 수준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2.0명 정도인 국가는 147개국 중 63위이다. 이에 따라 최댓값은 4.0, 최솟값은 147개 국가 중에서 126위인 0.1로 설정하였다.

교육권 영역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초·중·고) 교육비 지출 중에서 사교육비 구성비가 2007년 22.2%, 2011년 24.0% 그리고 2012년 23.6%이었다. 이에 따라 2012년 공교육비 비율은 76.4%이었다. 가구단위의 사교육비 구성비를 조사한 국가는 많지 않음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교육지출 중에서 민간부문 지출 구성비를 기준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을 설정하였다.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민간 가구부문 교육비 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81.8%(전체민간부문 78.5%)이었고, 동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로 100.0%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티로 1995년 기준 20.0%이었다.<sup>112)</sup> 주거권 영역의 ‘주택 자가보유율’을 보면 2011년 기준 불가리아, 리투아니아가 각각 97.0%, 루마니아 96.6%와 같이 90%보다 높은 국가가 있기는 하나 극

111) HDR(2013), Internation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statistics/>.

112) 공교육비 구성비가 높은 국가로는 포르투갈 100.0%, 스웨덴 99.9%, 핀란드 99.2%, 에스토니아 98.7% 순이었다(OECD). 아르헨티나는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World Education Indicators Programme. Table B3.2a) 참조.

히 일부임에 따라, 목표치인 최댓값을 90.0%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최솟값은 스와질란드 38.4%(2004년) 독일 36.3%(1990년대)와 같이 30%대의 국가가 있음에 따라 30%로 설정하였다.<sup>113)</sup>

② 이에 비해 통계 값이 낮을수록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지표의 최댓값과 최솟값 설정을 보면, 신체의 자유 지표인 ‘교도관 1인당 평균 수용인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은 캐나다 1.1명을 기준으로 하여 최솟값을 1.0명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최댓값은 1970년 이후 평균 수용인원이 가장 많았던 1975년의 9.4명을 기준으로 9.5명으로 설정하였다.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건수’ 지표의 통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생산되었고, 국제적으로도 동 지표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생산한 국가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최댓값과 최솟값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비교에서 측정한 우리나라 사생활자유 지표 값을 기준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을 역산하면 목표치인 최솟값은 100천 건, 최댓값은 500천 건이었다. ‘CCTV 설치·운영 건수’는 우리나라 2008년 이후 CCTV 설치 추세를 기준으로 추계한 2017년 설치·운영건수를 최대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CCTV 설치 건수는 2010년 309천 건에서 2012년 453천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설치 추이가 지속되면 2017년 804천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목표치를 최대 800천 건으로 설정하였다.<sup>114)</sup>

또한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지표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설정한 결과를 보면, 먼저 사회보장권 영역의 ‘소득10분위 배율’은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1990년대 중반 12.0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최댓값을 12.0으로 설정하였다.<sup>115)</sup> 노동권 영역의 ‘비정규근로자 비율’의 경우 임금근로자 모두가 정규직근로자만으로 구성

113) 미국의 주택자가보유율 추이를 보면 1/4분기 기준 1965년 6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69.1%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3년 현재 65%로 지속적으로 60%대 수준을 유지하였음. U.S. Census Bureau(2013), Current Population Survey/Housing Vacancy Survey, Series H-111, <Table 14.>.

114) CCTV 설치·운영건수 지표의 추세치 함수는  $y = 90,829 + 71,385t$ ,  $r = 0.9946$  이고, 여기서  $t$ 는 기간을 나타냄.

115) 계층별 소득격차가 큰 국가의 소득10분위배율 보면 인도는 1990년대 12.0에서 2000년대 6.0으로 개선되었고, 동일한 기간에 브라질은 14.0에서 7.0, 남아프리카는 38.0에서 24.0으로 개선되었음. OECD 회원국은 2.0~5.0대 수준임. OECD.Stat, data extracted on 03 Dec 2013 (GMT) from OECD.Stat.

된 국가는 없음을 따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기간제 근로자 비율인 10.0%를 최저값으로 그리고 최댓값은 100.0%로 설정하였다. '연간 실근로 시간'의 경우 최고값은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간실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1983년 2,911시간을 기준으로 2,900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OECD 회원국의 경우 2011년 기준 네덜란드가 1,382시간, 독일 1,406시간, 노르웨이 1,421시간이고 프랑스가 1,482시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단축하는 목표이다.<sup>116)</sup> 이에 따라 동 지표의 최저값은 네덜란드보다는 조금 더 긴 1,400시간을 설정했다.

교육·문화권 영역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지표의 경우 주요 선진국 중에서 1관 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독일의 10,060명(2011년)을 기준으로 최저값을 10천명으로 설정하였고<sup>117)</sup>, 최댓값은 우리나라에서 동 통계가 생산된 이후 1관 당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1997년 135,589명을 참고하여 140천명으로 설정하였다. 주거권 영역의 '중위소득가구 월소득 대비 주거비' 지표는 경험적이고 규범적인(Rule of thumb) 소득대비 월임대료 비중을 30%, 미국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 가구 기준을 30%, 일부 대도시 40%로 규정함에 따라, 최댓값을 40%로 설정하였다.<sup>118)</sup>

#### (나) 기준점 거리방식으로 정규화한 지표 산정방법

인권지표 중에서 기준점 거리방식으로 정규화 하는 경우에 지표 값 산정절차는 먼저 개별 권리의 목표 수준인 기준점(  $X_{ef}$  )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은 기준점 대비 지표의 실제 값의 상대비를 구한다. 이 경우 지표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식 (8), 낮을수록 인권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식 (9)에 따라 지표 값을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지표 값을 백점으로 산정한다.

$$= [X / X_{ef}] \times 100 \dots\dots\dots (8)$$

11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13),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 채택, 브리핑 자료(2013.4.4), p.4.

117) e-나라지표, 주요 국가별 1관당 인구수 참조,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39](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39).

118) 김용순 외(2008),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 국토해양부, p.4, p.6.

$$[(X^f - X)/X] \times 100 \dots\dots\dots (9)$$

① 기준점 거리방식으로 정규화한 지표 중에서 지표 통계 값이 클수록 인권수준이 높아서 식 (7)의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지표들을 보면, 먼저 신체의 자유권 영역의 ‘구속영장 기각률’, 법의 지배 영역의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형사보상 인용률’,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이었다. 사생활보호 영역에서는 ‘사생활보호 인식’, ‘이동자유 영역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사상·양심·종교자유 영역의 ‘국가보안법의 입건자 수(기소비율)’,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이다. 그리고 언론·출판·의견·표현 영역의 ‘방송광고 심의 건수’, ‘인터넷 게시판 시정 요구율’, ‘정부, 공공기관 정보공개율’, ‘정보격차 수준’, ‘정보접근 정도’였다. 집회·결사영역의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이다. 이들 지표들은 모두 지표 목표수준을 100.0으로 설정하여 값을 산정하였다. 참정권의 ‘투표율’도 지표 목표수준을 100.0으로 설정하여 값을 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선거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율도 편차가 크다. 이에 따라 투표율은 분석대상 기간 직전의 2006년 지방선거(투표율 60.0%), 2007년 대통령선거(50.0%), 2008년 국회의원 선거(80.0%)의 투표율을 산술평균한 65.0%를 2008년 기준 투표율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준 투표율(65.0%)에 2006년과 2010년의 지방선거 투표율 증가율(8.3%)을 적용하여 2010년 조정된 투표율(65.0\*1.08=70.4)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투표율을 설정하였다.<sup>119)</sup>

이에 비해 이동권 영역의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 목표를 40%로 설정하였다. 동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에 설정한 2017년 목표율이 41.5%이기는 하나, 2010년 11.0%, 2012년 14.8%로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표 목표율을 40.0%로 설정하였다. 참정권의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남녀 동수에 해당하는 50%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라 3%로 설정하여 지표를 산정하였다.

경제·사회·문화권의 경우 사회보장권 영역의 ‘고용보험 적용률’,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 노동권 영역의 ‘성별 임금격차’, 건강권·환경 영역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률’, ‘공공의

---

119) 3개년 산술평균값은 63.33이나 편의를 위해서 65.0으로 설정함.

료비 비중', '병·의원 미치료율', '환경성 질환유병률', 문화·교육권 영역의 '취학률',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률', '문화예술 관람률', '여가활동 만족도', '교육비 지출 중 공교육비 지출 비율' 그리고 주거권 영역의 '주택만족도'이다. 이들 지표들은 모두 지표 목표수준을 100.0으로 설정하여 값을 산정하였다.

사회보장권 영역의 '보육시설 취학률'은 2005~2011년에 주요 국가 중에서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취학률이 가장 높은 덴마크의 취학률 65.7%(2010년)을 참조하여, 목표율을 70.0%로 설정하였다.<sup>120)</sup> 노동권 영역의 '고용률'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100.0% 모두 취업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 80.2%(2012년)보다 약간 높은 90.0%를 동 지표의 목표율로 설정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경우 우리나라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1980년 21.0%에서 1990년 18.4%, 2000년 12.0% 그리고 2011년 10.1%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의 목표수준을 20.0%로 설정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침해 정도'는 사업체 근로감독 결과 비정규직·사내도급·연령차별·최저임금·연소근로자와 관련된 법을 준수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체 비율을 평균하여 설정한 것으로, 전체 근로감독 사업장 중에서 법 준수 사업체 비율 100.0%을 목표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교육·문화권 영역의 '평생교육참여율'의 경우, 만 25~64세 성인이 모두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의 참여율을 보면 두 국가 즉, 스웨덴(73.0%), 뉴질랜드(67.0%)만 60% 이상이고, 스위스(57.0%), 핀란드(55.0%), 노르웨이(55.0%) 등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60% 미만이었다.<sup>121)</sup> 이에 따라 동 지표 목표치를 60.0%로 설정하였다.

② 지표 통계 값이 낮을수록 인권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 (8)의 산정 방식을 적용한 지표를 보면, 생명권 영역의 '사형 선고율/집행률', 신체의 자유 영역의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 '군 영창 구금자 비율',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의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지표는 모두 최저값이 100.0이다.

그러나 생명권 영역의 '자살률'의 경우 국가 중에서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린란드로 108명(2010년)이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31.7명(2011년), 리투아니아 31.0명(2012년), 기아나 26.4명(2006년)이었고, 자메이카

120) OECD(2013), Family\_Database, '3.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

121) 스웨덴, 핀란드는 2005년, 뉴질랜드 2006년, 스위스 2009년, 노르웨이는 2010년 자료임.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2, Indicator C6.

(1990년), 시리아(1985년), 이집트(2009년)는 각각 0.1명이었다. 이에 따라 자살률 지표의 최저값을 110명(/10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영아사망률’ 지표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동 통계 값이 가장 큰 국가는 콩고로 125.8명(/1천명), 차드 124.0명, 시에라리온 122.8명 등이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 1.5명, 아이슬란드 1.8명, 스웨덴 2.3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동 지표의 최저값을 120명으로 설정하였다. ‘살인’ 지표의 최저값은 가장 살인건수가 많은 코트디부아르 56.9(/10만 명, 2008년)을 기준으로 60명을 설정하였다.<sup>122)</sup> 신체의 자유 영역의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는 입수 가능한 통계가 2007~2012년에 불과하고 인권침해 건수도 2007년 112건에서 2012년 144건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본 보고서 앞 장에서 언급한 국제인권지수에서 산정한 우리나라 신체의 자유권 지표 값 85점을 역산하여 최저값을 설정하였다.<sup>123)</sup>

‘폭행 건수’의 경우 전 세계 국가를 인구 10만 명 당 폭행건수로 구분하면 폭행건수 상위 25%인 국가는 폭행건수가 350~1,700건 미만으로,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폭행 건수 중상위 25%인 국가는 100~350건 미만으로 프랑스, 이태리,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 등이었다. 폭행 건수 중하위 25%인 국가는 30~90건 미만으로 한국(2002년), 일본, 그리스, 파나마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폭행 건수 하위 25%인 국가는 30건 미만으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의 최저값은 상위 25%의 중간 값인 1,000건으로 설정하였다.<sup>124)</sup> ‘유괴(약취 및 유인건수)’도 인구 10만 명 당 유괴건수를 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터키가 1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캐나다 13.82건, 쿠웨이트 11.52건이었다. 이들 국가 이외에 8개국만 4.0이상이었고, 나머지는 호주 3.61을 비롯하여 모두 3.0대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의 최저값을 4.0으로 설정하였다.<sup>125)</sup> 그리고 사생활보호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그림 IV

122) UNOCD(2011), 2011 Global Study on Homicide - Trends, Context, Data,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pp.9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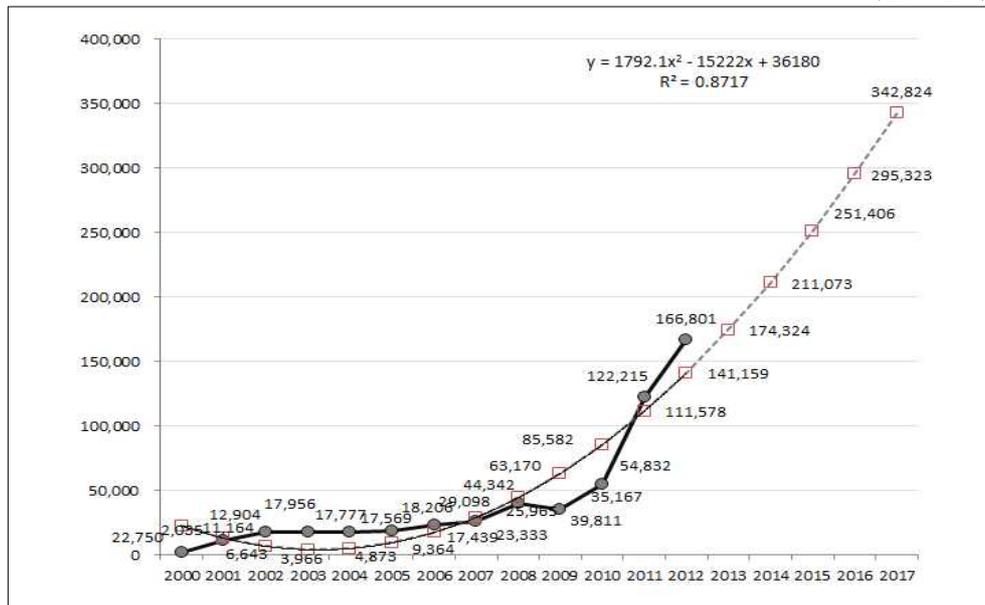
123)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의 최저값은 800건임. 이에 따라 향후 동 침해 건수가 300건으로 증가하면 동 지표 값은 62.5점, 400건이 되면 50.0점이 됨. 이에 비해 2012년의 절반 수준인 70건으로 감소하면 91.3점으로 증가함.

124) 모리셔스(Mauritius)가 상위집단 중간으로 2006년 폭행건수가 1,044건/10만명이었음. S. Harrendorf, M. Heiskanen, S. Malby eds (2010), International Statistics on Crime and Justice, HEUNI Publication Series No. 64, pp.36-37.

-19]와 같이 과거 침해 상담 건수를 기초로 추세치를 전망한 2016년 침해 건수 295천 건과 2017년 343천 건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값을 300천 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개인권리침해 심의 건수’는 동 자료가 생산되기 시작한 연도인 2008년 이후 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08년 7,822건의 최저값을 300천 건으로 설정하였다. 사상·양심, 종교자유 영역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형사처벌’ 지표의 경우는 2001년 이후 전체 행방불명 혹은 기피로 인한 미입영자가 가장 많았던 2010년 1,337명을 기준으로 동 지표의 최저값을 1,500명으로 설정하였다.

경제·사회·문화권에 있어 사회보장권 영역의 ‘상대빈곤율’의 경우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의하면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티 80.0(2003년), 차드 80.0(2001년) 등이었고, 나이지리아, 수리남 등도 70.0으로 상당히 높았다. 이에 비해 대만은 1.16(2010년)으로 가장 낮았고, 말레이시아 3.8(2007년), 아일랜드 5.5(2009년) 등도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했다. 이에 따라 동 지표의 최저값을 80.0으로 설정하였다.

(단위: 건수)



[ IV-19]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추이 및 추세

125) S. Harrendorf, M. Heiskanen, S. Malby eds (2010), p.47.

노동권 영역의 ‘실업률’은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2012년 현재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25.1%)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24.3%)이다. 그리스 다음으로 실업률이 9%p정도 낮은 국가로 포르투갈로 15.9%, 아일랜드 14.7%, 슬로바키아 14.0% 등이 있고,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이 8.0%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 지표의 최댓값은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의 두 배이고, 포르투갈 실업률 수준인 16.0%로 설정하였다.<sup>126)</sup>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의 경우는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콜롬비아가 2009년 44.5%, 2010년 42.1%로 상당히 높았다.<sup>127)</sup> 그리고 스페인도 높아서 30.6%(2010년)이었다. 미국은 2011년 2.9%로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의 최댓값을 30.0으로 설정하였다. ‘산업재해율’은 우리나라의 1964년 이후 중대재해율(사망만인율) 추이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았던 1966년의 13.2‰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율 지표 산정을 위한 최댓값을 12.0‰으로 설정하였다.<sup>128)</sup> 교육·문화권 영역의 ‘학교 중퇴자 비율’ 지표는 제한적으로 입수 가능한 국제통계를 보면 캐나다가 2000년 11.7%로 다소 높았고,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합산 중퇴자 비율 추이를 보면 1970년 6.8%가 가장 높았다.<sup>129)</sup> 이에 따라 동 지표의 최댓값을 10.0%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거권 영역 ‘홈리스 수’ 지표의 주요국 통계를 보면 인도 71.3명(/인구 천 명)으로 상당히 많았고, 캐나다와 호주도 각각 6.3명(2001년), 5.0명(2003년)이었다.<sup>130)</sup>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2%이하로 미국 2.0명(2012년), 스웨덴 1.9명(2010년), 핀란드 1.42명(2001년), 벨기에 0.12명(2001년) 등이었다.<sup>131)</sup> 이에 따라 ‘홈리스 수’의 최댓값을 2.0명

126) OECD(2013),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Table A. p.238.

127)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주요국 분석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리함. 최저임금심의위원회 (2012),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2. 6.

128)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1년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호)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재해 기준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자료를 병행해서 발표함. 변경 후 자료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업무상사고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함. 본 자료는 1960년 이후 자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 전 사망자 통계를 사용함.

129)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교육통계에 탑재된 박현정(2003), 중도탈락자, 2003.3.20. 자료 기준.

130) 우리나라 홈리스에는 노숙인(재활·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일시보호), 거리노숙인, 쪽방주민을 포함함.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백서』, p.121.

131) 주요국의 홈리스 통계는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의 Homelessness 참조.

(/인구 천 명)으로 설정하였다.

(다) 범주형 척도에 따라 정규화한 지표 산정방법

마지막으로 범주형 척도에 따라 정규화 해야 하는 지표 값의 산정방법을 보면, 먼저 지표가 정량통계인 경우에는 식 (10)과 같이 지표 값의 분산을 감안하여 범주화한 이후에 일정한 범주별로 기호나 숫자 등을 부여한다. 그 다음은 구분된 범주의 기호 혹은 숫자의 개수로 100을 나누어, 정규화 된 지표 값을 백점으로 환산한다. 그리고 일반인조사, 전문가조사 등 실태조사결과로 지표 값을 측정할 경우에는 응답항목을 숫자로 통일시킨다. 그 다음은 앞에서와 같이 응답항목의 숫자의 개수로 100을 나누어, 정규화 된 지표 값을 백점으로 환산한다.

$$Z \times w_j, \quad j = 1, \dots, n \dots\dots\dots (10)$$

(여기서,  $Z_1 = 1$  if  $p^a \leq X < p^b, \dots, Z_n = n$  if  $p^x \leq X < p^z, w_j = 100/n$ )

본 연구의 인권지표 중에서 범주형 척도에 따라 정규화된 지표를 보면, 생명권 영역의 ‘정치적 불법살인’과 ‘실종’지표의 경우 먼저 실종자 수에 따라 범주화시켜서 50명 이상이면 1, 1-49명이면 2 그리고 실종자가 없으면 3을 부여한다. 그리고 지표 값이 1이면 33.3점, 2이면 66.7점 그리고 3이면 100점으로 환산한다. 이 외에 신체적 자유 영역의 ‘정치적 구금’, ‘고문’도 동일한 방법으로 범주화하여 지표 값을 산정한다. 또한 국가 인권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기초로 인권수준을 평가, 범주화한 지표들도 있다.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지표들로는 법의 지배 영역의 ‘사법부 독립’이 있다. 동 지표는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1, 부분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2 그리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면 3으로 범주화한 뒤,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100점으로 환산한다.<sup>132)</sup> 이동의 자유 영역의 ‘이동자유 인식 수준’ 지표는 국내와 국제이동 모두 엄격히 제한되면 1, 국내 혹은 해외이동 중에서 하나는 엄격히 제한, 다른 하나가 다소 제한적 이면 2, 국내와 해외 이

<http://en.wikipedia.org/wiki/Homelessness>

132) CIRI 인권수준 범주화 방법에 대해서는 D. L. Cingranelli, D. L. Richard(2008),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Coding Manual, Manual version(2008.7.30.) 참고.

동 모두 다소 제한이면 3, 국내 혹은 해외이동 중에서 하나가 엄격히 제한, 다른 하나가 자유로우면 3, 국내 혹은 해외이동 중에서 하나가 다소 제한, 다른 하나가 자유로우면 4, 국내와 해외 이동 모두 자유로우면 5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범주에 숫자를 부여하였다. 동 지표 값도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100점으로 환산한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의 ‘종교관련 정부 규제 정도’ 지표는 정부 규제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면 1, 부분적인 수준이면 2, 실제적으로 규제가 없으면 3을 부여하였다. 참정권 영역의 ‘공정 선거보장 정도’ 지표의 경우 투표권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면 1, 제한적인 투표권 보장이면 2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면 3을 부여하였다.

범주형 척도에 따라 정규화하는 또 다른 유형의 지표로는 일반인조사, 전문가조사 등 실태조사 결과로 인권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와 같은 경우 먼저 응답항목을 수치로 전환시킨다. 그 다음은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100점으로 환산한다.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지표는 법의 지배 영역의 지표인 ‘적법 절차와 고소인 권리 보장’이 있다. 동 지표는 무죄추정의 적용 여부, 구속 및 미결구금, 용의자 고문 및 모욕적 대우, 변호사 선임, 수감자 권리보호에 대한 전문가 응답결과를 수치로 전환하여 단순 평균하여 지표 통계를 구축한다.<sup>133)</sup> 그리고 단순 평균한 지표 통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지표 값을 산정한다. 사생활 보호 권리 영역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 지표의 통계는 법원승인 없이 개인이나 정적(政敵)의 사적 전화 및 전자통신 감청 정도, 영장 없이 구금시설로 강제 연행될 가능성, 반체제 인사에 대한 불법 가택수색 가능성으로 구성된 질문에 대한 형사사법 전문가 응답결과를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4단계 등급형 응답항목을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100점으로 환산한다.<sup>134)</sup>

그리고 사상·양심 및 종교 자유 영역의 ‘신념표명과 종교행사의 자유 정도’ 지표도 4단계 등급형 응답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100점으로 환산한다. 동 지표의 통계는 소수 종교집단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종교행사

133) 세계 사법정의프로젝트 지수의 경우, 동 조사의 응답항목 중에서 100분비 단위 즉, 0, 0.05, 0.25, 0.50, 0.75, 1.0 유형인 경우 그대로 사용하고, 등급형 응답항목의 경우 4단계는 0, 0.333, 0.667, 1, 2단계는 0, 1.0으로 정규화 하였음. J. C. Botero, A. Ponce(2010), measuring the Rule of Law, Appendix A. Mapping of questions and indicators, pp.39-53.

134) 동 지표의 조사항목은 형사사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4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됨.

개최 정도, 비신도에게 종교법 준수를 요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3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5)</sup> 언론·출판 영역의 경우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지표는 8개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치로 된 응답항목을 합치면 0~30점이고, 이러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다. ‘시민단체 및 개인의 집회 자유 정도’ 지표는 4단계 등급형 응답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앞서서와 같은 방법으로 100점으로 환산한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의 ‘단체조직·교섭 자유’ 지표는 5단계(0~4) 등급형 질문항목 3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치로 된 응답항목을 합산하고, 합산한 값을 앞서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동 지표는 집회 및 시위 자유 정도, 비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조직 결성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 정도 그리고 공적 토론의 자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지표 값의 정규화 과정과 백점 환산 절차의 산식은 <표 IV-38>과 같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표 IV-39>와 같이 영역별 인권 지표의 산정방법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 2) 국가인권지수의 산정방법

개별 권리지표 값의 정규화 과정과 백점 환산 절차를 걸쳐서, 지표 값이 산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영역별 지표 값을 산정해야 한다. 영역별 지표 값은 개별 지표 값을 산술평균(Arithmetic mean)하여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영역의 지표의 정책적 관리를 위해 구성한 유사한 지표는 식 (11)과 같이 1차적으로 지표 값을 산술평균하고, 산술 평균된 지표 값과 다른 지표의 값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해당 영역의 지표 값을 산정한다. 예컨대, 생명권영역 지표 7개 중에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는 인구집단이 서로 다르나 모두 사망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명권영역 지표 값 산정의 경우 먼저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비 지표 값을 산술평균하여 영아·모성사망비 지표 값을 산정한다. 그 다음은 6개 지표와 영아·모성사망비 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영역 지표 값을 산정하였다.

이동 자유 영역에서도 먼저 교통이동약자의 이동관련 지표인 저상버스 보급

135)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는 전문가조사 2개, 일반인조사 1개 질문항목으로 측정함. 그리고 집회자유는 전문가조사 4개, 일반인조사 2개 질문항목으로 측정함.

를,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지표 값을 먼저 산술평균한다. 그 다음은 동 지표 값과 나머지 두 개의 지표 값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영역의 지표 값을 산정한다. 참정권에서도 국회의원 여성비율과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 지표 값을 먼저 산술평균하여 지표 값을 산정한 이후, 앞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참정권 영역의 지표 값을 산정한다. 사회보장권 영역의 경우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 10분위 배율도 먼저 지표 값을 산술평균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영역의 지표 값을 산정한다. 나머지 영역 즉, 신체의 자유, 법의 지배,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자유, 언론·출판·의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영역은 식 (12)와 같이 영역별 지수 값을 해당 영역에 속하는 개별 지표의 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sum_{j=1}^n Z_j / n, \quad \text{기서 } Z_n = (\sum_{k=1}^2 Z_k) / 2, \quad n: \text{ 해당 영역 지표 수} \cdot (11)$$

$$I = \sum_{j=1}^n Z_j / n, \quad \text{여기서 } n: \text{ 해당 영역 지표 수} \dots\dots\dots (12)$$

$$I^{HR} = \sum_{i=1}^n I_i w_i, \quad \text{서 } w: \text{ 영역별 가중치, } i: \text{ 인권지수 구성 영역 수} \cdot (13)$$

국가인권지수 즉, 본 연구에서는 시민정치권과 경제·사회·문화권의 지수 값은 앞에서 구한 영역별 지표 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별 혹은 지역, 개인별로 시민정치권 혹은 경제·사회·문화권의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영역에 대한 중요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계층적 분석법을 사용하여 시민정치권과 경제·사회·문화권 영역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지수 값은 앞의 식 (13)과 같이 영역별로 지표 값과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lt; IV-38 &gt; 국가인권지수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시민정치권)

	지수영역 및 지표	지표	지표 값 산정 산식
<b>I</b>	<b>생명권</b>		
I-1	자살률	인구 10만 명 당 자살인구 수	$[(X^f - X) / X^{Ref}] \times 100$
I-2	사형 선고율/집행률	사형선고자 대비 집행자 비율	$I = [(X^{Ref} - X) / X^{Ref}] \times 100$
I-3	살인건수	인구 10만 명 당 살인건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I-4	정치적 불법 살인	정치적 불법살인자 수	$I = Z_j \times W_j \quad (j=1, \dots, n \quad Z_n = n \text{ if } p^w \leq X \leq p^z)$
I-5	실종	실종자 수	$I = Z_j \times W_j \quad (j=1, \dots, n \quad Z_n = n \text{ if } p^w \leq X \leq p^z)$
I-6	영유아사망률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천 명 당 사망자	$I = [(X^{Ref} - X) / X^{Ref}] \times 100$
I-7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 당 모성사망자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b>II</b>	<b>신체의 자유</b>		
II-1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	기소 중지자 중 불구속 비율	$I = [(X^{Ref} - X) / X^{Ref}] \times 100$
II-2	군 영창 구금자 비율	전체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에서 영창 비율	$I = [(X^{Ref} - X) / X^{Ref}] \times 100$
II-3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1일)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I = [(X^{Max} - X) / (X^{Max} - X^{min})] \times 100$
II-4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	인권침해진정 중 인용률	$I = [(X^{Ref} - X) / X^{Ref}] \times 100$
II-5	정치적 구금	정치적 구금 건수	$I = Z_j \times W_j \quad (j=1, \dots, n \quad Z_n = n \text{ if } p^w \leq X \leq p^z)$
II-6	고문	고문건수	$I = Z_j \times W_j \quad (j=1, \dots, n \quad Z_n = n \text{ if } p^w \leq X \leq p^z)$
II-7	폭행 건수	인구 10만 명 당 폭행 범죄건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II-8	약취, 유인건수	인구 10만 명 당 유괴 범죄건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b>III</b>	<b>법의 지배</b>		
III-1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대비 피고인 비율	$I = [(X^{Ref} - X) / X^{Ref}] \times 100$

	지수영역 및 지표	지표	지표 값 산정 산식
III- 2	형사보상 인용률	무죄재판 받은 자의 형사보상청구 대비 인용	$[(X^f - X) / X^{Ref}] \times 100$
III- 3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적법절차에 대한 평가점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III- 4	구속영장 기각률	영장신청 중 기각률	$I = [(X^{Ref} - X) / X^{Ref}] \times 100$
III- 5	사법부 독립 정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평가점수	$I = Z_j \times W_j \quad (j = 1, \dots, n \quad Z_n = n \text{ if } p^w \leq X \leq p^z)$
<b>IV</b>	<b>사생활보호</b>		
IV- 1	개인정보 침해 건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당건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IV- 2	개인권리 권리침해 건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침해심의 건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IV- 3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건수	통신사실확인 건수	$I = [(X^{Max} - X) / (X^{Max} - X^{min})] \times 100$
IV- 4	감청(CCTV 설치, 운영 등) 건수	CCTV 감청건수	$I = [(X^{Max} - X) / (X^{Max} - X^{min})] \times 100$
IV- 5	사생활보호 인식	사생활보호에 대한 전문가집단 평가점수	$I = Z_j \times W_j \quad (j = 1, \dots, n \quad Z_n = n \text{ if } p^w \leq X \leq p^z)$
<b>V</b>	<b>이동자유</b>		
V- 1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시내버스대수 대비 저상버스 비율	$I = [X - X^{Ref}] \times 100$
V- 2	이동편의시설설치율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율, 만족도 수준	$I = [X - X^{Ref}] \times 100$
V- 3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의 법정기준 준수율	$I = [X - X^{Ref}] \times 100$
V- 4	이동자유 인식 수준	국내 및 해외 이동의 자유 평가점수	$I = Z_j \times W_j \quad (j = 1, \dots, n \quad Z_n = n \text{ if } p^w \leq X \leq p^z)$
<b>VI</b>	<b>사상·양심·종교 자유</b>		
VI- 1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구속률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신수대비 비구속자비율	$I = [(X^{Ref} - X) / X^{Ref}] \times 100$
VI- 2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형사처벌	입영 및 집총거부자 수(지표 값 정규화)	$I = [(X^{Ref} - X) / X^{Ref}] \times 100$
VI- 3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평가점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VI- 4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	신념, 종교자유에 대한 평가점수	$I = [X - X^{Ref}] \times 100$
<b>VII</b>	<b>언론·출판, 의견표현</b>		

	지수영역 및 지표	지표	지표 값 산정 산식
VII- 1	방송광고 심의 건수	방송광고심의 중에서 비법정제재 건수 비율	$[X - X^f] \times 100$
VII- 2	인터넷 게시판 시정요구율	심의 건수 중 결정취소, 각하 건수 비율	$I = [X - X^{Ref}] \times 100$
VII- 3	정부, 공공기관 정보공개율	전체 정보공개처리건수 대비 전부공개비율	$I = [X - X^{Ref}] \times 100$
VII- 4	정보격차 수준	일반국민과 정보취약계층간 상대적 정보격차	$I = [X - X^{Ref}] \times 100$
VII- 5	정보접근 정도	정보접근도 정도	$I = [X - X^{Ref}] \times 100$
VII- 6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미디어 경제적 영향정도 평가점수	$I = Z_j \times W_j \quad (j = 1, \dots, n \quad Z_n = n \text{ if } p^w \leq X \leq p^z)$
<b>VIII</b>	<b>집회·결사</b>		
VIII- 1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집시법위반 검거 중 불기소, 미제 등의 건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VIII- 2	집회신청 대비 금지통고율	집시신고건수대비금지통고 건수	$I = [X - X^{Ref}] \times 100$
VIII- 3	집회·시위·조직의 자유	집회, 시위, 단체조직 자유에 대한 평가점수	$I = [X - X^{Ref}] \times 100$
VIII- 4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단체조직 자유 정도 평가점수	$I = Z_j \times W_j \quad (j = 1, \dots, n \quad Z_n = n \text{ if } p^w \leq X \leq p^z)$
<b>IX</b>	<b>참정권</b>		
IX- 1	투표율	선거권자 중 투표권자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X- 2	국회의원 여성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X- 3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전체 일반직 여성 공무원 중 4급 여성비율	$I = [X - X^{Ref}] \times 100$
IX- 4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	정부부문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고용비율	$I = [X - X^{Ref}] \times 100$
IX- 5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점수	$I = Z_j \times W_j \quad (j = 1, \dots, n \quad Z_n = n \text{ if } p^w \leq X \leq p^z)$

- 주 1)  $X$ : 특정 권리의 지표 값(values),  $X^{Max}$ ,  $X^{min}$ : 해당 권리 침해 혹은 준수의 최대 및 최소값임  
 2)  $X^{Ref}$ : 해당 권리의 목표 이행 및 준수 수준을 나타냄.  
 3)  $P^w \sim P^z$ 는 권리 침해 혹은 준수 수준, : 지표의 척도 값을 나타냄.  
 4)  $w$ 는  $Z/n$ ,  $n$ 는 범주화한 개수를 나타냄.  
 5)  $I$ : 정규화된 지표 값을 백분비로 환산한 지표 점수(Scores)임.

< IV-39> 국가인권지수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경제·사회·문화권)

	지수영역 및 지표	지표	지표 값 산정 산식
<b>I</b>	<b>사회보장권</b>		
I-1	상대빈곤율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비율	$[(X^I - X) / X^{Ref}] \times 100$
I-2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상대비	$I = [(X - X^{\min}) / (X^{\max} - X^{\min})] \times 100$
I-3	지니계수	지니계수 산식	$I = [(X^{Ref} - X) / X^{Ref}] \times 100$
I-4	소득10분위 배율	소득상위10%계층/소득하위10%계층소득	$I = [(X^{\max} - X) / (X^{\max} - X^{\min})] \times 100$
I-5	고용보험 적용률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피보험자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6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	$I = [X - X^{Ref}] \times 100$
I-7	보육시설 취학률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취학률	$I = [X - X^{Ref}] \times 100$
<b>II</b>	<b>노동권</b>		
II-1	고용률	15-64세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I-2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	$I = [(X^{Ref} - X) / X^{Ref}] \times 100$
II-3	비정규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I = [(X^{\max} - X) / (X^{\max} - X^{\min})] \times 100$
II-4	장시간 근로자 비율	근로자 평균 연간 실근로시간	$I = [(X^{\max} - X) / (X^{\max} - X^{\min})] \times 100$
II-5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 근로자 비율	$I = [(X^{Ref} - X) / X^{Ref}] \times 100$
II-6	성별 임금격차	남성임금에 대한 여성임금의 상대비	$I = [X - X^{Ref}] \times 100$
II-7	노동조합조직률	조직대상근로자 대비 조합원 수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I-8	산업재해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사망자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II-9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정도	비정규직·사내도급·연소자관련 노동법 준수 정도	$I = [X - X^{Ref}] \times 100$

	지수영역 및 지표	지표	지표 값 산정 산식
<b>III</b>	<b>건강권, 환경</b>		
III - 1	기대수명	기대수명	$[(X - X^{\min}) / (X^x - X^{\min})] \times 100$
III - 2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대상자 대비 건강검진자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II - 3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부담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II - 4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I = [X - X^{Ref}] \times 100$
III - 5	활동의사 수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	$I = [(X - X^{\min}) / (X^{Max} - X^{\min})] \times 100$
III - 6	병·의원 치료율	병·의원 가고 싶을 때 간 인구비율	$I = [X - X^{Ref}] \times 100$
III - 7	환경성 질환 유병률	환경성질환 유병률	$I = [X - X^{Ref}] \times 100$
<b>IV</b>	<b>교육권, 문화</b>		
IV- 1	취학률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취학률	$I = [X - X^{Ref}] \times 100$
IV- 2	학교 중퇴자 비율	초, 중, 고등학교 학업중도탈락자	$I = [(X^{Ref} - X) / X^{Ref}] \times 100$
IV- 3	평생교육 참여비율	성인 중 형식, 비형식 교육참여자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V- 4	공교육비 비율	교육비 지출 중 공교육비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V- 5	특수학교 교원 법정 총원율	법정 특수학교교원 대비 실제 교원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V- 6	문화예술 관람률	1년에 한번 이상 문화예술행사 관람자 비율	$I = [X - X^{Ref}] \times 100$
IV- 7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I = [X - X^{Ref}] \times 100$
IV- 8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도서관 1관 당 인구 수	$I = [(X^{Max} - X) / (X^{Max} - X^{\min})] \times 100$
<b>V</b>	<b>주거권</b>		
V- 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I = [(X^{Max} - X) / (X^{Max} - X^{\min})] \times 100$
V- 2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I = [(X - X^{\min}) / (X^{Max} - X^{\min})] \times 100$
V- 3	주택 자가보유율	일반가구수 대비 주택 비율	$I = [X - X^{Ref}] \times 100$

	지수영역 및 지표	지표	지표 값 산정 산식
V- 4	주거환경만족도	주관적 주택환경만족도 5점 척도	$[X - X^J] \times 100$
V- 5	홈리스 수	노숙인 및 쪽방 주민 수	$I = [(X^{Ref} - X) / X^{Ref}]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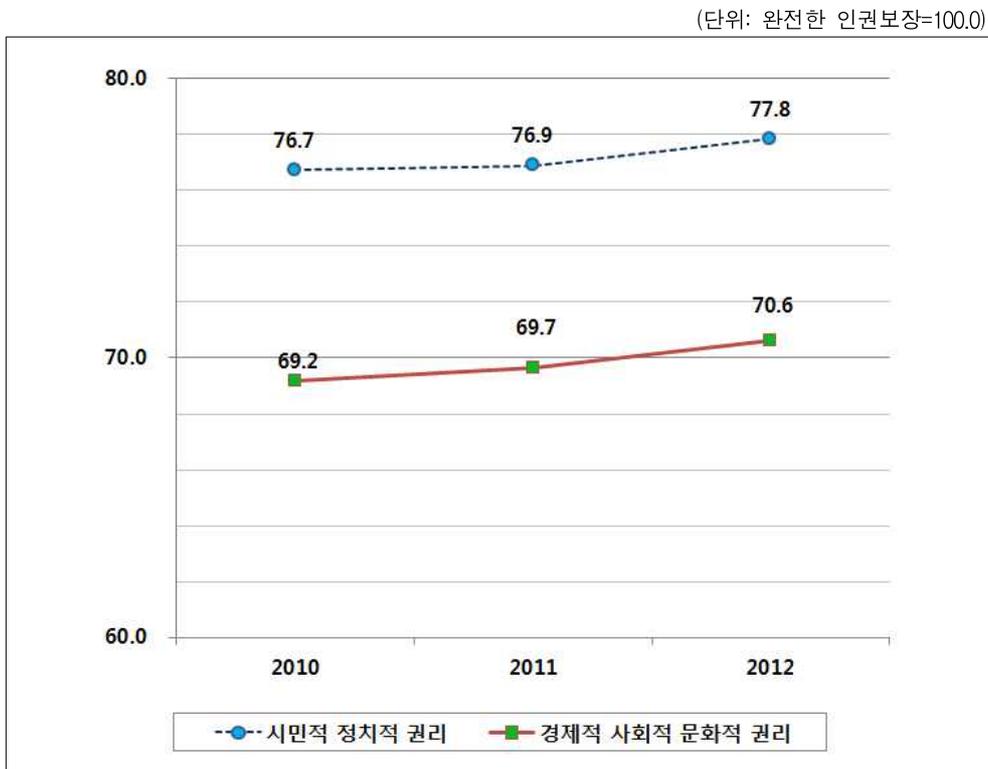
- 주 1)  $X$ : 특정 권리의 지표 값(values),  $X^{Max}$ ,  $X^{min}$ : 해당 권리 침해 혹은 준수의 최대 및 최소값임  
 2)  $X^{Ref}$ : 해당 권리의 목표 이행 및 준수 수준을 나타냄.  
 3)  $P^a \sim P^z$ 는 권리 침해 혹은 준수 수준,  $Z$ : 지표의 척도 값을 나타냄.  
 4)  $w$ 는  $Z/n$ ,  $n$ 는 범주화한 개수를 나타냄.  
 5)  $I$ : 정규화된 지표 값을 백분비로 환산한 지표 점수(Scores)임.

##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산정과 평가

1.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283
2. 영역별 인권수준 변화와 특징	287

### 1.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국가인권지수의 지표 값 범주는 인권이 완전히 보장 혹은 인권침해가 전혀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100.0점부터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0.0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인권지수 값이 클수록 인권수준은 높아진다. 2012년 우리나라 국가인권지수 값을 보면, 먼저 시민·정치적 권리 지수 값의 경우 대략 76.7~77.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1]). 이와 같은 인권지수 값을 본 연구보고서 앞 장에서 분석한 국제인권지수의 우리나라 지표 값과 비교하면, 프리덤하우스(FH) 시민정치권 지표 값은 2012년 86.7, 인텔리전스 유닛(EIU) 83.7,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2011년 70.0을 평균한 80.1보다 약간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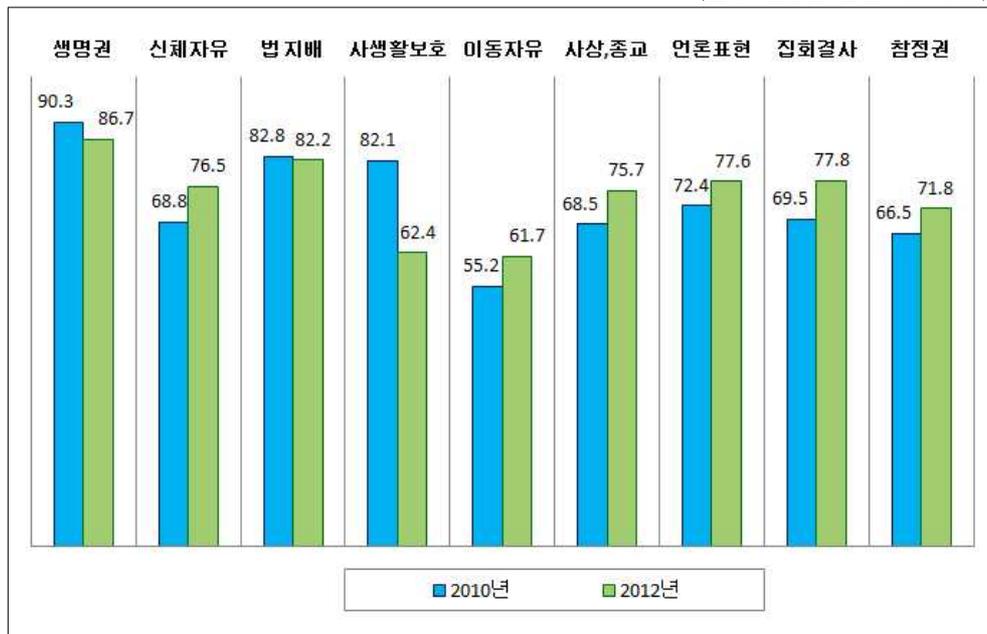


[ V-1] 연도별 국가인권지수의 지표 값 추이

이러한 시민·정치권과 경제·사회·문화권의 지표 값을 비교해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2010년 이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지수 값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지수 값보다 약간 더 높았다. 그리고 시민정치권의 지표 값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76.7에서 2011년 76.9 그리고 2012년에 77.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경제·사회·문화권 지수 값도 2010년 69.2에서 2011년 69.7, 2012년 70.6으로 증가하였다. 즉, 2010~2011년에는 경제·사회·문화권의 지수 값 증가폭이 시민정치권보다 더 높았으나, 2011~2012년에는 경제·사회·문화권과 시민정치권의 지수 값 증가폭이 동일하였다.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영역별로 보면 먼저 시민정치권의 경우 2012년 인권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은 생명권(지표 값 86.7)이었다. 이와 같은 생명권 영역의 지수 값은 앞의 국제인권지수(PTS, WJP)에서 측정한 우리나라 지수 값 85.5와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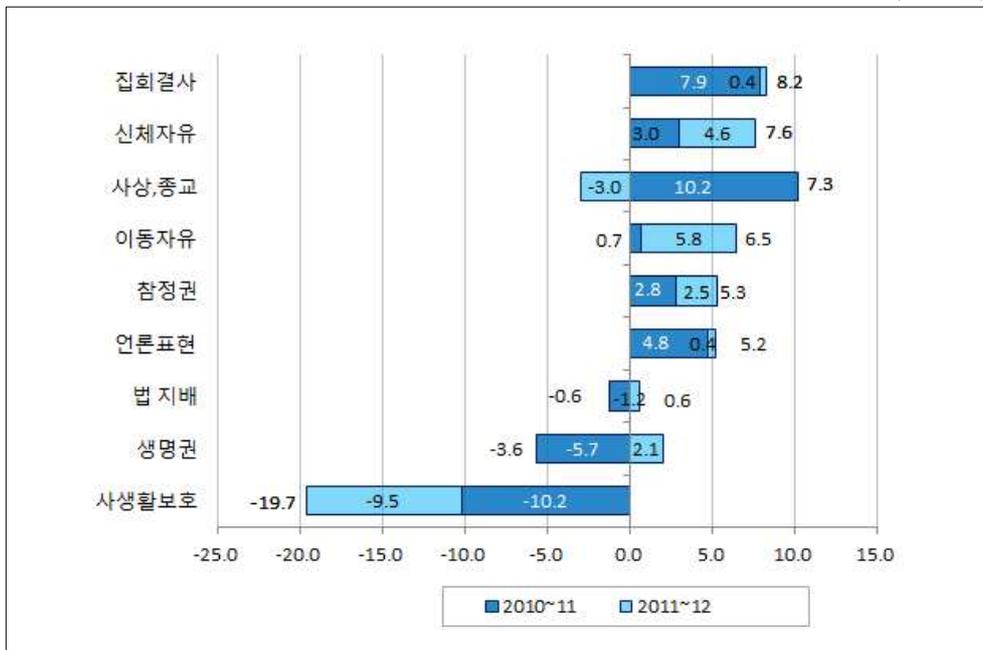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 V-2] 영역별 시민정치권의 지표 값 변화 추이

그 다음은 법의 지배(82.2), 집회·결사의 자유(77.8), 언론·출판의 자유(77.6), 신체의 자유(76.5) 순이었다. 국제인권지수에서 이러한 영역의 우리나라 지표 값을 측정할 결과를 보면 법의 지배 영역은 80.5(FHI, WGI, BTI 지수 평균), 집회·결사 87.5(WJP, FHI, IPD, CIRI, BTI), 언론영역 73.2(FHI, RWB, IPD), 생명 및 신체의 자유 85.3(PTS, WJP)이었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한 법의 지배와 언론·출판 자유 영역의 지표 값은 국제인권지수가 산정한 값보다 약간 높았으나, 집회·결사의 자유와 신체 자유 영역의 지표 값은 국제인권지수 산정 값보다 약간 낮은 특징을 보였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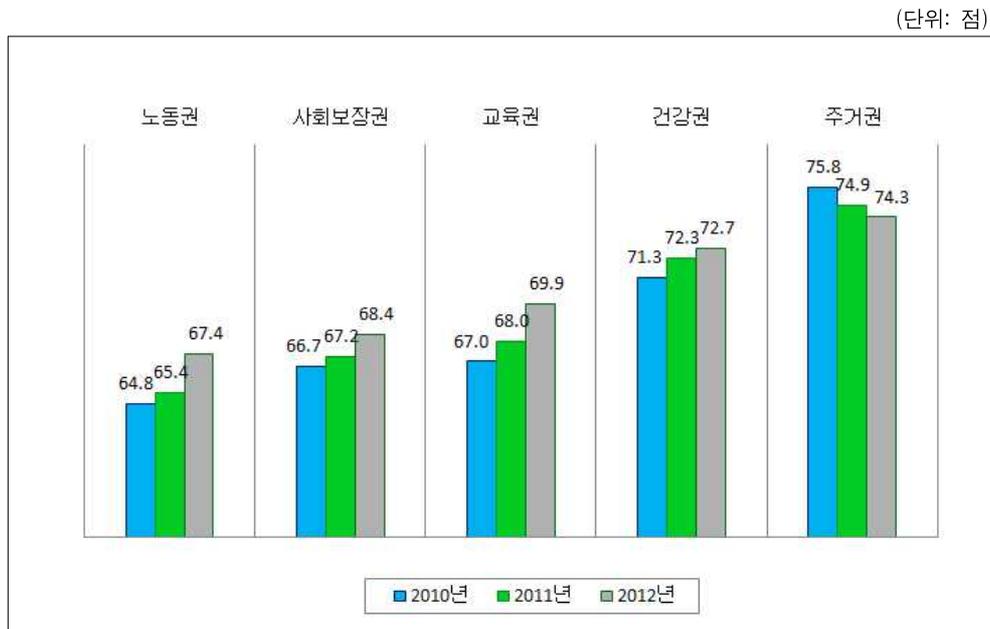
[ V-3] 기간별 시민정치권의 영역별 지수 값 변동 폭

시민·정치적 지수 값이 가장 낮은 영역은 이동의 자유(61.7)이었고, 그 다음으로 낮은 영역은 사생활보호(62.4), 참정권(71.8), 사상·종교의 자유(75.7)이었다. 그리고 국제인권지수에서 측정한 이동권 지표 값은 66.7(IPD, CIRI), 사생활보호 영역 69.0(WJP), 참정권 지표 값은 86.0(FHI, EIU), 신념·종교의 자유 82.0(WJP)이었다. 본 연구결과와 국제인권지수의 동 영역 지표 값을 비교하면, 본 연구에

서 측정된 이동 자유, 사생활보호, 참정권, 사상·종교자유 지표 값은 모두 국제 인권지수에서 산정한 값보다 약간 낮았다.

시민정치권의 영역별 지표 값 변화를 보면 [그림 V-3]에서와 같이 지표 값이 가장 크게 증가한 영역은 집회·결사의 자유로 2010년 69.5에서 2012년 77.8로 8.2p 상승하였다. 그 다음은 신체의 자유로 2010년 90.3에서 2012년 86.7로 7.6p, 사상·종교의 자유로 2010년 68.5에서 2012년 75.7로 7.3p, 이동의 자유(증가폭 6.5p), 참정권(5.3p), 언론·출판의 자유(5.2p)이었다. 이에 비해 사생활보호권은 2010년 82.1에서 2012년 62.4로 19.7p나 하락하였고, 생명권도 3.6p 그리고 법의 지배도 0.6p 하락하였다.

경제·사회·문화권의 경우 인권수준이 가장 높은 권리는 2012년 기준 주거권(지표 값 74.3)이고, 그 다음은 건강권(72.7), 교육권(69.9), 사회보장권(68.4) 그리고 노동권(67.4) 순이었다([그림 V-4]).



[ V-4] 영역별 경제·사회·문화권의 지표 값

경제·사회·문화권의 영역별 지표 값의 2010년 이후 변화를 보면 지표 값이 가장 크게 증가한 영역은 교육권으로 2010년 67.0에서 2012년 68.0로 2.9p 상승하였

다. 그 다음은 노동권으로 동 기간에 64.8에서 67.4로 2.6p 증가하였고, 사회보장권도 2010년 66.7에서 2012년 68.4으로 1.6p 상승하였다. 건강권은 2010년 71.3에서 2012년 72.7로 1.5p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회권 영역 중에서 지표 값이 가장 높은 주거권은 2010년 75.8에서 1.5p 하락하여 2012년 74.3이었다. ([그림 V-5]).



[ V-5] 영역별 경제·사회·문화권의 지표 값 변화

## 2. 영역별 인권수준 변화와 특징

### 가. 시민정치권 영역 인권수준

#### 1) 생명권영역

시민정치권의 영역별 인권수준을 보면 생명권 영역의 지표 값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생명권 지표 값 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 2011년에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2년에는 다시 지표 값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0년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동 영역에 속하는 개별 지표 값의 현황을 보면, 먼저 자살률 지표를

보면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가 2010년 24.7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1.6%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28.1명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하였다. 2012년에 자살률이 감소한 집단을 보면 여성은 전년에 비해 18.0% 증가하였으나, 남성이 크게 감소(-11.8%)하였다. 특히 20대와 70대 남성 자살자 수가 크게 하락하였다.<sup>136)</sup> 이에 따라 자살률 지표 값도 2010년 71.6에서 2011년 71.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74.5으로 상승하였다.

사형집행률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치하나 사형집행을 1998년 이후 하고 있지 않다.<sup>137)</sup> 이에 따라 사형집행률 지표 값은 분석기간 동안 계속해서 100.0이었다. 살인사건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살인범죄는 2009년 1,374건 발생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1,252건, 2011년 1,204건 그리고 2012년에는 995건이었다.<sup>138)</sup> 이에 따라 살인사건 발생비율도 2010년 2.5명(/10만 명)에서 2011년 2.4명, 2012년 2.0명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도 2010년 87.5에서 2012년 90.0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실종 지표도 실종자 수가 없음에 따라 100.0을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 사범외 정치적 살인의 경우 2010년 한 건도 없었으나, 2011년 1건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표 값이 2010년 100에서 2011년 66.7로 하락하였다.<sup>139)</sup>

영아사망률을 보면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4.1명보다 훨씬 낮아서, 미국 6.1명, 아일랜드 3.5명보다 낮았다. 연도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3.2명(/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3.0명, 2012년 2.9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2.7명을 유지하였으나, 남아의 사망률이 2010년 3.7명에서 2011년 3.4명, 2012년 3.1명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영아사망률 지표 값은 2010년 97.3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97.6이 되었다. 모성사망비는 2010년 15.7명(/10만 명)에서 2011년 17.2명으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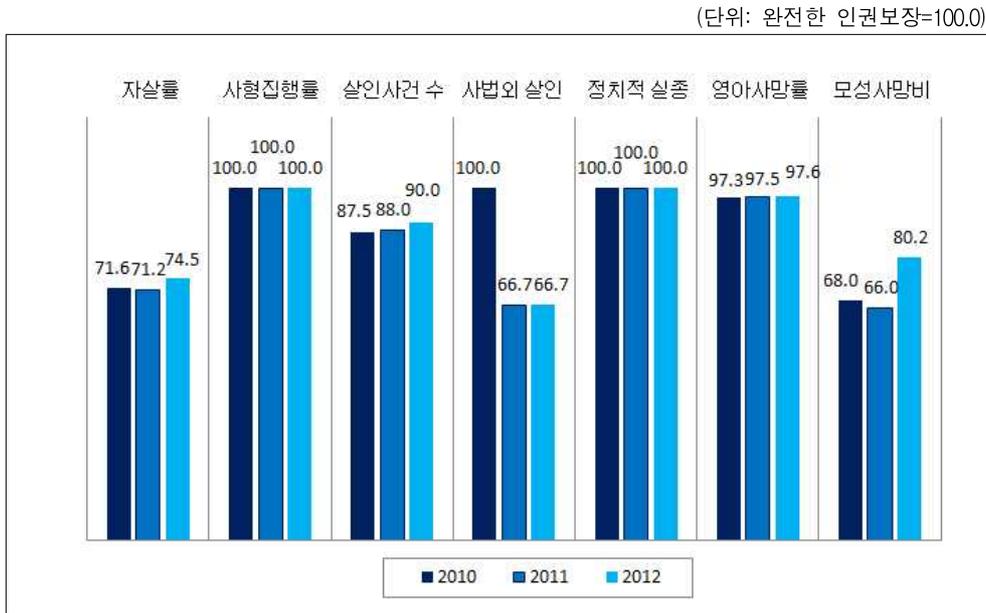
136) 통계청(2013), 2012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2013. 9. 25 자료).

137) 세계 198개국 중에서 법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40개국임.

138) 살인 기수사건만 보아도 2009년 494건에서 2010년 453건, 2011년 427건 그리고 2012년 411건으로 하락하였음. 살인범죄자(기수)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가 가장 많았고,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반면 살인범죄자(미수 등)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웃, 지인, 친족 등의 순서로 나타남(경찰청, 2012, 『경찰범죄통계』, p.15, p.25).

139) CIRI Data Project에서 해당 연도 Data 추출.

승하였으나, 2012년에는 9.9명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하락은 산과적 색전증, 분만 후 출혈과 같은 직접 산과적 사망이 31명으로 전년대비 25명 감소한데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그림 V-6]에서와 같이 2010년 68.0에서 2011년 66.0으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 80.2로 크게 상승하였다.



[ V-6] 생명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이와 같은 생명권 영역의 세부 지표 값 변화를 보면 2010~2011년 동안에 살인사건과 영아사망이 미미하게 감소한데도 불구하고 생명권 영역 지수 값이 하락한 것은, 전년에 한 건도 없었던 사법외 정치적 살인이 있었고 또한 자살률과 모성사망비가 증가한데 기인했다. 그리고 2011~2012년에 지수 값이 상승한 것은 모성사망비가 크게 개선되었고, 자살률과 살인 건수가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신체의 자유 영역

우리나라 신체적 자유권은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 인권수준이 다섯 번째로, 중간 수준이었다. 그리고 신체적 자유 지표 값은 2010년 이후 68.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71.9, 2012년 76.5이었다. 동 영역에 속하는 세부 지표 값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2012년 기소인원은 770천 명 중에서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람은 139천명이었다. 그리고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속 처분 받은 사람은 27,615명으로 19.9%를 차지하였다.<sup>140)</sup> 2010년부터 이러한 구속 처분을 받은 사람 수는 26천 명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27천 명, 28천 명으로 미미하게나마 증가하였다. 그러나 불구속 처분 받은 사람 수도 증가함에 따라 기소 중 구속 사건 비율은 2010년 23.0%, 2011년 22.8%, 2012년 19.9%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도 2010년 77.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80.1이 되었다.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되는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등락이 심하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59천명이었던 1997년에 노역장 유치자가 397명이었으나,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8년 1,520명으로 급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2년 1,062명, 2010년 2,045명, 2012년 1,854명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노역장 유치건수 지표 값도 2010년 53.5에서 2012년 82.3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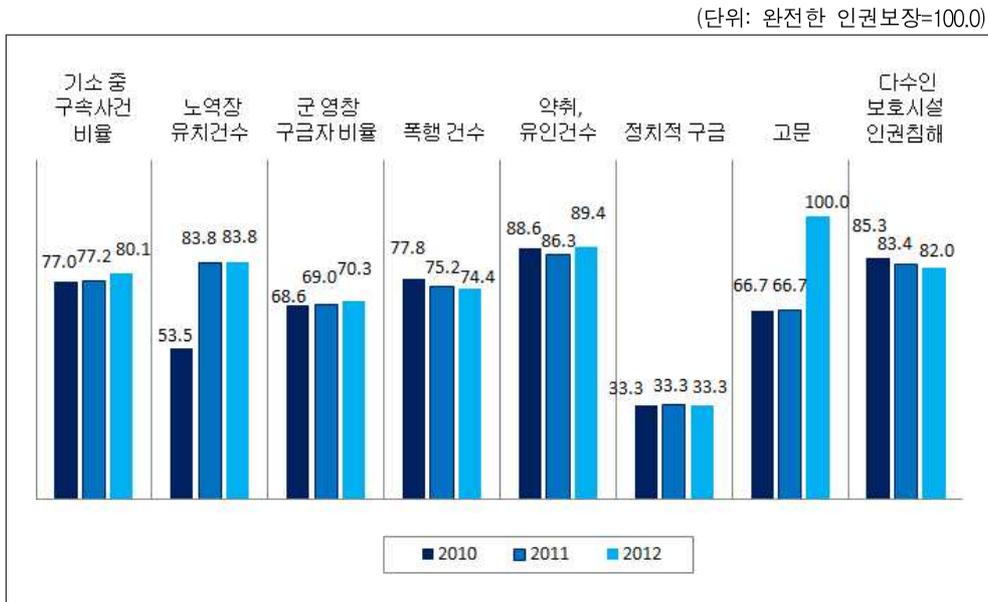
군 영창구금자 비율 지표의 경우 군인에 대한 전체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09년 10,67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4,143명이었다.<sup>141)</sup> 그러나 동일한 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도 크게 증가하여, 영창구금자 비율은 2009년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10년 31.4%, 2011년 31.0% 그리고 2012년 29.7%이었다. 그 결과 동 지표 값도 2010년 68.6에서 2012년 70.3으로 증가하였다. 폭행 건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폭행 건수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인구 10만 명 당 폭행건수는 2002년 33.8건에서 2006년 132.8건으로 급증하였고, 2010년 221.8건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47.7건, 256.2건이었다. 이에 따라 폭행 건수 지표 값도 2010년 77.8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140) 구약식은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서면재판)임. 이에 따라 기소자 중에서 구속자 비율을 구하는 산식에서 제외시켰음.

141) 영창처분을 받은 군인은 2010년 11,428명, 2011년 12,924명이었음. 국가인권위원회 (2013),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p.19에서 재인용.

추이를 보여 2011년 75.2, 2012년 74.4였다.

약취 및 유인건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약취 및 유인건수가 2010년 0.46건으로, 89개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중하위 25%인 국가에 속했다.<sup>142)</sup>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취, 유인건수를 보면 기간별로 다소 편차가 심하여, 2002년 240건이었으나 2005년 149건 그리고 2010년 225건, 2011년 272건, 2012년 212건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도 2010년 88.6에서 2010년 약간 하락하여 86.3을 기록했으나, 2012년 89.4로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정치적 구금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치적 구금자 수가 2101년 이후 계속해서 50명이상이었고, 고문의 경우 고문을 받은 사람 수가 2010-2011년 1~49명으로 나타났고, 2012년에는 없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구금 지표 값은 분석대상 기간에 지속적으로 33.3, 고문지표는 2010-2011년 각각 66.7 그리고 2012년 100.0이었다.<sup>143)</sup>



[ V-7] 신체의 자유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142) 하위 25%에 속하는 국가의 10만 명 당 유괴율은 0~0.17수준이고, 중하위 25%는 0.19~0.49건/(10만 명)이었음.

143) 정치적 구금자와 건수는 CIRI Data Project에서 해당 연도 Data와 주한 미국대사관 인권보고서에 있는 2010~2012년 자료,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2010~2013년 자료를 참조하여 산정함.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인용 건수를 보면 2008년 78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18건, 2011년 133건 그리고 2014년 144건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인용 건수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전년대비 84.4%나 증가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2.7%, 8.3%로 증가추이가 둔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지표 값도 2010년 85.3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83.4, 82.0으로 하락하였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적 자유영역의 지수 값은 2011년에 전년대비 3.0p, 2012년 4.6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에 영향을 준 지표를 보면 2011년에는 폭행건수, 약취 및 유인,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등의 건수가 증가하여 신체적 자유영역 인권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장 유치건수 지표 값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인권수준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폭행과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는 미미하나마 여전히 증가한 반면에, 고문, 약취 및 유인, 구속사건 비율, 군 영창 구금자 비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인권수준이 개선되었다.

### 3) 법의 지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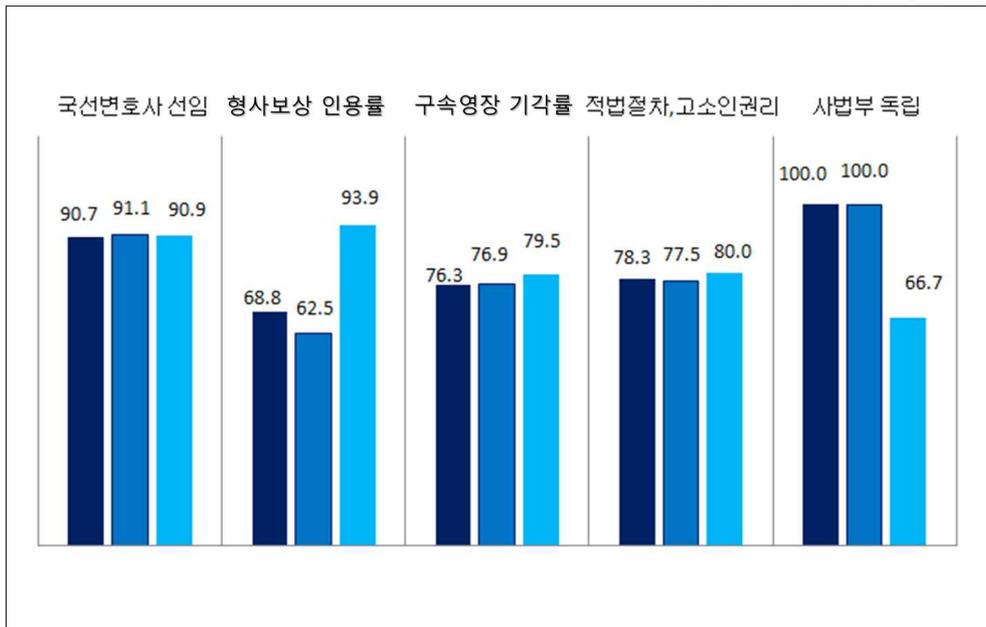
법의 지배 영역의 인권수준은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법의 지배 인권지표 값은 2010년 82.8에서 2011년에 81.6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2년 급증하여 82.2를 기록하였다. 동 영역에 속하는 세부 지표 값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1심, 항소심, 상고심 사건수는 2010년 104천 건에서 2011년 102천 건 그리고 2012년 110천 건이었다. 이에 비해 피고인 수는 2010년에는 115천 명으로 국선변호인 선임률은 90.7%이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12천명으로 91.1%, 2012년 120천명 90.1%으로, 지속적으로 91% 전후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의 값도 90.7에서 2011년 91.1 그리고 2012년에는 다소 하락하여 90.9를 나타내었다. 또 다른 지표인 형사보상 인용률 지표의 경우<sup>144)</sup> 형사보상 신청 건수 대비 인용비율을 보면 인용 건수는 2010년 8,273건에서 2011년 20,692건 그리고 2012년 41,825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동 기간에 신청 건

144) 형사보상금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된 경우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제도를 말함.

수도 2010년 12천 건에서 2012년 45천 건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동 지표의 값은 2010년 68.8에서 2011년 62.5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12년에 93.9로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먼저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2005년 73,800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2010년 43,574명, 2011년 38,770명 그리고 2012년 35,060명이었다. 이에 비해 구속영장 기각인원은 2005년 9,743명에서 2009년 14,159명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즉, 2010년 기각 인원수가 10,332명으로 하락되었고, 2011년 8,970명, 2012년 7,195명이 되었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0년 23.7%에서 2011년 23.1% 그리고 2012년에는 20.5%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76.3에서 2011년 76.9 그리고 2012년 79.5로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 V-8] 법의 지배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지표는 무죄추정 원칙 적용, 구서 및 미결구금, 용의자 고문 및 모욕적 대우, 법정대리 여부, 수감자 권리 보장 등과 관련된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를 기초로 측정한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측정한 동 지표 값은 2010년 78.3에서 2011년에는 약간 하락하여 77.5 그리고 2012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80.0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독립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분석대상 기간 중에 사법부 독립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45)</sup>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과 2011년에는 100.0이었다. 그러나 2012년 우리나라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사법부 공위공직자들이 부정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급 판사들을 상대로 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하급판사의 독립성을 제한함에 따라 66.7로 하락하였다.<sup>146)</sup>

법의 지배 영역의 지수 값은 2011년 전년대비 1.2p 하락하였고, 2012년에는 0.6p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인권수준 변화의 원인을 세부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2011년에는 구속영장 기각률,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등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형사보상 인용률 지표 값이 크게 하락하여, 동 영역의 인권지수 값이 하락하였다. 2012년에는 형사보상 인용률 지표 값이 전년과는 달리 크게 상승하였고 적법 절차 및 고소인의 권리, 구속영장 기각률 지표 값이 개선됨에 따라, 동 영역의 지수 값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 4) 사생활보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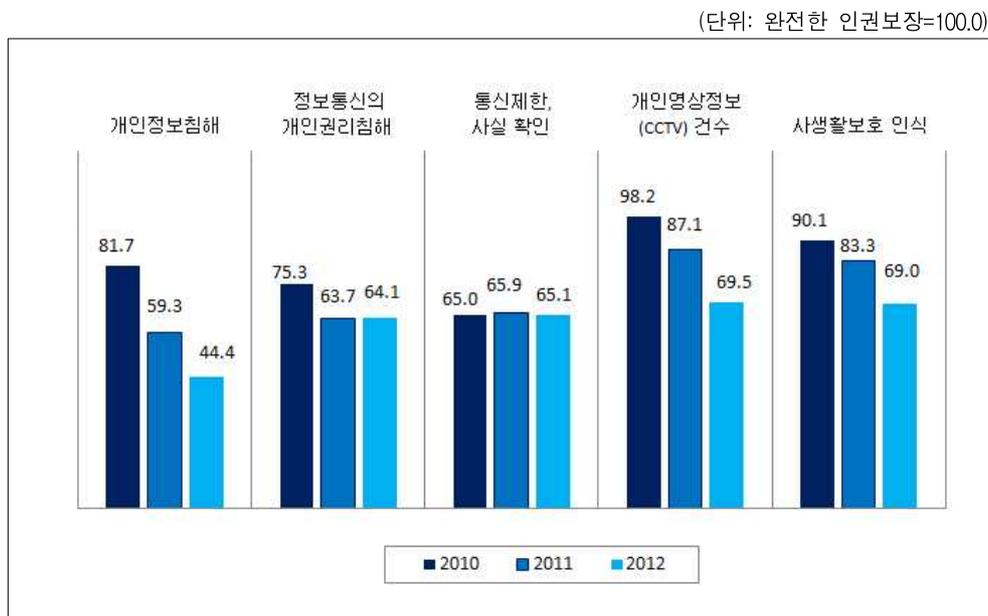
사생활보호 영역의 인권수준은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 이동의 자유 영역 다음으로 낮았다. 동 지표 값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82.1에서 2011년 71.9 그리고 2012년 62.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지표 값은 2010년 대비 19.7p나 하락하였다.

사생활보호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의 지표 값을 보면, 먼저 개인정보침해 건수 지표의 경우 2009년에는 35천 건에 불과했던 개인정보침해 상담 건수가 2010년 55천 건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22천 건, 167천 건으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sup>147)</sup> 증가된 개인정보침해 상담 건수를 침해유형별로 보면

145) CIRI Data Project에서 해당 연도 Data 추출.

14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3), 201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Republic of Korea, Section 1, e. Denial of Fair public Trial, 19 April 2013에서 인용. 세계 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Rule of Law Index 2012~13'에서도 행정부는 투명하고 부패가 없다고 했으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에 미치는 것으로 지적했음.

주민등록 등 타인정보도용 상담 건수가 2011년 67천 건에서 140천 건으로 급증하였고, 개인정보 무단수집 건수도 2011년 1,623건에서 3,507건으로 증가하였다.<sup>148)</sup> 이에 비해 법 적용불가 침해 사례는 2010년 38천 건에서 2012년 13천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81.7에서 2011년, 2012년에 각각 59.3, 44.4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정보통신의 개인권리 침해율 지표를 보면 먼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심의회 경우 심의 건수가 2010년 1,925건에서 2011년 2,83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2,804건으로 미미하게 감소하였다.<sup>149)</sup> 그 결과 동 지표 값도 2010년 75.3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63.7, 64.1을 나타내었다.



[ V-9] 사생활보호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147)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나타냄.  
 148)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는 개인정보 무단수집,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등이 있음.  
 149) 권리침해정보 중에서 명예훼손에는 개인정보 유포, 초상권 침해, 개인 및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포함함. 상표권 등은 제외됨.

통신사실 확인의 지표 값을 보면 2010년 65.0, 2011년 65.9, 2012년 65.1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신제한(감청) 건수는 2010년 1,081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707건, 2012년 447건인데 비해, 통신사실 확인 건수는 2010년 240천 건, 2011년 236천 건, 2012년 240천 건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데 기인했다. CCTV 설치·운영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2008년 157천 대를 설치하였다. 그 이후 설치대수는 급증하여 2010년 309천 대, 2012년 453천 대로 증가하였다. CCTV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해서 대부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대수는 각각 14,327대, 8,441대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87.1, 2012년 69.5이었다. 우리나라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형사사법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생활보호 지표 값은 2010년 90.1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83.3, 2012년 69.0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생활보호 영역의 지수 값은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 2010년 이후 지표 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영역이었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2011년 사생활영역 지수 값 하락은 개인정보침해 지표, 정보에 의한 개인권리침해 지표, CCTV 설치·운영관련 지표 등의 지표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에는 정보에 의한 개인권리침해, 통신제한 및 사실 확인 지표 값은 전년과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나머지 지표 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동 영역의 지수 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이동의 자유 영역

이동의 자유 영역은 2012년 기준으로 할 때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 인권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동의 자유 영역 지수 값 변화를 보면 2010년 55.2에서 2011년 55.9 그리고 2012년 61.7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지표 값은 2010년 대비 6.5p나 증가하였다.

이동의 자유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를 보면 먼저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의 경우 저상버스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주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버스인데, 우리나라는 2006년 592대 그리고 2010년 3,061대, 2011년 3,899대, 2012년 4,720대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국 시내버스대수 대비 저상버스 보급률도 2006년 2.0%에서 2010년

14.8%, 2011년 12.0%, 2012년 14.5%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준은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설정한 보급률 목표치인 2013년 50%이나 제2차 목표치 2016년 41.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sup>15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표 값은 2010년 27.5에서 2011년 30.0, 2012년 37.4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지표를 보면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법정기준 보급대수는 인구규모에 따른 산정방식에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이다.<sup>151)</sup> 우리나라 법정기준대수는 2011년 2,770대, 2012년 2,785대이고, 실제 운행대수는 각각 618대, 1,318대이다. 이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보급률은 각각 22.3%, 47.3%로, 동 지표 값은 각각 22.3, 47.3으로 2012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sup>152)</sup>

이동편의시설 설치률 지표는 교통수단(일반버스, 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여객시설,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과 만족도 정도를 나타낸다. 이동편의시설 적합률과 만족도를 보면 2009년 각각 65.8점, 63.2점이었으나, 2011년에는 각각 69.4점, 60.2점, 2012년 각각 71.3점, 61.2점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65.8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66.6, 2012년 68.3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인식 지표를 보면 국내 및 해외 이동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내이동은 자유로우나 해외이동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53)</sup> 그 결과 동 지표 값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75.0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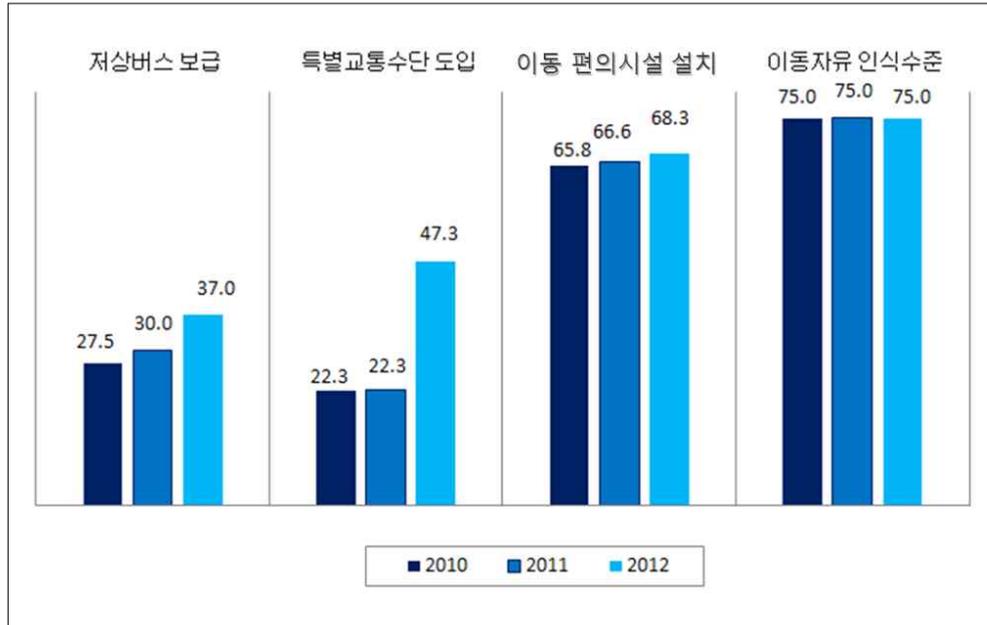
150) 국토해양부(2012),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p.48.

15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임.

152) 특별교통수단 정책의 목표치는 2016년 100%로 설정함. 2012년 목표치를 60%로 설정하고, 매년 10% 확보할 계획임.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p.50.

153) 전 세계 14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해외 국가를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3개국이었음. 나머지 국가는 해외 이동이 우리나라보다 덜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됨.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2012). 또한 미국 국무성의 우리나라 해외이동에 대한 논평을 보면 외교통상부에서 2년 이상 징역이 확정된 자에 대해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방북을 원하는 시민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없는 방문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취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함.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3), Section 2, Foreign Travel.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 V-10] 이동 자유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이동 자유 영역의 지수 값은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 지표 값이 가장 낮은 영역이었다. 그러나 지표 값 추이를 보면 2011년 미미하게 증가 그리고 2012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2011년 이동 자유 영역의 지표 값이 증가한 것은 저상버스보급률 지표가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지표 값이 크게 증가(전년대비 25.0p)하였고, 저상버스보급률도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 6)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

우리나라 사상·양심·종교 자유 영역은 2012년 지표 값이 75.7으로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 중하위권이었다. 동 영역 지수 값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68.5에서 2011년 78.7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2년 75.7로 다시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먼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입건자 현황을 보면 전체 입건자(신수) 수는 2003년 165명(구속: 84명)에서 2008년 64명(46명)으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다시 입건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97명(32명), 2011년 90명(19명) 그리고 2012년에는 112명(26명)이었고, 구속인원도 연도별 편차가 있기는 하나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처분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입건자(신수)가 97명, 구속자가 32명으로 구속률이 32.9%이었고, 기소자가 52명 불기소자가 21명이었다.<sup>154)</sup> 이에 비해 2012년 입건자 수는 112명, 구속자 26명으로 구속률이 23.2%이었고, 기소자가 89명 불기소자가 24명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구속률 지표 값은 2010년 67.1에서 2011년 78.9로 급증한 이후 2012년에는 76.8로 다소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형사처벌 지표를 보면 종교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 입영이나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양심적인 병역거부자 수는 연도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2001년 379명, 2005년 828명이었다. 그리고 분석대상 기간을 보면 2010년 721명, 2011년 633명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733명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도 2010년 51.9에서 2011년 57.8으로 상승하였다가, 2012년에는 51.1로 다시 하락하였다. 그리고 신념표명 및 종교행사의 자유 지표는 소수 종교집단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종교행사 개최 정도, 비신도에게 종교법 준수를 요구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지표 값은 전문가조사 2개 항목, 일반인조사 1개를 통해서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동 지표 값은 2010년 88.1에서 2011년 78.1, 2012년 75.0으로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지표도 전문가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였는데,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정부가 부분적으로 종교관련 규제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66.7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100.0이었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의 지수 값은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 지표 값 추이를 보면 2011년에는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가 있었으나, 2012년에는 하락하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동 영역의 인권수준이 2011년에 향상된 것은 종교관련 정부규제가 완화되고 국가보안법 구속자 비율이 감소한데 기인했다. 이에 비해 2012년 지표 값 하락은 입영 및 집총거부자의 증가와 신념표명 및 종교행사 자유 정도 지표 값이 다소 하락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4) 구속 및 구속률은 신수에 대한 비율임. 불기소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 없음, 각하 등을 나타냄.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 V-11] 사상·양심·종교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 7) 언론·출판·의사표현 영역

언론·출판·의사표현 영역의 인권지수 값은 2012년 77.6으로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동 영역 지수 값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72.4에서 2011년 77.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2년 다시 77.6으로 상승하였다.

세부지표의 지표 값 수준과 추이를 보면 먼저 방송광고와 정보통신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각각 검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박 등 사행심 조장 및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및 사회질서 위반 등과 같은 불법정보, 음란·선정 및 폭력·잔혹·혐오 등 유해정보, 개인정보, 인격권, 명예,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sup>155)</sup> 이 중에서 방송광고심의 건수 지표를 보면 2009년에 1,206건을 심의하였다. 분석

155) 방송통신위원회 및 심의와 관련 법조항은「방송법」제32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방송법」제100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참조.

대상 기간을 보면 2010년 1,054건에서 다소 감소하여 2011년 942건 그리고 2012년 968건이었다. 심의결과 행정지도 중에서 ‘의견제시’와 ‘문제없음’은 방송광고 심의 관련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심의 건수 중에서 심의결과 ‘문제없음’, ‘의견제시’ 그리고 ‘기타 건수’를 살펴보면 각각 2010년 583건, 2011년 241 그리고 2012년 255건이었다.<sup>156)</sup>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44.7에서 2011년 74.4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2년에 다시 73.7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에 대한 심의 건수를 보면 2009년 24,346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서 2010년에는 45,758건, 2011년 57,944건 그리고 2012년에는 75,661건이었다. 심의결과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방식으로 시정 요구한 건수는 2009년 17,636건이었다. 그리고 분석대상 기간인 2010년에는 41,385건, 2012년 53,864건 그리고 2012년 72,354건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심의 건수 중에서 ‘결정취소’,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각하’ 등과 같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건수 비율은 2010년 9.6%, 2011년 7.0% 그리고 2012년 4.4%이었다. 이와 같이 결정취소, 해당 사항 없음, 각하의 구성비가 하락한 것은 심의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의요건을 갖춘 정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157)</sup>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90.4에서 2011년과 2012년 95.6으로 상승하였다.

정부, 공공기관 정보공개율 지표를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006년 133천 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301천 건, 2010년 322천 건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36천 건, 333천 건에 달했다. 이와 같은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2006년 정부공개와 부분공개를 모두 합치면 90.5%이었다. 그 이후 전부 혹은 부분 정보공개 비율은 90%전후를 기록하여, 2010년 89.7%, 2011년 90.7% 그리고 2012년에는 95.0%이었다. 그러나 전체 청구 건수 중에서 정부의 정보공개비율을 보면 2006년 80.0%이었고, 분석대상 기간인 2010년 80.7%,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81.3%, 85.8%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

156)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2 혹은 각 연도 4/4), 방송심의 의결현황.

157) 2008년 심의 건수는 29,589건인데 이중에서 49.3%가 결정취소, 해당없음, 각하이었음. 그리고 2009년에는 동 비율이 27.6%로 하락하였음. 정보통신심의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각 연도 4/4), 통신심의 관련 통계 자료 참조.

관의 정보의 전부 공개를 목표로 하는 동 지표 값은 2010년 80.7에서 상승하여 2011년 81.3, 2012년 85.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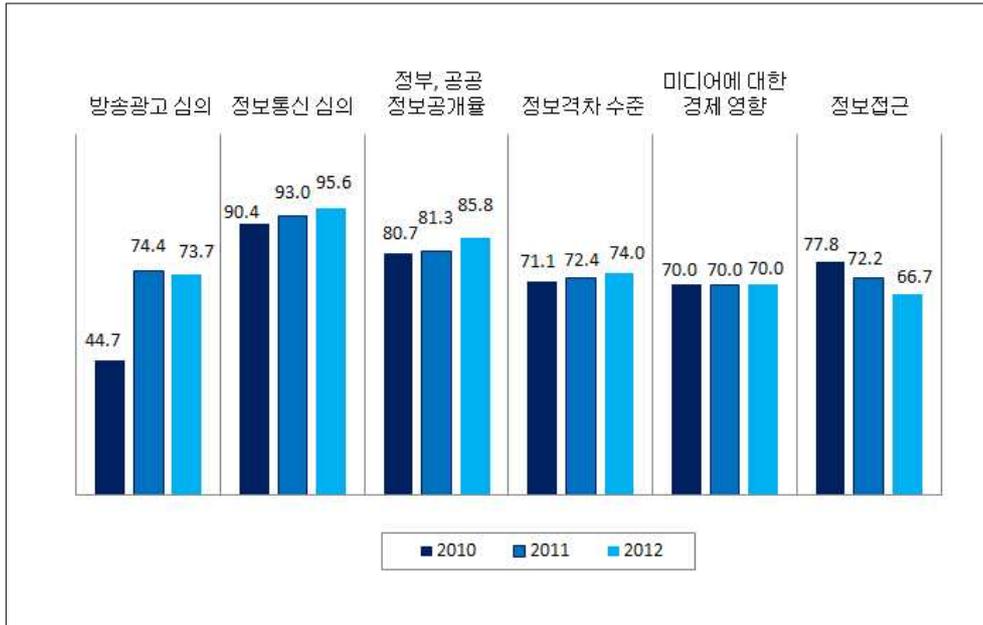
정보격차 수준 지표는 일반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동 지표는 컴퓨터 응용S/W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 등에서 일반인과 장애인의 격차를 나타내는 역량격차,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접근 용이성 등을 나타내는 접근격차, 컴퓨터·인터넷의 이용량(양적 활용), 및 일상생활 도움 및 활용정도(질적 활용)를 나타내는 활용의 격차를 포괄하고 있다.<sup>158)</sup> 우리나라 정보격차 수준을 보면 2005년 일반인 정보수준이 100.0이면 취약계층의 정보수준은 46.7으로 격차가 53.3이었다. 그 이후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0년 28.9, 2011년 27.6 그리고 2012년 26.0이었다. 그 결과 동 지표 값도 2010년 71.1에서 2011년 72.4, 2012년 74.0으로 상승하였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영향 지표는 우리나라 미디어 소유구조, 소유의 집중과 투명도, 미디어의 제작·배포·설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기관 등에 의한 선택적 광고나 지원,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된 부패와 뇌물정도를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를 기초로 지표 값을 측정한다. 동 지표 값에 의하면 분석대상 기간인 2010~2012년에 지속적으로 70.0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정보접근 정도 지표도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언론인 보호, 인터넷 접근·발간의 자유, 미디어 다원주의 보장 등을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로 측정한다. 전문가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 동 지표의 값은 2010년 77.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72.2 그리고 2012년에 66.7이었다.

언론·출판·의사표현 영역의 지수 값은 2011년 77.2로서 전년대비 4.8p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방송광고 심의 지표가 개선된데 기인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지수 값이 0.4p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은 정부 및 공공부문 정보공개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 지표와 정보통신 지표 값이 하락한 데 기인했다.

158) 정보격차지수 산정방법은 활용격차(50%), 접근격차(30%), 역량격차(20%)을 가중합계하여 산정함. 그리고 정보취약계층은 장애인, 50대 이상의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을 나타냄(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 V-12] 언론·출판·의사표현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 8) 집회, 결사 자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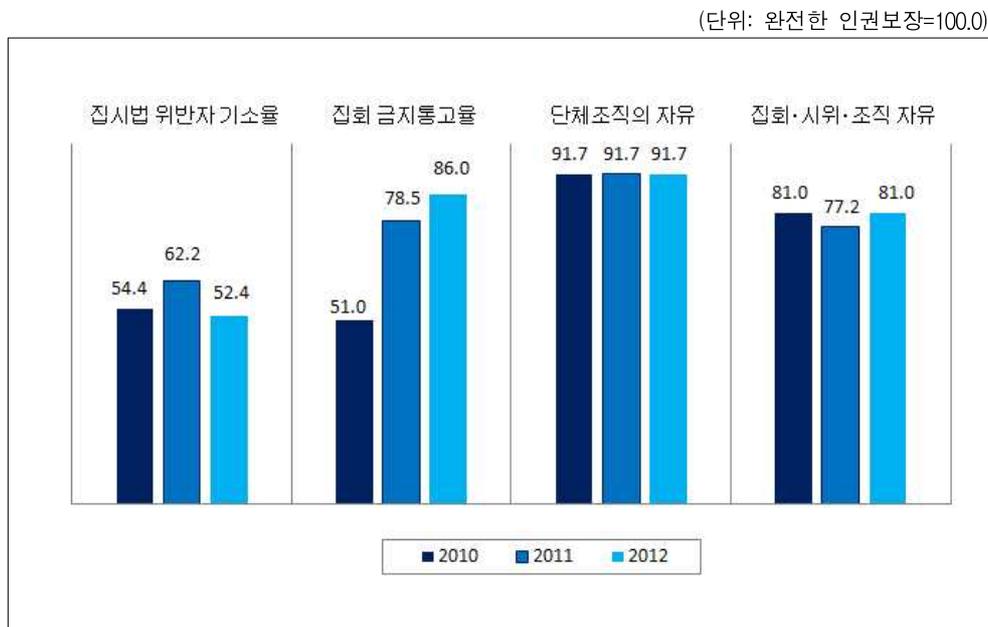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의 인권지수 값을 보면 2012년 77.8로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동 영역 지수 값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69.5에서 2011년 77.4로 크게 상승한 이후에 2012년 다시 77.8로 하락하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먼저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 집회·시위 건수는 2008년 13,406건이었고, 참가자는 3,082천 명이였다. 이와 같은 집회·시위 건수는 2009년 14,384건(참가자 3,093천 명)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10년 8,811건(1,463천 명), 2011년 7,762건(1,660천 명), 2012년 8,328건(1,514천 명)이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2010년 1,262명, 2011년 1,559명 그리고 2012년 1,093명이였다.<sup>159)</sup> 검찰송치자 중에서 기소자 비율은 분석기간인 2010년 45.6%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7.8%, 47.6%이였다.<sup>160)</sup>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54.4에서 2011년에 일시적으로

159) 경찰청(각 연도), 『경찰백서』.

62.2로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 다시 52.4로 하락하였다.

집회신청 대비 금지통고율 지표를 보면 집회·시위 신고건수는 2007년 96천 건에서 2009년 155천 건, 2010년 195천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164천 건, 2012년 148천 건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전체 신고건수에 대한 금지통고건수 비율을 보면 2007년 0.38%에서 2008년 0.24%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0.58%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어 0.49%, 0.21%, 0.14%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51.0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78.5, 86.0%로 증가하였다.



[ V-13]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단체조직의 자유 지표는 비정부조직, 민간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직, 노동조합 결성 그리고 공개적인 공적토론과 집회 및 시위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지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기초로 측정한다. 프리덤하우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동 지표의 값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91.7을 나타내었다. 집회·시위·

160) 대검찰청 자료(형사공판 1심 기준임).

조직 자유 지표는 보복 없이 국가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자유롭게 탄원서에 서명할 수 있는 정도, 보복의 두려움 없이 비폭력 시위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지표이다.<sup>161)</sup> 동 지표 값은 2010년 81.0에서 2011년 77.2로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2년 다시 81.0으로 상승하였다.

집회·결사 영역의 지표 값은 2011년 전년대비 7.9p 그리고 2012년에는 0.4p로 소폭 상승하였다. 2011년의 이러한 지표 수준의 상승은 집회 금지통고율 지표와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이 개선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2년에는 전문가 평가에 의한 집회·시회·단체조직 지표가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이 악화되어 동 영역의 지표 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9) 참정권 영역

참정권 영역의 인권지수 값을 보면 2012년 71.8으로 시민정치권 영역 중에서도 아래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동 영역 지표 값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66.5에서 2011년 69.3, 2012년 다시 71.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참정권 영역의 세부지표별로 보면 먼저 최근 선거의 투표율 변화를 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6년 60.0%이었는데 비해 2010년 65%로 상승하였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2007년 50.0%이었으나 2012년에는 55%로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2008년 80.0%에서 2012년 75.0%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투표율 지표의 경우 연도별로 실시하는 선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표 값 산정을 위해 2010년 투표율을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70.4, 2011년 66.0 그리고 2012년 72.6이었다.

국회의원 여성비율 지표를 보면 2000년 전체 국회의원 273명의 5.9%인 16명이 여성의원이었다, 2004년에는 여성의원인 3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원비율도 13.0%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14.7%(44명), 2011년 15.1%(45명) 그리고 2012년은 15.7%(47명)이었다.<sup>162)</sup> 이에 따라 동 지표 값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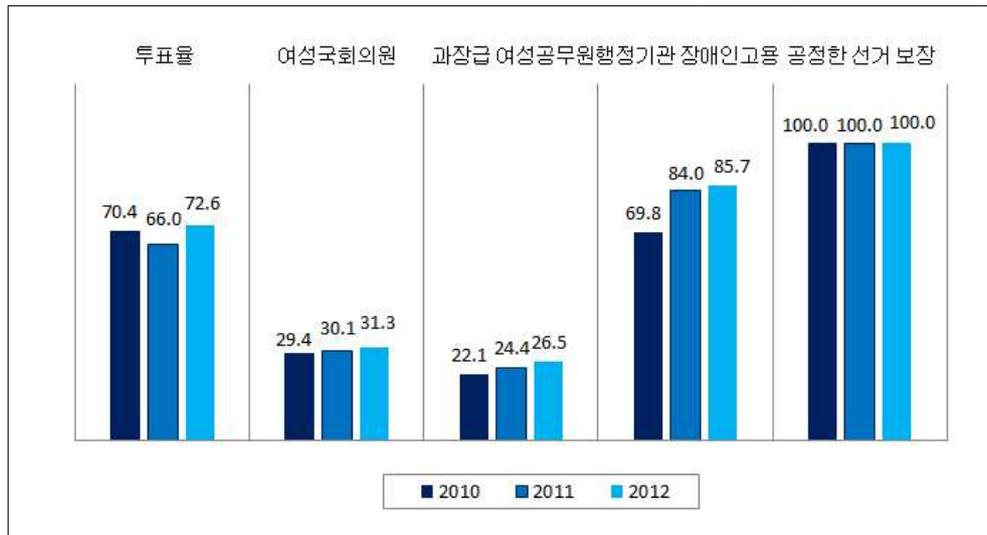
161) 조사대상자는 민법 및 상법, 형사사법 전문가 그리고 일반인임.

162)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연도의 여성비율변화는 보궐선거 및 비례대표 승계에 기인한 것임.

2010년 29.4, 2011년 30.1 그리고 2012년에는 31.3으로 미미하게나마 증가하였다. 과장급(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지표 값을 보기 위해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0년 전체 공무원은 106천 명, 여성공무원은 30천 명으로 여성비율은 28.6%이었다. 이에 비해 4급 이상 공무원(7,014명) 중 여성(443명)비율은 6.3%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전체 공무원의 여성비율과 4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11년 각각 30.0%, 7.3%, 2012년 70.9%, 8.2%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22.1, 2011년 24.4 그리고 2012년에는 26.5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장애인 공직참여를 나타내는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현황을 보면 2010년 국가기관 장애인 공무원은 17,207명으로 상시공무원 822천 명의 2.09%이었고, 2011년에는 2.52% 그리고 2012년 2.57%이었다. 이와 같은 고용률은 해당연도 장애인 목표고용치인 의무고용률 3.0%에 미달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의 값도 2010년 69.8에서 2011년 84.0, 그리고 2012년 85.7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공정한 선거보장 지표는 전문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지표 값을 산정한다. 동 지표 값은 2010년 100.0에서 2011년, 2011년에도 각각 100.0을 기록하였다.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 V-14] 참정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참정권 영역의 지수 값은 2011년, 2012년에 전년대비 각각 2.8p, 2.5p 증가하였다. 2011년에 이와 같이 증가한 것은 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이 개선된 데 기인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참정권 인권수준이 제고된 것은 투표율 증가와 함께 과장급 여성공무원, 행정기관 장애인 고용,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이 미미하나마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 나.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인권수준

### 1) 사회보장권 영역

경제·사회·문화권의 영역별 인권수준을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사회보장권 지수 값은 68.4로 사회권 영역 중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 그리고 사회보장권 지표 값은 2010년 66.7에 비해 2011년 67.2, 68.4로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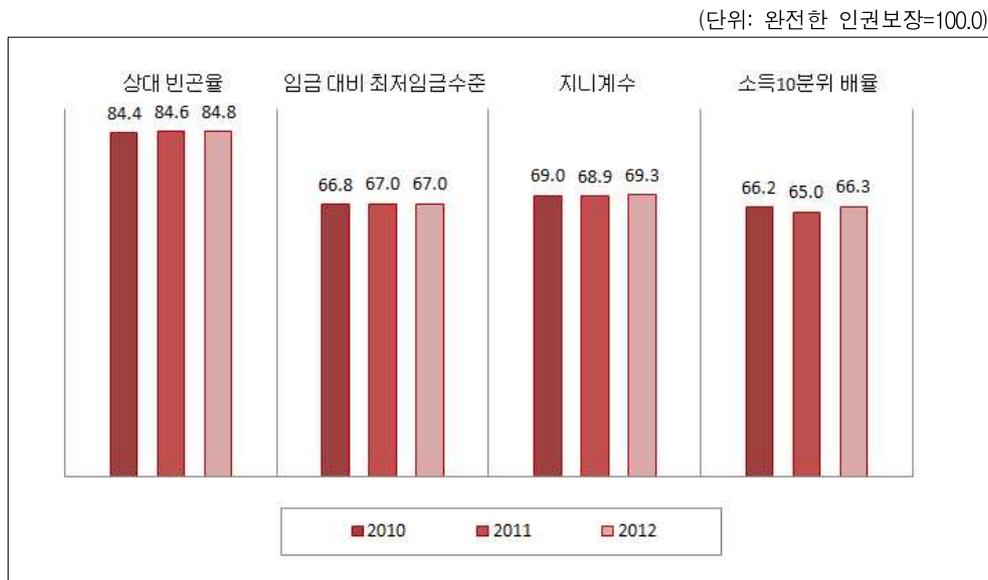
사회보장권 영역에 속하는 개별 지표를 보면 먼저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상대빈곤율의 경우,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50%)이 2003년 11.4%이었다. 이후 빈곤율이 다소 증가하여 2005년 12.9%, 2009년 13.0%이었다. 분석대상 기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0년 12.5%, 2011년과 2012년이 각각 12.3%, 12.2%로 다소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sup>163)</sup> 이에 따라 상대적 빈곤율 지표의 값은 2010년 84.4에서 2011년 84.6, 2012년 84.8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최저 생활유지를 나타내는 풀타임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0.22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0.334, 2011년 0.335를 나타내었다.<sup>164)</sup> 따라서 동 지표 값은 2010년 66.8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67.0, 69.0으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2006년 0.306에서 2009년 0.314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0.310 그리고 2011년 0.311, 2012년 0.307이었다.<sup>165)</sup> 이에 따라 동 지표 값

163) 농어가 가구는 제외, 1인 제외, 전가구, 경상소득 기준, 중위 50% 기준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빈곤통계연보』, 통계청(2013),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164)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은 2010년 69.0에서 2011년 68.9로 하락하였다가, 2012년 69.3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소득10분위 배율 지표의 경우 2008년 4.78에서 2009년 4.69로 소득불평등 수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 4.72, 2011년 4.85로 다시 증가하여 소득불평등 수준이 악화되었으나, 2012년 4.71로 하락하였다.<sup>166)</sup>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66.2에서 2011년 65.0으로 하락하였다가 2012년에 다시 66.3으로 상승하였다.



[ V-15] 사회보장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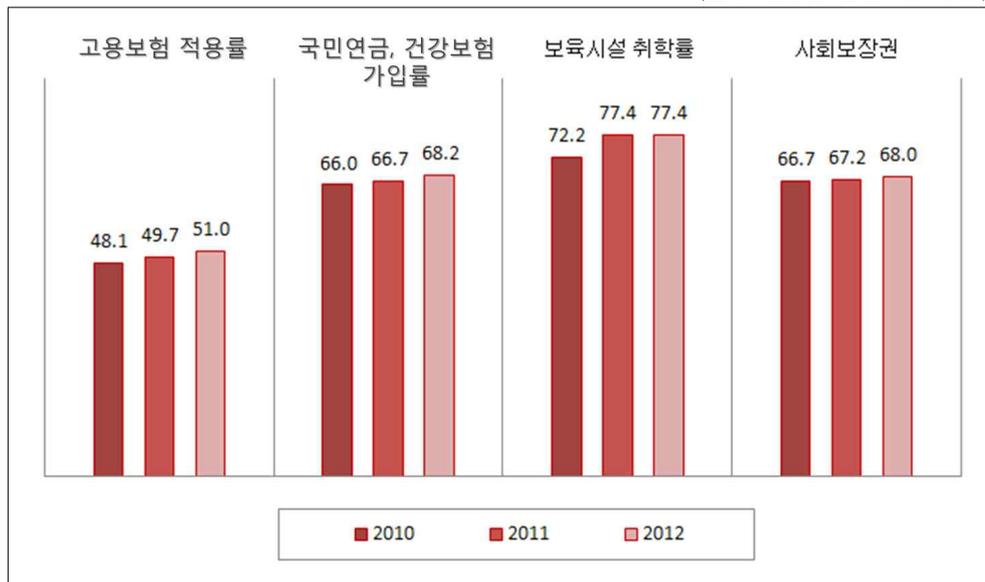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나타내는 고용보험 적용률을 보면 2005년 전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9,693천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064천 명으로 적용률은 40.9%이었다. 이후 적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분석기간을 보면 2010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0,131천 명이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48.1%이었다.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피보험자수가 각각 10,675천 명, 11,152천 명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피보험자 수도

165) 전국 1인 이상 및 농가 포함,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166) OECD.Stat(2013), Data extracted on 03 Dec 2013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10,675천 명, 11,152천 명으로 증가하여, 적용률도 각각 49.7%, 51.0%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도 적용률과 동일하게 2010년 48.1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49.7, 51.0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률 지표를 보면 2005년 8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은 61.4%, 이후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65.0%,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65.1%, 66.5%이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2005년 61.9%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0년 66.0%,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66.7%, 68.2%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도 2010년 66.0에서 2011년 66.7 그리고 2012년에는 68.2로 증가하였다. 사회보장권 영역을 구성하는 마지막 지표로 보육시설 취학률이 있다. 우리나라 만3세 미만 유아의 보육시설 취원율(average enrolment rate)을 보면 2005년 19.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50.5%, 2010년 54.2% 그리고 2011년 54.2%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72.2, 2011년 77.4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도 77.4이었다.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 V-16] 사회보장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사회보장권 영역의 지수 값은 2011년, 2012년에 전년대비 각각 0.5p, 1.1p 증가하여 상당히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2011년, 2012년 모두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

리고 건강보험 적용률 및 가입률이 소폭이나마 증가하였다. 그리고 상대빈곤율도 미미하지만 개선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보육시설 아동취학을 증가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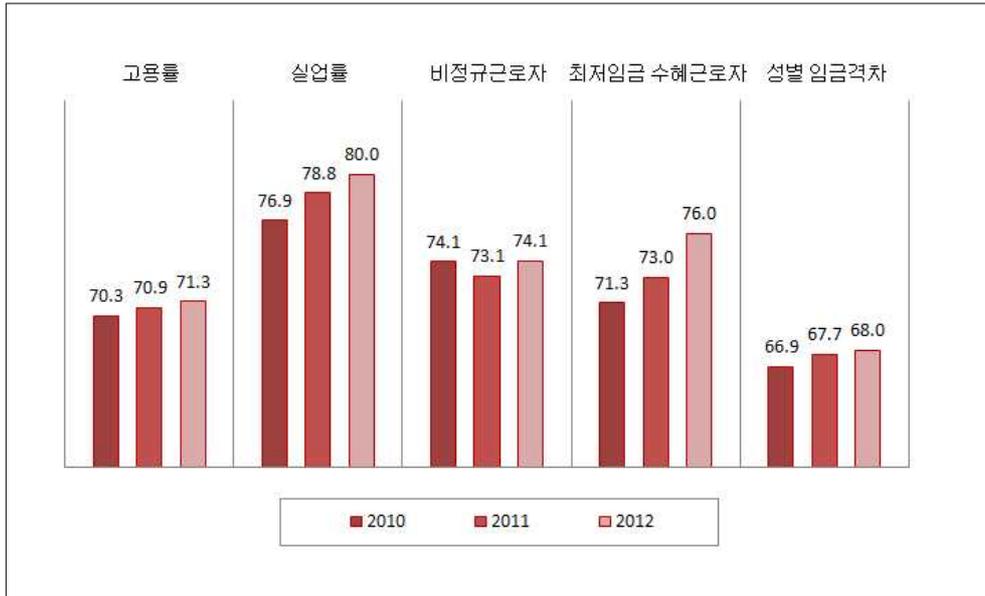
## 2) 노동권 영역

노동권 영역 지수는 값은 2012년 기준 67.4로서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연도별 지수 값 변화를 보면 2010년 64.8에서 2011년에는 0.6p, 2012년에는 전년 대비 2.0p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등 노동권 인권수준은 소폭 개선되었다.

노동권 영역을 구성하는 개별 지표를 보면 먼저 완전고용 달성과 관련된 주요한 지표인 고용률의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 비율은 2007년 63.9%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63.8%, 2009년 62.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63.3%,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63.8%, 64.2%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고용률 지표 값도 2010년 70.3에서 2011년 70.9 그리고 2012년 71.3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실업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실업률은 2007년 3.2%(783천 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3.6%(889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을 보면 2010년 3.7%(920천 명)에서 2011년 3.4%(855천 명), 2012년 3.2%(820천 명)으로 실업자 수와 함께 실업률도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실업률 개선으로 인해 동 지표 값도 2010년 76.9에서 2011년 78.8, 2012년 80.0으로 상승하였다.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생계비를 벌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지표를 보면 2007년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자 수는 5,70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5.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근로자 수와 비율은 연도별로 편차를 보이거나 2010-2012년에는 비정규근로자 수는 2007-2008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에 비정규직 비율은 다소 하락하였다. 즉, 2010년 비정규직 비율은 33.3%(5,685천 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34.2%(5,995천 명), 2012년 33.3% (5,911천 명)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비정규직 비율 지표 값은 2010년 74.1에서 2011년 73.1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12년 다시 74.1로 회복되었다.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 V-17] 노동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최저임금근로자 권리보장과 임금차별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전체 15,351천 명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1,442천 명(근로자의 9.4%)이었다.<sup>167)</sup> 이와 같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2.8%가 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5%, 2011년 10.8% 그리고 2012년 9.6%로 다시 동 비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71.3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1년, 2012년 각각 73.0, 76.0이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다. 월총액급여 기준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2007년 66.4%(남성임금 100 기준)에서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 지표 값은 2010년 66.9에서 2011년 67.7, 2012년 68.0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

167) 최저임금 미만을 수치에는 유급주휴 및 최저임금 감액규정 등이 미반영되어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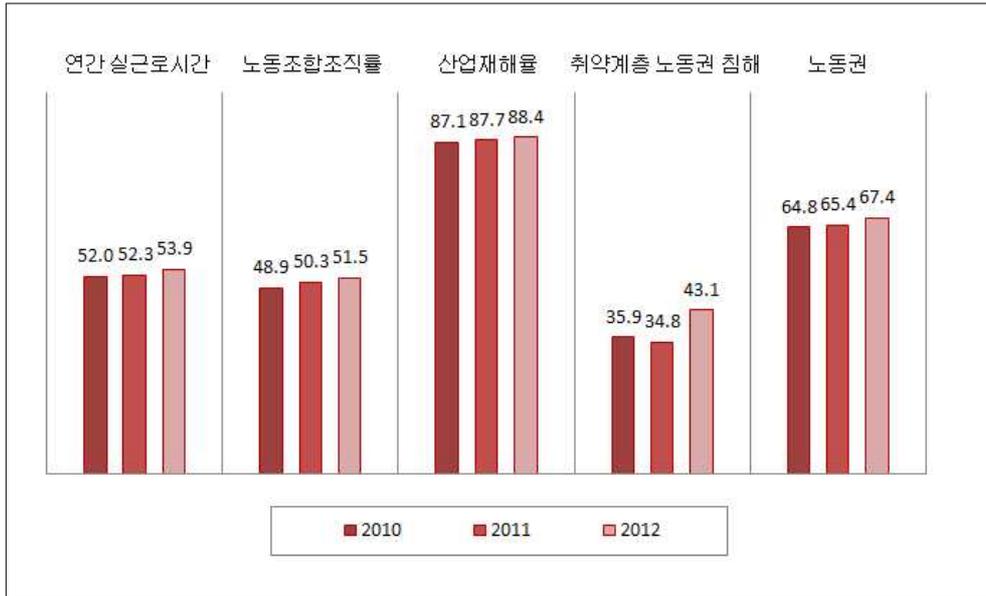
시간을 보면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에도 2010년 2,120시간, 2011년 2,116시간 그리고 2012년 2,092시간으로 다른 OECD 회원국보다 훨씬 길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52.0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52.3, 53.9로 다소 증가하였다. 근로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나타내는 노동조합 조직률 지표를 보면 1990년 18.4%에서 장기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는 10.3%를 나타내었다. 분석 대상 기간인 2010년에는 9.8%이었고, 2011년과 2012년 10.1%, 10.3%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48.9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50.3, 51.5이었다.

노동권 세부 지표 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나타내는 산업재해율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1990년 1.7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2000년 0.73, 2010년 0.69, 2011년 0.65 그리고 2012년 0.59이었다. 그러나 산업재해자 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여 2000년 69천 명에서 2010년 99천 명이였다. 본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사망만인율을 보면 2010년 1.55(/만 명), 2011년 1.47 그리고 2012년 1.39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87.1에서 2011년 87.7 그리고 2012년 88.4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서 관련 법 위반 점검, 법 위반 사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행정처분, 시정 등의 조치를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위반을 통한 노동권 침해를 나타내는 지표인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정도를 보면, 먼저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사내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대상 사업장, 연령차별 점검 대상 사업장 각각의 법 준수비율을 평균하면 2010년 35.9%에서 2011년 34.8% 그리고 2012년 43.1%이었다. 2011년 법 준수비율이 하락한 것은 비정규직과 연소근로자 관련 법 위반 업체비율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했고, 2012년에는 비정규직, 사내도급, 최저임금관련 법 위반 업체비율이 크게 하락한데 기인했다. 그 결과 동 지표 값은 2010년 35.9에서 2011년 34.8 그리고 2012년 43.1을 나타내었다.

노동권 영역의 지수 값은 2011년에 전년대비 0.6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는 주로 실업률 하락,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 증가,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연간 실근로시간 감소도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2년에는 노동권 영역 지수가 2.0p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가는 주로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의 감소에 기인했고, 그 외에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 증가 실업률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 V-18] 노동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 3) 건강권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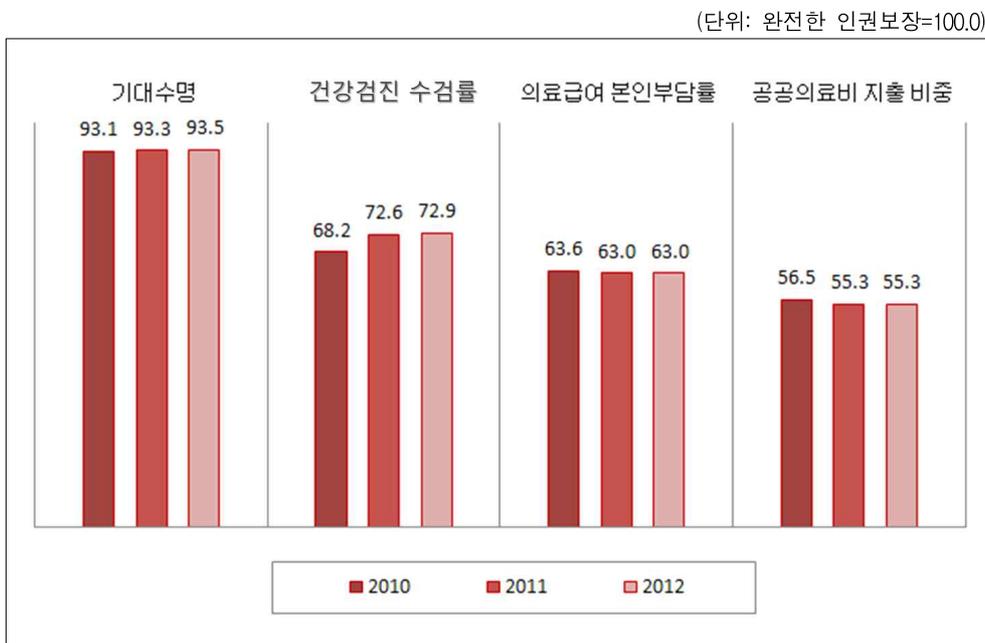
건강권 영역의 지수 값은 2012년 72.2로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연도별 지수 값 변화를 보면 2010년 72.2에서 2011년에는 1.0p 증가한 73.2이었고, 2012년에는 전년 대비 0.5p 증가한 72.7이었다. 즉, 건강권 영역은 분석기간 중에 인권수준이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건강권 영역에 속하는 세부지표를 보면 먼저 기대수명을 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00년 76.1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80.5세, 2011년 80.6세 그리고 2012년은 80.7세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은 일본의 2012년 기준 83.6세, 호주 82세, 프랑스 81.7세, 오스트리아 81.0세에 비하면 낮으나 국제비교를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 지표 값은 2010년 93.1에서 소폭 증가하여 2011년 93.3, 2012년 93.5이었다. 또 다른 건강권 세부 지표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2007년 60.0%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0년 68.2%, 2011년 72.6%, 2012년 72.9이었다.<sup>168)</sup> 이에 따라 동

168) 건강검진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대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임(국민건강

지표 값은 2010년 68.2, 2011년 72.6 그리고 2012년 72.9로 소폭 증가하였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지표를 보면 전체 진료비 중에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한 본인부담금 비율을 보면 현금지급을 포함한 경우 2006년 35.5%이었고, 2009년에는 35.0%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6.4%, 37.0%로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sup>169)</sup>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63.6,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63.0이었다. 전체 의료비 지출 중에서 정부재원과 사회보장기금 즉, 공공의료비 지출 구성비를 보면 2008년 54.8%에서 2009년 56.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56.5%, 55.3%로 다소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56.5,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55.3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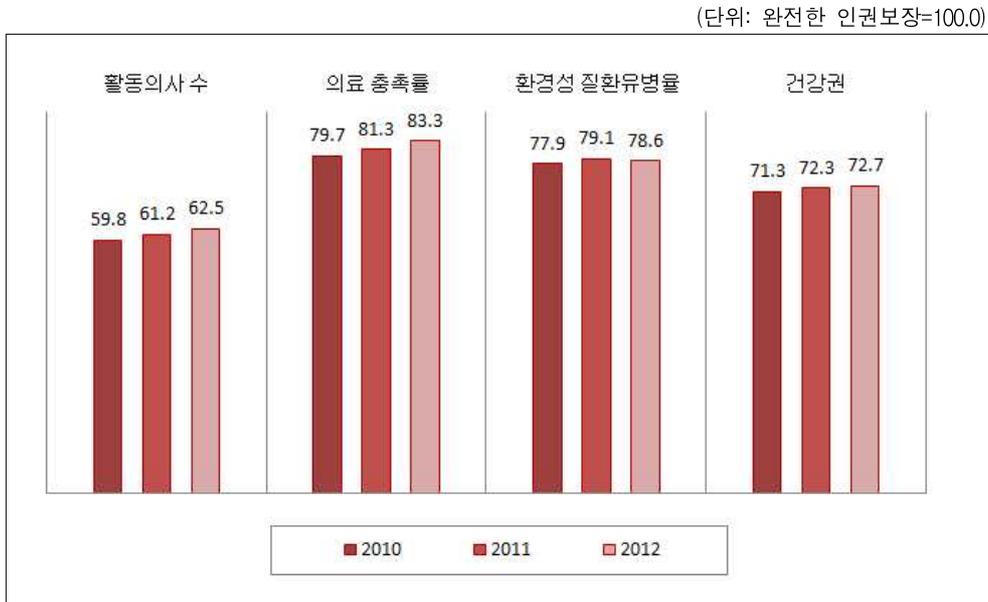


[ V-19] 보건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강보험공단(2011), 『건강검진통계연보』.

169) 본인부담률은  $\frac{(\text{법정 본인부담금} + \text{비급여 본인부담금})}{\text{강보험급여비} + \text{법정 본인부담금}} \times 100$ 으로 산정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지표로 활동의사 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005년 96천 명에서 2010년 119천 명, 2011년 123천 명 그리고 2012년에는 126천 명이였다. 그리고 19세 이상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를 보면 2010년 2.41명,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47명, 2.52명이였다. 따라서 동 지표 값은 2010년 59.8에서 2011년 61.2, 2012년 62.5로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충족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가고 싶을 때 병원을 가지 못해서 치료 받지 못한 인구비율은 2010년 20.3%이고 2011년 18.7% 그리고 2012년 16.7%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그 결과 동 지표 값은 2010년 79.7이고 2011년과 2012년 각각 81.3, 83.3이였다.



[ V-20] 보건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환경성 질환유병률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을 보면 2008년 각각 2.7%, 12.1%, 3.2%로 전체 18.0%이였다. 환경성 질환유병률은 2009년에는 전체 17.6%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22.1%, 2011년 20.9% 그리고 2012년 21.4%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 유병률이 증가한 것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유병률이 전년 11.9%에서 15.7%로 증가한데 기인했다. 2011년에는 아

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2010년 3.3%에서 3.5%로 소폭 증가했으나, 알레르기성 비염 유병률이 14.5%로 그리고 천식이 3.0%로 감소하여 전체 환경성 질환유병률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도 2010년 77.9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79.1, 78.6으로 상승하였다.

보건권 영역의 인권지수 값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71.3에서 2011년 72.3, 2012년 72.7로 미미하게 상승하였다. 동 영역의 지수 값 상승은 2011년 경우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년대비 4.4p, 의료충족률이 1.6p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그리고 2012년도 지수 값 증가는 활동의사 수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 4) 교육권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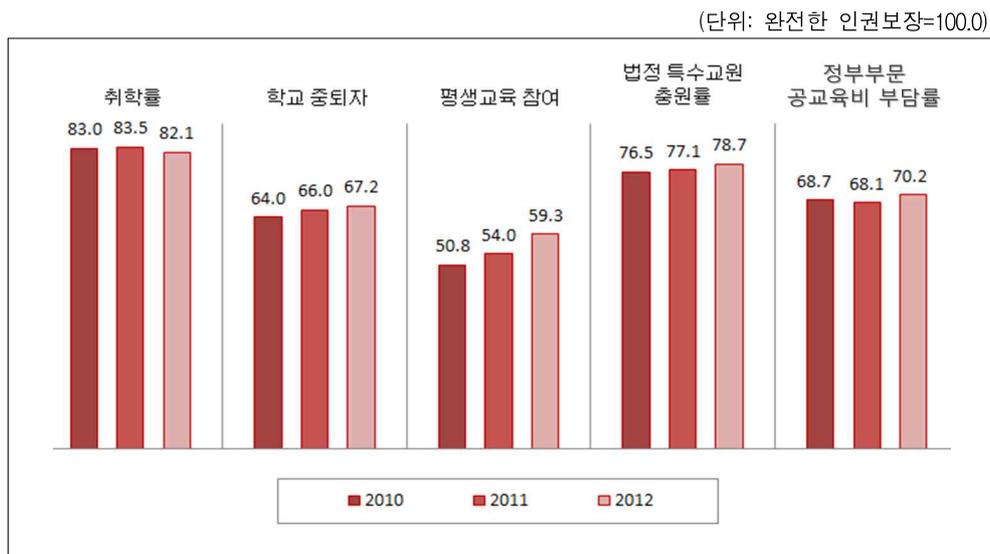
교육권 영역의 인권 지수 값은 2012년 기준 69.9로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연도별 지수 값 변화를 보면 2010년 67.0에서 2011년에는 1.0p 증가한 68.0이었고,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9p 증가한 69.9이었다. 즉, 교육권 영역의 인권수준도 분석기간 중에 증가하였다.

교육권 영역에 속하는 세부지표를 보면 먼저 교육기회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취학률의 경우 우리나라 초·중·고등교육기관 (산술 평균) 취학률은 80.0%이었다. 이후 취학률은 증가하여 2010년에 83.0%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83.5%, 82.1%를 나타내었다. 2011년에 취학률이 증가한 것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2010년 70.1%에서 71.0%로 증가, 2012년에 하락한 것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2011년 70.0%에서 68.4%로 하락한데 기인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83.0에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83.5, 82.1을 기록하였다. 학교중퇴자 혹은 유예자 및 면제자 비율은 2010년 초등학교 0.6%, 2011년 0.6% 그리고 2012년 0.6%이었다. 중학교는 동 기간에 각각 1.0%, 0.9%, 0.9%이고, 고등학교는 연도별로 2.0%, 1.9%, 1.8%이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10년 3.6%, 2011년 3.4% 그리고 2012년에는 3.3%로 감소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64.0에서 2011년 66.0 그리고 2012년 67.2이었다.

우리나라 만25~64세 성인 중에서 형식 및 비형식 교육 참여자 비율 즉 평생교육참여자 비율을 보면 2008년 27.6%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2010년 30.5%, 2011년 32.4% 그리고 2012년에는 35.6%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지표 값도 2010년 50.8에서 2011년 54.0 그리고 2012년 59.3으로 증가하였다. 취약계층의 교육접근과 교육환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부지표인 장애인 대비 특수교육 담당 교원 현황을 보면 2005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5.60명으로 법정 교원 수(1명 당 학생 수 4명)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변동을 보면 2010년에는 5.23명, 2011년 5.19명 그리고 2012년에는 5.08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표 값도 2010년 76.5에서 2011년 77.1 그리고 2012년 78.7로 증가하였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공교육비 비율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교육비지출액은 전체 GDP의 7.6%이었다.<sup>170)</sup> 이와 같은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6.3%보다 1.3%p가 높았다. 그러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회원국 평균 0.9%보다 1.9%나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 부분의 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58.9%에서 2010년 61.6%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의 각각 85.5%, 83.6%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68.7에서 2011년 68.1 그리고 2012년 70.2이었다.



[ V-21 ] 교육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170)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문화예술 관람률 지표는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행사 관람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65.8%가 문화예술행사를 1년에 한 번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에는 67.2%,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8.4%, 69.6%이었다. 따라서 동 지표 값은 2010년 67.2, 2011년 68.4 그리고 69.6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여가활동 만족도 지표를 보면 2010년 13세 이상 인구 중에서 여가활동에 ‘매우 만족’, ‘만족’ 그리고 ‘보통’인 인구비율은 67.9%이었고, 2011년 67.9% 그리고 2012년에는 71.4%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표 값도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67.9이고 2012년에는 71.4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당 인구 지표를 보면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를 보면 2008년 76,007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65,099명, 2011년에는 63,333명 그리고 2012년 61,000명이었다.<sup>171)</sup>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지표 값을 보면 2010년 57.6에서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0.8로 소폭 상승하였다.



[ V-22] 교육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171) 국가인권정책협의회(201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p.173.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권 영역의 인권지수 값은 2010년 67.0에서 2011년 68.0 그리고 2012년 69.9로 소폭 상승하였다. 동 영역의 2011년 지표 값 상승 요인은 평생교육참여율 증가, 학교 중도탈락자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2년도 지표 값 상승은 평생교육참가율 증가, 여가활동만족도 증가, 공공육비 정부부담률 증가, 법정 특수교육 교원 충원률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주거권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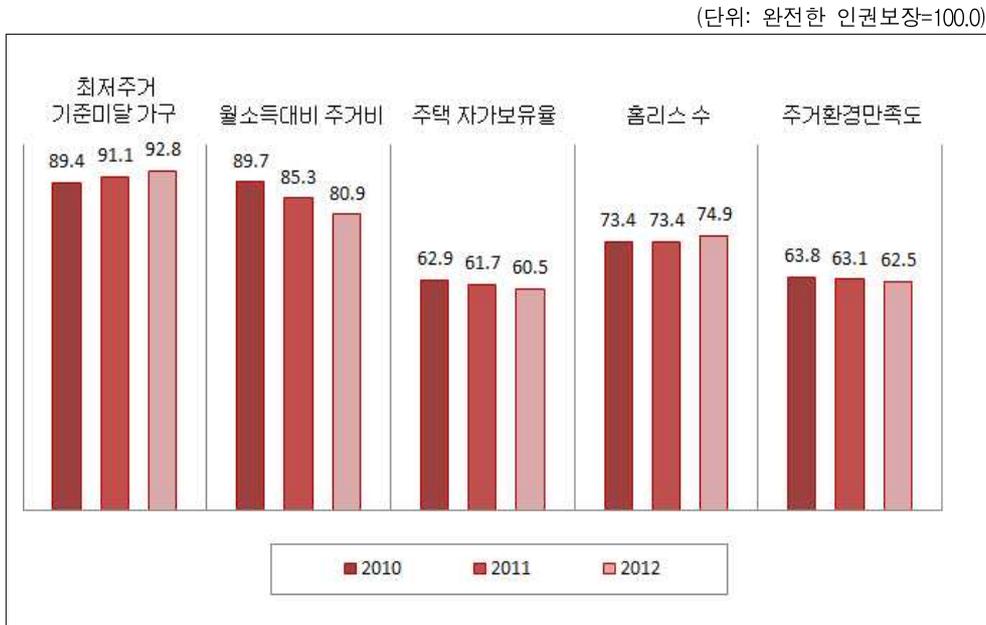
주거권 영역의 인권 지수 값은 2012년 기준 74.3으로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연도별 지수 값 변화를 보면 2010년 75.8에서 2011년에는 0.9p 하락한 74.9이었고, 2012년에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한 74.3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권 영역의 인권지수 값은 2012년에도 여전히 경제·사회·문화권 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주거권 영역에 속하는 세부 지표 중에서 먼저 주거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정부가 정하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 설비 기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을 보면, 2006년 동 가구 수가 268만 가구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184만 가구, 2012년 128만 가구이었다. 전체 가구 중에서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보면 2008년 0.13%, 2010년 0.11% 그리고 2012년 7.2%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동 지표 값을 보면 2010년 89.4에서 2011년 91.1 그리고 2012년 92.8이었다.

또한 중위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현황을 보면 2008년 월 평균 주거비는 21.2만 원, 2010년 24.2만 원, 그리고 2012년 24.7만 원이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월평균 주거비 비율은 2010년 8.6%, 2012년 11.7%이었다. 따라서 동 지표 값은 2010년 89.7, 2011년 85.3 그리고 2012년 80.9이었다. 주택 자가보유율 즉,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율을 보면 2008년 60.9%이고, 2010년과 2012년 각각 60.3%, 58.4%이다.<sup>172)</sup>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

172) 자가보유율은  $\frac{\text{자가 점유가구수}}{\text{총가구}} \times 100$ 임(국토교통부(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년 62.9이고, 2011년 61.7, 2012년 60.5이었다. 주거권 부정 및 침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홈리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홈리스 수는 2005년 15,785명이었다.<sup>173)</sup> 2005년 이후 홈리스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2010년 13,152명, 2011년 13,145명 그리고 2012년 12,391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홈리스 수로 보면 2012년 0.25명이었다. 동 지표 값을 보면 2010년 73.4에서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73.4, 74.9이었다. 우리나라는 주거환경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는데, 2006년 주거만족도는 3.58이었고, 2010년에는 다소 만족도가 다소 하락하여 3.55, 그리고 2012년에는 3.50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표 값은 2010년 63.8, 2011년 63.1이었고 2012년 62.5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 V-23] 주거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거권 영역의 인권지수 값은 2010년 75.8에서 2011년 74.9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하락요인을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는

173) 홈리스는 노숙인(재활·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일시보호), 거리노숙인, 쪽방주민을 포괄함(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감소하였으나,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였고 주택 자가보유율도 하락한데 기인하였다. 2012년에는 74.3으로 전년대비 0.6p 하락하였는데, 이와 같은 하락은 전년과 비슷하게 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는 감소하였으나,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였고 주택 자가보유율도 하락 그리고 주거환경 만족도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VI

---

---

### 국가인권지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

---

---

- |               |     |
|---------------|-----|
| 1. 인권지수의 활용방안 | 325 |
| 2. 인권지수의 관리방안 | 326 |

## 1. 인권지수의 활용방안

우리나라는 제1차,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시행과 함께 매년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영역과 정책과제가 상당히 방대하고 다양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 정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추진 실적 등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인권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수를 활용하여 각종 인권정책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제한적이거나 주요 인권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인권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 생산하여 배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권수준에 대한 국민 및 관련 행정부처의 인식제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실증적인 통계데이터(hard data)로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각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인권과제 혹은 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통계의 생산과 관리를 통해서 인권통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특수성이 반영된 영역별 인권지수의 수준 및 변화 추이 그리고 그 원인을 점검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개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즉, 국가인권지수의 지표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국가인권 관련 세부정책 간의 연계표를 구축하고, 연계표가 구축되면 특정 인권지표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과제 담당 부처 및 부서와 담당자의 정책점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경우 인권지수의 지표체계와는 달리 개별권리별로 정책과제의 이행현황, 정책성과 및 장애요인 등을 다루고 있다.<sup>174)</sup> 즉, 201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경우 44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88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권리 66개의 과제가 있다. 따라서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를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별로 추가적으로 발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75)</sup>

174) 대한민국 정부(201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 6.

175) 시민·정치적 권리에 속하는 44개 추진과제는 생명권 3개, 신체의 자유 14개, 거주 이전의 자유 2개,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8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6개, 참정권 5개,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4개임. 경제·사회

셋째, 국가인권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인권지수는 단순히 국가 혹은 영역별 인권수준만 나타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과 해당 영역의 지표 값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제도 및 정책과제를 발굴,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동 연구에서 산정한 인권지수 값을 보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경우 이동권영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권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영역, 생명권 영역과 같이 지수 값은 상당히 높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주거권과 같이 지수 값은 상당히 높는데 비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영역이 있다. 이와 같은 영역들의 경우는 대표지표나 관리지표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과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지수의 각 지표별 인권 수준을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인권수준이 개선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구분하여, 인권수준이 오히려 악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수준이 낮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검 작업을 통해서 인권침해가 더욱 악화된 영역과 관련 지표를 책임지고 있는 각 행정부처로 하여금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2. 인권지수의 관리방안

인권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권지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가 생산, 관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권자료를 생산, 관리할 수 있는 <표 V-1>과 같은 방식의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대표성 있는 전국단위(national-wide) 조사통계 생산도 상당히 중요하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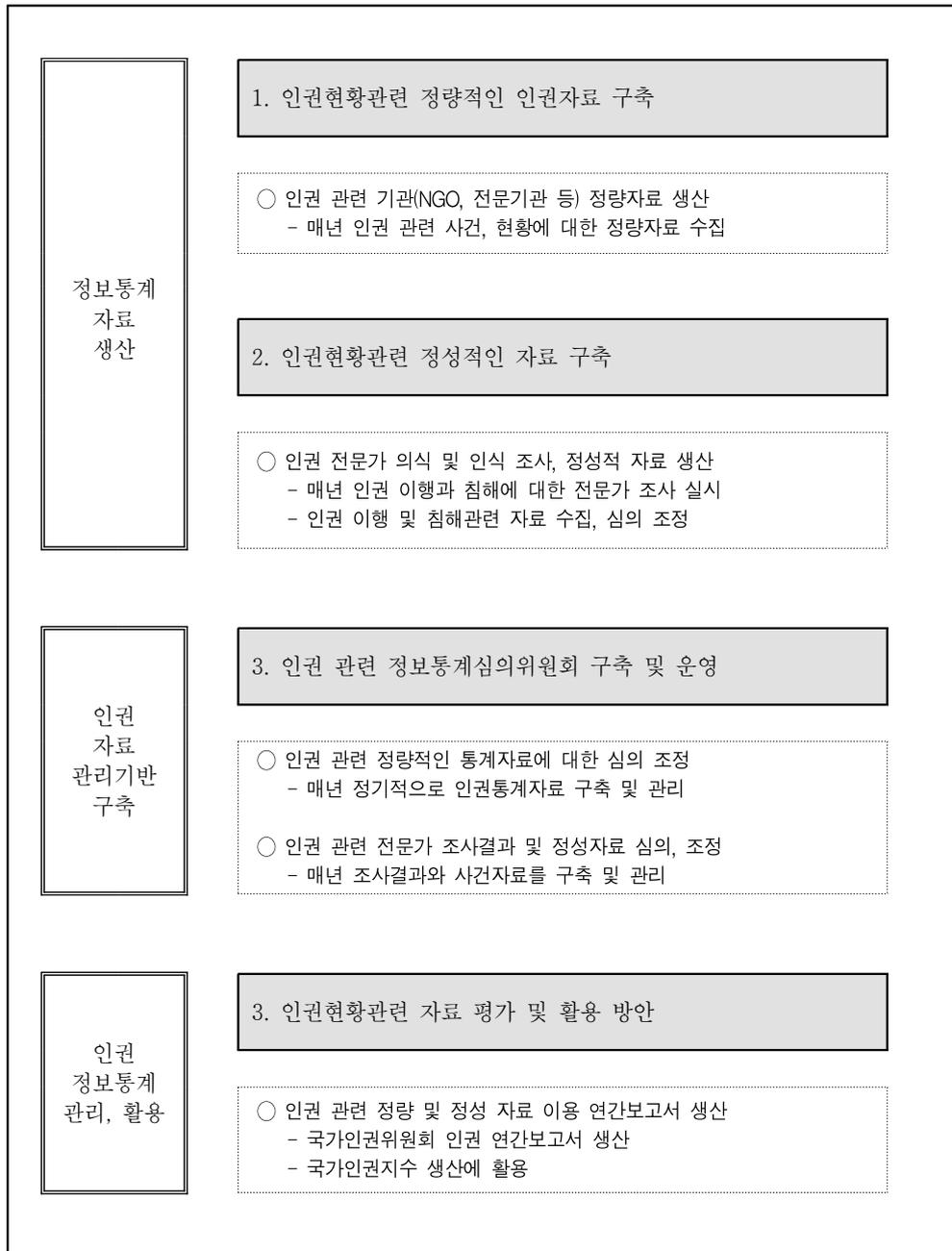
적·문화적 권리의 경우는 교육권 10개, 근로의 권리 14개, 근로3권 2개,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4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개, 건강·보건 및 환경권 19개, 문화·예술권 6개,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11개로 구성되어 있음(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3).

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에 기초한(event-based) 통계 및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즉, 사건과 관련하여 언제, 무엇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기술적인 정보와 함께 수량적인 통계정보를 구축,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는 실제 건수보다 과대 혹은 과소하게 기록되거나 혹은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집되지 않음에 따라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일부 인권 관련 단체, 언론기관, 전문가 및 연구자에 의해서 혹은 비정기적인 소규모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 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기관 혹은 전문가가 동일한 인권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 생산함에 따라 해당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매년 인권 관련 사건 및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량적인 자료 수집, 인권 이행 및 침해관련 정성적인 자료 수집과 함께 전문가 집단 및 일반인 대상 인권에 대한 인식 및 의식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인권정보통계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권 관련 각종 정보와 통계를 심의할 수 있는 행정부처, 인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정보통계심의위원회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심의위원회는 매년 수집, 생산되는 인권정보 및 통계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객관성과 신뢰도가 담보되는 자료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심의 의결된 인권자료는 인권정보통계DB로 구축하여 국내 및 국제 기구, 인권단체, 전문가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VI-1> 인권자료의 생산 및 관리 인프라 구축 방안



이 외에도 국가인권지수의 지표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표 VI-2>에서 정리된 것과 같이 국가인권지수의 관리지표 중에서 생산주기가 길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생산되는 통계, 그리고 생산되지 않고 있는 통계, 전문가 혹은 일반인 대상 인식 및 의견 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성적인 통계 등을 위한 생산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혹은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통계 개선 및 생산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는 연도의 지표 값에 대한 대체(imputation)방법을 재점검하고, 해당 지표의 대체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권영역별 개별 지표 값 수준과 추이를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 교수, NGO 등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국가인권지수의 지표 값과 함께 관련 통계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 관련 통계 DB에는 국내 지표 값과 함께 통계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관련 지표 및 통계 등과 함께 인권에 대한 다양한 기초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 관련 국제지수 및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권수준의 국제적 위치를 평가, 점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 및 제도의 추진 속도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지수의 지표와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함께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인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지수 및 지표 그리고 그러한 국제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우리나라 인권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VI-2> 인권 관련 통계 생산이 필요한 지표

	신체적 자유
- 행려사망률(고독사)	- 인신매매 사건 건수
- 명예살인 건수	-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자의 강제출국 이의신청과 수용률
- 안락사 건수	- 불신검문 시 몸수색 건수
- 뇌사의 인정 건수	- 수사기관의 강제연행 건수
- 배아복제 건수	
법의 지배	사생활보호
- 상고심,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 계류사건 처리기간	-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건수	- 학생의 사생활 침해 진정 사건
- 상고심(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비율	- 인터넷 실명제, 주민등록번호 수집률
- 고위공직자(선출직 포함) 기소율	- 금융정보 조회, 개인정보 누출, 신상털기 건수
- 소수의견의 보호(S)	- 언론 및 수사 당국의 피의사실 공표 건수
-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장(S)	- 미등록이주자 강제출국 시 가족 분리 강제출국 건수
- 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시민의식(S)	-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정도
- 자의적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S)	
- 범죄피해자 피해구조 현황(S)	
이동권	사상·양심의 자유
- 도서지역 교통수단 보급률	- 정치적 표현 관련 기소자 수
- 전동휠체어 보급률	- 인터넷 실명제 여부
언론·출판	- 종교계 학교의 종교 강요 건수
-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건수	- 학교급별 종교 관련 수업 현황과 진정 건수
-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S)	- 자유로운 정당활동 보장(S)
- 언론사의 노조활동권한(S)	- 내부고발자 보호 정도(S)
	- 종교선택 및 탈퇴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집회·결사	참정권
-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채증 건수 혹은 비율	- 국민 청원권에 의한 정책발의, 입법발의청원 건수
- 집회 신고 후 미신고 집회 건수 혹은 비율	- 청소년 정치적 권리
- 학교에서의 집회 자유(S)	- 정부기관의 선거개입여부(S)
- 단체가입 및 탈퇴의 자유정도(S)	-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참여권보장 유무
- 집회·결사에 대한 간접적인 법적 규제(S)	
사회복지권	보건권
- 다중채무자 수와 개인신용회복 비율	- 무의촌 수(산부인과 등 포함)
노동권	교육권
-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	- 총 학생 대비 대안학교 학생 비율
- 단체교섭 적용률	주거권
- ILO 제소 건수 및 권고사항 수용률	- 에너지빈곤가구 수
	- 강제퇴거 건수

주: (S)는 정성적인 조사가 필요한 통계임.

## 참고문헌

- 강수택 외(2009), 『대학인권지표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0),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13),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 브리핑 자료, p.4.
- 경찰청(각 연도), 『경찰백서』.
- \_\_\_\_\_ (2012), 『경찰범죄통계』.
- 고용노동부(2012), 『2012 장애인 통계』.
- \_\_\_\_\_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_\_\_\_\_ (2013), 『고용노동백서』.
- 공무원연금공단(2013), 『공무원연금통계』.
- 공석기(2009), “1990년대 이후 한국 인권 개선의 조건 그리고 한계”, 한국사회학회 국제사회학대회 자료집.
- 교육부(2012), 『교육통계연보』.
- \_\_\_\_\_ (2013), 『특수교육통계』.
- \_\_\_\_\_ (각 연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구정우(2009), ‘글로벌 인권개선의 추이 - 국제 인권지표의 분석, 1972-2007’, 한국사회학회 국제사회학대회 자료집.
- \_\_\_\_\_ 외(2009), “Measuring National Humanrights: a reflection on the Korean Experience”, 서울대사회학과 인권국제학술대회 발제논문.
- \_\_\_\_\_ 외(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8),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본 한국의 사회권’, 2008년 사회권 심포지엄.
- \_\_\_\_\_ (2010),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_\_\_\_\_ (2011), 『인권의 해설』.
- \_\_\_\_\_ (2012), 『2012년 연차보고서』.
- \_\_\_\_\_ (2012),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_\_\_\_\_ (2013),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_\_\_\_\_ (2013), 『2012 인권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건강검진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2013), 『2012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토교통부(2012), 『주거실태조사』.
- 국토해양부(2012),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2016」, 한국개발연구원.
- 김용순 외(2008),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 국토해양부.
- 김은경(2013), “현행 가정폭력 대응 입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 김태홍 외(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나달술(2010),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 개념의 비교적 고찰, 『법학논총』, 34(2). 9-36.
-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 문진영 외(2008),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박옥순(2002), 「장애인 인권지표 연구; 한국 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2), 『2011 방송통신심의연감』.
- 법무부(20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
- \_\_\_\_\_ (2012), 『법무연감』
- \_\_\_\_\_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9월호, p.32.
- 법무연수원(2012), 『범죄백서』.
- 법원행정처(각 연도), 『사법연감』.
- 보건복지부(2009), 「2009 OECD 사회통계지표」.
- \_\_\_\_\_ (2009), 『전국출산력 및 가족아동보건복지실태조사』.
- \_\_\_\_\_ (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 \_\_\_\_\_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_\_\_\_\_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_\_\_\_\_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 \_\_\_\_\_ (각 연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 \_\_\_\_\_ (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각 연도), 『사학연금통계연보』.

- 산업안전보건공단(2011), 『산업재해현황분석』.
- 서문희 외(2003), 『아동권리지표의 생산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소연 외(2002),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 안상훈 외(2010),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안전행정부(2013),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 \_\_\_\_\_ (2013), 『201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_\_\_\_\_ (2013), 『2013 청소년백서』.
- 정경희·김미혜·정순돌·이윤경(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변재관·유원선·이윤경(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 실태 사례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정인섭(2008), 『국제인권조약집』, 경인문화사.
- 정진성 외(2011), 『국민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조한진 외(2012),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주재선 외(2012),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중앙노동위원회(2012), 『노동위원회브리프』, 겨울, 통권51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최저임금심의위원회(2012),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최창욱 외(2006),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1),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 \_\_\_\_\_ (각 연도), 『빈곤통계연보』.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2012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_\_\_\_\_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환경부(2012), 『환경통계연감』.

Agrast, M. D., J. C. Botero, J. Martinez, A. Ponce, C. S. Pratt(2013), Rule of Law Index 2012 - 2013, The World Justice Project.

Asian Centre for Human Rights(2006, 2008), 『SAARC Human Rights Report』.

Barsh, R. L.(1993), Measuring Human Rights: Problems of Methodology and Purpose, *Human Rights Quarterly*, 15(1), 87-121.

Berthelier, P., A. Desdoigts, J. Ould-Aoudia(2003), Institutional Profiles: Presentation and Analysis of Original Data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in Transition and Developed Countries, Working document, Economic Analysis and Forecasting Directorate.

BTI 2012(2012), South Korea Country Report.

Botero, J. C., A. Ponce(2010), Appendix B: Questionnaires, Expert's Questionnaire-Civil and Commercial Law, Expert's Questionnaire - Constitutional Law, Civil Liberties' and Criminal Law

\_\_\_\_\_(2010), Measuring the Rule of Law, The World Justice Project, 17-22.

\_\_\_\_\_(2010), measuring the Rule of Law, Appendix A. Mapping of questions and indicators, 39-53.

Cingranelli, David L. and David L. Richards(2008), The Cingranelli-Richards(CIIRI) Human Rights Data.

Cingranelli, David L. and David L. Richards(2008),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Coding Manual, Manual version(2008.7.30.)

Donner, S., Hauke Hartmann, Matthias Jäger(2012), Transformation Index of the Bertelsmann Stiftung 2012- Codebook for Country Assessments, Bertelsmann Stiftung, 14-45.

EIU(2013), Democracy Index 2010 - Democracy at a standstill.

Harrendorf, S., M. Heiskanen, S. Malby eds(2010), International Statistics on Crime and Justice, HEUNI Publication Series No. 64.

Freedom House(2013), 'Methodology' in Freedom in the World 2013.

\_\_\_\_\_(2013),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Checklist Questions' in Freedom in the World 2012: the ARAB Uprisings and Their Global Repercussion.

\_\_\_\_\_(2013), Freedom of the Press 2013, 35-38.

Fukuda-Parr, S., T. Lawson-Remer, S. Randolph(2008), Measuring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Obligations: An Index of Economic and Social

- Rights Fulfillment, Economic Rights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8, The Human Rights Institute, University of Connecticut.
- Gupta, D, K., Albert J. Jongman, Alex, P.(1994), Creating a Composite Index for Assessing Country Performa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posal for a New Methodology, *Human Rights Quarterly*, 16(1), 131-162.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2012),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Republic of Korea, Fourteenth session, Geneva, 22, October -5, November, 2012.
- ILO(2013), LABORSTA Labour Statistics Database.
- Landman, T.(2004), Measuring Human Rights: Principle, Practice, and Policy, *Human Rights Quarterly*, 26(4), 906-931.
- OECD(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 \_\_\_\_\_(2012), Education at a Glance.
- \_\_\_\_\_(2013), Education at a Glance.
- \_\_\_\_\_(2013), Employment Outlook 2013.
- Reed M. Wood, Mark Gibney(2010), "The Political Terror Scale (PTS): A Re-introduction and a Comparison to CIRI". *Human Rights Quarterly*, 32(2), 367-400.
- Reporters Without Borders(2012), Press Freedom Index.
- Reporters Without Borders(2013), 2013 World Press Freedom Index - Methodology.
- Social Watch(2013), Social Watch Report 2013.
- The World Bank(2007), A Decade of Measuring the Quality of Governance - Governance Matters 2007.
- The World Justice Project(2013),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2-2013.
- UNDP(1991), '1991 Human Development Report'.
- UNOCD(2011), 2011 Global Study on Homicide - Trends, Context, Data,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Welling, Judith V.(2008), International Indicator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30(4), 933-958.



---

## 부 록

---

### <부표 1>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   -

##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지수를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와 증진 정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 점검, 정책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종합지수인 국가인권지수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국가인권지수를 구성하는 각 영역과 개별 인권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가인권지표의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및 개별 지표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국가인권지수 산출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는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조사 문의처>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조사기관 : (주) 더피플리서치
- ◆ 담당자 : 이경희 (전화 02-6335-4200, 팩스 0505-720-2261)
- ◆ E-mail : kwdi2@goodsurvey.kr

## 조 사 안 내

### 1. 목적 및 내용

- 이 조사의 목적은 국가인권지수의 개발을 위해 영역별 대표 인권지표를 선정하고 국가인권지수의 산정을 위한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 이번 연구에서 국가인권지수는 크게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나누고 소수자 권리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리별로 설정된 영역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상대적 중요도와 인권지표에 대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가인권지수 산출의 중요한 근거가 되오니,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2. [인권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작성 방법

- 아래의 문항들은 인권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영역은 크게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그리고 소수자 권리로 나누어 각각 인권 내 영역들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작성 방법]

- 인권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을 위해 인권 영역에 따라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됩니다.
- 번호 1번 인권 영역 중에서 [A 영역]이 [B 영역] 보다 ‘강하게 중요하다’ 고 생각하시면 [A 영역] 쪽의 5에 ✓ 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번호 2에서 [B 영역]이 [A 영역] 보다 ‘약간 중요하다’ 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B 영역] 쪽의 3에 ✓ 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권 영역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인권 영역 (B)
		A	· 7	· 5	· 3		· 1	· 3	· 5		· 7	· 9					
1	A			✓												B	
2	A								✓							B	

	중요도 정도
1	두 개의 요소가 동일하게 중요함(equal)
3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중요함(weak)
5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게 중요함(strong)
7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강하게 중요함(very strong)
9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함(absolute)

※ 척도(2, 4, 6, 8)는 근접한 홀수들의 중간임

## I. [인권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 1.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B)
		9 · 7 · 5 · 3 · 1 · 3 · 5 · 7 · 9				
1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② 신체의 자유
2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③ 법의 지배
3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④ 사생활보호
4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이동의 자유
5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6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⑦ 언론·출판
7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⑧ 집회·결사
8	① 생명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순 참정권
9	② 신체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③ 법의 지배
10	② 신체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④ 사생활보호
11	② 신체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이동의 자유
12	② 신체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3	② 신체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⑦ 언론·출판
14	② 신체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⑧ 집회·결사
15	② 신체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순 참정권
16	③ 법의 지배	9 · 7 · 5 · 3 · 1 · 3 · 5 · 7 · 9				④ 사생활보호
17	③ 법의 지배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이동의 자유
18	③ 법의 지배	9 · 7 · 5 · 3 · 1 · 3 · 5 · 7 · 9				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9	③ 법의 지배	9 · 7 · 5 · 3 · 1 · 3 · 5 · 7 · 9				⑦ 언론·출판
20	③ 법의 지배	9 · 7 · 5 · 3 · 1 · 3 · 5 · 7 · 9				⑧ 집회·결사
21	③ 법의 지배	9 · 7 · 5 · 3 · 1 · 3 · 5 · 7 · 9				순 참정권
22	④ 사생활보호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이동의 자유
23	④ 사생활보호	9 · 7 · 5 · 3 · 1 · 3 · 5 · 7 · 9				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4	④ 사생활보호	9 · 7 · 5 · 3 · 1 · 3 · 5 · 7 · 9				⑦ 언론·출판
25	④ 사생활보호	9 · 7 · 5 · 3 · 1 · 3 · 5 · 7 · 9				⑧ 집회·결사
26	④ 사생활보호	9 · 7 · 5 · 3 · 1 · 3 · 5 · 7 · 9				순 참정권
27	수 이동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8	수 이동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⑦ 언론·출판
29	수 이동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⑧ 집회·결사
30	수 이동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순 참정권
31	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⑦ 언론·출판
32	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⑧ 집회·결사
33	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9 · 7 · 5 · 3 · 1 · 3 · 5 · 7 · 9				순 참정권
34	⑦ 언론·출판	9 · 7 · 5 · 3 · 1 · 3 · 5 · 7 · 9				⑧ 집회·결사
35	⑦ 언론·출판	9 · 7 · 5 · 3 · 1 · 3 · 5 · 7 · 9				순 참정권
36	⑧ 집회·결사	9 · 7 · 5 · 3 · 1 · 3 · 5 · 7 · 9				순 참정권

###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A)
		9 · 7 · 5 · 3 · 1 · 3 · 5 · 7 · 9			
1	① 사회보장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② 노동권
2	① 사회보장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③ 건강권(환경권 포함)
3	① 사회보장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④ 교육권(문화권 포함)
4	① 사회보장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주거권
5	② 노동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③ 건강권(환경권 포함)
6	② 노동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④ 교육권(문화권 포함)
7	② 노동권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주거권
8	③ 건강권(환경권 포함)	9 · 7 · 5 · 3 · 1 · 3 · 5 · 7 · 9			④ 교육권(문화권 포함)
9	③ 건강권(환경권 포함)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주거권
10	④ 교육권(문화권 포함)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주거권

### 3. 소수자 권리

번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A)
		9 · 7 · 5 · 3 · 1 · 3 · 5 · 7 · 9			
1	① 여성	9 · 7 · 5 · 3 · 1 · 3 · 5 · 7 · 9			② 장애인
2	① 여성	9 · 7 · 5 · 3 · 1 · 3 · 5 · 7 · 9			③ 아동
3	① 여성	9 · 7 · 5 · 3 · 1 · 3 · 5 · 7 · 9			④ 노인
4	① 여성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난민, 이주자, 탈북자
5	② 장애인	9 · 7 · 5 · 3 · 1 · 3 · 5 · 7 · 9			③ 아동
6	② 장애인	9 · 7 · 5 · 3 · 1 · 3 · 5 · 7 · 9			④ 노인
7	② 장애인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난민, 이주자, 탈북자
8	③ 노인	9 · 7 · 5 · 3 · 1 · 3 · 5 · 7 · 9			④ 노인
9	③ 노인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난민, 이주자, 탈북자
10	④ 난민, 이주자, 탈북자	9 · 7 · 5 · 3 · 1 · 3 · 5 · 7 · 9			수 난민, 이주자, 탈북자



**㉒-2. 신체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신체의 자유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표	필요성
①	
②	

**㉓-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4순위)**

법의 지배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4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변호사 선임비율													
무죄재판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사법부 독립 정도													

**㉓-2. 법의 지배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법의 지배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㉔-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3순위)**

사생활보호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3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개인정보 침해 건수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													
사생활보호 인식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 건수													

**㉔-2. 사생활보호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사생활보호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㉗-2.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표	필요성
①	
②	

**㉗-1.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4순위)**

언론·출판의 자유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4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집회신청 대비 불허 비율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㉗-2.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순-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참정권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5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투표율 (무효투표율)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국회의원 여성비율												
선거의 여성공천자 수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수준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취약계층 참정권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순-2. 참정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참정권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①-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5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절대 빈곤율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												

**①-2. 사회보장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사회보장권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②-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신체의 자유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5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근로자 비율												
장시간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성별 임금격차												
노동조합조직률												
단체교섭 적용률												

**②-2. 노동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노동권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③-1. 건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지배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5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의료 미충족률												
공고의료비중(병상 수 기준)												
산업재해율												
환경성 질환유병률												
생활소음												

**③-2. 건강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건강권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④-1. 교육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사생활보호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5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취학률												
학교 중퇴자 비율												
평생교육 참여비율												
사교육비 비율												
장애인 대비 특수학교 규모												
문화예술 관람률												
여가활동 만족도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④-2. 교육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교육권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수-1. 주거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자유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5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												
주택 자가보유율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홀리스 수												
강제퇴거 건수												

**수-2. 주거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주거권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3. 소수자 권리]**

**㉠-1. 여성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생명권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5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성폭력 발생건수												
가정폭력피해 경험률												
여성의 사회안전인식												
여성 고용률												
여성 비정규직비율												
성별 임금격차												
관리직(고위,관리)여성비율												

**㉠-2. 여성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여성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㉔-1. 장애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자유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5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장애인의 폭력경험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장애인고용률(일반인대비)												
장애인임금격차(일반인대비)												
고등학교장애인진학률												
장애인투표율												
장애인정보화격차(일반인대비)												

**㉔-2. 장애인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장애인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㉔-1. 아동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범의 지배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5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아동(10만 명 당)사망자												
학대피해 아동비율(혹은 보호건수)												
요보호 아동 발생률												
아동빈곤율												
아동 청소년 성매매 검거인원												
영양성취부족 및 과잉 아동청소년 비율												

**㉔-2. 아동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아동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4-1. 노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5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노인학대경험률												
노인활동제한율												
노인의 일반적 건강상태												
노인빈곤율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노인의 선거투표율												

**4-2. 노인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노인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수-1. 난민, 이주자, 탈북자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3순위)**

이동의 자유	낮음 ← 중요도 → 높음											우선순위 (1~3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난민 자격 인정률												
북한 이탈자 취업률												
북한이탈자 학교 중도탈락률												

**수-2. 난민, 이주자, 탈북자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난민, 이주자, 탈북자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야할 지표	필요성
①	
②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 인쇄일 | 2013년 12월 20일

| 발행일 | 2013년 12월 23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 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인권정책과 02)2125-9836

| F A X | 02)2125-0918

| 제 작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代)

ISBN : 978-89-6114-312-7 93340